연구 2008-20-1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방안

Policies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오영희·김경래·유혜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8-20-1

발 행 일 2008년 12월
저 자 오 영 희 외
발 행 인 김 용 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대명기획
가 격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11-4 93330

머리말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 시행된 이후 2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심과 함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현재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정책 전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236개에 달하는 방대한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기획, 조정, 관리하는 관리체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전달체계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시행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 함에도 많은 과제가 지역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행계획과 추진실적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보완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고하게 유지되던 결혼, 자녀, 부양 등 가족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이 쇠퇴하고 만혼·비혼, 소자녀, 탈 부양 등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인식에 있어서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은 인식하면서도 본인에의 영향도는 높게 인식하지 않아 타인이나 국가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의 가치관과 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책수행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대두, 사회양극화

의 심화, 지역공동체의 약화, 정부의 신뢰도 하락, 공생문화의 후퇴, 추진조직의 축소후퇴, 재정자립도 편차, 인구이동 지속, 중위연령의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산업공동화 등 사업수행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호의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타개책을 세워나가면서 열성을 다해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추진체계, 주요사업 변화추이, 사업추진실태, 국민인식, 그리고 정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오영희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경래 선임연구원, 유혜영 연구원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동시에 본 보고서를 읽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신 본원의 정경희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신윤정 부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1개월여 기간 동안 전화조사를 관리해주신 문병윤 선임전문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전화설문에 응해주신 3,186명의 국민여러분과 16개 시·도 담당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수행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 론 ·····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1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개요 ····· **14**
제1절 사업추진체계 ····· 14
제2절 주요사업내용 변화추이(2006~2008년) ····· 36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실태 ····· **66**
제1절 저출산 대책 ····· 68
제2절 고령사회 대책 ····· 109
제3절 성장동력 부문 ····· 144
제4절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문 ····· 155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 **166**
제1절 분석대상의 일반특성 ····· 166
제2절 결혼 및 자녀가치관 ····· 169

제3절 저출산·고령화 현상·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193
제4절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 224

제5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정책수행환경 분석 ····· 228
제1절 대외적 환경 ····· 228
제2절 대내적 환경 ····· 236

제6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사업운영 개선방안 ····· 258
제1절 자체적 시행계획 수립 역량 강화 ····· 258
제2절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확보 ····· 275
제3절 정책적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 286

제7장 결론 ····· 301

참고문헌 ····· 306

부 록 ····· 309
〔부록 1〕 부표 ····· 311
〔부록 2〕 조사표 ····· 356

표 목 차

〈표 2- 1〉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참여부처 ····· 16
〈표 2-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조직 변화 ····· 17
〈표 2- 3〉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 설치 형태 ···· 18
〈표 2- 4〉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 현황 ····· 20
〈표 2- 5〉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담당자 현황 ···· 22
〈표 2- 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역별 과제수 ····· 23
〈표 2- 7〉 연도별 세부추진 과제수(2006～2008) ····· 24
〈표 2- 8〉 2007년 시행계획 또는 자체평가에서 누락된 세부사업 ····· 25
〈표 2- 9〉 중앙부처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사업(2007) ····· 27
〈표 2-10〉 중앙부처 재정투자 현황(2006～2008) ····· 30
〈표 2-1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32
〈표 2-12〉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영 제4조제1항 단서관련) ····· 33
〈표 2-13〉 저출산·고령사회대책사업 국비와 지방비간 매칭펀드 비율 ··· 34
〈표 2-14〉 만0～4세 보육료 지원 확대 ····· 38
〈표 2-15〉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확대 ····· 39
〈표 2-16〉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40
〈표 2-17〉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 41
〈표 2-18〉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41
〈표 2-19〉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 42
〈표 2-20〉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확대 ····· 43
〈표 2-21〉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주거·세제·국민연금 개편 ····· 44
〈표 2-22〉 방과후 학교 내실화 ····· 45

〈표 2-23〉 국내입양 활성화 ····· 46
〈표 2-24〉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47
〈표 2-25〉 불임부부 지원기준 확대 ····· 47
〈표 2-26〉 산모도우미 지원 ····· 48
〈표 2-27〉 모성·영유아 보호 확대 ····· 49
〈표 2-28〉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등 ··· 50
〈표 2-2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51
〈표 2-30〉 경로연금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 ····· 52
〈표 2-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53
〈표 2-32〉 노인요양시설 확충 ····· 53
〈표 2-33〉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 54
〈표 2-34〉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제도 시행 ····· 55
〈표 2-35〉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55
〈표 2-36〉 고령친화적 안전한 주거공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56
〈표 2-37〉 농어촌지역 고령자 가사도우미 지원 ····· 57
〈표 2-38〉 찾아가는 이동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현장중심 서비스 제공 ···· 57
〈표 2-39〉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 58
〈표 2-40〉 노인일자리 확충 ····· 58
〈표 2-41〉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 59
〈표 2-42〉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 60
〈표 2-43〉 외국인력의 활용 확대 ····· 61
〈표 2-44〉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대 ····· 61
〈표 2-45〉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본격추진 ····· 62
〈표 2-46〉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 62
〈표 2-47〉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63

〈표 2-48〉 역모기지 제도 도입 ····· 64
〈표 2-49〉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64
〈표 3- 1〉 소득수준별·연령별 보육·교육비 지원금액(2007) ····· 69
〈표 3- 2〉 지역별 보육료 지원율과 시설 이용율(2007) ····· 71
〈표 3- 3〉 지역별 보육료 지원 추이(2006, 2007) ····· 73
〈표 3- 4〉 지역별 차등 교육비 지원율과 시설이용율(2007) ····· 74
〈표 3- 5〉 지역별 교육비 지원 추이(2006, 2007) ····· 75
〈표 3- 6〉 지역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실적(2007) ····· 77
〈표 3- 7〉 방과후 학교 등 사교육비 경감 지원사업 실적(2006, 2007) · 79
〈표 3- 8〉 입양 활성화 사업 실적(2007) ····· 81
〈표 3- 9〉 설립형태별 보육시설 확충 현황(2006, 2007) ····· 83
〈표 3-10〉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2006, 2007) ····· 84
〈표 3-11〉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현황(2006, 2007) ····· 86
〈표 3-12〉 유치원종일제 실시 현황(2006, 2007) ····· 87
〈표 3-13〉 불임부부 지원 현황(2006, 2007) ····· 88
〈표 3-14〉 시·도별 산모도우미 지원 현황(2006, 2007) ····· 90
〈표 3-15〉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2004～2007) ····· 91
〈표 3-16〉 기업 규모별 성별 육아휴직 현황(2005～2007) ····· 92
〈표 3-17〉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비(2007) ····· 93
〈표 3-18〉 아동복지시설 현황(2006, 2007) ····· 94
〈표 3-19〉 아동학대 상담 및 현장조사 실적(2006, 2007) ····· 95
〈표 3-20〉 아동보호기관의 교육사업 실적(2006, 2007) ····· 96
〈표 3-21〉 부처별 방과후 프로그램 내용(2007) ····· 98
〈표 3-22〉 아동보호서비스별 시·군·구 참여 현황(2007) ····· 99
〈표 3-23〉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아카데미 현황(2007) ····· 101
〈표 3-24〉 학교폭력 발생 추이(2005～2007) ····· 102

〈표 3-25〉 유해환경 감시단 현황(2006, 2007) ····· 104
〈표 3-26〉 지자체별 주요 저출산 자체사업 추진 현황(2007) ····· 105
〈표 3-27〉 지자체별 출산장려금품 지원 현황(2007) ····· 106
〈표 3-28〉 보육료 추가 지원 자체 사업 현황(2007) ····· 107
〈표 3-29〉 시·도(교육)청 내 출산장려 사업(2007) ····· 108
〈표 3-30〉 경로연금 집행실적(2006, 2007) ····· 112
〈표 3-31〉 보건소 수 및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2006, 2007) ··· 116
〈표 3-32〉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2006, 2007) ···· 118
〈표 3-33〉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2006, 2007) ····· 119
〈표 3-34〉 허브보건소 지정운영과 노인건강대학 운영(2006, 2007) ···· 121
〈표 3-35〉 전국규모 노인건강축제 및 노인생활체육 대회 개최 지원 및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확대를 통한 노인운동 활성화(2006, 2007) ····· 122
〈표 3-36〉 노인수발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및 노인요양인프라 종합 투자계획 수립·시행(2006, 2007) ····· 124
〈표 3-37〉 치매 노인수 추계(1997～2020) ····· 124
〈표 3-38〉 연도별 치매환자 현황(2003～2007) ····· 125
〈표 3-39〉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2006, 2007) ····· 126
〈표 3-40〉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2006, 2007) ····· 127
〈표 3-41〉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 및 보호의 비용효과성 제고 및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원으로 전환시 시설 개·보수비 융자 지원(2007) ··· 128
〈표 3-42〉 공공체육시설 간이운동장 현황 및 체육인프라 활용도 제고(2007) ·· 131
〈표 3-43〉 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2007) ····· 133
〈표 3-44〉 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2006, 2007) ····· 135
〈표 3-45〉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2006, 2007) ····· 137
〈표 3-46〉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기반 확충(2007) ····· 140

〈표 3-47〉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권익 증진 강화방안 마련(2006, 2007) … 142
〈표 3-48〉 신효문화 정착 및 효행자 표창·홍보(2007) …… 144
〈표 3-49〉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2007) …… 146
〈표 3-50〉 여성 및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취업 지원(2007) …… 148
〈표 3-51〉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2007) … 150
〈표 3-5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2007) …… 153
〈표 3-53〉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2006, 2007) …… 154
〈표 3-54〉 고령친화산업 육성(2007) …… 155
〈표 3-55〉 저출산·고령사회대응 홍보·교육 사업 …… 157
〈표 3-56〉 생활체육 매체 홍보실적(2007) …… 162
〈표 3-57〉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실적(2007) …… 164
〈표 4- 1〉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국민인식 전화조사 분석대상자 수 … 166
〈표 4- 2〉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국민인식조사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 167
〈표 4- 3〉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생각 …… 170
〈표 4- 4〉 결혼 연령에 대한 인식 …… 172
〈표 4- 5〉 결혼 연령이 낮아져야 하는 이유 …… 173
〈표 4- 6〉 남자와 여자의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인식 …… 176
〈표 4- 7〉 만혼의 원인에 대한 견해(중복응답) …… 178
〈표 4- 8〉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대한 태도 비교 · · 181
〈표 4- 9〉 희망자녀수 또는 이상자녀수 비교 …… 184
〈표 4-10〉 기혼부인의 이상자녀수와 현존자녀수의 차이 …… 186
〈표 4-11〉 자녀를 두는 이유에 대한 견해 …… 187
〈표 4-12〉 저출산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 비교 …… 189
〈표 4-13〉 미혼부모에 대한 태도 …… 191
〈표 4-14〉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 192
〈표 4-15〉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193

〈표 4-16〉 저출산·고령화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195
〈표 4-1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 198
〈표 4-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인지경로(중복응답) ····· 200
〈표 4-19〉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적절 대응에 대한 태도 ····· 202
〈표 4-20〉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전반적 찬성도 ····· 203
〈표 4-21〉 사회적 분위기 개선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 205
〈표 4-22〉 미혼남녀의 결혼촉진을 위한 선결과제(중복응답) ····· 208
〈표 4-23〉 미혼남녀의 출산장려를 위한 중점시책(중복응답) ····· 210
〈표 4-24〉 기혼부인 특성별 저출산 주요 정책의 인지도(중복응답) ··· 215
〈표 4-25〉 기혼부인 특성별 저출산 주요 정책의 중요도 ····· 217
〈표 4-26〉 고령자의 주요 고령화대책에 대한 인지도 ····· 218
〈표 4-27〉 고령자의 고령화대책에 대한 수혜도 ····· 221
〈표 4-28〉 고령자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223
〈표 5- 1〉 시·도별 세입·세출액, 지방세 수입, 재정자립도(2006년 기준) ·· 240
〈표 5- 2〉 시·도별 인구규모 및 구조(2007) ····· 243
〈표 5- 3〉 시·도별 장래인구수 및 노인부양비 변화 추이 ····· 244
〈표 5- 4〉 시·도별 자연증가율 및 순이동자수(Net Migrants): 연평균 ···· 247
〈표 5- 5〉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 및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 249
〈표 5- 6〉 시·도별 15~64세 생산가능인구 및 중위연령 ····· 250
〈표 5- 7〉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초등학교 학령인구 ····· 252
〈표 5- 8〉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 253
〈표 5- 9〉 시·도별 산업별 취업자와 사업체·종사자수(신산업분류 기준, 2007) · 256
〈표 6- 1〉 시행계획과 실적보고서의 구성내용(예시) ····· 266
〈표 6- 2〉 목표의 체계적 순서(예시) ····· 271
〈표 6- 3〉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의 예시 ····· 275
〈표 6- 4〉 50세 이상 중고령자 및 고령자 인구수 및 비율 ····· 299

그림 목차

〔그림 2-1〕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 및 시행 체계 ····· 15
〔그림 3-1〕 방과후학교 이용률 추이(2004～2007) ····· 78
〔그림 3-2〕 육아지원시설 정원 및 시설 확충률 추이 ····· 82
〔그림 3-3〕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 93
〔그림 3-4〕 0～17세 인구 천명 당 지역별 아동학대 발생율(2006, 2007) ····· 97
〔그림 3-5〕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의 홍보·교육 사업 ····· 158
〔그림 3-6〕 국내 입양 증가율(2003～2007) ····· 161
〔그림 3-7〕 고령운전자를 위한 실버마크 ····· 164
〔그림 4-1〕 기혼부인의 주요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중요도 212
〔그림 4-2〕 고령자의 주요 고령화 정책의 인지도 ····· 219
〔그림 6-1〕 정책사업의 일반적인 계획 및 진행 과정 ····· 260

부표 목차

〈부표 4-1〉 미혼남녀의 결혼 연령에 대한 인식 ····· 311
〈부표 4-2〉 결혼연령이 낮아져야 하는 이유(미혼남녀) ····· 312
〈부표 4-3〉 미혼남녀의 만혼의 이유에 대한 견해(중복응답) ····· 313
〈부표 4-4〉 미혼남녀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생각 ····· 313

〈부표 4-5〉 미혼남녀의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인식 ····· 314
〈부표 4-6〉 미혼남녀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315
〈부표 4-7〉 미혼남녀의 희망자녀 수 ····· 315
〈부표 4-8〉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자녀를 두는 이유 ····· 316
〈부표 4-9〉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 이유 ····· 316
〈부표 4-10〉 미혼남녀의 미혼부모에 대한 태도 ····· 317
〈부표 4-11〉 미혼남녀의 결혼 후 가사분담에 대한 의향 ····· 317
〈부표 4-12〉 미혼남녀의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 318
〈부표 4-13〉 저출산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태도(미혼남녀) 319
〈부표 4-14〉 고령화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태도(미혼남녀) 320
〈부표 4-15〉 미혼남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321
〈부표 4-16〉 미혼남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인지경로(중복응답) ·· 321
〈부표 4-17〉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적절 대응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 ·· 322
〈부표 4-18〉 미혼남녀의 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찬성도 ····· 322
〈부표 4-19〉 미혼남녀의 정부 고령화 대책에 대한 찬성도 ····· 323
〈부표 4-20〉 미혼남녀가 느끼는 결혼·출산·양육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 정도 ····· 323
〈부표 4-21〉 기혼부인의 결혼연령에 대한 인식 ····· 324
〈부표 4-22〉 기혼부인의 결혼연령이 낮아져야 하는 이유 ····· 325
〈부표 4-23〉 기혼부인의 만혼의 이유에 대한 견해(중복응답) ····· 326
〈부표 4-24〉 기혼여자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생각 ····· 327
〈부표 4-25〉 기혼부인이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 328
〈부표 4-26〉 기혼부인의 '결혼한 부부는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대한 태도 ····· 329
〈부표 4-27〉 기혼부인의 이상자녀 수 ····· 330
〈부표 4-28〉 기혼부인이 생각하는 자녀를 두는 이유 ····· 331

〈부표 4-29〉 기혼부인의 저출산의 주요 이유에 대한 인식 ····· 332
〈부표 4-30〉 기혼부인의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미혼부모)'에 대한 견해 ····· 333
〈부표 4-31〉 기혼부인의 가사 및 육아 분담 ····· 333
〈부표 4-32〉 기혼부인의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334
〈부표 4-33〉 기혼부인의 저출산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 335
〈부표 4-34〉 기혼부인의 고령화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 336
〈부표 4-35〉 기혼부인의 특성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 337
〈부표 4-36〉 기혼부인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경로(중복응답) ·· 338
〈부표 4-37〉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기혼부인의 태도 ···· 338
〈부표 4-38〉 기혼부인의 고령화 대책에 대한 찬성도 ····· 339
〈부표 4-39〉 결혼·출산·양육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에 대한 기혼부인의 태도 ····· 339
〈부표 4-40〉 고령자의 만혼의 이유에 대한 견해(중복응답) ····· 340
〈부표 4-41〉 고령자의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대한 태도 ····· 341
〈부표 4-42〉 고령자가 생각하는 자녀를 두는 이유 ····· 342
〈부표 4-43〉 고령자의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343
〈부표 4-44〉 고령자의 저출산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 344
〈부표 4-45〉 고령자의 고령화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 345
〈부표 4-46〉 고령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 346
〈부표 4-47〉 고령자의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태도 ····· 347
〈부표 4-48〉 고령자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개선 정도 ····· 348
〈부표 4-49〉 고령자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도 ····· 349
〈부표 4-50〉 고령자의 역모기지에 대한 인지도 ····· 350
〈부표 4-51〉 고령자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 351

〈부표 4-52〉 고령자의 방문보건사업이나 노인운동사업에 대한 인지도 ···· 352
〈부표 4-53〉 고령자의 기초노령연금의 도움정도 ····· 353
〈부표 4-54〉 고령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움 정도 ····· 354
〈부표 4-55〉 고령자의 정부 노인여가생활 활성화의 도움 정도 ····· 355

〈Abstract〉

Policies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The rapid aging of the Korean population is regarded as a great threat to the country's socioeconomic realm as a whole. The government of Korea in this regard has embarked in August 2006 upon the 「First Basic Plan for an Aging Population(2006~2010)」, which comprises a total of 236 detailed measures. Every year new action plans are being established, implemented, and assessed in accord with the Basic Plan at both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The year 2008 marked the midpoint of the target period of the Basic Plan, a year in which to carry out a midterm review of progress made and identify and address areas for improvement.

This study places its focus on proposing efficient ways to push ahead with the first Basic Plan and its sequels, which taken as a whole will cover a span of at least thirty years. For this, this study discusses and analyzes the progress made and the public awareness with respect to the Basic Plan and its major components,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it is being proceeded and how best to implement i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st urgent task in taking prompt and successful policy responses is to revamp the administrative capability of the government agencies concerned. As part of that effort,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smalle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quipped with adequate units and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implementing policy delivery at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Local governments will also have to build up their capacities to implement policy responses that are socioeconomically workable.

Another important point this study is making is that because most of the responsibilities of caring for the elderly are shifted to the family is due largely to the malfunctioning of local communities, much has to be done to reinvigorate local communities. The importance of public relations must be more widely recognized, because policy responses to aging and low fertility are mid-to-long-term projects that require consistency, sustainability and, above all, public support.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행태는 계속되고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

-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을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조금씩 상승하여으나 2008년 상반기 이후 출생아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음.
- 2008년 노인인구비율이 10.3%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음.

- 각 중앙부처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관내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회에 걸친 추진실적보고와 평가가 이루어짐.

□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부처간 기능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중간평가와 기본계획 수정·보완 작업이 추진됨.

- 2008년 2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부처간 기능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동년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의 위원회로 조정되어 새로이 구성하였음.
-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그간 추진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및 새로운 국정철학에 맞는 신규과제 발굴 등 '새로마지플랜2010'을 수정·보

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음.

□ 2008년은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의 중간연도로서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여러 요인과 고려요소에 관한 전반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체계, 주요사업내용 변화, 사업추진실태, 국민인식, 정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토록 기술적 접근방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토대로 국내에서 시행된 각종 연구 문헌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 사업 실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 분석 및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함.

□ 국민인식 전화조사 실시

- 조사대상 및 방법
  -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 기본시책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2008.8.20~9.20)
  - 20~49세 미혼남녀(1,110명), 20~49세 기혼부인(1,053명), 50세 이상 중고령자(1,023명)를 대상으로 조사
  - 각 조사대상자는 해당 정책의 대상집단(Target population)을 중심으로 실시
- 조사내용
  -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인식 및 태도 등

□ 전문가 자문회의를 활용하여 과제의 내용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설문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함.

3.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르는 조직전달체계가 미완의 상태에 있으므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조속히 적정규모의 조직설치와 인력배치를 통하여 중앙에서 시·군·구에 이르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중앙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이 설치되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모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총괄 관장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개 시·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총괄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32개 시·군·구 중 24개 시·군·구만 총괄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총괄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이며, 시·도 단위에서는 과 규모, 시·군·구 단위에서는 계 규모의 수준이 요구됨.
  - 경험이 풍부한 필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순환보직주기의 연장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기획능력을 제고하는 등 전문성강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상당수 사업 재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개별 단위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보조율적용의 탄력성을 확보하여야 함.

-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시·도의 경우 지방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칭펀드 조성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에 있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시행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자체적 기획능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각 시·도, 시·군·구의 인구구조, 출산율,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비율,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정책수혜자의 차이와 특성이 있음.
- 지역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하나 현재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정책개발과 기획은 대부분 중앙에 의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써 사업관리의 정교함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업관리에 조력할 수 있는 기법 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됨.

- 자체 시행계획 수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계획과정과 목표설정, 성과지표 설정에 관해 기술하였음.
  - 계획은 제반현황 분석, 대상 선택과 분석, 목표설정, 전략수립, 실행계획, 평가, 환류의 과정을 거치며 이를 염두에 두고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또한 목표설정과정, 성과지표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 결혼, 자녀, 부양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만혼·비혼관, 소자녀관, 양성평등관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결혼, 자녀, 부양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는 가족공동체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과도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본인에의 영향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임.

- 기본계획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못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낮은 인지·인식도를 보이는 것은 낮은 정책체감도와 홍보부족에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 할 수 있으며, 대국민 홍보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됨.

□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둘러싼 대내외적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더 많은 정책적 고민이 요구됨.

- 경제위기의 대두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중고령자와 여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경제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출산율의 회복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됨.
  - 더불어 사회양극화 심화, 지역공동체 와해, 고령인구의 범죄 표적화, 배려문화의 후퇴 등 제요인으로 인해 정책수행에 애로가 증가할 우려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에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이촌향도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3차 산업 비중이 높아 산업공동화가 발생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 사업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고 정책체감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함.

- 그리고 재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효과성 검증을 통한 자원 재배분도 검토해야 하며, 복잡한 사업전달체계를 가능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함.
  - 홍보·교육 사업비가 거의 배정되지 않는 등 등한시되고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 출산, 고령사회 친화적 규범의 형성이 필수적이므로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함.

□ 지역특성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추진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중고령인구에 대한 대책 요망

- 출산, 부양의 모든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된 것은 지역공동체의 와

해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복원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20년 후 전체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 인구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노인인구 뿐만 아니라 중고령인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함.

4.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실적 등을 후기 사업수행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행태는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노인인구비율이 10.3%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즉, 압축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5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추진기구로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구성하였다. 2006년 8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을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과 관련된 23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중앙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관내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도록 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회에 걸친 추진실적보고와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08년 2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부처간 기능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동년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의 위원회로 조정되어 새로이 구성하였다. 또한 새정부 출범에 따라 그간 추진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및 새로운 국정철학에 맞는 신규과제 발굴 등 '새로마지플랜2010'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도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이 본격화되기는 하였지만,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기로서 사업추진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도는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의 중간연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업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영향을 미칠 제반사항들까지 동시에 점검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정교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체계, 주요사업내용 변화, 분야별 사업추진실태, 국민 인식도, 정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토록 기술적 접근방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주요 기본시책에 대한 국민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며,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환경의 종합적 진단과 사업수행관련 기술적 접근법 제시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후기 사업수행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정책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사업내용측면에서의 사업추진실태와 당면과제,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본계획시행시점인 2006년 8월부터 2008년까지 사업, 예산, 조직 등 사업추진체계상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된 부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주요내용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추진실태는 사업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도간, 연도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국민인식이 어떠한지 전화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미혼남녀, 기혼부인, 중고령자 각각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인식·인지도를 파악하고, 세 그룹간 공통적 특성과 이질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책추진환경과 사업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논의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각 지자체의 인구통계, 재정력, 산업 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추진실태 분석이 불가능하며, 향후 각 지자체가 사업추진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제6장 결론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문헌연구와 저출산·고령사회 관

련 주요 기본시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조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기존 조사자료의 재분석 및 우편조사, 그리고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문헌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토대로 국내에서 시행된 각종 연구 문헌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 실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 분석 및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 기본시책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는 20~49세 미혼남녀조사, 20~49세 기혼부인조사, 그리고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조사는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조사 대상자는 해당 정책의 대상집단(target population)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의 조사내용은 결혼 및 자녀가치관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인식도,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는 16개 시·도의 전화번호부 인명편에 기초하여 체계적 추출법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20~49세 연령층의 미혼남녀 1,110명과 기혼부인 1,053명, 50세 이상 중고령자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의식 전화조사의 결과 분석은 조사가 완료된 3,186건 가운데 결측값이 많은 11건(미혼남녀 10건, 중고령자 1건)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미혼남녀 조사의 경우 1,100건, 기혼부인 조사는 1,053건, 고령자 조사는 1,022건이 결과 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결과는 백분율 및 평균치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으로 서술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 12 for Windows를 활용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주요 추진실적은 2006년과 2007년에 수행된 실적에 대하여 사업추진 주체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 부문, 고령사회 부문, 성장동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관련 조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분석은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리실태조사 결과를 재분석하고, 지자체 관련 조직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16개 시·도 사업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출산·고령화정책 추진 환경분석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체계, 사업조직 및 관리, 예산 지원 등의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향후 사업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개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지역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의 일방적인 상의하달식의 정책추진이 아니라 지방분권 하에서의 독립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업시행초기에 해당하므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심의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점으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한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 세부사업 총수는 236개이며, 상당수 사업이 중앙과 지방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사업비가 조성된다. 그리고 세부사업은 사업특성에 따라 매년 사업수가 가감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다.

제1절 사업추진체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근간으로 하여 매 년도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하고 각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다음해 3월말까지 그해의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그림 2-1〕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 및 시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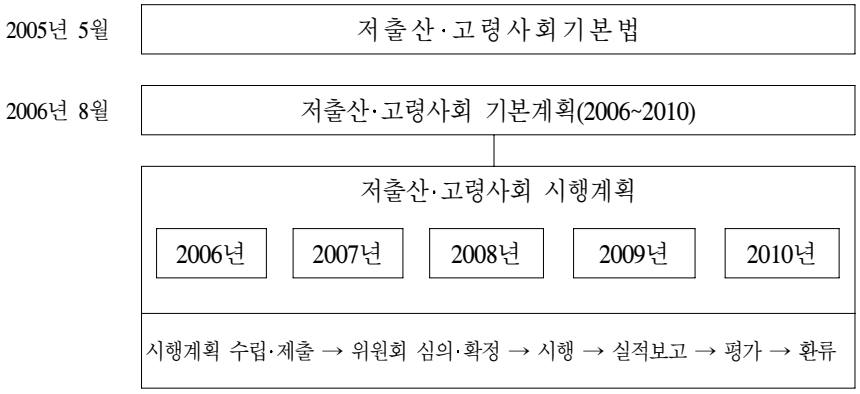

1. 조직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추진은 중앙단위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수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포함된 236개 세부과제를 관련 사업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가. 중앙정부

2008년 2월 29일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MB정부의 출범에 따라 중앙정부 조직을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개편하고 부처간 기능조정을 행하였으며, 동시에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 변화는 없으나, 위상은 변화되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직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원장이 대통령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당연직 위원은 12개 부처의 장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등 10인의 차관[1]으로 구

성되는 등 위원회의 위상이 상당폭 하락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은 중앙단위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18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수행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참여부처수가 12개로 조정되었다.

〈표 2-1〉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참여부처

부처	신규 조직	이전 조직
15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일부) + 과학기술부(일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부 + 해양수산부(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일부) + 국정홍보처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일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일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가족부분)
	여성부	여성가족부 명칭변경(가족부분 제외)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명칭변경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기존유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기존유지
2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기존유지

주: 기존 18개 정부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36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된 기관으로서 여기에는 경찰청,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까지 모두 포함하였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12개 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정부 하부단위조직의 대과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1본부 13과(팀) 체제에서 1국 10과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노인정책관, 가족정책관 등 2명의 정책관을 두고 국장 직속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인구정책과, 고령친화산업과 등 3개의 과를, 노인정책관 밑에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

1)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구성된다.

운영과 등 4개의 과를, 가족정책관 밑에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있다.

〈표 2-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조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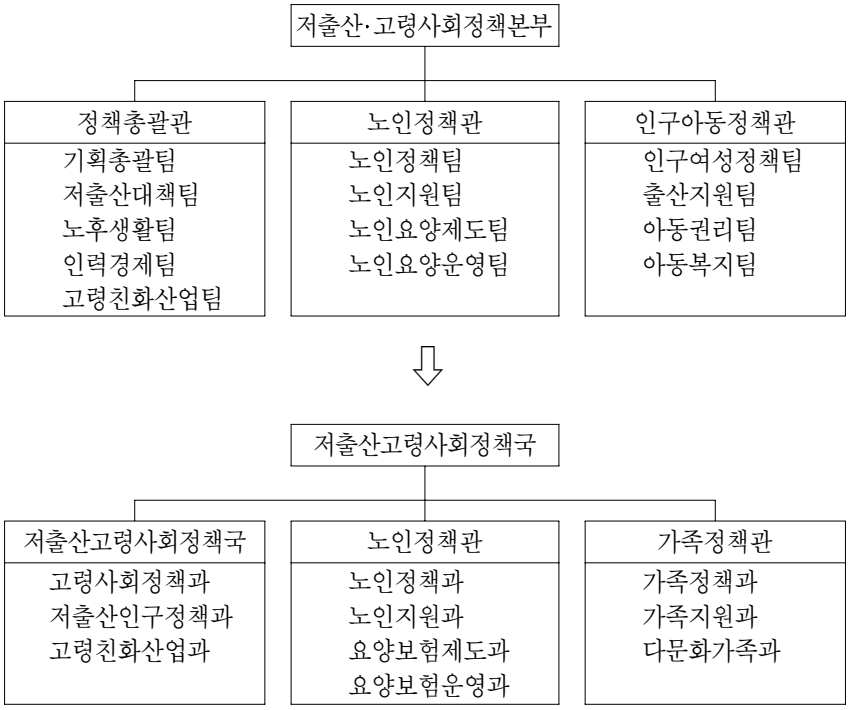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국장 직속의 고령사회정책과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관련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저출산인구정책과는 저출산관련 정책총괄 기능을, 고령친화산업과는 고령산업관련 정책총괄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외 노인정책관소속 과와 가족정책관소속 과는 각 분야 소관정책의 총괄과 실무 기능을 갖는다.

나. 광역자치단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조직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시·도가 총괄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함께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두고 있는 곳은 11개 시·도이고, 저출산대책 부서와 고령사회대책 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곳은 4개 시·도이며, 1개 시·도는 담당자 1명만 지정하고 있다(표 2-3 참조).

〈표 2-3〉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 설치 형태

(단위: 지역)

구분	전체	광역자치단체	
		특별·광역시	도지역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통합 총괄부서	11	4	7
저출산대책 부서와 고령사회대책 부서를 분리	4	3	1
담당자 지정	1	-	1
계	16	7	9

주: 1) 본 조사결과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8. 10월말 시·도 홈페이지와 담당자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이를 조직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과단위 수준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계 단위 수준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표 2-4 참조).

2007년과 비교하여 2008년에 조직규모의 변화가 있는 시·도를 보면, 부산광역시는 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를 고령화대책계에서 고령화대책과로 승격시켰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담당자만 지정하던 상태에서 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담당팀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 TF팀을 해체하고 총괄담당자만 지정하였다.

과 단위 규모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4개 시·도 중 대구광역시는 저출산고령사회과를 설치하고 정책총괄담당, 고령사회담당, 보육아동담당, 저출산대책담당 등 계단위의 4개팀을 두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두고 출산지원담당, 보육담당, 노인복지담당, 노인시설담당 등 4개팀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저출산대책부서와 고령사회대책부서로 나뉘어 있는데, 저출산대책부서는 과규모의 저출산대책담당관을 두고 계단위 규모로 정책총괄팀, 가족정책침, 민간협력사업팀 등 3개팀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고령사회대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과의 노인정책팀을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계단위의 저출산대책부서로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저출산대책담당을 설치하고 있으며, 고령사회대책부서로는 고령화대책과를 설치하고 고령화대책, 노인지원, 노인시설, 실버산업 등 4개의 계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계 단위에서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9개 광역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팀을 두고 있다. 계단위 수준에서 저출산대책부서와 고령사회대책부서를 나눠 운영하는 시·도는 2개 지역인데, 경상북도는 보건정책과의 저출산대책팀이 저출산정책을 관리하고, 고령사회대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과에 고령사회대책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보건정책과에 저출산대책담당을 두고, 노인청소년과에 노인복지담당을 두어, 각각 운영하고 있다.

총괄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1개 시·도로서 충청남도인데, 충청남도의 경우 별도의 총괄부서를 두지 않고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담당내에 총괄담당자 1인만을 지정하고 있다.

〈표 2-4〉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 현황

단위	시·도	국	과	계(팀)
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정책총괄팀
				가족정책팀
				민간협력사업팀
		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실	저출산대책담당
		복지건강국	고령화대책과	고령화대책
				노인지원
				노인시설
				실버산업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사회과	정책총괄담당
				고령사회담당
				보육아동담당
				저출산대책담당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출산지원담당
				보육담당
				노인복지담당
				노인시설담당
계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	저출산대책담당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담당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저출산고령화대책담당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저출산고령화
	경기도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담당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저출산고령화담당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정책과	저출산고령화담당
	전라남도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저출산고령화정책담당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정책과	저출산대책
			노인복지과	담당자(고령사회대책)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저출산고령화담당
담당자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담당 (담당자)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2008. 10. 31. 기준)

다. 기초자치단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관내 시·군·구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 설치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총괄부서를 설치한 시·군·구와 기존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 시·군·구가 각각 24개(10.3%)이고, 총괄부서 설치나 지정 없이 총괄담당자만 지정한 경우가 184개(79.3%)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는 각각 10개, 26개, 44개로 조사되었던 것에 비하면, 총괄부서를 새로 설치한 시·군·구는 14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총괄담당자만 지정하는 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표 2-5 참조).

총괄부서를 설치한 24개 시·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치형태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통합 총괄부서를 설치한 곳은 2개에 불과한 반면,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만 설치한 경우가 20개(8.6%)로 나타났다.

기존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통합하여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대책부서를 분리하여 지정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총괄담당자만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8개, 68.1%).

〈표 2-5〉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담당자 현황

(단위: 지자체, %)

설치 또는 지정 형태	2007년	2008년	구성비
총괄부서 설치	10	24	10.3
-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통합 총괄부서 설치		2	0.9
-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대책부서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		0	0.0
- 저출산대책 총괄부서 설치, 고령사회대책 담당자 지정	8	20	8.6
- 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 설치, 저출산대책 담당자 지정	2	2	0.9
기존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	26	24	10.3
-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통합 지정	17	24	10.3
-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대책부서를 각각 분리하여 지정	7	0	0.0
-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만 지정	2	0	0.0
- 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만 지정	0	0	0.0
총괄담당자만 지정	44	184	79.3
-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통합 담당자만 지정	32	158	68.1
-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대책 담당자를 각각 분리하여 지정	6	24	10.3
- 저출산대책 총괄 담당자만 지정	4	1	0.4
- 고령사회대책 총괄 담당자만 지정	2	1	0.4
계	80	232	100.0

자료: 16개 시·도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E-mail과 유선전화를 통하여 조사 확인한 자료임.

2. 추진 사업영역 및 세부사업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등의 4개 대범위 영역과 13개의 중범위 영역, 27개의 소범위 영역, 75개의 세부영역, 그리고 2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6 참조).

〈표 2-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역별 과제수

(단위: 건)

대범위영역	중범위영역	소범위영역	세부영역	세부사업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3	12	4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2	7	19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	8	25
	소계(3)	7	27	86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3	8	26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3	9	3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	8	26
	소계(3)	9	25	85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3	11	31
	인력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	5	15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	-	8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3	3	11
	소계(4)	11	19	65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전략적 교육·홍보	-	-	-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	-
	정책효과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3	-
	소계(3)	-	3	-
전체	13개 영역	27	74	236

계획된 개별 과제는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가감이 이루어진다.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일부사업은 단기에 완료 또는 종결되어 삭제되고, 일부는 국회심의과정,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예산이 미반영되어 유사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거나 차년도로 추진이 연기된다. 2007년도의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스타트, 아동복지교사, 독거노인도우미,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이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추가되었으며, 입양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아동학대 예방홍보, 학교건강관리기능 강화, 방문구강보건서비스,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 등 일부사업은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유사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거나 연기되어졌다. 2008년도의 경우에는 산업체 퇴직 연구인력 고용지원, 기초노령연금 본격시행, 노인장기요양보

험, 지방국립대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등 13개 과제가 2007년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추가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개선 등 완료과제, 경로연금 등 종결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총 과제수는 225개로 다소 감소되었다.

〈표 2-7〉 연도별 세부추진 과제수(2006~2008)

(단위: 건)

분야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추가)
저출산 부문	72	86	85	(4)
고령사회 부문	75	77	72	(5)
성장동력 부문	57	59	63	(9)
교육홍보 부문	3	5	5	-
계	207	227	225	(1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36개 세부사업 추진 현황을 2007년 시행계획과 정부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2], 중앙정부에서는 2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148개 사업[3]이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237개 세부사업 중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27개 사업은 <표 2-8>에 제시되어 있는데, 미시행 이유를 다섯 가지 정도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기본계획은 2006~2010년에 해당하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상 2007년이 사업년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간 형평성 제고(08년 이후)', '재가서비스 활성화방안 도출을 위한 고령친화용품 대여사업 검토(2006년)', '주택개조비용 지원계획 수립(2009년 이후)', '노인 보건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2) 기본계획이 2006년 8월에 확정·시행되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는 2007년을 중심으로 하였다. 2006년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각 부문별 추진실적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237개 세부과제가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148개 사업이라 함은 16개 시·도 중 한 곳이라도 사업실적 및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을 집계한 수치이다.

여건 마련(2006년)',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2008년 이후)',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국채상품의 개발(2006년)', '세계적 수준의 Star Company 육성(2008년 이후)' 사업 등 7개 사업이 해당된다.

둘째, 유사 사업에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어 실제로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계되지 않은 경우이다.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세부영역명)을 위한 세부과제인 '재정계산 실시'는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에 포함되어 있고,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세부영역명)의 세부과제인 '고령친화적 주택설계지침 마련'은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지자체에서는 시행계획 및 평가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앙부처의 시행계획 및 평가서에는 누락된 사업이다. 대부분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지자체의 자체사업이 아닌 이상 중앙부처와 대응투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과 같이 실제 시행되고 있으나 누락되었거나 유사 사업에 통합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밖에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평가에 누락되었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한 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8〉 2007년 시행계획 또는 자체평가에서 누락된 세부사업

세부영역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시행계획	자체평가	유형[1]
1-1-1-5-4	입양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	X	③,⑤
1-1-2-3-3	문화시설 내 육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	③
1-2-2-2-2	아동·청소년대상 지역사회 교육 강화	청소년위원회	X	X	-
1-3-1-1-2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안전수준 제고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	-	③
1-3-1-2-2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효율성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	-	③
1-3-1-2-3	아동학대 예방홍보	보건복지가족부	-	-	③
1-3-2-1-3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가족부	-	-	③

〈표 2-8〉 계속

세부영역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시행계획	자체평가	유형[1]
2-1-1-2-1	(특수직역연금) 재정계산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	X	②
2-1-1-2-4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간 형평성 제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X	X	①
2-1-1-3-1	가입기간 연계방안 확정 및 법제정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	X	②
2-1-1-3-2	(국민연금과 특수직역금 가입기간 연계) 법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X	X	②
2-1-2-2-5	4대보험 부과기준·징수방법 일원화	국무조정실	-	X	④
2-1-3-2-2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획재정부	X	X	-
2-2-2-3-3	치매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비전 수립	보건복지가족부	-	-	③
2-2-2-4-1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유도	보건복지가족부	-	-	③
2-2-2-4-3	재가서비스 활성화방안 도출을 위한 고령친화용품 대여사업 검토	보건복지가족부	X	X	①
2-3-1-1-2	고령친화적 주택설계지침 마련	국토해양부	X	X	②
2-3-1-1-6	주택개조비용 지원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X	X	①
2-3-2-1-1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	-	③
2-3-2-1-2	이동편의시설 매뉴얼 제작·보급	국토해양부	-	-	③
2-3-3-3-3	노인 보건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여건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	-	①,③
2-3-3-4-4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공급 우대방안 확대	국토해양부	X	X	-
3-1-1-1-2	과학기술 분야 여성진출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	-	③
3-1-2-2-2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노동부	X	X	①
3-1-3-1-1	외국적동포 지원방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	-	
3-3-3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국채상품의 개발	기획재정부	X	X	①
3-4-2	세계적 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지식경제부	-	-	①,③

주: 1) ① 2007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② 다른 사업과 통합되어 시행되는 사업, ③ 지자체에서만 시행계획 및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 ④ 정부조직개편으로 업무 소재가 불분명해진 사업, ⑤예산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한 사업

2007년 추진된 230개의 세부사업[4] 중 지자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89개 사업(38.7%)로 제도 도입 및 개선, 법 제·개정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구성된다(표 2-9 참조). 또한 성장동력 분야의 인력관련 사업은 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에 비해 중앙정부 역할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2-9〉 중앙부처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사업(2007)

관리번호	사업명	관리번호	사업명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1-1-1-3-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2-1-1-4-3	소득활동 인센티브 부여
1-1-1-3-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2-1-2-2-1	소득인프라 확충을 통한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1-1-1-6-1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2-1-2-2-2	자발적인 보험료 납부 유도
1-1-3-1-1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2-1-2-2-3	5인미만 사업장가입자 확대
1-1-3-1-3	여성 생식보건증진 프로그램 지원	2-1-2-2-4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 관리 강화
1-2-1-1-1	'06부터 중소기업 등 지원 확대	2-1-3-1-1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1-2-1-1-2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2-1-3-12	퇴직연금 세제 보완
1-2-1-1-3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2-1-3-1-3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1-2-1-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2-1-3-1-4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도입
1-2-1-3-1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신설	2-1-3-1-5	1년미만 근속자 퇴직급여제도 도입
1-2-1-3-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 계속교용지원금 신설	2-1-3-1-6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2-1-3-1-7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도입
1-2-1-3-4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2-1-3-2-1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1-2-1-4-2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2-2-1-2-1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2-1-4-3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2-2-1-2-2	노인질병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 개발
1-2-2-1-1	저출산·고령사회관련 교육과정 강화	2-2-2-1-1	노인수발보험법령 제정 추진
1-3-1-1-4	아동안전관련 통계기반 구축	2-2-2-1-2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 모형 개발
고령사회 분야		2-2-2-2-2	질높은 서비스 인력 인프라 구축
2-1-1-1-1	국민연금 제도 개혁	2-2-3-2-2	직장운동사업 활성화 지원
2-1-1-1-2	2차 재정계산 실시	2-3-1-1-3	주택개조기준 매뉴얼제작 보급
2-1-1-2-2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2-3-1-1-5	주거지원법령(가칭) 제정
2-1-1-2-3	책임준비금 검토	2-3-2-2-1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내실화
2-1-1-4-1	연기연금제도 도입		
2-1-1-4-2	조기 연금수급 감액률 조정	2-3-2-2-2	실버마크제도 도입 및 캠페인 전개·홍보

4)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2007년이 사업년도에 해당하지 않는 7개 세부사업을 제외하였다.

〈표 2-9〉 계속

관리번호	사업명	관리번호	사업명
성장동력 분야		성장동력 분야	
3-1-1-1-1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실시	3-2-1-3-2	직업훈련 인프라 혁신
3-1-1-2-3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3-2-1-3-3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3-1-1-2-4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	3-2-2-1-1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3-1-2-1-1	점진적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3-2-2-1-2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3-1-2-1-2	고령자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3-2-2-1-3	작업환경측정제도 내실화 및 유해물질 관리의 체계화
3-1-2-1-3	정년제도 개선	3-2-2-1-4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3-1-2-2-1	임금피크제 지원	3-2-2-1-5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3-1-2-3-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3-2-2-2-1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3-1-2-3-2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3-2-2-2-2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3-1-2-3-3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3-2-2-2-3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상담 강화
3-1-2-4-1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강화	3-1-1	'07년 중저가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 제도 도입
3-1-2-4-2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3-3-2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촉진
2-1-2-5-1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3-3-2	펀드운용과 영업의 자율성 확대
3-1-2-5-2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3-3-2	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 추진
3-1-2-5-3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교육 실시	3-3-2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3-1-3-1-2	외국적동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절차 개선	3-3-2	신탁제도의 활성화 추진
3-1-3-1-3	외국적동포의 체류 지원	3-3-3	초장기채 발행
3-1-3-2-2	사증 발급 개선 및 체류 편의 제공	3-4-1-1-1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시행
3-1-3-3-1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에 따른 제도적 정비 추진	3-4-1-2-1	우수제품 품질표시 및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 도입
3-1-3-3-2	불법체류자 단속 및 권익증진 강화	3-4-2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3-2-1-1-2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확대	3-4-2	고령자·장애인 복지 표준화 종합계획 수립
3-2-1-2-2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3-4-2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3. 사업비(재정)

가. 총사업비 변화추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기간(2006~2010) 동안 소요되는 재정투자액은 당초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약 32.1조 원 규모로 추계되었으며, 계획기간 중 재정투자는 연평균 29.5%씩 증가한다. 매년 투자되는 재정규모는 예산편성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지만, 2006~2008년 3개 년간

투자되고 있는 재정투자 현황을 보면, 당초 추계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투자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당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6~2010년 동안 각각 3.8조, 5.7조, 7.1조, 7.3조, 8.2조 원이 투자될 계획이었다. 그런데 2006~2008년까지 이미 투자되었거나 계획된 재정은 각각 5.7조, 7.6조, 10.7조 원으로 총 24조 원에 달하고 있어 당초 계획된 16.6조 원보다 7.4조 원(44.6%)이 증액되었다. 이는 수혜자 확대와 더불어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대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신규제도 시행에 기인한다.

지방비 투자액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상으로는 2006~2010년 동안 각각 1.4조, 2.3조, 3.0조, 3.0조, 3.3조원 등 13조 원이 계획되었으며, 2006~2008년 3개년동안 투자된 지방비는 각각 1.1조, 1.1조, 1.8 조원 등 4조원 규모이다. 3개년동안 계획된 지방비가 6.7조원임에 비해 실제 투자된 지방비는 4조원으로서 계획대비 59.7%만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방비 투입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비를 제외한 중앙부처 재정투자현황(2006~2008년)을 살펴보면, 총 재정투자규모가 4.6조, 5.9조, 8.9조원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과 대비하여 각각 30.5%, 50.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과 대비하여 각 부문별로는 살펴보면, 저출산대책부 문이 42.9%, 2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고령사회대책 부문이 22.8%, 127.5%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성장동력확보 부문은 15.4%, 6.9%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홍보부문은 매년 0%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표 2-10 참조).

2006~2008년 3개년동안 각 부문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저출산대책 부문은 각각 47.0%, 51.5%, 43.7%의 구성비로서 2008년도에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타 부문에 비해 가장 구성비가 높다. 고령사회대책부문은 각각 28.9%, 27.2%, 41.1%로서 2008년에 구성비가 급격히 올라간 현상을 보이

는데 구성비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사업이다. 성장동력확보 부문은 각각 24.1%, 21.3%, 15.1%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투자 증가폭이 작아 구성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2-10〉 중앙부처 재정투자 현황(2006~2008)

(단위: 억원, %)

구분	사 업 명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저출산 대책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14,191	31.1	18,738	31.5	21,746	24.3
	방과후 학교 내실화	453	1.0	2,163	3.6	3,567	4.0
	지역아동·청소년 보호	402	0.9	1,030	1.7	1,458	1.6
	산전후 휴가지원 등 기타	6,399	14.0	8,720	14.7	12,305	13.8
	소계	21,445	47.0	30,651	51.5	39,076	43.7
	(증가율)	(-)		(42.9)		(27.5)	
고령 사회 대책	경로연금	3,142	6.9	3,174	5.3	-	
	기초노령연금	-		-		22,134	24.8
	노인장기요양보험	-		136		1,514	1.7
	노인일자리 창출	1,106	2.4	1,622	2.7	1,779	2.0
	농어촌 노인복지 및 사회참여 등	8,918	19.6	11,371	18.9	11,519	12.7
	소계	13,166	28.9	16,167	27.2	36,784	41.1
	(증가율)	(-)		(22.8)		(127.5)	
성장 동력 확보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7,530	16.5	8,386	14.1	8,867	9.9
	직업재활훈련 등 노동력 손실방지	1,468	3.2	1,547	2.6	1,678	1.9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등 기타	1,975	4.3	2,732	4.6	2,993	3.3
	소계	10,973	24.1	12,665	21.3	13,538	15.1
	(증가율)	(-)		(15.4)		(6.9)	
교육 홍보	사회적 분위기 조성	9	0.0	30	0.0	28	0.0
	전체	45,593	100.0	59,513	100.0	89,426	100.0
	(증가율)	(-)		(30.5)		(50.3)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각 년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2008년을 기준으로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사업은 기초노령연금사업으로서 22,134억(24.8%)이 투자되고 있다. 그 다음 순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사업 21,746억(24.3%), 산전후 휴가지원등 기타 12,305(13.8%), 농어촌 노인복지 및 사회참여 등 11,519억(12.7%),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8,867억(9.9%)이다. 재정투자가 낮은 순으로는 지역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1,458억(1.6%),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1,514억(1.7%), 직업재활훈련 등 노동력 손실방지사업 1,678억(1.9%) 등이다. 비예산 사업과 극소 재정 투입 사업 등 다양한 단위사업들이 각 사업군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군간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업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재정규모를 가진 사업들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의 적절한 안배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나. 매칭 펀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상당수 단위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매칭펀드로 운영되고 있다. 매칭펀드는 정부가 특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가운데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가 지방비로써 예산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고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사업을 말한다. 매칭펀드 사업 대다수가 노인, 장애인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등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국민복지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도 필연적으로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급부금으로 정의된다. 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과 기준보조율은 <표 2-11>과 같으며, 이들 사업은 국가시책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보조금예산 계상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1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명	기준 보조율(%)
85. 생활체육교실운영	30
91. 선천성대사이상검사	40
9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50, 지방: 80
9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50, 지방: 80
9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102. 저소득장애인 보장구·의료비·자녀학비 지원	서울: 50, 지방: 80
103.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서울: 50, 지방: 70
104. 영·유아 보육사업지원	서울: 20, 지방: 50
105. 경로연금	서울: 50, 지방: 70
110.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50 (용지매입비 제외)
113. 영·유아 보육시설 및 장비 지원	50
115. 고용촉진훈련	80
117. 농어민직업훈련지원	10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보조

주: 기준보조율은 국고보조비율(국고지원기준)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중 발췌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며,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20%, 15%, 10%를 각각 가산 또는 감산하여 적용한다.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조율이 가산되며, 재정사정이 양호한 경우에는 차감한다.

그러나 <표 2-12>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관련사업 추진에 있어 활력을 잃을 수 있다.

〈표 2-12〉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영 제4조제1항 단서관련)

사업명	사업명
4. 사이버가정학습	56. 공공보건사업
5.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57.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58. 지역봉사사업
14.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16.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60.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18. 지역정보화 지원	81. 경로당 운영
24. 장애인편의시설설치	82. 경로당활성화 지원
31. 문화학교 운영	83. 경로식당무료급식
32. 지방문화원사업활동 지원	84.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85. 노인건강진단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42. 청소년문화의 집	87. 노인일거리마련사업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45.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89.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46. 농가도우미 지원	90. 노인시설 운영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48. 농촌PC보내기 사업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자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중 발췌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국가의 핵심적 시책사업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에 의해 수행되는 관계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122번 항목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이 많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의 수행근거·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보조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게 된다. 매칭펀드로 조성되는 사업들은 보조율의 가감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국가시책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인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예산 계상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사업 중 매칭펀드로 운영되는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간 매칭펀드 비율은 <표 2-13>과 같다. 국비 50% 지원이 보편적인데, 국비가 70%이상 지원되는 사업은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경로연금 지급, 노인돌보미 지원, 전원마을 조성 등 5개 사업이다.

〈표 2-13〉 저출산·고령사회대책사업 국비와 지방비간 매칭펀드 비율

사업명	2007년 확정예산(억원)				매칭펀드 비율(%)
	총예산	(국비)	(지방비)	(기금등)	국비:지방비
차등보육료 지원	9,707	4,418	5,290	-	50 : 50 (서울 80)
만3,4세아 차등교육비	1,227	614	613	-	50 : 50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563	1,177	1,387	-	50 : 50 (서울 80)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2,067	1,037	1,030	-	50 : 50
두자녀 보육료 지원	1,028	478	550	-	50 : 50 (서울 80)
두자녀교육비지원	119	62	57	-	50 : 5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24	237	287	-	50 : 50 (서울 80)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74	37	37	-	50 : 50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66	283	283	-	50 : 50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450	225	225	-	50 : 50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844	298	546	-	30 : 70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824	270	554	-	30 : 70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125	42	83	-	30 : 70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31	15	16	-	70 : 30 (서울 60)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179	81	98	-	70 : 30 (서울 60)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502	251	251	-	50 : 50
영유아 기본보조금	3,914	1,741	2,173	-	50 : 50 (서울 80)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309	131	178	-	50 : 50 (서울 80)

〈표 2-13〉 계속

사업명	2007년 확정예산(억원)				매칭펀드 비율(%)
	총예산	(국비)	(지방비)	(기금등)	국비:지방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144	-	86	58	기금 40 : 지방 6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08	-	65	43	기금 40 : 지방 60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40	-	20	20	기금 50 : 지방 50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 지원	281	127	154	-	50 : 50 (서울 70)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220	166	54	-	80 : 20 (서울 5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35	206	229	-	50 : 50 (서울 80)
아동복지교사 지원	224	160	64	-	70 : 30 (서울 70)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실시	64	43	21	-	70 : 30 (서울 60)
방과후 아카데마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271	18	134	120	기금 50 : 지방 50
경로연금 지급	3,174	2,175	999		70 : 30 (서울 50)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48	-	32	16	65 : 35
노인의치보철사업	140	-	70	70	기금 50 : 지방 50
노인전담생활체육 지도자 양성배치	67	-	37	30	50 : 50
노인요양시설 확충	3,148	1,618	1,530	-	50 : 50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374	262	112	-	70 : 30
공립치매병원 확충	330	-	165	165	50 : 50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지원	3,308	1,135	1,135	1,038	기금 50 : 지방 50
스포츠클럽 지원	44	-	16	28	기금 50 : 지방 50
저상버스 도입보조	304	152	152	-	50 : 50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1,622	763	859	-	50 : 50 (서울 70)
독거노인 도우미	332	236	96	-	70 : 30 (서울 50)
전원마을 조성	288	231	57	-	80 : 20
농촌전통테마마을	65	33	32	-	50 : 50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160	80	80	-	50 : 50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권익 증진 강화방안 마련	35	20	15	-	50 : 50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구축	72	30	42	-	60 : 40

주: 1) 매칭펀드 비율은 국비(또는 기금)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임.
2) 괄호( )안 서울의 지방비 분담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은 타 시·도보다 재정사정이 양호한 상황에 해당되어 보조율이 차감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동법

제13조, 제22조, 제34조 참조).

또한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 내용 또는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결정의 내용에 위반한 때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국고로 환수된다(동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 참조).

보조금은 매칭펀드로 조성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현행 매칭펀드 사업은 지역별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위사업에 따라 일률적인 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매칭펀드 사업의 증가가 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우수사례를 파급해도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못해 파급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지자체의 자체사업 개발 노력이 행해지고 있기는 하나, 보조사업은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매칭펀드사업에 밀리는 등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로 인해 자체사업개발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좀 더 세분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차등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절 주요사업내용 변화추이(2006~2008년)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된다. 제1단계 기간(2006~2010년)의 정책목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236개의 세부사업을 담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시행하였고, 이후 3개년동안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었다.

236개의 세부사업은 매년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의 가감이나 내용변화를 수반하기도 한다. 기반구축은 점진적 수혜 확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수혜층이 두터운 사업일수록 연도별 내용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파악하여야 할 내용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매년도 수립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2006~2008년 3개년동안 사업내용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1. 저출산부문

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

1) 만0～4세 보육료 지원 확대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만0～4세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에서 100%이하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에도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수준은 표준보육료의 30%수준이다. 이 경우 만0～4세아 정부지원대상 아동비율이 2006년 50%에서 2009년 80%까지 끌어올려진다.

보육료는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되는데, 법정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되고, 기타 계층은 20~70%수준에서 30~80%수준으로 지원수준이 상향조정되었다.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경우 70% 지원에서 80% 지원으로, 70%이하 가구의 경우 40% 지원에서 60%수준까지 조정되었으

며,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20%를 지원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30%지원으로 지원폭을 확대했다.

지원단가도 보육료 상승을 감안하여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만0세는 350천원에서 372천원, 만1세는 308천원에서 327천원, 만2세는 254천원에서 270천원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만3~4세의 경우 158천원으로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던 것을 만3세 185천원, 만4세 167천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2-14〉 만0~4세 보육료 지원 확대

2006년	2007년	2008년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에 보육료 지원 •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법정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 만0세: 350천원 만1세: 308천원 만2세: 254천원 만3~4세: 158천원 - 기타계층은 20~70% 지원 *평균소득 50%이하 가구 70% 지원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40%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보육료 지원 •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만0세: 361천원 만1세: 317천원 만2세: 262천원 만3세: 180천원 만4세: 162천원 - 기타계층은 20~80% 수준 지원 *평균소득 50%이하 가구 80% 지원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50% 지원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20%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보육료 지원 •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만0세: 372천원 만1세: 327천원 만2세: 270천원 만3세: 185천원 만4세: 167천원 - 기타계층은 30~80% 수준 지원 *평균소득 50%이하 가구 80% 지원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60% 지원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30% 지원

2)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확대

만3·4세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확대되었다. 지원대상과 수준은 보육

료 지원의 경우와 동일하고, 지원액은 만3세아에 대하여 153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만3세아 185천원, 만4세아 167천원으로 보육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교육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2009부터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에 대하여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수준은 표준교육비의 30%수준이다.

〈표 2-15〉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확대

2006년	2007년	2008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 가구에 교육비 지원 •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전액 만3세: 153천원 - 기타계층은 20~80% 수준지원 *평균소득 50%이하 가구 70% 지원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40%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에 교육비 지원 •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만3세: 180천원 만4세: 162천원 - 기타계층은 20~80% 수준지원 *평균소득 50%이하 가구 80% 지원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50% 지원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20%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에 교육비 지원 •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만3세: 185천원 만4세: 167천원 - 기타계층은 30~80% 수준 지원 *평균소득 50%이하 가구 80% 지원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60% 지원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30% 지원

3)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도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이하 가구에서 100%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보육·교육비 지원액도 월158천원에서 월167천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의 경우에도 2009부터 지원대상을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만0~4세아 정부지원대상 아동비율이 2006년 60%에서 2009년 80%까지 끌어올려진다.

〈표 2-16〉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2006년	2007년	2008년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90%이하 가구에 보육·교육비 지원 - 보육료: 월 158천원 교육비: 월 158천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에 보육·교육비 지원 - 보육료: 월 162천원 교육비: 월 162천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에 보육·교육비 지원 - 보육료: 월 167천원 교육비: 월 167천원

4)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확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단가가 확대되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시 만5세 이하 아동중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0세아는 105천원에서 186천원으로, 만1세아는 92천원에서 163천원으로, 만2세아는 76천원에서 135천원으로, 만3~5세아는 47천원에서 만3세아 92천원, 만4~5세아 83천원으로 조정하였다.

〈표 2-17〉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2006년	2007년	2008년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시 만5세 이하 아동중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30% 지원 - 만0세: 105천원 만1세: 92천원 만2세: 76천원 만3～5세:47천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시 만5세 이하 아동중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50% 지원 - 만0세: 181천원 만1세: 159천원 만2세: 131천원 만3세:90천원 만4～5세:81천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시 만5세 이하 아동중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50% 지원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3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92천원 만4～5세:83천원

5)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다.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자녀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이하 장애아에 대하여 보육료·교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보육료의 경우 월350천원에서 월372천원으로 조정되었고, 교육비 역시 월311천원에서 월372천원으로 조정되었다. 수혜자수는 보육료 15천명, 교육비 2천명 수준에서 보육료 17천명, 교육비 2.5천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2-18〉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2006년	2007년	2008년
• 부모의 소득수준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만12세 취학전 장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 보육료: 월350천원 교육비: 월311천원	• 부모의 소득수준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만12세 취학전 장애아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 보육료: 월361천원 교육비: 월361천원	• 부모의 소득수준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만12세 취학전 장애아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 보육료: 월372천원 교육비: 월372천원

6)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의 5세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 이용할 경우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5세아의 경우 당초부터 보육료·교육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0~4세아는 50%에서 70%로 확대하였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인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다.

〈표 2-19〉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2006년	2007년	2008년
• 농어촌 거주 농업인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0～4세: 보육료·교육비의 50% 만5세: 100% 지원 •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인	• 농어촌 거주 농업인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0～4세: 보육료·교육비의 70% 만5세: 100% 지원 •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인	• 농어촌 거주 농업인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0～4세: 보육료·교육비의 70% 만5세: 100% 지원 •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인

7)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의 일손돕기 지원을 목적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0~4세아는 보육료·교육비의 25%에서 35%로 확대하였고, 만5세아는 지원수준의 변동없이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인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다.

〈표 2-20〉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확대

2006년	2007년	2008년
• 농어촌 거주 농업인등의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0~4세: 보육료·교육비의 25%, 만5세: 50% 지원 •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 농어촌 거주 농업인등의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0~4세: 보육료·교육비의 35%, 만5세: 50% 지원 •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 농어촌 거주 농업인등의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0~4세: 보육료·교육비의 35%, 만5세: 50% 지원 •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8)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주거·세제·국민연금 개편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주거·세제·국민연금 개편안의 하나로서 다자녀가구에 주택분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분양주택의 3% 이내에서 무주택가구자에게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의 20%이내에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던 것을 자녀수 등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제를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시 기존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변경 시행하였다. 기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 100만원, 2인 50만원으로서 자녀가 적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커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를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도록 개편하였고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2007년 7월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수에 따라 2자녀 12개월, 3자녀이상 매자녀마다 18개월을 추가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가입기간 추가인정하도록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였다.

〈표 2-21〉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주거·세제·국민연금 개편

2006년	2007년	2008년
• 다자녀가구 주택분양 인센티브 부여 - 무주택가구 특별공급 (3%이내) -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20%이내)	•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가점제 - 자녀수 등 항목별로 가중치부여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 기본공제대상자 1인: 100만원 2인: 5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시행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50만원, 3명이상: 추가 1명당 100만원 추가	–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07.7. 국민연금법 개정) - 자녀수에 따라 2자녀 12개월, 3자녀이상 매자녀마다 18개월 추가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가입기간 추가인정	

9) 방과후 학교 내실화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하여 3가지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을 19개 군에서 140개 시·군으로 지원폭을 확대하였고,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바우처(무료수강권) 지원대상자를 10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확대하였으며 1인당 연간 30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방과후·방학중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있어서도 400개교에서 3,000개교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표 2-22〉 방과후 학교 내실화

2006년	2007년	2008년
•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19개군)	•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89개 시·군)	•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농산어촌지역 전체 140개 시·군)
•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바우처(무료수강권) 지원 (10만명)	•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바우처 지원(30만명, 1인당 연간 30만원)	•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바우처 지원(34만명, 1인당 연간 30만원)
• 방과후·방학중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00개교)	• 방과후·방학중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700개교)	• 방과후·방학중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개교)

10) 국내입양 활성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독신자에게 입양을 허용하고, 입양부모와 자녀의 연령차이를 50세에서 60세로 완화하였으며, 입양부모의 자녀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하였다. 2007년부터 입양아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만0~13세 입양아동에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입양가정 입양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기관별로 70~2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으로 월525천원을 지원하던 것을 월579천원으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입양장애아동 의료비로 연2,400천원 지원하던 것을 연2,650천원 지원으로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였다.

〈표 2-23〉 국내입양 활성화

2006년	2007년	2008년
•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독신자 입양허용 - 입양부모와 자녀의 연령 차이 완화(50→60세) - 입양부모 자녀수 제한 폐지	• 입양아 양육수당 도입 - 만0～13세 입양아동에 월10만원 지원 • 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 - 입양기관별 70～220만원	• 입양아 양육수당 - 만0～13세 입양아동에 월10만원 지원 • 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 - 입양기관별 70～220만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월525천원 지원 • 장애아동 의료비 년2,400천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월551천원 지원 • 장애아동 의료비 년2,520천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월579천원 지원 • 장애아동 의료비 년2,650천원 지원

11)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06년 110개 확충을 시작으로 2007년 349개, 2008년 85개소를 추가로 확충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을 2007년 209개소에서 2008년 220개소로 확대하였다. 보육시설 확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3천명 수준에서 5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0~2세아를 수용하는 민간보육시설에 영아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보육비용의 80% 수준의 지원을 90%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원인원도 191천명에서 250천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24〉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2006년	2007년	2008년
• 국공립보육시설 110개소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349개소 확충 •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209개소	• 국공립보육시설 85개소 확충 •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220개소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인건비 80%, 3,000명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인건비 80%, 4,000명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인건비 80%, 5,000명
•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 보조금(0~2세) 지원 - 표준보육비용의 80% 수준 - 지원인원:191천명	•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 보조금(0~2세) 지원 - 표준보육비용의 85% 수준 - 지원인원:210천명	•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 보조금(0~2세) 지원 - 표준보육비용의 90% 수준 - 지원인원:250천명

12) 불임부부 지원기준 확대

불임해소를 위해 시험관아기 등 불임시술비 지원을 확대였다. 불임부부 지원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150%이하 불임부부까지 지원기준을 확대하였고, 평균시술비의 50%정도 금액인 150만원을 2회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평균시술비의 85%수준인 255만원씩 2회 지급한다.

〈표 2-25〉 불임부부 지원기준 확대

2006년	2007년	2008년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불임부부(만44세 이하 여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불임부부 (만44세이하 여성) - 150만원씩 2회 (평균시술비의 50%), 11.7천명(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씩 2회)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불임부부 (만44세이하 여성) - 150만원씩 2회 (평균시술비의 50%), 10천명(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씩 2회)

13) 산모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육아지원을 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출산가정에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2주 기준으로 1인당 40만원 지원에서 50만원 지원으로 증액하였다. 지원기준 확대에 따라 수혜자는 13천명에서 43천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표 2-26〉 산모도우미 지원

2006년	2007년	2008년
•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도우미 파견 -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1인당 2주간 40만원, 13천명	•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도우미 파견 - 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 1인당 2주간 50만원, 37천명	•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도우미 파견 - 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 1인당 2주간 50만원, 43천명

14) 모성·영유아 보호 확대

2008년부터 임신에서 출산,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생애초기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등 모성·영유아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만 6세미만 모든 영유아(295만 명)에 대하여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구강검진 2회를 포함하여 1인당 총 7회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로 육성하고, 2008년에 5개 병원 50병상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다.

15개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도 100개 보건소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31천명 가량이 수혜를 받고 있다.

〈표 2-27〉 모성·영유아 보호 확대

2006년	2007년	2008년
• 모성·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 15개 보건소, 6천명	•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20개 보건소, 6,800명	•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확대 - 100개 보건소, 31천명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만 6세미만 모든 영유아(295만명) 건강검진 실시 *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구강검진 2회 포함하여 1인당 총 7회 검진 - 지방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 신생아집중치료센터로 육성(5개병원 50병상)

나.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영역

1)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육아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여 만3세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할사용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3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 근무하도록 단축하였다.

〈표 2-28〉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2006년	2007년	2008년
• 육아휴직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원 - 월40만원	• 육아휴직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원 - 월50만원 •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의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7.12.21)	• 육아휴직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원 - 월50만원 • 육아휴직제도 확대(만3세 아까지, 분할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제 (3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당 15~30시간 근무)

다.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영역

1)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를 902개소에서 2,088개소로 확대하였으며 개소당 월200만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2007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2,700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였으며 1인당 월1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빈곤아동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1인당 월3만원 범위내에서 1:1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이 또한 지원대상이 25천명에서 26천명으로 1천명가량 확대되었다.

빈곤의 대물림 차단 및 공평한 성장 보장을 위한 '희망스타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취약지역 거주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스타트 사업도 2007년 16개소에서 2008년 32개소로 2배가량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을 15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도 343개소에서 348개소로 확대하였다.

〈표 2-2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2006년	2007년	2008년
• 지역아동센터 지원 - 902개소, 월200만원(개소당)	• 지역아동센터 지원 - 1,800개소, 월200만원(개소당)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실시 - 25천명, 보호자가 일정액 적립할 경우 1인당 월3만원 범위내에서 1:1 비율지원 •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 취약지역 거주 임산부 및 0~12세 아동 대상,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16개소	• 지역아동센터 지원 - 2,088개소, 월200만원(개소당)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실시 - 26천명, 보호자가 일정액 적립할 경우 1인당 월3만원 범위내에서 1:1 비율지원 • '희망스타트'사업 확대 - 취약지역 거주 임산부 및 0~12세 아동 대상,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32개소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 100개소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 150개소 • 청소년 공부방 - 343개소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 200개소 • 청소년 공부방 - 348개소

2. 고령사회부문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영역

1) 경로연금제도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1998년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던 경로연금제도를 폐지되고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에 지급한 경로연금은 전체노인의 약 14% 수준인 63만명 정도이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인 경우 월45,000원, 80세이상인 경우 월50,000원을 지

급하였으며, 1998년 제도도입 당시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 19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 노인으로서 부부동시 수급자는 월30,630원(무배우자인 경우 35,000원)을 지원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노인의 60% 수준인 301만명이 수혜대상이고, 국민연금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월84천원을 지급받는다.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우선 적용하고 동년 7월부터 하위소득 60%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표 2-30〉 경로연금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

2006년	2007년	2008년
• 경로연금 지급 - 62만명 (전체노인의 14%) - 65세이상 기초수급자 월45,000원, 80세이상 월50,000원 - '33.7.1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월 30,000원	• 경로연금 지급 - 63만명 (전체노인의 14%) - 65세이상 기초수급자 월45,000원, 80세이상 월50,000원 - '33.7.1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월 30,630원 (무배우자 35,000)	• 경로연금 폐지 • 기초노령연금 도입 - 301만명(전체노인 60%) - 월84천원(국민연금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 해당) - '08.1 70세이상 우선 적용 - '08.7 하위소득 60%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

나. 노후생활보장 영역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시행에 앞서 2006년에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7년 13개 시·도 각 1개씩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인수발급여 대상자 판정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노인수발급여 수가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07년 4월 17일 노인장기요양보

험법(법률 제4803호)의 제정과 함께,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표 2-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006년	2007년	2008년
•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실시 - 8개 지역	•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확대 실시 - 13개 시·도 각 1개씩 13개 지역 예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07.4.17) • 노인수발급여 대상자 판정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노인수발급여 수가개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국 확대 시행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 - 16개 시·도 확대실시

2)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2006~2008년의 3년간 집중적으로 의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06년 매년 100여개씩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았으며, 2007년에 노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그룹홈, 재가지원센터 등 270개소를 증설하였고, 2008년에는 225개소를 추가로 증설하였다.

〈표 2-32〉 노인요양시설 확충

2006년	2007년	2008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대비 매년 100여개씩 요양시설 확충 - 요양시설 738개소, 재가시설 927개소	• 노인요양시설 확충 확대 -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시설, 그룹홈, 재가지원 센터 등 270개소 증설	• 노인요양시설 확충 확대 -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시설, 그룹홈, 재가지원 센터 등 225개소 증설

3)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간이검진대상 인원을 2만명에서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정밀검진인원도 3천명 수준에서 15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더불어 2008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 DB 내실화와 함께 검진사업 내실화, 치매관리 종합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표 2-33〉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2006년	2007년	2008년
• 검진인원 - 간이검진: 2만명 정밀검진: 3천명	• 검진인원 확대 - 간이검진: 5만명 정밀검진: 1만명	• 치매관리 강화 - 간이검진: 6만명, 정밀검진: 1.5만명 - 치매조기검진사업 DB의 내실화, - 검진사업 내실화, 치매관리 종합네트워크 구축

4)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제도 시행

2006년까지는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시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07년에는 서민층 노인에게 월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혜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 거동불편노인이며, 제공서비스는 월9회, 27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이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에는 지원대상을 1~5등급에서 4~5등급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축소하였다. 즉, 요양필요점수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등급외에 해당하는 4~5등급에 대하여만 지원하도록 하였다.

〈표 2-34〉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제도 시행

2006년	2007년	2008년
•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	• 서민층 노인에게 월20만원 상당의 이용권 제공,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선택 이용 - 평균소득의 150%이하 거동불편노인 - 제공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월9회, 27시간)	• 지원대상 축소 - 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에는 지원대상 축소(지원대상이 요양필요점수 1~5등급에서 4~5등급으로 변경)

5)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2006년에는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시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07년에는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하였다. 지원액은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월220천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인 경우 월300천원으로 하였다. 2008년 7월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체하였다.

〈표 2-35〉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2006년	2007년	2008년
•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시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	•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50% 지원 - 실비노인요양시설: 월220천원 - 실비전문요양시설: 월300천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체

다. 노후생활기반 조성 영역

1) 고령친화적 안전한 주거공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노인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에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 및 최소주거기준을 고시하였다. 2007년에는 기 고시를 토대로 고령자 가구 특성에 맞는 최소주거공간 규모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함과 더불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2008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령자주거지원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트와 에스컬레이트를 증설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2006년 370대, 2007년 304대, 2008년 500대를 추가도입하거나 계획중이며,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트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62대를 증설하였고,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트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36대, 82대를 증설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도시철도 이용 편의시설 91대를 확충하고 있다.

〈표 2-36〉 고령친화적 안전한 주거공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2006년	2007년	2008년
•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 및 '최소주거기준' 고시 • 저상버스 도입: 370대 •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트: 62대 •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트: 136대	• 고령자 가구 최소주거공간 규모 및 안전기준 마련 고시 및 매뉴얼 개발 • 저상버스: 304대 추가 도입 •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트: 62대 증설 •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트: 82대 증설	• '고령자주거지원법률(안)' 제정 추진 • 저상버스 500대 추가도입 •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91대 확충

2) 농어촌지역 고령자 가사도우미 지원

가사활동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고령자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청소, 세탁, 이·미용,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2006년에 82개

시·군·구 1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여 각각 1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2-37〉 농어촌지역 고령자 가사도우미 지원

2006년	2007년	2008년
• 농어촌 고령자가구에 가사도우미 지원 - 청소, 세탁, 이·미용, 목욕 서비스 - 12천명, 82개 시·군·구	• 농어촌 고령자가구에 가사도우미 지원 - 청소, 세탁, 이·미용, 목욕 서비스 - 15천명, 전국 시·군·구	• 농어촌 고령자가구에 가사도우미 지원 - 청소, 세탁, 이·미용, 목욕 서비스 - 15천명, 전국 시·군·구

3)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으로 현장중심 서비스 제공

농어촌 거주 및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복지관은 이동봉사차량을 2006년 15대에서 2007년 32대, 2008년 47대로 증차하였으며, 거동불편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전문인력이 건강상담, 목욕수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38〉 찾아가는 이동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현장중심 서비스 제공

2006년	2007년	2008년
• 이동복지관 운영 - 이동봉사차량 15대 - 거동불편노인 대상 직접방문 - 건강상담, 목욕수발,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 이동복지관 운영 - 이동봉사차량 32대 - 거동불편노인 대상 직접방문 - 건강상담, 목욕수발,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 이동복지관 운영 - 이동목욕차량 및 이동세탁차량 47대 - 거동불편노인 대상 직접방문 - 건강상담, 목욕수발,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4)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독거노인의 안전사고·우울증·자살방지를 위해 부양자 유무에 관계없이

혼자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파견하는 도우미수가 2007년과 2008년 각각 7천명, 6.6천명으로서 7천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안전 확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39〉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2006년	2007년	2008년
–	• 독거노인 대상 도우미 파견 - 도우미 7천명 파견 - 안전확인 및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 도우미 6.6천명 파견

5) 노인일자리 확충

2004년부터 노인의 사회참여와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 노인일자리를 83천개를 창출하였으나 단순노무 위주의 공익형일자리 비율이 55%로서 여전히 높았다. 2007년 노인일자리를 110천개로 확대하였고, 공익형 일자리 비율을 55%에서 45%로 축소하였으며, 정부지원 없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복지형 및 시장형 등 일자리를 30%에서 40%로 확대하였다. 2008년 노인일자리를 117천개로 확대하고 참여업체를 연중 발굴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한 일자리 박람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표 2-40〉 노인일자리 확충

2006년	2007년	2008년
• 노인일자리 83천개 창출 - 공익형일자리비율 (55%)	• 노인일자리 110천개로 확대 - 공익형 일자리 비율을 축소(55→45%) - 복지형 및 시장형 등 일자리 확대(30→40%)	• 노인일자리 117천개로 확대 - 참여업체 연중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일자리 박람회 내실화

3. 성장동력부문

가.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영역

1)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장려금' 도입

2008년에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및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고령근로자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기업에 1인당 월30만원씩 장려금이 지급되며, 장려금지급규모는 262천명 정도이다.

〈표 2-41〉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2006년	2007년	2008년
–	•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및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추진 - 장려금지급인원 244천명	• 정년제도 개선을 위한 '정년연장장려금(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시행 - 고령근로자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한 기업에 1인당 월30만원씩 장려금 지급 - 장려금지급 262천명

2)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정년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8일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했다. 그리고 2007년 12월

31일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고용현황과 이행계획을 작성·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제도화하였다. 2008년 3월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개정이전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해고 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2-42〉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2006년	2007년	2008년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06.12)으로 연령차별금지 제도 도입('04: 정년56.8세)	•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고령자고용현황과 이행계획을 작성·제출토록 의무부과	• 법제명 변경 및 법령 일부변경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3) 외국인력의 활용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방안으로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 전체 대학이상 학생의 0.7%를 외국인을 유치하던 것을 2007년에는 1.0%로 확대하였고, 2008년에는 40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6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개소를 설립하고, 2007년에는 1개소를 추가하여 3개소의 센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2007년 산업연수생제 폐지 및 고용허가제 일원화('07.1)와 함께 전자사증제도를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표 2-43〉 외국인력의 활용 확대

2006년	2007년	2008년
• 외국인유학생 유치 - 전체 대학이상 학생의 0.7%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 2개소	• 외국인유학생 유치 - 전체 대학이상 학생의 1.0%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확대: 3개소(1개소 추가) • 산업연수생제 폐지 및 고용허가제 일원화('07.1)와 함께 전자사증제도 확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 외국인유학생 유치 - 40천명

나.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영역

1)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대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현장체험 프로그램(Job School)의 참여자수를 2006년 1만명에서 2007년 1.5만명으로 확대하였고, 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횟수도 30회에서 50회로 확대하였으며, 프로그램만족도도 50%에서 60%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경우도 2006~2008년 사이 각각 5개, 10개, 2개 이상 신규로 개발하거나 계획중에 있다.

〈표 2-44〉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대

2006년	2007년	2008년
• 현장체험 프로그램(Job School)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 Job School: 1만명 - 취업캠프: 30회 - 프로그램만족도: 50% •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 5개이상	• 현장체험 프로그램(Job School)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 Job School: 1.5만명 - 취업캠프: 50회 - 프로그램만족도: 60% •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 10개이상	• 현장체험 프로그램(Job School)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 프로그램만족도: 60% •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 2개 이상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본격추진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실 수강료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200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 3월부터 본격 추진되었으며, 2008년 29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표 2-45〉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본격추진

2006년	2007년	2008년
• 능력개발카드제 시범운영 ('06.11)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본격추진('07.3) -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실 수강료 지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29천명

3)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 사업이 운영 중인데, 2006~2008년 기간중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은 각각 58개, 80개,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은 각각 112개, 130개,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은 매년 20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표 2-46〉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2006년	2007년	2008년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 58개 기업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112개 기업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20개 과정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 80개 기업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130개 기업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20개 과정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 80개 기업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200개 기업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20개 과정

4)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을 위하여 2006년에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T/F를 구성하여 자격종목 정비안 및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도록 자격종목을 통폐합하고 등급체계 및 종목 분류체계 개편하는 한편, 자격정보망(Q-net)과 직업훈련정보망(HRD-net) 통합 개편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47〉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2006년	2007년	2008년
•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T/F 구성, 자격제도 혁신 추진 - 자격종목 정비안 및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 산업현장 수요에 맞도록 자격종목 통폐합, 등급체계 및 종목 분류체계 개편 • 자격정보망(Q-net)과 직업훈련정보망(HRD-net) 통합 개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다.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영역

1) 역모기지 제도 도입

2007년에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적용연령은 부부모두 만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용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고, 대출방식은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 지급이다. 2008년부터는 주택연금상품의 판매확대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표 2-48〉 역모기지 제도 도입

2006년	2007년	2008년
–	• 역모기지제도 도입 - 공적보증 제공 - 적용연령: 부부모두 만65세이상 고령자 - 이용대상: 공시가격 6억원이하 중저가 주택 - 대출방식: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 지급	• 주택연금상품의 판매확대와 제도의 조기정착 추진

라. 고령친화산업 육성 영역

1)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2007년 고령자특성을 고려한 제품 등을 전시하여 고령자와 가족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2개소를 설립하였고, 2008년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다. 실버의료기기 등 기술개발 지원도 2007년과 2008년 각각 5개 과제, 4개 과제가 수행되었다.

〈표 2-49〉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2006년	2007년	2008년
–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2개소) • 실버의료기기 등 기술개발 지원 (5개 과제)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3개소로 확대설치 (1개소 추가) • 실버의료기기 등 기술개발 지원 (4개 과제)

마. 기타

2008년에 신규로 추가한 주요사업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산업체 퇴직연구인력 고용지원, 영세사업장 직업환경 개선,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이다.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5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기존 6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였다.

노인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양성하고, 공공체육시설 340개소를 지원하며, 스포츠클럽 20개소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차원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100개소를 인증하고, 평생학습도시 15개소를 조성한다. 산업체 퇴직연구인력 250명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 직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안전보건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10,000개소에서 10,500개소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센터 4개소를 설치하고 있다.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실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전년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방법은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1차평가)와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2차평가), 그리고 1차, 2차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성과평가는 개별사업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최종 목표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성과측정에 있어서는 용이한 점이 있으나, 사업의 운영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성과관리적 측면에서 벗어나 운영관리적 접근을 취하였다. 즉, 1개 년도의 추진실적이나 사업성과에 그치지 않고 2개년도의 추진실적을 모두 파악함으로써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고, 단위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현황을 같이 분석하여 운영관리 측면에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사업별, 연도별 교차분석이 필요하며, 교차분석의 전제조건으로 자료가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단위를 적용하여 작성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교 가능하도록 동일 또는 유사한 단위로 치환하는 보정작업이 필요하다. 분석의 기초가 되는 자체실적보고서 작성 메뉴얼을 중앙부처 및 시·도에 전달하면서 작성방법과 양식을 제시 하였으나, 단위사업별 세부작성기준은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을 뿐 보다 구체적기준이 부족하다. 236개의 방대하면서도 이질적인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자체 실적보고서

상의 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추진성과 등의 내용이나 단위가 작성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차별적으로 작성된 측면이 있다. 대다수의 사업들이 기재 내용이나 단위가 달라 비교선상에 제시하기가 어려운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모든 단위사업들을 일일이 보정작업을 거쳐 비교분석하기에는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비교가능한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단순 나열식으로 기술하면서 추진실태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 비교는 사업별 효율성과 효과성을 산출하여 검증작업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추가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하나 사업을 수행한 지 2년에 불과한 현 단계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앙부처별 비교 역시 중앙단위는 개별 단위사업의 총괄적 관리주체로서 단위사업내에서는 비교대상이 없어 단위사업 자체만 분석해야 하는데 추진실적이 지자체 보고실적의 종합판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실정으로 배제하였다.

예산집행실적에 의한 지자체간 비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실정인데, 자체고유사업이나 소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사업비가 국가와 지방비간 매칭펀드로 구성되어 있어 의무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산집행률이 100% 또는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보고된다는 것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증명된다.

성과지표에 의한 비교에 있어서도 지자체간 비교가 어려운데, 추진실적을 추진성과란에서 중복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별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 임의로 지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간 비교는 사업량을 기준으로 한 추진실적에 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보인다. 저출산 부문은 주로 사람에 대한 현금적·물적 지

원을 행하고 있어 인원수로 실적을 보고한 사업이 많아 비교가 어느 정도 용이하나, 고령사회부문, 성장동력 부문은 대상 인원수, 시설수, 추진 횟수, 사업수, 재정투자액 등 다양한 단위로 실적을 보고하고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실적단위로 환원하여 비교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도 2006, 2007년도간 다른 단위로 작성한 경우가 있어 증감추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개별사업별 시·도간 또는 시·도 내 비교가 용이하지 않음을 전제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요 세부사업 실적을 2006년과 2007년의 연도간 비교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저출산 대책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저출산 부문에서 사업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군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이다. 2007년 지자체의 저출산 재정중 보육료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25.9%이고 강원도는 50.0%, 서울은 40.1%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교육비 사업이 저출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7.0%이며, 강원도 12.3%, 부산 12.3%, 대구 10.7%, 인천 10.2% 정도이다.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20~44세)이 출산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의 보육·교육비 부담[5]인 만큼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출산 부문의 핵심사업이라고 하겠다.

---

5) 이삼식 외(2005)의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출산 중단 사유 중 자녀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선,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대로 2007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67만여명의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었다.

소득수준별로는 법정저소득층과 최저생계비의 120%수준 가구에는 전액 지원되었으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50%, 70%, 100% 수준의 가구에는 각각 80%, 50%, 20%의 보육료가 지원되었다. 차등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2007년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은 각 소득수준에 따라 1층과 2층에는 전액, 3층은 80%, 4층은 50%, 5층에는 20% 수준이 지급되었다.

〈표 3-1〉 소득수준별·연령별 보육·교육비 지원금액(2007)

구분	지원비율	연령	보육비(원)		교육비(원)	
			지원액	부모 부담액	국공립	사립
1~2층	100%	만0세	361,000	–	–	–
		만1세	317,000	–	–	–
		만2세	262,000	–	–	–
		만3세	180,000	–	53,000	180,000
		만4·5세	162,000	–	53,000	162,000
3층	80%	만0세	288,800	72,200	–	–
		만1세	253,600	63,400	–	–
		만2세	209,600	52,400	–	–
		만3세	144,000	36,000	42,400	144,000
		만4세	129,600	32,400	42,400	129,600
	100%	만5세	162,000	–	53,000	162,000
4층	50%	만0세	180,500	180,500	–	–
		만1세	158,500	158,500	–	–
		만2세	131,000	131,000	–	–
		만3세	90,000	90,000	26,500	90,000
		만4세	81,000	81,000	26,500	81,000
	100%	만5세	162,000	–	53,000	162,000
5층	20%	만0세	72,200	288,800	–	–
		만1세	63,400	253,600	–	–
		만2세	52,400	209,600	–	–
		만3세	36,000	144,000	10,600	36,000
		만4세	32,400	129,600	10,600	32,400
	100%	만5세	162,000	–	53,000	162,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2007년, 내부자료.

만5세 무상보육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게 월 162천원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의 경우 기존에 농촌지역에는 100%, 도시에는 90%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하던 것에서 도시지역에까지 100% 이하의 가구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0%이하 가구에서 2007년 100%이하 가구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은 보육비가 158천원(2006년)에서 162천원(2007년)으로 2.5%인상되었다.[6)]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자녀로서 두자녀 이상의 아동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이상 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두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 사업은 2006년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30%를 지원하던 것에서 2007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었다. 각 연령별 지원금은 만0세 181천원, 만1세 159천원, 만2세 131천원, 만3세 90천원, 만4세 이상 81천원이다.

지역별 보육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49.8%), 울산(51.4%), 경기(53.3%) 등의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지원율이 도 단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교육·보육비 지원은 시설이용자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용율이 낮으면 지원율도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수도권 지역의 시설 이용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오히려 시설이용율과

6) 〈표〉 2007년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16만원 이하	144만원 이하	168만원 이하	193만원 이하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165만원 이하	184만원 이하	197만원 이하	217만원 이하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231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69만원 이하	288만원 이하
5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334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384만원 이하	411만원 이하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비 지원율이 낮은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오히려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양육시기)에는 친척이나 도우미에게 맡겨 키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특히, 0세 영아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친척이나 도우미에게 양육을 위탁하는 방식의 선택이 유치원 등원시기(4~5세)까지 이어지기 쉽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으로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시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을 감안하거나 오버타임(시간외) 근무가 잦다면 보육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표 3-2〉 지역별 보육료 지원율과 시설 이용율(2007)

(단위: 명, %)

지역	총지원 인원	0~4세 지원인원	5세 지원인원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0~5세 아동인구수	지원율	시설 이용률
전국	816,113	673,489	142,624	1,099,933	2,832,282	74.2	38.8
서울	94,465	77,841	16,624	189,768	531,079	49.8	35.7
부산	46,777	38,625	8,152	63,435	163,943	73.7	38.7
대구	39,773	33,122	6,651	54,699	133,496	72.7	41.0
인천	36,032	29,224	6,808	51,601	154,605	69.8	33.4
광주	27,755	23,145	4,610	42,970	92,547	64.6	46.4
대전	21,330	18,221	3,109	33,012	92,841	64.6	35.6
울산	11,561	9,728	1,833	22,499	68,105	51.4	33.0
경기	135,309	105,468	29,841	253,864	744,997	53.3	34.1
강원	24,702	19,233	5,469	35,632	82,460	69.3	43.2
충북	27,611	21,780	5,831	40,466	86,334	68.2	46.9
충남	30,892	24,252	6,640	46,842	115,328	65.9	40.6
전북	37,245	28,118	9,127	55,950	99,409	66.6	56.3
전남	37,403	28,720	8,683	50,487	98,562	74.1	51.2
경북	44,152	35,636	8,516	61,083	141,448	72.3	43.2
경남	57,995	48,692	9,303	75,793	189,615	76.5	40.0
제주	14,060	12,021	2,039	21,832	37,513	64.4	58.2

주: 1) 전국자료는 중앙부처 자료이고 지자체 자료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시설이용아동수는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보육통계, 아동인구수는 통계청 추계인구 자료임.
자료: 각 시·도 2007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종합하면, 서울과 광역시 단위에서 보육시설의 이용율이 낮은 것은 보육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보다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은 가외적인 변인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에는 다른 시·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서울과 수도권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육수당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이미 보육수당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친척이나 도우미에게 보육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06~2007년의 보육료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5세 미만의 보육료 지원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6.6% 상승하였고, 대전, 경남, 인천, 충북이 32.9%, 28.3%, 25.4%, 24.7%의 순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전북과 광주에서는 보육료 수혜대상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3 참조).

'두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은 2005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후 수혜대상이 2006년 63,745명에서 2007년 109,599명으로 71.9%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95.1%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부산(83.5%), 경북(7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제주의 경우에는 18.1%, 10.5%로 비교적 저조한 편인데, 이 사업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내용이라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통계 자료로는 시설이용아동수 외에 형제·자매의 시설이용여부나 두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 신청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과학적인 정책 집행과 관리를 위해 통계 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역시 2005년 도입되었으며, 2006년 14,093명에서 2007년 17,615명으로 25%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남(47.7%), 강원(20.8%)에서 지원폭이 크게 상승하였고, 광

주, 전북에서는 각각 33.1%, 20.2% 지원이 축소되었다.

〈표 3-3〉 지역별 보육료 지원 추이(2006, 2007)

(단위: 명, %)

구분	0~5세			2자녀 이상			장애아		
	2006년	2007년	증감율	2006년	2007년	증감율	2006년	2007년	증감율
전국	687,062	732,139	6.6	63,745	109,599	71.9	14,093	17,615	25.0
서울	81,151	94,465	16.4	7,193	11,837	64.6	2,216	2,431	9.7
부산	39,876	46,777	17.3	3,533	6,483	83.5	1,003	1,040	3.7
대구	34,682	39,773	14.7	3,101	4,978	60.5	1,089	1,032	△5.2
인천	28,745	36,032	25.4	2,458	4,795	95.1	761	873	14.7
광주	28,093	27,755	△1.2	3,972	4,690	18.1	709	474	△33.1
대전	16,048	21,330	32.9	2,035	3,175	56.0	355	391	10.1
울산	10,064	11,561	14.9	1,187	1,935	63.0	475	503	5.9
경기	130,078	135,309	4.0	15,510	20,642	33.1	2,703	2,489	△7.9
강원	20,234	24,702	22.1	1,884	3,170	68.3	303	366	20.8
충북	22,149	27,611	24.7	2,197	3,564	62.2	457	528	15.5
충남	26,290	30,892	17.5	2,792	3,736	33.8	574	578	0.7
전북	37,760	37,245	△1.4	3,550	4,319	21.7	649	518	△20.2
전남	34,026	37,403	9.9	3,189	4,229	32.6	695	682	△1.9
경북	36,420	44,152	21.2	3,378	5,902	74.7	993	1,119	12.7
경남	45,193	57,995	28.3	5,760	9,002	56.3	795	1,174	47.7
제주	12,089	14,060	16.3	2,006	2,217	10.5	316	301	△4.7

주: 1) 전국자료는 중앙부처 자료이고 지자체 자료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2007년은 지자체 추진실적 보고 자료, 보건복지부 2006년은 보육통계 자료임.
자료: 각 시·도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교육비 지원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만3, 4, 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 교육제도에서는 만7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 1~2년 정도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3, 4, 5세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사실상 명칭과 사업부서(보육료: 보건복지가족부, 교육비: 교육과학기술부)만 다를 뿐 보육료 지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육시설의 수급 균형을 위해 유치원이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대상 아동인 3~5

세 전체 유아 대비 교육비 지원율은 전국평균 9.1%로 낮은 편이다.

3~5세 아동의 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평균이 36.2%이며 지역별로는 울산(46.6%), 경북(43.7%), 경남(43.5%), 부산(43.4%), 대전(43%)의 순이다. 3～5세 아동 대비 교육비 지원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24.2%), 경북(22.7%), 대구(21.9%), 전남(21.4%), 대전(20.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5세 아동인구가 많은 서울, 인천, 광주 등의 광역시 지역에서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인원이 아닌 비용 단위로 제출하여 지원 인원이 누락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값이 9.1%로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광역시 지역의 지원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표 3-4참조).

〈표 3-4〉 지역별 차등 교육비 지원율과 시설이용율(2007)

(단위: 명, %)

지역	총 지원인원	3~4세 지원인원	5세 지원인원	유치원 이용아동수	3~5세 아동인구수	취원아 대비 지원율	3-5세 아동 대비 지원율	시설 이용율
전국	257,349	121,697	135,652	541,550	1,494,205	47.5	9.1	36.2
서울	–	–	–	82,461	265,975	–	–	31.0
부산	21,155	10,060	11,095	37,921	87,408	55.8	24.2	43.4
대구	15,692	5,964	9,728	27,908	71,660	56.2	21.9	38.9
인천	–	–	–	29,950	82,572	–	–	36.3
광주	–	–	–	17,300	50,122	–	–	34.5
대전	10,110	4,669	5,441	21,270	49,412	47.5	20.5	43.0
울산	6,505	3,095	3,410	16,702	35,867	38.9	18.1	46.6
경기	62,609	30,271	32,338	135,245	395,375	46.3	15.8	34.2
강원	7,973	3,715	4,258	14,904	44,807	53.5	17.8	33.3
충북	7,927	3,991	3,936	15,997	46,270	49.6	17.1	34.6
충남	7,192	3,446	3,746	21,028	60,954	34.2	11.8	34.5
전북	10,475	5,918	4,557	19,320	53,814	54.2	19.5	35.9
전남	11,432	5,716	5,716	19,325	53,436	59.2	21.4	36.2
경북	16,990	7,484	9,506	32,761	74,903	51.9	22.7	43.7
경남	–	–	–	44,188	101,467	–	–	43.5
제주	2,425	584	1,841	5,270	20,163	46.0	12.0	26.1

주: 1) 전국치는 중앙부처 자료이고 지자체 자료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유치원 이용아동수는 교육부의 2007년 유치원 통계이며, 아동인구수는 통계청 추계인구 자료임.
자료: 각 시·도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2006년과 2007년의 교육비 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3~5세의 교육비 지원율이 53.5%나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만 3~4세에 대해서는 소득별 차등 지원되고 있고 만 5세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에 대해 162천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만 3~4세에 대한 지원이 2006년 38,779명에서 2007년 121,697명으로 213.8%나 증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90% 수준 이하에서 100% 수준 이하로 확대되었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3-5 참조).

〈표 3-5〉 지역별 교육비 지원 추이(2006, 2007)

(단위: 명, %)

구분	3~5세			2자녀이상			장애아		
	2006년	2007년	증감율	2006년	2007년	증감율	2006년	2007년	증감율
전국	167,698	257,349	53.5	13,758	16,474	19.4	2,363	2,486	5.2
서울	–	–	–	–	–	–	–	–	–
부산	–	21,155	–	–	1,353	–	249	297	19.3
대구	–	15,692	–	–	825	–	143	155	8.4
인천	–	–	–	–	–	–	–	–	–
광주	7,533	–	–	345	–	–	85	156	83.5
대전	–	10,110	–	–	600	–	–	89	–
울산	–	6,505	–	–	453	–	–	–	–
경기	53,711	62,609	16.6	3,955	4,275	8.1	–	–	–
강원	5,845	7,973	36.4	396	506	27.8	70	72	2.9
충북	6,596	7,927	20.2	340	597	75.6	86	60	△30.2
충남	5,685	7,192	26.5	338	517	53.0	80	83	3.8
전북	–	10,475	–	–	758	–	–	56	–
전남	–	11,432	–	–	798	–	–	67	–
경북	–	16,990	–	–	982	–	–	136	–
경남	–	–	–	–	1,262	–	125	168	34.4
제주	–	2,425	–	–	87	–	–	38	–

주: 1) 전국치는 중앙부처 자료이고, 지자체 자료와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이 인원(명)이 아닌 다른 단위로 제출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임.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연도, 내부자료

2자녀이상 교육비 지원과 장애아 교육비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실적을 '명' 단위로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부처의 전국 수치를 시계열로 비교해 보았을 때, 2007년 2자녀 이상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장애아 교육비 지원은 2006년에 비해 각각 19.4%, 5.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자녀 이상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충북(75.0%), 충남(53.0%) 지역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고, 장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광주(83.5%), 경남(34.4%)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내용은 농지 소유규모가 5㏊미만인 농어가의 자녀(만0~5세)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이용아동에 대해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비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광주, 대전 등 농어가가 없는 지역은 제외되며, 전남의 지원아동수가 8,520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8,007명), 경북(7,995명), 경기(6,790명), 전북(6,613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6 참조).

전체 지원아동 중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53.2%로 가장 높고,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40%이상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원아동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지원비율은 29.0% 수준이다. 이것은 수도권 인근의 인구 밀집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농촌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나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다른 도단위 지역에서는 농어산촌의 지역이 광범위하고 인구가 저밀하여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소득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은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도단위에서는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아동수당 격인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와 같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3-6〉 지역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실적(2007)

(단위: 명, 백만원, %)

지역	실적				집행액		지방비 비율	
	보육시설 이용아동(a)	보육시설 미이용아동(b)	지원아동수 (a+b)	지원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비율(b/(a+b))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전국	35,000	22,000	57,000	38.6	–	–	–	–
서울	–	–	–	–	–	–	–	–
부산	186	50	236	21.2	261	33	49.8	48.5
대구	248	55	303	18.2	422	68	50.0	50.0
인천	219	20	239	8.4		22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328	103	431	23.9	558	139	50.0	50.4
경기	4,820	1,970	6,790	29.0	8,062	2,793	47.8	48.1
강원	2,254	2,563	4,817	53.2	2,802	2,080	50.0	50.0
충북	2,198	1,375	3,573	38.5	3,339	1,820	50.0	50.0
충남	4,879	3,128	8,007	39.1	7,377	4,111	50.0	50.1
전북	3,558	3,055	6,613	46.2	4,087	3,006	50.0	50.0
전남	4,920	3,600	8,520	42.3	7,800	5,200	50.0	50.0
경북	4,781	3,214	7,995	40.2	7,266	4,258	50.0	50.0
경남	3,318	2,212	5,530	40.0	5,480	3,300	50.0	50.0
제주	3,472	1,553	5,025	30.9	5,901	2,183	50.0	50.0

주: 전국치는 중앙부처 자료이고 지자체 자료와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각 시·도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나.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비 경감 지원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과후 보육·교육 운영시스템 연계·통합,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등의 5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를 위해 89개 시·군을 선정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이동수단비, 시설 및 기자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각 지자체에서는 방과후학교 시범 운영과 방과후프로그램 개발, 연수·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주요 실적을 지자체별로 살펴보

면, 서울시에서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특성화된 맞춤식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하였고, 부산시에서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제주도에서는 방과후학교 전담팀을 구성하여 참여율을 높이는데 전력하였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2004년 36.3%에서 2007년 49.8%까지 13.5%p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그림 3-1 참조). 그러나 각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운영목적에 대한 교원의 인식 및 학부모의 호응이 부족하여 방과후학교의 확대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림 3-1〕 방과후학교 이용률 추이(2004~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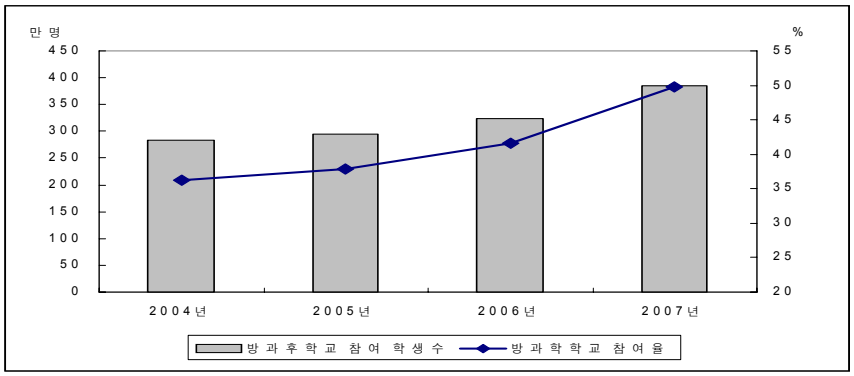

자료: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자유수강권을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2007년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 추진 실적은 목표 대비 90%로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강제할 수 없고 참여율 예측(목표량 설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가 296.7%, 강원

도가 249.9%, 충남이 247.2% 등으로 대체로 높은 실적달성률을 보이는데, 이것은 저렴하고 확산력이 높은 사이버학습(인터넷 강좌) 수강권까지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어 목표량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표 3-7〉 방과후 학교 등 사교육비 경감 지원사업 실적(2006, 2007)

(단위: 명, 백만원, %)

지역	자유수강권(바우처)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2007년			2006년	실적	2007년				2006년
	목표	실적	달성률	실적	증감율	목표	실적	달성률	단위	실적
전국	300,000	270,000	90.0	90,901	197.0	2,400	2,508	104.5	교	1,685
서울	–	–	–	28,000	–	45	45	100.0	실	128
부산	24,270	24,270	100.0	38,464	△36.9	162	162	100.0	실	91
대구	20,474	25,556	124.8	–	–	77	77	100.0	교	41
인천	11,333	11,000	97.1	–	–	–	–	–	–	–
광주	11,160	12,205	109.4	3,675	232.1	28	28	100.0	실	–
대전	11,121	10,947	98.4	–	–	–	–	–	–	–
울산	–	–	–	–	–	–	–	–	–	–
경기	40,542	120,304	296.7	10,543	1,041.1	335	337	100.6	교	–
강원	6,700	16,744	249.9	2,090	701.1	105	105	100.0	교	158
충북	10,716	11,563	107.9	5,971	93.7	165	154	93.3	실	–
충남	14,306	35,363	247.2	8,400	321.0	–	–	–	교	179
전북	19,019	19,019	100.0	–	–	44	44	100.0	교	–
전남	19,336	19,336	100.0	–	–	75	141	188.0	교	–
경북	20,875	20,900	100.1	–	–	7	39	557.1	교	21
경남	19,933	21,326	107.0	–	–	–	–	–	–	186
제주	6,296	7,621	121.0	–	–	7	22	314.3	교	–

자료: 중앙부처 및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방과후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저학년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는 2006년에 비해 48.8% 증가한 2,508개 학교에서 초등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07년 실적 중 다른 시·도에 비해 목표량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북의 경우에는 시설비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는 많지만 국고 지원에 대응하는 지방비 재원 마련이 어려워 목표량이 낮게 책정되었으며 지원을 신청한 학교(61개교)의 63.9%에만 지원되고 있다.

다. 입양 활성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도입,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만0~4세 입양아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입양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사업은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어 추진하지 못했으나, 인천에서만 국비 없이 지방비로 70명의 입양아에게 보육료가 지원되었다.

입양수수료 지원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대전(56.0%), 강원(71.1%), 경북(75.0%)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실적달성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실적 달성률이 433.3%로 매우 높은데, 이는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은 입양신청자에 한해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적의 목표달성률에 비해 실제 입양률은 저조한 편이다. 현행 입양절차는 '입양 정보상담 → 입양신청 → 상담 및 양부모 교육 → 가정조사 → 아동선정 → 입양'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입양부모의 지원요건 완화 및 절차 등이 개선되어 입양신청이 증가한 성과는 인정되지만, 그것이 실제 입양률 증가로 이어지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경남, 대전, 대구)라면 기여율을 높이기 위한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입양아 양육수당 사업'은 만 13세미만의 전체 입양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사업'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거하여 1인당 약 55만원(월)의 양육보조금과 약 250만원(년)의 의료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

용이다. 두 사업 모두 목표달성률은 높은 편이나 시·도의 연령별 입양아 공식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실적에 대한 과학적 평가나 시·도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최근 5년간 입양아동수에 비교하여 유추해 보면 입양아에 대한 양육지원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8〉 입양 활성화 사업 실적(2007)

지역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입양 아동 수	최근 5년간 입양 아동수
	목표	실적	달성률	실제 입양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서울	–	–	–	–	–	–	–	500	674	134.8	1,062	5,649
부산	109	109	100.0	24.8	220	220	100.0	4	4	100.0	27	75
대구	130	126	96.9	9.5	200	147	73.5	5	6	120.0	12	65
인천	91	92	101.1	35.9	430	590	137.2	7	9	128.6	33	128
광주	–	–	–	–	–	–	–	–	–	–	17	177
대전	91	51	56.0	7.8	386	138	35.8	9	6	66.7	4	53
울산	6	26	433.3	15.4	70	72	102.9	1	1	100.0	4	24
경기	198	198	100.0	52.0	1,192	1,142	95.8	30	30	100.0	103	547
강원	38	27	71.1	25.9	155	128	82.6	–	–	–	7	46
충북	43	47	109.3	104.3	186	184	98.9	8	8	100.0	49	212
충남	–	–	–	–	–	–	–	–	–	–	8	39
전북	14	14	100.0	121.4	35	35	100.0	4	4	100.0	17	44
전남	52	52	100.0	46.2	265	265	100.0	12	14	116.7	24	204
경북	12	9	75.0	100.0	98	200	204.1	7	8	114.3	9	48
경남	4	32	800.0	3.1	99	238	240.4	7	13	185.7	1	26
제주	11	11	100.0	100.0	68	68	100.0	–	–	–	11	49

주: 사업실적은 2007년 지자체 추진실적, 입양아동수는 보건복지가족부(통계청) 입양현황 통계 자료임.

자료: 각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2007, 내부자료

라. 육아지원시설 확충

육아지원시설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의미한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2만 9,233개소, 2007년에는 3만 856개소가 운영되었다. 보육시설의 정원은 2006년 128만 156명에서 2007년 134만 4,132명으로 6만 3,976명 증가하였고, 유치원의 정원은 2006년 54만 5,812명에서 2007년 54만 1,550명으로 4,262명이 감소하였다. 만 5세 미만의 아동 대비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유치원)의 정원을 육아지원시설 확충률로 보았을 때, 확충률은 2003년 44.6%에서 2007년 66.6%로 20% 상승하였다. 유치원 정원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육시설 확충에 의한 효과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그림 3-2〕 육아지원시설 정원 및 시설 확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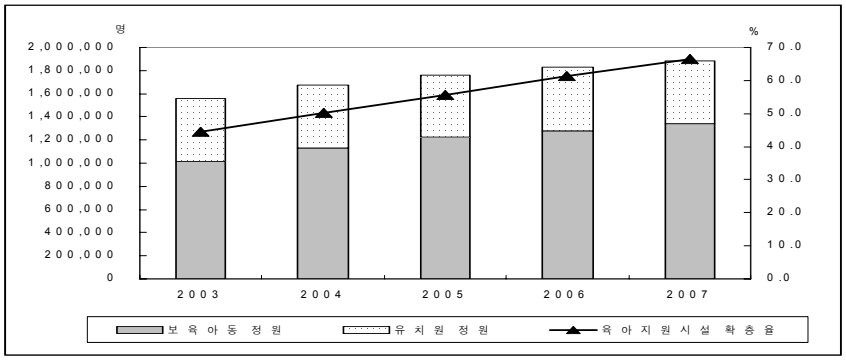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각 년도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저출산부문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7년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6년에 비해 105개소가 확충되었고, 직장보육시설은 22개가 확충되어 3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은 전국 평균 5.7%

이고 직장보육시설의 비율은 1.0%로 아직까지는 매우 저조하며, 민간보육시설의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의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6.3%), 전남(5.5%)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비율이 대체로 낮은 가운데에서도 울산(1.7%), 인천(1.4%) 등 공업 및 산업도시에서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3-9〉 설립형태별 보육시설 확충 현황(2006, 2007)

(단위: 개소, %)

구분	국공립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전체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전국	1,643	1,748 (5.7)	298	320 (1.0)	13,930	14,083 (45.6)	29,233	30,856
서울	632	637 (11.5)	78	83 (1.5)	2,612	2,590 (46.8)	5,508	5,532
부산	127	131 (8.1)	13	13 (0.8)	886	869 (53.8)	1,592	1,614
대구	24	27 (2.1)	12	12 (0.9)	721	712 (55.4)	1,239	1,285
인천	65	78 (5.1)	23	22 (1.4)	699	729 (47.6)	1,385	1,531
광주	30	31 (3.0)	11	11 (1.1)	359	364 (34.8)	1,050	1,045
대전	29	28 (2.4)	14	15 (1.3)	389	420 (35.4)	1,072	1,185
울산	27	28 (4.9)	11	10 (1.7)	376	355 (62.0)	580	573
경기	293	336 (3.9)	69	77 (0.9)	3,442	3,557 (40.9)	7,864	8,691
강원	68	72 (8.7)	4	6 (0.7)	399	411 (49.4)	788	832
충북	34	40 (4.6)	9	10 (1.1)	436	432 (49.1)	854	879
충남	35	43 (3.5)	14	16 (1.3)	580	587 (48.3)	1,153	1,215
전북	34	36 (2.8)	4	4 (0.3)	546	548 (42.2)	1,275	1,298
전남	46	55 (5.5)	8	9 (0.9)	397	408 (40.7)	974	1,002
경북	94	96 (6.3)	14	16 (1.0)	798	822 (53.6)	1,399	1,533
경남	90	94 (4.2)	10	12 (0.5)	1,030	1,020 (46.1)	2,080	2,212
제주	15	16 (3.7)	4	4 (0.9)	260	259 (60.4)	420	429

주: 사업실적은 2007년 지자체 추진실적, 시설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시·도 500인 이상 사업장수는 2006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특히,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저출산 정책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의 하나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보

육시설과 위탁계약 체결 혹은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대상 사업장 대비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26.5%로 아직은 저조한 편이고, 시·도별로는 전북, 부산, 경남 등이 20% 미만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해서는 각 시·도의 의무대상 사업장의 현황이 파악되어야 하나, 종사자 규모별 통계 자료만 생산되고 있어서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도에서 사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성과평가에서 시·도청 소재의 어린이집 설치만을 직장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제출한 곳이 4개 지역으로, 사업명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더라도 의무대상 사업장을 공식 통계와 일치하게 제출한 곳은 한 지역도 없었다. 따라서 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생산이 요구된다.

〈표 3-10〉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2006, 2007)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50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설치율	구분	2006년	2007년	50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설치율
서울	78	83	459	18.1	강원	4	6	29	20.7
부산	13	13	79	16.5	충북	9	10	30	33.3
대구	12	12	33	36.4	충남	14	16	52	30.8
인천	23	22	41	53.7	전북	4	4	27	14.8
광주	11	11	30	36.7	전남	8	9	27	33.3
대전	14	15	54	27.8	경북	14	16	67	23.9
울산	11	10	33	30.3	경남	10	12	71	16.9
경기	69	77	171	45.0	제주	4	4	5	80.0

주: 사업실적은 지자체 추진실적, 시설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시·도 500인 이상 사업장수는 2006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임.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2007, 내부자료

마. 수용자 중심의 육아서비스 지원

대부분 보육시설이 오후 7시 30분이면 종료되어 보육시간 연장을 희망하는 부모에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육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7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중 13.3%로 2006년에 비해 2.2% 증가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비율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24.3%), 경남(22.2%), 전북(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감율 역시 제주도가 5.3%로 가장 높았고, 경남(4.9%), 대구, 강원, 충북(4.7%), 전남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11참조).

반면, 충남과 울산, 대전에서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일반 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비율의 증감보다는 전체 보육시설 중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비율과 정원충족율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인천의 경우에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율이 29.6%로 비교적 높으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9.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또한 울산에서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48.2%)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실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비율(13.3%)은 전국 평균 수준이다. 수용자 중심의 육아서비스라는 말 그대로 수용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제기된다고 하겠다.

〈표 3-11〉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현황(2006, 2007)

(단위: 개원, %)

구분	2006년			2007년			비율 증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정원충족율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비율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수	정원 충족율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비율	
전국	3,246	22.6	11.1	4,103	20.2	13.3	2.2
서울	767	24.0	13.9	924	21.1	16.7	2.8
부산	201	27.6	12.6	227	21.8	14.1	1.4
대구	72	15.9	5.8	135	13.3	10.5	4.7
인천	90	20.9	6.5	144	29.6	9.4	2.9
광주	98	11.9	9.3	121	10.5	11.6	2.2
대전	116	49.6	10.8	121	34.7	10.2	△0.6
울산	84	27.5	14.5	76	48.2	13.3	△1.2
경기	465	28.0	5.9	661	17.8	7.6	1.7
강원	48	15.4	6.1	90	11.0	10.8	4.7
충북	111	20.3	13.0	156	17.0	17.7	4.7
충남	166	21.9	14.4	149	23.7	12.3	△2.1
전북	257	19.8	20.2	284	23.5	21.9	1.7
전남	192	16.4	19.7	243	17.7	24.3	4.5
경북	109	25.6	7.8	146	25.2	9.5	1.7
경남	361	21.0	17.4	492	21.9	22.2	4.9
제주	109	27.2	26.0	134	22.8	31.2	5.3

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방과후보육시설, 시간연장형보육시설, 24시간보육시설, 휴일보육시설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각 년도.

유치원종일제[7]의 경우에는 2007년 종일제 유치원의 비율이 53.8%로 전년에 비해 17.7% 감소하였다. 반면, 연장제 유치원의 비율이 전년대비 100%이상 증가하였으며, 종일제를 하지 않는 유치원은 모두 연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종일제 유치원이 감소하고 연장제 유치원이 증가한 것은 일부 종일제 유치원이 반일, 종일, 방과후 등 학부모의 수요을 반영하여 혼합형으로 성격을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표 3-12 참조).

7) 유치원 연장제는 하루 5~8시간을, 종일제는 8시간 이상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2〉 유치원종일제 실시 현황(2006, 2007)

(단위: 개원, %)

구분	2006년				2007년				종일제 비율 증감
	종일제	연장제	총 유치원수	종일제 비율	종일제	연장제	총 유치원수	종일제 비율	
전국	5,930	1,799	8,290	71.5	4,463	3,831	8,294	53.8	△17.7
서울	711	91	908	78.3	494	396	890	55.5	△22.8
부산	364	6	375	97.1	176	204	380	46.3	△50.8
대구	203	16	281	72.2	183	103	286	64.0	△8.3
인천	229	81	318	72.0	175	159	334	52.4	△19.6
광주	224	0	235	95.3	123	114	237	51.9	△43.4
대전	118	112	224	52.7	110	122	232	47.4	△5.3
울산	81	70	175	46.3	84	96	180	46.7	0.4
경기	1,407	259	1,800	78.2	1,253	582	1,835	68.3	△9.9
강원	180	186	413	43.6	245	170	415	59.0	15.5
충북	203	116	345	58.8	156	190	346	45.1	△13.8
충남	480	51	541	88.7	394	126	520	75.8	△13.0
전북	507	0	516	98.3	232	282	514	45.1	△53.1
전남	604	18	622	97.1	247	362	609	40.6	△56.5
경북	191	488	730	26.2	186	529	715	26.0	△0.2
경남	390	232	696	56.0	314	376	690	45.5	△10.5
제주	38	73	111	34.2	91	20	111	82.0	47.7

주: 1) 2006년의 경우 종일제유치원과 연장제유치원의 합계가 총유치원수와 일치하지 않음. 당시 반일제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있기 때문이며, 2007년의 경우 모든 유치원이 종일제와 연장제로 운영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 통계」, 각 년도, 재구성.

바. 불임부부 지원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도입된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불임가정에 1회 평균시술비의 50%인 150만원씩 2회 지원[8]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07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14,337명에게 지원되었으며 이 중 31.0%에 해당하는 4,445명이 임신에 성공하였다(표 3-13 참조).

이 사업은 지원신청자에 대해 시행되는 것으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

8)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255만원씩 2회 510만원 지원한다.

고, 평균시술비가 고액(300만원)이며 한두번의 시술로 성공하는 사례가 적어 중간에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사업 관리가 어렵다. 더욱이 2007년 성과평가를 위해 지자체에서 작성한 자체평가서에 의하면, 사업실적을 평가할 성과지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서 수평적 비교가 불가능하다. 시·도에 따라서 신청자 대비 수혜율, 임신성공율, 예산 집행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목표의 설정이나 관리를 위해 시·도별 가임부부의 불임율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생산과 지표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표 3-13〉 불임부부 지원 현황(2006, 2007)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지원수	임신 성공수	임신 성공율	사업비	총출생아수
전국	–	14,337	4,445	31.0	28,100	496,710
서울	3,239	2,953	–	–	6,311	110,107
부산	–	735	217	29.5	1,348	28,223
대구	1,110	594	256	43.1	806	22,169
인천	796	591	–	–	1,122	26,538
광주	584	420	123	29.3	785	14,735
대전	180	430	–	–	768	15,705
울산	542	363	–	–	571	11,918
경기	2,987	3,866	–	–	6,647	125,614
강원	445	323	–	–	543	13,617
충북	241	339	–	–	531	14,924
충남	571	504	–	–	803	20,507
전북	413	316	–	–	562	17,111
전남	547	406	–	–	729	17,746
경북	–	608	271	44.6	1,116	24,947
경남	1,195	949	308	32.5	1,485	33,184
제주	–	174	–	–	256	6,143

주: 1) 전국자료는 중앙부처 자료이고, 지자체 자료는 지자체 추진실적3522 자료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총출생아수는 통계청의 2007년 출생통계 결과(2008.8)임.

자료: 중앙부처 및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사. 산모도우미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3인 기준, 198만원)의 출산가정이며, 2주 10일 동안 산모식사 및 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후조리원 및 가정방문산모도우미 등 민간서비스업은 팽창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이 커서 저소득층 산모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서비스 도입 후 신청자가 폭주하여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351.0%가 증가한 47,193명에게 지원되었으며, 2007년 출생아 대비 수혜율은 10.5%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출생아수 대비 수혜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경북(14.1%), 경남(12.9%), 충북(13.0%)에서 서비스 제공율이 높았으며, 서울(7.1%), 광주(8.6%), 울산(9.2%), 부산(9.3%) 등의 광역시에서 낮게 조사되었다.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80%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20%를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매칭펀드로 조성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신청자 폭주로 인해 조기 소진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에 대응하여 재원의 추가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전반에 관한 정책 호응도를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책정된 지방비만 집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재정자립도: 24.2), 경북(재정자립도: 21.9)에서 사업비 중 지방비의 비율이 각각 50.1%, 37.9%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성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3-14〉 시·도별 산모도우미 지원 현황(2006, 2007)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지원	총 출생아수	수혜율	사업비	지방비 비율
전국	10,464	47,193	449,027	10.5	16,600	–
서울	1,512	6,756	94,916	7.1	3,712	50.0
부산	423	2,388	25,705	9.3	1,110	20.0
대구	579	2,250	20,406	11.0	1,285	20.0
인천	693	2,262	23,886	9.5	1,238	20.0
광주	334	1,203	14,057	8.6	658	19.9
대전	379	1,455	14,653	9.9	799	20.0
울산	189	977	10,623	9.2	476	20.0
경기	2,553	13,337	116,583	11.4	5,795	20.0
강원	310	1,387	11,993	11.6	543	50.1
충북	1,100	1,711	13,123	13.0	807	19.8
충남	417	1,445	17,916	8.1	810	20.0
전북	393	1,587	14,617	10.9	872	20.4
전남	403	1,485	14,465	10.3	808	20.0
경북	638	3,059	21,735	14.1	1,677	37.9
경남	637	3,705	28,696	12.9	1,533	20.0
제주	113	530	5,653	9.4	291	19.9

주: 전국치는 중앙부처 자료이고, 지자체 자료와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총출생아수는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임.

자료: 중앙부처 및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아. 모성보호 사업

모성보호는 생리·임신·출산·수유 등 인구를 재생산하는 여성고유의 모성기능을 특별히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서 모성보호 관련 대표적 제도로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이다.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2001년 이전까지는 60일로 유지되고 있었고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3법의 개정을 통해 산전후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여성고용에 따르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30일분에 대하여 고용

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5년말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지원일수를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2001년 고용보험법 개정시 도입되었고, 만1세미만의 영아의 양육을 위해 남녀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매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생후 3년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가능 기간이 확대되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산전후휴가급여는 58,368명에게 908억 8,600만원이 지원되어 전년대비 지원인원 및 금액이 각각 19.2%, 45.7% 증가하였다. 육아휴직급여는 21,185명에게 345억 2,100만원이 지원되어 전년대비 지원인원 및 금액이 각각 55.0%, 76.7% 증가하였다. 또한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2004년 24.1%에서 2007년 36.3%로 증가하여 활용도가 많이 개선되었다.

〈표 3-15〉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2004~2007)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산전후 휴가급여	38,541	41,610	41,104	46,041	48,972	90,886	58,368	132,412
육아휴직급여	9,303	20,803	10,700	28,242	13,670	34,521	21,185	60,989
(지원액)	(월40만원)		(월40만원)		(월40만원)		(월50만원)	
산전후 대비 육아휴직의 비율	24.1		26.0		27.9		36.3	

자료: 노동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2007, 내부자료

주목할 만한 것은 2005년 이후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인원과 평균 육아휴직기간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2005년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율은 33.9%였으나 2007년에는 43.3%로 9.5%p 증가하였고, 남성 휴직자의 수도 143명에서 221명으로 54.5% 상승하였다. 아직은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 확대, 제도에 대한 홍보 확산 등의 효과로 판단된다.

〈표 3-16〉 기업 규모별 성별 육아휴직 현황(2005~2007)

(단위: 명, %, 일)

연도	전체 인원	중소기업			대기업		
		인원(%)	남자	평균 휴직기간	인원(%)	남자	평균 휴직기간
2005	10,700	3,629(33.9)	143	226	7,071(66.1)	65	203
2006	13,672	5,217(38.1)	152	230	8,455(61.8)	78	206
2007	21,185	9,179(43.3)	221	233	12,006(56.7)	89	210

자료: 노동부 여성고용팀 내부자료

2. 미래세대 육성

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는 '아동학대·방임의 조기 발견, 예방체계 구축',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효율성 강화', '아동학대 예방 홍보',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의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그림 3-3]과 같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16개 시·도에서 아동보호기관을 관리,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현장조사, 사후관리 등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하단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이 매우 다양한 것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취사선택 가능성은 개방되어 있다. 더욱이, 2007년 성과평가 자체평가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평가기준과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간 사업실적의 비교가 어렵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은 지원한 아동보호기관의 수, 아동학대 예방교육 횟수, 예방교육 인원, 아동학대 관리 건수 등으로 지자체마다 다양하며, 따라서 자체평가

서의 사업비 집행액이 어느 사업에 국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림 3-3〕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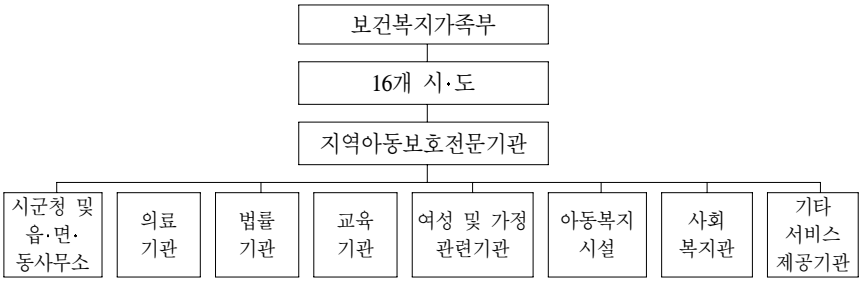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17>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사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기 세부영역에 포함되는 사업비를 합산[9]하여 제시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발견, 보호 체계 구축 사업은 9개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대전, 경남 등지에서는 중앙정부와 혼합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에는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다.

〈표 3-17〉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비(2007)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액	지방비 비율	구분	예산	집행액	지방비 비율
서울	651	651	100.0	강원	641	641	100.0
부산	148	148	100.0	충북	793	791	69.3
대구	232	232	100.0	충남	375	375	100.0
인천	25	25	100.0	전북	1,100	1,100	0.0
광주	–	–	–	전남	423	423	100.0
대전	293	293	42.3	경북	–	–	–
울산	220	220	100.0	경남	1,150	1,150	49.2
경기	682	682	78.6	제주	467	467	100.0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2007, 내부자료

9)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에 포함되는 세부과제는 4개이나, '실종아동조기발견' 사업은 2007년 성과평가에서 실적을 제출한 지자체가 3지역(전북, 전남, 경남) 뿐이라 제외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은 2007년 현재 전국 282개가 운영되고 서울이 46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기 28개소, 대구와 경남이 각각 25개소, 전남 23개소, 부산 22개소의 순이다. 2007년 시설 증감 현황을 보면 서울은 13개소, 대구는 7개소가 증설되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1~2개소가 증설되었다. 2007년 보호아동수는 18,426명으로 2006년에 비해 5.2% 증가하였다.

〈표 3-18〉 아동복지시설 현황(2006, 2007)

(단위: 개소, 명)

구분	2006년			2007년		
	시설수	종사자수	보호아동수	시설수(증감)	종사자수	보호아동수
전국	243	4,646	17,517	282 (39)	5,239	18,426
서울	33	863	2,916	46 (13)	1,052	3,412
부산	20	533	2,222	22 (2)	579	2,281
대구	18	272	977	25 (7)	317	1,080
인천	8	202	665	9 (1)	217	666
광주	9	199	746	11 (2)	226	809
대전	11	142	489	13 (2)	191	578
울산	1	37	125	1 (-)	36	119
경기	26	541	2,059	28 (2)	606	2,086
강원	9	134	546	10 (1)	144	573
충북	13	220	838	15 (2)	249	838
충남	14	196	853	15 (1)	219	857
전북	16	274	999	18 (2)	307	1,044
전남	21	403	1,516	23 (2)	426	1,499
경북	15	216	961	16 (1)	230	959
경남	24	316	1,247	25 (1)	344	1,282
제주	5	98	358	5 (-)	96	34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각 년도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 현황, 내부자료

아동복지시설 중 전국 4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상담 및 현장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 건수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상담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전남 등에서 아동학대 상담 비율이 높고 제주, 인천 등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아동학대 상담비율의 증감을 살펴보면, 부산이 전년대비 35.8%p나 증가한

반면 대구, 경북, 인천에서는 각각 20.1%p, 12.9%p, 10.4%p 감소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의심 사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2007년에는 전년대비 867회 증가하여 10,375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횟수는 1.5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2.3회), 울산(2.2회), 대구·인천(1.9회), 광주(1.8회) 등에서 전국평균 이상의 실적을 나타냈다. 반면, 대전(1.1회), 경기(1.2회), 충남(1.2회), 전남(1.2회), 부산(1.3회) 지역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3-19〉 아동학대 상담 및 현장조사 실적(2006, 2007)

(단위: 건, %, 명)

구분	2006년				2007년			
	전체 상담 건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상담비율	현장 조사 횟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횟수	전체 상담 건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현장 조사 횟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횟수
전국	8,903	72.5	9,508	1.5	9,478	74.7	10,375	1.5
서울	1,450	63.4	1,541	1.7	1,353	73.2	1,452	1.5
부산	463	43.6	281	1.4	698	79.4	737	1.3
대구	262	72.5	265	1.4	292	52.4	291	1.9
인천	570	66.7	660	1.7	588	56.3	642	1.9
광주	275	76.4	269	1.3	322	78.3	459	1.8
대전	296	84.8	267	1.1	252	82.9	221	1.1
울산	280	71.1	294	1.5	248	75.4	405	2.2
경기	1,802	76.4	1,693	1.2	2,047	79.7	1,970	1.2
강원	576	75.7	626	1.4	545	73.2	565	1.4
충북	413	77.0	480	1.5	519	75.5	631	1.6
충남	342	73.4	683	1.2	371	71.4	309	1.2
전북	409	83.1	957	1.6	459	83.2	562	1.5
전남	473	82.2	1,331	1.3	390	81.8	380	1.2
경북	572	83.7	1,827	1.5	664	70.8	748	1.6
경남	521	75.6	2,408	1.9	532	77.8	708	1.7
제주	198	58.6	2,708	2.7	198	66.2	298	2.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년도.

한편,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2006년에는 244,589명이, 2007년에는 422,843명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았다. 교육 횟수와 교육 참가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7년에는 교육 참가자수가 전년대비 75.5%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별로는 강원(336.8%), 울산(212.7%), 경남(201.6%) 등에서 높은 신장율을 보였으나, 광주, 인천, 대구에서는 각각 47.9%, 37.0%,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아동보호기관의 교육사업 실적(2006, 2007)

(단위: 명)

구분	2006년				2007년			
	계	일반	신고의무자	세미나	계 (증감)	일반	신고의무자	세미나
전국	244,589	213,617	27,714	3,258	422,843 (75.5)	402,707	17,704	2,432
서울	24,320	21,491	2,170	659	42,675 (54.8)	40,757	1,588	330
부산	5,702	4,411	1,291	0	8,827 (47.0)	7,881	946	0
대구	16,357	15,377	980	0	24,050 (△21.1)	23,327	423	300
인천	11,466	10,817	611	38	9,048 (△37.0)	8,864	184	0
광주	9,481	8,830	651	0	5,971 (△47.9)	5,851	120	0
대전	4,879	4,469	410	0	2,544 (150.4)	2,168	241	135
울산	6,026	5,134	779	113	15,091 (212.7)	14,236	821	34
경기	33,084	27,009	5,795	280	103,438 (28.6)	97,372	5,686	380
강원	18,223	16,824	1,399	0	23,430 (336.8)	21,927	1,373	130
충북	7,275	6,151	854	270	31,780 (16.2)	31,307	381	92
충남	18,112	13,622	4,300	190	21,050 (50.3)	20,575	405	70
전북	29,513	26,599	2,584	330	44,363 (53.4)	40,620	3,478	265
전남	16,164	13,304	2,408	452	24,791 (12.6)	24,406	55	330
경북	27,725	25,866	1,077	782	31,221 (118.6)	30,319	821	81
경남	11,631	10,571	916	144	25,422 (201.6)	24,188	1,025	209
제주	3,031	2,661	370	0	9,142 (72.9)	8,909	157	76

주: 신고의무자란 교직원, 의료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년도, 재구성.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상담, 현장조사,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실적에 대해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사업목표에 대비해 보는 것

외에 전국적인 비교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지역별 17세 미만의 아동인구 대비 아동학대 발생율을 하나의 지표로 하여 살펴보면, 서울, 대구, 경기, 충남, 경남 등에서 천명 당 5명 이하의 수준으로 낮은편이나 강원, 충북, 전북 등에서는 천명 당 8명 이상으로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시계열 측면에서는 부산, 광주에서 발생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아동학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인구 천명 당 9명의 높은 발생율을 나타내는 강원도의 경우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전년대비 교육생 증가율 336.8%)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횟수가 2007년 현재 1.4회인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선도 이전에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가해자를 음지에서 양지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충북, 전북 등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은 다른 지역에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0~17세 인구 천명 당 지역별 아동학대 발생율(2006,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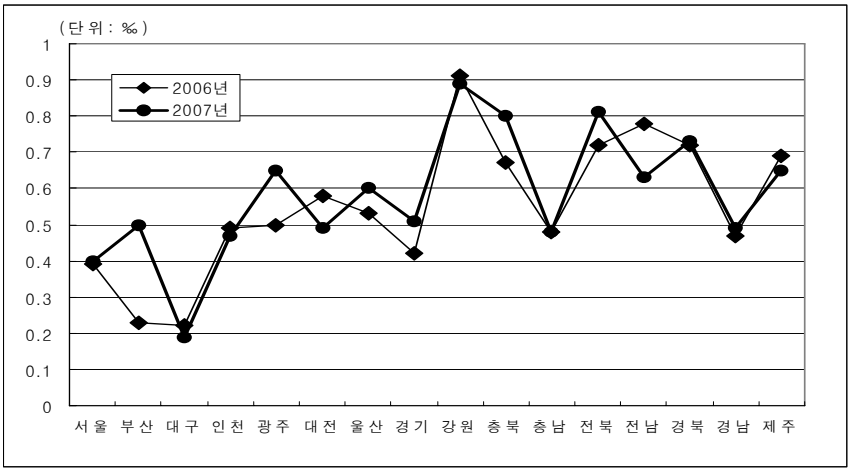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0~17세)
2)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년도, 재구성

나.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방과후 부모의 퇴근 전까지 아동·청소년이 방치됨으로써 결식은 물론, 각종 유해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탈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방과후학교(교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위원회(구)에서는 청소년공부방 등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학습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서비스는 대상연령과 장소, 운영시간, 급식제공 여부 등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유사하다.

〈표 3-21〉 부처별 방과후 프로그램 내용(2007)

구 분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위원회(구)
	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실		
대상연령 규모·장소	초·중등 학생 30명 기준, 학교유휴교실	초등 1~3년(6~8세) 30명 기준, 학교교실	18세이하 아동 5명기준, 복지시설	초등 4~6, 중등1~2 30~60명 기준, 청소년 시설
운영시간	방과후 운영 1일: 2시간내외 토요일 운영안함	방과후(13~17) 1일: 4시간 토요일 운영안함	방과후(13~19:30) 1일: 4시간 토요일 운영안함 일부 보육만 시행 (갈 곳 없는 청소년)	방과후(15~22시) 1일: 5시간 토요일 시행 - 휴무토(09:00~) - 보통토(12:00~)
지원예산	월 330만원 (학교당)	월 약 200만원 (교실당)	월200만원 (시설당)	월419～749만원 (시설당, 30명 기준시)
운영 특이사항	급식 없음 특기적성위주	간식 제공 보육과 학습지원위주	급식(간식) 보육과 학습지원위주	급식(저녁) 제공 학습지원, 생활지원, 전문선택체험지원

자료: 각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2007, 내부자료

이밖에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서비스사업으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희망스타트, 학교사회복지사 파견 사업, CYS-net[10] 등이 있는데,

2007년 시·군·구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표 3-22>와 같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복지시설의 공간을 활용한 방과후 아카데미는 2007년 현재 절반 이상(55.6%)의 시·군·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이나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은 대전, 광주, 울산 등의 광역시 지역에서 참여율이 높고, CYS-net 사업은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의 도단위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아동보호서비스별 시·군·구 참여 현황(2007)

(단위: 개소)

구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1)]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희망스타트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	CYS-net	시·군·구
서울	25	18	11	2	6	17	25
부산	16	6	5	2	5	5	16
대구	8	7	5	2	2	1	8
인천	9	6	4	1	5	4	10
광주	5	4	4	3	3	1	5
대전	5	4	4	1	4	2	5
울산	5	3	2	1	3	2	5
경기	31	20	2	4	4	31	31
강원	17	8	1	3	2	5	18
충북	12	6	1	1	2	3	12
충남	14	8	1	0	4	16	16
전북	14	9	3	2	6	14	14
전남	22	9	2	4	6	5	22
경북	19	9	2	2	6	12	23
경남	20	10	3	3	5	20	20
제주	2	2	1	2	2	2	2

주: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의미함.
자료: 지역아동정보센터, 「지도로 보는 전국지역아동센터 현황」, 2008년.

10)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은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임.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육성의 중심 축이 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2007년 설치율과 이용율을 살펴보면, 광주, 대전 등의 광역시에서는 각 동에 1개소씩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북(32.4%), 경남(38.4%), 서울(43.5%), 부산(49.6%) 등에서는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경북과 경남의 경우에는 읍·면 소재지의 경우 적정한 대상 아동수가 확보되지 못해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표 3-23 참조).

한편, 대구, 서울, 부산 등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의 발달 등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17세 기초생활수급자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의 비율이 대구가 7.4%로 가장 낮으며, 부산(13.1%)이나 서울(18.7%)도 저조한 편으로 현재의 지역아동센터로는 취약계층의 아동을 커버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커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이 지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청소년위원회 소관인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공부방은 2007년 전년대비 각각 75%(175개소), 2%(343개소) 증설되었다. 지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비해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방과후 아카데미의 확충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3〉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아카데미 현황(2007)

(단위: 개소, 명, %)

구분	지역아동 센터수	관내 읍면동 수	읍면동 대비 설치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	기초생활 수급자수 (6~17세)	저소득아동 대비 센터 이용 아동비율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전국	2,617	4,625	56.6	76,229	321,548	23.7	175	343
서울	262	602	43.5	7,483	40,012	18.7	24	0
부산	134	270	49.6	3,638	27,746	13.1	11	37
대구	60	193	31.1	1,677	22,729	7.4	8	19
인천	142	181	78.5	4,425	16,461	26.9	6	27
광주	143	142	100.7	3,830	16,566	23.1	6	16
대전	122	133	91.7	4,118	11,469	35.9	7	13
울산	49	77	63.6	1,330	4,477	29.7	0	4
경기	534	712	75.0	16,297	44,694	36.5	31	25
강원	114	229	49.8	3,416	12,944	26.4	8	27
충북	137	195	70.3	4,082	11,126	36.7	8	34
충남	125	266	47.0	3,302	14,825	22.3	9	0
전북	173	334	51.8	4,763	25,388	18.8	15	17
전남	279	369	75.6	8,336	23,379	35.7	12	20
경북	143	441	32.4	3,940	23,048	17.1	9	28
경남	158	411	38.4	4,091	21,083	19.4	13	50
제주	42	70	60.0	1,501	5,601	26.8	8	26

주: (구)청소년위원회 소관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의미함, 청소년 공부방은 2007년 「청소년백서」 자료임

자료: 지역아동정보센터, 「지도로 보는 전국지역아동센터 현황」, 2008년, 재구성.

다. 학교폭력 등 유해환경 차단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은 저출산 부문의 세부영역으로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매년 5%씩 감소시켜 5년 내에 25%를 경감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사업으로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례 집계가 어렵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사안을 축소,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고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각 학교에서 가해 학생의 징계라는 단순한 사후 처리로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며 양자간의

분쟁조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부는 예방적 시스템 강화에, 경찰청, 법무부 등 사법기관은 근절 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교내 폭력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자치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가해학생수는 2005년 6,604명에서 2007년 11,270명으로 70.7% 증가하였으며, 피해학생수는 2005년 4,567명에서 2007년 8,291명으로 81.5% 증가하였다. 2007년도에 가해·피해학생이 증가한 것은 2006년부터 교원·학생·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강화한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와 신고의식이 높아지는 등 단위학교 신고시스템이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교원·학생·학부모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학생들간의 장난으로만 취급했던 단순한 따돌림, 놀림, 추행 등의 경미한 사안까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피해학생 수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4〉 학교폭력 발생 추이(2005~2007)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6년(증감)	2007년(증감)
가해학생 수	6,604	6,267 (△337)	11,270 (5,003)
피해학생 수	4,567	5,752 (1,185)	8,291 (2,53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한편, 학교 폭력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 감시조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지역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자체 감시활동을 통해 해당 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신문잡지, 도서, 문화, 사진첩 등 인쇄매체

와 TV방송, 비디오물, PC통신 등 영상·통신매체의 건전화 유도를 위해 각 단체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반'을 구성·운영하였고, 이들 매체물의 청소년유해성을 조사·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청소년유해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세미나 개최, 각종 캠페인전개 및 유해업소 종사자 교육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중범위)'에 포함되는 지역네트워크 구성, 추진단체 운영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2007년 유해환경 감시단체는 전년대비 5.9% 증가한 393개 단체로 조사되었고, 감시단원은 6.1% 증가한 20,506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1개 단체(21.6%)가 추가되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확충률을 나타냈고, 대전(14.3%), 울산(12.5%)이 뒤를 잇고 있다. 감시단원의 경우 감시단체의 확충률이 높은 경기도의 전년대비 단원 증가율이 32.5%(752명)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12.8%), 충남(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 경남에서는 각각 5.6%, 3.1%의 감시단원 이탈율을 나타냈는데,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사회단체, 학교, 학부모 등의 자율적 활동 촉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3-25 참조).

〈표 3-25〉 유해환경 감시단 현황(2006, 2007)

(단위: 개소, 명, %)

구분	2006년		2007년			
	단체	단원	단체	증감수(%)	단원	증감수(%)
전국	371	19,322	393	22 (5.9)	20,506	1,184 (6.1)
서울	123	6,026	127	4 (3.3)	6,157	131 (2.2)
부산	28	1,116	29	1 (3.6)	1,206	90 (8.1)
대구	12	532	12	0 (0.0)	502	△30 (△5.6)
인천	12	526	12	0 (0.0)	526	0 (0.0)
광주	9	605	9	0 (0.0)	605	0 (0.0)
대전	7	465	8	1 (14.3)	465	0 (0.0)
울산	8	590	9	1 (12.5)	620	30 (5.1)
경기	51	2,313	62	11 (21.6)	3,065	752 (32.5)
강원	19	831	20	1 (5.3)	937	106 (12.8)
충북	9	618	9	0 (0.0)	618	0 (0.0)
충남	20	1,025	22	2 (10.0)	1,149	124 (12.1)
전북	11	509	11	0 (0.0)	509	0 (0.0)
전남	25	778	26	1 (4.0)	789	11 (1.4)
경북	16	2,105	16	0 (0.0)	2,105	0 (0.0)
경남	15	954	15	0 (0.0)	924	△30 (△3.1)
제주	6	329	6	0 (0.0)	329	0 (0.0)

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백서』, 각 년도.

3. 지자체 (우수) 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료 추가지원, 다자녀 우대 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한 것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자체의 자체사업임을 강조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 서비스의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하거나 명칭을 달리 하는 특징이 있다.

〈표 3-26〉 지자체별 주요 저출산 자체사업 추진 현황(2007)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산축하(장려)금품 지급	-	○	-	○	○	-	○	○	○	-	○	○	○	○	○	○
보육료 지원	○	○	○	○	○	○	-	○	-	○	-	○	-	○	○	-
다자녀 우대 카드	○	○	○	○	○	○	○	○	○	○	○	○	○	○	○	○

자료: 각 시·도,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사업별로 살펴보면, 출산축하금품 지원 사업은 16개 시·도중 12개 시·도에서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시·군·구별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출생아 수 등에 따라 지급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 경남 등에서는 셋째 이상 신생아 전원에게 20만원을 제공하였고, 울산, 강원, 전북, 전남에서는 30만원을, 제주도에서는 셋째아에 대해서는 50만원을, 넷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광주의 경우에는 쌍둥이 출산 가정에는 50만원, 세쌍둥이 이상의 출산 가정에는 100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자체의 자체평가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3,20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것은 2007년 성과평가를 위해 제출한 시·도의 자체평가서를 기준으로 하고 시·군·구비로 시행된 지원 사업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혜를 받은 대상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장려금(품) 지원 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지자체별로 기준 및 금액이 달라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회적인 장려금보다는 아동수당과 같이 매달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건의가 접수되었다.

〈표 3-27〉 지자체별 출산장려금품 지원 현황(2007)

(단위: 명, 백만원)

지역	실적	집행액	지역	실적	집행액
서울	–	–	강원	1,447	575
부산	2,055	396	충북	–	–
대구	–	–	충남	10,834	4,558
인천	537		전북	2,347	704
광주	168	42	전남	8,476	2,536
대전	–	–	경북	2,105	1,997
울산	913	273	경남	3,199	640
경기	–	6,835	제주	1,124	604

자료: 각 시·도,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정부에서 지자체와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육·교육비 지원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11개 시·도로 조사되었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나 대체로 둘째 혹은 셋째아 이상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10만원 내외의 실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사업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인데 비해 부산, 광주, 전북에서는 부모소득과 관계없이 24개월까지 지원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적 여건이 되는 경우 보육료를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서 지자체의 건의사항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매달 일정액의 양육비 지원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28〉 보육료 추가 지원 자체 사업 현황(2007)

(단위: 명, 백만원)

지역	실적	집행액	지역	실적	집행액
서울	122,000	38,644	강원	–	–
부산	976	1,176	충북	5,735	6,212
대구	912	1,654	충남	–	–
인천	2,168	4,530	전북	978	1,167
광주	417	136	전남	–	–
대전	1,151	2,730	경북	1,666	2,900
울산	–	–	경남	2,316	3,575
경기	16,905	44,745	제주	–	–

자료: 각 시·도,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다자녀 우대 카드는 부산에서 시작하여 2007년 말 현재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다둥이행복카드’(서울), ‘대구 아이조아카드’, ‘아이사랑카드’(광주), ‘경기 i PLUS카드’, ‘반비多福카드’(강원), ‘아이사랑보너스카드’(충북), ‘다사랑카드’(충남), ‘아이조아카드’(전북), ‘아이조아카드’(경북), ‘경남 i다누리카드’, ‘제주 아이사랑 행복카드’ 등이 현재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우대 카드의 홍보, 참여 및 협력업체의 확보 등 사업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 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카드업계에서는 카드회원 확보라는 장점 때문에 사업에 우호적이나, 카드사용이 해당 지자체에만 국한되는 등의 이유로 카드의 활용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유인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자녀 우대 카드의 가입 기준을 일원화하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지점이나 대리점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실적이 부진한 바, 공기업이나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및 유인책이 필요하다. 요컨대, 본 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

기는 하지만 이미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국화한 사업으로서,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측면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부문의 핵심 사안인 일·가정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있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득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시·도청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자녀 직원(교원)에 대한 인사가산점 부여, 직원이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을 지급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관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솔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3-29〉 시·도(교육)청 내 출산장려 사업(2007)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교육)청내 보육시설 신설	-	-	-	○	-	-	○	-	-	-	○	-	○	-	-	-
인사 우대(가산점)	○	○	-	○	-	-	-	-	-	○	○	-	○	-	-	○
출산축하금 및 보육수당	-	-	-	-	○	-	-	○	-	○	-	-	-	-	-	-

자료: 각 시·도,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이밖에 지자체의 특징적인 사업으로는 경남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사업이 있다. 군지역에서 출생아의 감소와 가임여성의 전출 등으로 산부인과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남에서는 산부인과 없는 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정기적인 산전진찰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자원 등 각 지역의 차별적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인구정책 경진대회라든지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업의 개발은 미흡한 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의 자체사업이 지역의 인구, 자원 등 제반환경에 대한 면밀히 분석과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

증 없이 경쟁적인 출산장려금 지급 등에 국한된 모습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정책 개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업무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역 인구 동태에 대한 분석, 지역민의 정책 욕구 파악, 정책 개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정책 개발을 맡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제2절 고령사회 대책

노인인구 비율의 급증 추세에 따라 노후생활안정은 사회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노후생활안정은 노인의 4대 문제인 빈곤, 질병, 무위, 고독으로부터 벗어나 자립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달성가능하다. 고령사회대책은 노후생활안정을 저해하는 제요인에 대한 사전·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전적 대책 마련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노인세대가 되는 2020년까지는 실질적인 고령사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면 미래시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양을 위한 대규모의 재정소요와 이에 따른 신·구세대간 갈등 문제가 증폭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고령사회가 몰고 올 여러 변화와 파장들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마련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고령사회대책은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보장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을 구성하고 있으며, 노인세대들을 위하여 품위있는 노후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대목표로 하고 있다.

1. 노후 소득 및 생활 보장

가. 경로연금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은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생계비의 적정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노후소득원 확보를 통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가가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내실화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소득보장제도의 확충도 동시에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중인 여러 시책은 중고령자 이하 세대의 고령층 진입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 제도개선이 주를 이루며, 이미 고령인구로 편입된 세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이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추진하면서 연령제한으로 가입할 수 없었던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으로 1998년도부터 경로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11]. 1998년 제도도입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8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월50천원, 65~79세 노인에 대하여는 월 40천원이 지급되었고,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로서 저소득노인인 경우 월20천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2007년까지 저소득 노인인 경우에만 35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

11) 경로연금제도는 기존의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노령수당제도를 흡수·통합한 제도이다.

급액의 변화는 없다. 경로연금 수급대상자수는 1998년 55만명에서 2007년 6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경로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619천명을 대상으로 집행되었으며, 집행액은 3,127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혜대상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남이 87천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76천명), 경북(69천명), 서울(59천명)의 순으로 수혜자가 많은데, 전체인구수가 많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노년층 인구가 많고 소득수준이 낮은 도지역이 경로연금 수혜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65세 이상 노인인구대비 수혜자비율로 살펴보면, 역시 전남(25.6%), 충남(17.8%), 경북(17.3%), 전북(17.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30 참조).

2006년과 2007년의 경로연금 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경로연금 수혜자수가 감소한 지역은 전남(6.0천명), 전북(4.0천명), 경북(2.3천명), 충남(1.8천명)의 순으로 총 7개 시·도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반해 수혜자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경기(7.6천명), 서울(4.5천명), 부산(2.2천명), 대구(1.7천명)의 순으로 9개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고령화율 상승에 따라 고령층에 신규 편입되는 저소득노인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나, 감소한 지역의 경우 지역담당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경로연금을 지급받던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들이 이미 평균수명을 초과한 상태인 75세 이상의 연로한 노인으로서 이들의 사망이 수혜자수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표 3-30〉 경로연금 집행실적(2006, 2007)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2007년 인구			2006년		2007년			증감	
	총인구	65세이상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수혜율	인원	집행액
		인구수	비율							
전국	48,456,369	4,810,363	9.9	617,142	308,773	618,856	312,755	12.9	1,714	3,982
서울	10,025,669	807,993	8.1	54,168	29,366	58,641	30,888	7.3	4,473	1,522
부산	3,525,220	340,721	9.7	34,908	18,460	37,116	19,386	10.9	2,208	926
대구	2,470,247	217,462	8.8	19,792	10,517	21,000	11,282	9.7	1,208	765
인천	2,612,866	199,731	7.6	18,638	9,725	19,130	10,256	9.6	492	531
광주	1,445,067	112,550	7.8	14,701	3,587	14,130	7,183	12.6	△571	3,596
대전	1,486,644	112,910	7.6	11,778	5,949	12,104	6,283	10.7	326	334
울산	1,079,825	63,840	5.9	5,113	2,664	5,380	2,785	8.4	267	121
경기	11,039,291	854,159	7.7	68,272	37,300	75,832	38,622	8.9	7,560	1,322
강원	1,470,447	203,563	13.8	33,933	16,440	32,918	15,710	16.2	△1,015	△730
충북	1,483,401	188,820	12.7	27,185	13,546	27,351	13,463	14.5	166	-83
충남	1,936,266	285,584	14.7	52,546	25,578	50,773	24,404	17.8	△1,773	△1,174
전북	1,770,698	269,030	15.2	50,332	25,440	46,374	25,100	17.2	△3,958	△340
전남	1,806,644	338,509	18.7	92,774	44,043	86,736	41,656	25.6	△6,038	△2,387
경북	2,634,627	399,467	15.2	71,290	35,322	68,983	34,399	17.3	△2,307	△923
경남	3,124,921	355,395	11.4	52,995	26,337	53,893	26,949	15.2	898	612
제주	544,536	60,629	11.1	8,717	4,499	8,495	4,389	14.0	△222	△110

주: 1) 전국치는 중앙부처 자료이고 지자체 자료와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총인구와 65세이상 인구수는 통계청, 2007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자료: 중앙부처 및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2008년부터 경로연금이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었고, 전체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1만명에게 1인당 월84천원이 지급된다.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 적용하고 7월부터는 하위소득 60%인 65세 이상 노인에까지 지급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지급대상을 하위소득 70%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는 제도에는 경로연금 외에 장수수당, 노인교통수당이 있다. 장수수당은 개별 지자체에서 조례로 80~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월30천원 등 일정액을 지급하였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월8~16천원씩 지급하였다. 그런데 제도변화에 따라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노인들이 있다. 즉 새로운 제도하에서 기

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기존의 장수수당이나 노인교통수당까지 받게 되지 못하는 노인이 발생하게 된다. 수혜가 박탈되는 노인을 위해 상당수 시·도에서 장수수당과 노인교통비를 당분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9년부터 전면 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은 되도록이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신뢰성에 손상을 입어 정책적 반감이 강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른 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전이될 수 있다. 기존 제도보다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혜택의 정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정책이라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소수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노인들 중 하위소득 60%초과자로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있어 노인교통비 등은 얼마되지 않는 적은 액수임에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효용가치가 높은 금액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변경을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친 후 자연스럽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7.9세이나('05)이나 건강수명은 67.8세('05)로, 약 10년의 기간을 와병 또는 질환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5~74세 노인인구대비 7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05년 75.2 : 24.8에서 2015년 70.4 : 2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와병 또는 질환상태에서 생활하는 노인수가 증가하고 와병기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노인인구는 상대적으로 의료수요가 큰 계층으로서 이들의 증가는 의료·요양 수요 및 진료비의 급증으로 이어져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

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인의료비로 인한 미래의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생활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의 의하여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고,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주로 동·리)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전국에 보건소는 251개소, 보건지소는 1,280개소, 보건진료소는 1,91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강화 사업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기다리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개선하여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12].

시·도에서 제출한 보건소기능 강화 실적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 시·도에서도 2006년 실적과 2007년의 실적치 단위가 서로

12) 보건소의 주요기능을 저소득층 진료 및 전염병 관리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로 전환하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의 중요영역인 식생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건강상태 등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방문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 건강상담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주민에게는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고위험 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적절한 치료정보, 식이요법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이하여 시·도별 비교가 가능하지 못하다. 대상수를 기준으로 2007년 가장 높은 방문보건사업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91,780명)이며, 그 다음 순으로 경남(69,260명), 경북(60,103명)이다. 그리고 전년과 대비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161%), 서울(121%)의 순이다. 충남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사업비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증가폭으로 보아 2007년부터 사업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경우 사업비 감소폭이 가장 큰 것(65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충남은 실적제출한 시·도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9명의 방문보건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방문보건사업 DB화를 위한 원격화상의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타 시·도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도입하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또는 와병상태의 노인들은 대다수가 민간의료기관을 빈번히 이용할 정도의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거동조차 자유롭지 않은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은 보건소이며, 이들의 지속적인 역할 강화가 매우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면적이 넓으면서 도시화가 늦은 도지역이 특·광역시 지역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의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이 있는데 비해 사업비 집행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이 밀집된 특·광역시 지역보다 도 단위 지역에 보건소의 역할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앙단위에서의 불충분한 지원을 지방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나, 도단위 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수를 감안한 적절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31〉 보건소 수 및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2006, 2007)

(단위: 명, 개소, 가구수, 백만원)

구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계	2006년		2007년		증감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전국	251	1,280	1,911	3,442	-	-	-	-	-	-
서울	25	1	-	26	41,500	923	91,780	4,228	50,280	3,305
부산	16	9	5	30	4개 사업	1,562	16개소	3,537	-	1,975
대구	8	9	9	26	8,332가구	597	18,750	1,560	-	963
인천	10	22	25	57	7,148가구	332	29,339	1,310	-	978
광주	5	1	10	16	-	-	-	-	-	-
대전	5	8	8	21	-	-	-	-	-	-
울산	5	9	11	25	-	-	5,041	476	-	-
경기	45	123	162	330	-	-	-	-	-	-
강원	18	96	131	245	123,994회	50	41,610	2,141	-	2,091
충북	13	93	163	269	83%	34	44,420	1,604	-	1,570
충남	16	158	239	413	42,649가구	11,050	16개소	4,549	-	△6,501
전북	14	146	240	400	-	-	-	-	-	-
전남	22	209	331	562	-	-	-	-	-	-
경북	25	217	312	554	-	-	60,103	3,056	-	-
경남	20	167	219	406	26,513	158	69,260	4,151	42,747	3,993
제주	4	12	46	62	-	-	-	-	-	-

자료: 1)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2) 보건복지가족부, 『2007 보건복지통계 연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사업은 도시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건강관리 취약지역에 보건지소를 우선 설치하고, 농어촌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도시 및 농촌지역 보건지소가 방문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은퇴한 의료인력 및 민간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는 등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인프라 개선실적을 살펴보면, 충남 67개소, 강원 44개소, 경남 5개소의 순으로 개선 또는 확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도에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개선·확충이 이루어졌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주사업내용이 대표적 공공보건의료기관

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경남의 경우를 보더라도 525병상 규모의 공립노인전문병원 4개소를 신·증축하였고, 150병상규모의 어린이병원 1개소를 건립 중(공정률 40%)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외에, 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선·확충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도시지역 저소득층 노인이나 도지역 노인들에 있어서 접근성이 높은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 경우 채산성 악화로 폐업 또는 전업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등 도지역의 보건의료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시·도의 경우 의료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는 의료공급에 대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의 채산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한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32〉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2006, 2007)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1개소	418	-	-	-	-
부산	-	-	1개소	194	-	-
대구	11,185	750	12,500	420	1,315	△330
인천	-	324	2개소	1,872	-	1,548
강원	26개소	6,192	개선 44개소	10,230	18개소	4,038
충남	5개소	4,964	개선 67개소	14,371	62개소	9,407
경남	4개소	84,800	5개소	22,000	1개소	△62,800
제주	-	-	17,245	607	-	-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는 다수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치보철사업 등 노인구강질환을 관리하고 노인 등 구강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방문하여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로 노인 구강증진서비스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이 1,48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경북(1,064명), 경남(1,039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서비스 지원액은 평균 130만원 수준이다. 서비스 실적이 2006년에 비해 감소한 지역은 서울(329명), 충북(74명), 대구(53명) 등 3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소한 지역의 경우 사업비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별 서비스 수준을 높여 제공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실적과 집행액이 152명, 204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광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상 큰 변화없이 전년도에 준하는 정도에서 사업이 추진되

고 있다. 치아는 음식물을 섭취하여 인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치아건강은 노인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고령노인입장에서 의치보철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많은 비용 때문에 접근이 어려울 것이므로 예산증액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33〉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2006, 2007)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1,811	2,153	1,482	2,164	△329	11
부산	506	660	519	696	13	36
대구	348	424	295	400	△53	△24
인천	-	-	618	557	-	-
광주	39	52	191	256	152	204
울산	91	131	106	145	15	14
경기	1,133	1,493	-	-	-	-
강원	532	714	588	716	56	2
충북	448	522	374	504	△74	△18
충남	-	-	556	848	-	-
경북	1,025	1,359	1,064	1,416	39	57
경남	866	1,137	1,039	1,180	173	43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운동의 생활화는 노인들의 정신적·신체적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노인 의료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노인의 만성퇴행성

질환의 주 요인이 운동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에 기인할 수 있고,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문화체육센터 등에서 노인 건강 및 체육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부족으로 여전히 활성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지정은 보건소를 대학,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노인건강증진사업 허브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노인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보건소 운동전문인력을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공원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순회파견하여 운동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허브보건소 지정·운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2개소를 허브보건소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은 각각 1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다. 사업비 집행액에 있어서는 광주, 강원,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비 규모도 보통 76백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건강대학 운영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노인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실적을 제출한 지역의 경우에도 사업비 규모가 20백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허브보건소 지정운영과 노인건강대학 운영(2006, 2007)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지정·운영				노인건강대학 운영	
	2006년		2007년		2007년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80명	19	263명	20	4,425명	20
부산	1개소	81	1개소	76	-	-
대구	1개소	53	1개소	21	1,450명	20
인천	13,829명	83	-	76	-	-
광주	850명	38	1,070명	76	-	-
대전	-	-	-	-	1개소	16
울산	4,400명	85	2개소	75	-	-
경기	-	-	-	76	-	-
강원	105명	46	-	76	-	-
충북	17.5%	76	-	-	-	-
충남	1개소	86	-	-	60명	76
전북	3,691명	85	3130명	76	-	-
경북	1개소	85	1개소	76	-	-
경남	1개소	85	1개소	21	1개소	20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전국노인건강대축제는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매년 9월경 건강체조,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 7개 종목을 선정하여 경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노인생활체육대회는 한국체육진흥회 주관으로 제기차기, 이어달리기 등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도 단위로 노인생활체육대회가 펼쳐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실적이 제각각이라 전국단위 참가를 위한 예선전 또는 지역단위 축제 및 대회 개최에 참여하는 노인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지원액 규모도 1백만원에서 135백만원으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노인건강체조, 에어로빅, 요가, 기체조 등 건강운동사업을 추진하며, 노인운동 전문인력을 지역 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 노인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지도한다. 가장 많은 전문인력을 배치 또는 파견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41명)이

며, 그 다음으로 서울(32명), 경북(28명), 전남(27명)의 순이다. 인천은 각 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국가자격증 소지자(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가 지역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체조, 스트레칭, 요가, 게이트볼 등 노인형 프로그램을 지도·보급하고 있다.

〈표 3-35〉 전국규모 노인건강축제 및 노인생활체육 대회 개최 지원 및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확대를 통한 노인운동 활성화(2006, 2007)

(단위: 회, 종목, 명, 백만원)

구분	전국규모 노인건강축제 및 노인생활체육 대회 개최 지원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확대를 통한 노인운동 활성화	
	2006년		2007년		2007년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7종목	197	9종목	1	32	634
부산	100명	60	7종목	100	19	390
대구	3회	81	-	60	8	180
인천	192명	93	-	120	41	316
광주	-	-	13	60	-	-
대전	1회	37	1	50	8	124
울산	985명	60	692명	70	-	-
경기	7종목	60	209	130	-	-
강원	1회	83	77팀	113	-	-
충북	250명	56	1회	40	16	320
충남	-	-	1회	88	-	-
전북	3회	476	3회	133	21	410
전남	1회	40	5,000	40	27	560
경북	1회	60	210	135	28	560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노인 요양인프라 확충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 수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수발보호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간병비용 부담은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

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및 가사지원 등 수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2007년 노인수발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실시지역으로 부산, 광주, 경기, 강원, 경북, 제주 등 6개 지역이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13개 시·도의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2008년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이에 필요한 요양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해 2006~2008년 3개년간 노인요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계획·추진되고 있다.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또는 개선 실적을 살펴보면, 전남이 사업실적(150개소)뿐 아니라 집행액면(484억)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경기(64개소, 283억), 경남(49개소, 367억), 부산(31개소, 284억)의 순이다. 확충·개선 실적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56개소), 전남(31개소) 등인 반면, 감소한 지역은 울산(12개소), 충북(11개소) 등인데, 이들 지역은 이미 2006년도에 많은 확충·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가장 활발한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 전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2006년에 119개소를 확충·개선하였고 이를 위해 435억원을 투입하였다. 2007년에는 환경개선 등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94개소(요양시설 42, 재가시설 52)에 대하여 255억원(요양시설 202억원, 재가시설 53억원)을 지원하였고, 요양 및 재가복지시설 신축, 증개축, 장비보강 등 56개소(신축 25, 증개축 4, 장비보강 27)에 229억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했다.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사업은 대규모의 초기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투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표 3-36〉 노인수발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및 노인요양인프라 종합 투자계획 수립·시행(2006, 2007)

(단위: 개소, 명, %, 백만원)

구분	노인수발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노인요양인프라 종합 투자계획 수립·시행					
	2007년		2006년		2007년		증감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	-	69%	-	19개소	14,510	-	-
부산	406	1,367	4개사업	28,242	31개소	28,423	-	181
대구	-	-	7개소	10,897	-	-	-	-
인천	-	-	14개소	8,174	24개소	9,909	8개소	1,735
광주	607	2,900	-	-	7개소	6,210	-	-
대전	-	-	2개소	3,098	3개소	3,104	1개소	6
울산	-	-	21개소	4,240	9개소	3,646	△12개소	△594
경기	2,000	250	8개소	10,454	64개소	28,274	56개소	17,820
강원	539	14	76.1%	11,482	2개소	3,204		△8,278
충북	-	-	29개소	14,096	18개소	8,990	△11개소	△5,106
전북	-	-	210개소	7,314	13개소	23,738		16,424
전남	-	-	119개소	43,516	150개소	48,440	31개소	4,924
경북	1,100	418	-	-	-	-	-	-
경남	-	-	49개소	17,773	49개소	36,697	-	18,924
제주	568	1,212	4개소	2,782	3개소	1,605	△1개소	△1,177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마.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가족부의 치매노인 추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8.3%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노인 수도 2004년 34만7000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8년 41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표 3-37〉 치매 노인수 추계(1997~2020)

(단위: 천명, %)

구분	1997	2003	2004	2005	2010	2015	2020
65세 이상 노인수	2,929	3,969	4,171	4,365	5,302	6,345	7,667
치매노인수	243	329	346	362	456	571	690
치매유병률	8.3	8.3	8.3	8.3	8.6	9.0	9.0

자료: 보건복지부, 『2005 보건복지 백서』, 2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치매환자 및 진료비 현황(2003~2007) 분석 결과에서도 실제 치매 진료를 받은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치매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는 2003년 48,797명, 2004년 59,934명, 2005년 70,161명, 2006년 84,455명, 2007년 117,854명으로 5년 사이 2.4배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초기 환자가 진료를 머뭇거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치매노인수 추계결과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치매는 고령층에서만 한정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령층 이하에서도 발견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치매진료 환자 중 65세 미만 치매환자가 지난 5년 동안 7,310명에서 11,256명으로 54%나 증가해, 2007년 한 해 동안 치매로 진료를 받은 사람 10명 중 약 1명이 초로기 치매환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65세 미만의 치매환자인 초로기 치매환자가 급증해 치매조기발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연도별 치매환자 현황(2003~2007)

(단위: 명,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03~'07)
64세 이하						
인원수	7,310	7,782	8,655	9,436	11,256	3,946
(비율)	(15.0)	(13.7)	(12.3)	(10.8)	(9.6)	(54.0)
65세 이상						
인원수	41,487	49,152	61,506	78,019	106,598	65,111
(비율)	(85.0)	(86.3)	(87.7)	(89.2)	(90.4)	(156.9)
계	48,797	56,934	70,161	87,455	117,854	69,057

자료: 임두성 의원 국감자료, 의약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6.)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는 치매환자 등록·관리 체계 구축하고 보건지소의 노인방문사업과 연계하여 치매환자를 주기적으로 검진한다. 2007년도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강화실적을 보면, 부산, 전북, 충북, 인천이 각각 16개소, 14개소, 13개소, 12개소의 보건소에 대하여 치매상담센터의 기능

을 개선·강화했으며, 등록·관리 또는 검진 인원수로는 경남(31천명), 광주(28천명), 경기(27천명), 서울(23천명)의 순으로 치매노인을 관리하였다.

치매는 퇴행성 신경질환의 대표적인 예로서 중증인 경우 실종가능성이 매우 높아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이외에도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과 운동장애 현상을 가져오는 파킨슨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이들은 의사나 환자들이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치료를 늦게 시작하는 질병으로서 아직 유병률조차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조기진단에 의해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을 무리없이 해낼 수 있으므로 치매의 범주내에 포함시키고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표 3-39〉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2006, 2007)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2,047	190	22,700	4,747	20,653	4,557
부산	12개소	60	16개소	80	4개소	20
대구	467	44	525	40	58	△4
인천	10개소	2,687	12개소	3,734	2개소	1,047
광주	3,512회	14	27,756	121	-	107
대전	4,215	35	2	222	-	187
울산	220	115	-		-	-
경기	51개소	8,038	26,565	15	-	-
강원	3,592	53	11,461	53	7,869	-
충북	13개소	171	13개소	305	-	134
충남	-	-	2,275	710	-	-
전북	9,179	35	14개소	110	-	75
경북	1,166	60	1,635	59	-	-1
경남	8,292	186	31,466	286	-	100
제주	4개소	15	576	52	-	37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립 치매병원 건립을 확대하고 있다. 공립 치매요양병원의 확충은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을 위해 100억원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지역은 경북(2개소 137억원), 경기(212병상, 137억원), 충남(3개소 340병상, 131억원), 충북(1개소 130억원)이며, 그 외 지역은 수십억원 규모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3-40〉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2006, 2007)

(단위: 개소, 병상,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	-	진척율	1,968	-	-
부산	2개소	3,668	1개소	4,151	△1개소	483
대구	1개소	1,224	1개소	4,380	-	3,156
인천	-	-	103병상	3,152	-	-
경기	-	-	212병상	13,652	-	-
강원	-	-	2개소	5,975	-	-
충북	-	-	1개소	12,986	-	-
충남	-	-	3개소 340병상	13,100	-	-
전북	2개소 140병상	5,642	1개소	1,884	△1개소	△3,758
전남	180병상	4,352	2개소	3,396	-	△956
경북	2개소	9,765	2개소	13,714	-	3,949
경남	4개소	3,196	4개소	5,461	-	2,265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치료 및 보호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치매환자를 사례별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이 각각 1,174명, 1,550명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원으로 전환시 시설 개·보수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 서울이 각각 650병상, 107병상의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였다.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적보고에서 차상위계층 이하 중증치매노인에 대한 재가돌보미 바우처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때 치료 및 보호가 한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환자가족에 대한 교육훈련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사례관리와 교육훈련은 고도로 발전되고 있는 정보기술을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허브보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표 3-41〉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 및 보호의 비용효과성 제고 및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원으로 전환시 시설 개·보수비 융자 지원(2007)

(단위: 명, 개소, 병상, 백만원)

구분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 및 보호의 비용효과성 제고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원으로 전환시 시설 개·보수비 융자 지원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1,174	2,000	107병상	10,475
부산	1,550	2,427	-	-
대구	-	-	650병상	20,000
전남	-	-	1개소	3,000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바.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

운동에 관심있는 국민을 위한 체육활동 참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인프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체육인프라 활용도제고 및 개방확대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국 공공체육시설과 간이운동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전국 공공체육시설과 간이운동장은 총 8,026개소이며, 총면적은 28,636㎡이다. 가장 많은 시설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며 각

각 1,675개소, 10,395㎡로서 시설수 기준으로 20.9%, 면적 기준으로 36.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지역으로 1,581개소와 3,503㎡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전체면적이 좁은 광역시(서울, 부산 제외) 지역보다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수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체육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개방 확대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운동장 또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강원, 대전, 부산지역으로 강원은 725개 관내 전체학교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대전은 262개교의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개방하였고, 부산은 152개교의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였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전남과 제주로서 각각, 전남 6개교, 제주 2개교에 대하여 잔디운동장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 충북은 8개소의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며, 서울은 인조잔디운동장 12개소 조성사업과, 학교체육시설 개방활성화 사업으로 운동장 96%, 체육관 85%, 수영장 86%의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운동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체육관련시설의 유기적 연계 활용 및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지만, 학교 운동장을 제외한 주민선호 체육시설의 개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실적보고에 의하면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 중심의 운동공간 확충 사업은 주거지역 인근에 수요자 중심의 운동공간을 확충하고, 생활체육공원, 소규모 체육관, 자전거 도로 및 등산로 등 다양한 운동시설을 정비·보급하고 학교잔디운동장을 확대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운동참여를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강원은 1운동장 1체육관 건립 4개교, 생활권체육시설 설치 19개소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외에 별도로 인조잔디운동장 8개교를 조성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부산은 26개교에 대하여 체

육관, 다목적 강당, 잔디운동장 등을 조성하였고, 경기는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갖춘 7개소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비예산으로 실적을 보고한 서울은 스포츠교실 운영을 통하여 2,218명이 참여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은 성인위주의 동호인 클럽을 전 연령대가 참여하는 선진형 클럽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분야는 각각 상이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 다양한 종목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자율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 학교 대상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운동할 공간이 부족한 지역 특히, 도시지역일수록 공공체육시설과 운동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 개방확대와 활용도 제고에 적극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가진 시·도가 좀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운동공간 확충이 학교외 주거지역 등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포츠클럽도 주로 학교 동아리활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밀집되고 협소한 도시공간에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정책도입 취지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유의 소규모 유휴공간이라도 용도를 변경하여 시민들이 편히 휴식과 운동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3-42〉 공공체육시설 간이운동장 현황 및 체육인프라 활용도 제고(2007)

(단위: 개소, ㎡, 개교, 명, 백만원)

구분	공공 체육시설-간이운동장		체육인프라활용도 제고 및 개방확대		수요자 중심의 운동 공간 확충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개소	면적㎡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전국	8,026	28,636	-	-	-	-	-	-
서울	1,581	3,503	12개소	4,800	2,218명	-	80교	-
부산	364	1,238	152교	-	26개교	15,901	242교	46
대구	197	505	-	-	3개교	1,200	404교	87
인천	322	815	-	-	-	-	-	-
광주	160	442	-	-	2교	700	3회	40
대전	150	299	262교	-	6개교	2,092	530개교	50
울산	98	463	-	-	-	-	-	-
경기	1,675	10,395	-	-	7개소	8,810	74교	164
강원	469	1,166	725교	-	23개소	18,900	13종목	610
충북	302	1,381	8개소	12,049	17개소	154	-	-
충남	415	1,194	-	-	-	-	-	-
전북	405	1,356	1160명	174	4개교	2,022	7개클럽	120
전남	498	1,258	6개소	3,345	5개소	3,500	-	-
경북	593	1,793	-	-	1개소	1,161	2개	300
경남	691	2,406	-	-	-	-	-	-
제주	106	422	2개교	810	-	-	-	-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7.

식생활 및 생활양식의 변화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해 유아 및 청소년의 신체활동기회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체격대비 체력 저하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 및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보급·개선하고 유아·청소년의 체육 인식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학부모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의 건강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을 추가·보완하고 학생별 건강체력 측정결과에 따라 맞춤형 운동처방도 실시하고 있다. 부산은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 페이지에 유아체육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557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서울은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초체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보급하고 있고, 그

외 시·도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각각 유사한 형태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육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 및 운동처방시스템 사업은 국민체육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센터에 운동처방 기능을 추가하며, 지역의 국민체육센터 내에 체력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운동처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체육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운동지도에 따른 생애주기별·건강수준별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부산은 관내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체력검사, 운동처방, 운동지도, 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민체력검사 및 체력단력회원 등록인원은 48천명에 이르고 있다. 전남은 수영장, 체력측정실, 헬스장, 건강상담실, 다목적 강의실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2개소을 설치하여 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충북은 80명의 체육전문인력을 관내 전 시·군에 배치하여 연인원 504천명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장애인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는 8개 장애인생활체육클럽 운영을 통하여 비장애인 클럽과 연계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참여여건을 조성하고 있고, 울산은 노인 및 장애인이 집에서도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35천명을 대상으로 보급하였다. 그리고 서울, 전남, 부산, 강원은 각각 10회 내외의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또는 지원하였다.

생활체육·운동 홍보 및 정보 제공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산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홍보지 24천부를 발간·배포하였다. 강원은 도민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등록인원 기준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87천명을 확보하고 있다.

유아 및 청소년기의 신체활동기회 부족으로 인한 체력저하의 사회적 우

려를 해소하기 위한 체육프로그램 보급과 관리, 정보제공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간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밀집하여 구성되어 있어 공원, 놀이공간 등이 풍족하지 못한 상태이며, 주로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에서의 내실 있는 체육활동이 요구된다.

〈표 3-43〉 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2007)

(단위: 개교, 명, 백만원)

구분	유아 및 학교체육 프로그램 보급 개선		체육전문인력 체계적 관리 및 운동처방 시스템 구축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생활체육·운동 홍보 및 정보 제공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100%	8	-	-	14회	949	-	-
부산	557교	16	48,200명	114	10회	176	24,000부	49
대구	1개교	500	-	-	8클럽	0.7	-	-
인천	370개교	188	-	-	-	-	-	-
울산	-	-	-	-	35,000명	50	65,000명	2
강원	725개교	-	-	-	8회	66	-	531
충북	463개교	9	80명	100	-	-	250회	1
전북	14시군	-	-	-	-	-	-	-
전남	-	-	2개소	1,200	11회	300	-	-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2. 노후 생활기반 조성

가.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차량소통 중심의 시설투자로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안전성 배려는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주로 저상버스 도입에 그치고 있다.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08대, 경기 89대, 인천 30대 등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한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기타 교통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은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의 육교 3개를 철거하

고 횡단보도를 복원하였고, 지하철 3곳에 엘리베이트와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서 휠체어를 탄 채 승차가 가능한 특수 차량 20대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인천은 인천지하철역사 2개역에 3대의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하였다.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조성사업이 저상버스 도입 위주에만 머물고 있는데, 횡단보도 복원과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도로·교통분야 정책전반에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안전성 배려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주요 노인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지정하고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서울이 3곳에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지정하였고, 울산은 7지역의 교차로를 구조개선하고, 1,200개의 신호등을 교체하였다. 충남은 노인보행을 위해 11개소에 대하여 갓길포장, 보도설치를 행하였다.

특·광역시 지역에서의 저상버스 도입은 활발한 반면, 도지역에서의 저상버스 도입은 저조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저상버스 도입은 도단위에서 중점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특·광역시 등 도시지역에서는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 전철, 택시 등 다양한 반면, 농어촌 등 도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동거리가 길며,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이 거의 버스에 한정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더구나 장거리를 크고 작은 짐을 운반하며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현실에서 고령자의 이동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도 단위에서는 저상버스의 보급이 저조한데 가장 주요한 원인이 재정부족으로 추측된다. 대당가격이 고액인 저상버스를 자치단체의 재정과 관계없이 50:50의 매칭펀드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투자

되는 매칭펀드의 비율을 조정하여 저상버스의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표 3-44〉 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2006, 2007)

(단위: 대, 백만원)

구분	고령자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06년		2007년		증감		2007년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194대	19,400	저상108대	10,800	△86대	△8,600	보호구역3	136
부산	7대	700	3개소, 저상7대	4,711	-	4,011	-	-
대구	-	-	20대	36	-	36	-	-
인천	40대	3,350	저상 30대	5,987	△10대	2,637	-	-
광주	2대	200	저상 10대	1,850	8대	1,650	-	-
울산	신호등865셀	2,996	-	-	-	△1,890	7지역	1106
경기	77대	7,700	저상 89대	8,900	12대	1,200	-	-
강원	6대	1,200	-	-	-	△1,200	-	-
충북	6대	600	저상 8대	800	2대	200	-	-
충남	-	-	-	-	-	-	11개소	790
전남	-	-	저상 1대	1,800	-	1,800	-	-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전체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버마크 부착 노인운전자 보호 캠페인 전개 등 실버마크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보행지원,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은 2,300명의 노인으로 구성된 기초질서봉사대를 조직하여 주 2회씩 교통 및 거리 질서 지키기 운동,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철도우미 500명이 1일 4시간 주 3회 근무하여 지하철 역사 내 승하차 질서유지 및 이용시민에 대한 각종 안내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원은 1시·군당 1개 이상으로 15개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1~2지역을 선정하여 노인보행자를 보

호·안내하고 있다.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특정지역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도시지역은 도로의 폭이 넓고 교통량이 많아 운동능력과 인지력이 약화된 노인에게 많은 위험이 따르고, 농촌지역은 교통량이 적은 반면에 도로 또는 농로의 폭이 좁아 청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순간적인 대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있어서도 단순히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나 신호등 교체에 한정되고 있다. 지역특성을 감안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노인은 고령화될수록 청력 약화, 주의력 감소, 공간인지능력의 쇠퇴가 발생하고 특히 치매증상까지 겹칠 경우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고령화 추세 심화와 더불어 갓길보행, 무단횡단, 농기구운행 관련 노인교통사고는 점증할 것으로 추측된다. 고령자 보행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전면허를 가진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노인의 특성에 따른 돌발행동 가능성에 관한 운전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운전면허시험과 주기적 적성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나.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보충적 소득지원, 노인의 경륜과 경험의 활용, 건강증진 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일자리 유형을 확대하고 일자리 유형별 사업목표 및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일자리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취업알선 실적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40,710명의 취업알선

이 이루어졌고, 경기(9,191명), 강원(4,354명), 서울(3,576명)의 순으로 취업알선실적이 높다. 2007년 자체실적보고서상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실적(누적인원)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서울로서 21,403명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했다. 그 다음 순으로 경기(15,800명), 경남(10,917명), 전남(10,212명), 전북(10,000명)이 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3-45〉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2006, 2007)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노인 취업알선 실적(2006)	2006년		2007년		증감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3,576	18,019	16,545	21,403	20,720	3,384	4,175
부산	2,675	6,886	7,471	8,614	11,275	1,728	3,804
대구	1,975	7,300	6,692	9,245	8,800	1,945	2,108
인천	2,627	23,452	2,492	1,973	3,296	△21,479	804
광주	768	3,691	2,156	3,975	5,898	284	3,742
대전	1,177	2,400	3,258	4,555	4,443	2,155	1,185
울산	858	1,509	1,846	2,238	3,062	729	1,216
경기	9,191	15,832	8,565	15,800	21,215	△32	12,650
강원	4,354	4,160	5,897	9,194	9,586	5,034	3,689
충북	1,790	3,381	4,414	4,682	6,301	1,301	1,887
충남	1,595	3,936	6,123	6,742	9,725	2,806	3,602
전북	1,745	6,625	7,600	10,000	12,352	3,375	4,752
전남	2,995	13,806	10,892	10,212	15,240	△3,594	4,348
경북	2,315	5,688	7,646	6,755	9,865	1,067	2,219
경남	2,584	8,942	10,043	10,917	13,681	1,975	3,638
제주	485	1,362	1,987	1,921	1,958	559	△2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 보건복지 통계연보』, 2007.

그런데 지자체에서 개발·보급한 일자리들은 여전히 단순노무 형태의 공익형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익형 일자리들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시적 일자리로서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복지적 측면의 의미가 강하다. 과거와 달리 능력 있는 노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적정 일자리의 보급이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노인의 4

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정한 일자리로서의 실효성과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은 고령화 정도, 복지서비스 지원수준 및 지역별 역량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은 관내에 거동 불편 및 홀로 사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89천명 정도로 추정되는 단독세대 노인 중 무의탁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음료배달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근황을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시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은 노인솜씨자랑대회, 경로효친 앙양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장기대회 등 4개 행사를 개최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향민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모시기 사업 등을 2008년도에 추진 중이다.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지속추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가사도우미가 고령·취약농가를 방문하여 빨래, 청소 등 가사활동을 돕고, 건강한 노인이 지역내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하는 노-노 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인천은 노부부가정, 독거노인의 지속적 증가추세에 따라 노-노 홈케어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550명을 대상으로 홈케어가 수행되었고, 독거노인 돌보미(바우처) 제도 운영을 통하여 돌보미 508명을 파견하였다. 경북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824명의 생활지도사를 파견하여 욕구조사, 안전확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 고령자, 도시 은퇴자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의료·주거·여가·재가 시설이 통합된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1개소의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복

합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주거단지를 건립중이다. 전남 역시 노인복지회관, 재가복지·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등이 들어선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경북은 1개소의 은퇴노인촌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지역자원, 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참여 증진 유도사업은 노인의 전통기술 활용을 통한 소득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도시 은퇴자 등이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전원마을 조성, 마을 고유의 테마 및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등 여러 사업이 혼재한 사업이다. 전남, 충북, 대구, 부산은 각각 41개, 31개, 3개, 2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에서 벌이는 활동은 소득·경제활동 지원, 농작업 환경개선,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 평생학습 차원의 노년교육 등이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사업은 목욕수발 등 노인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봉사차량을 이용, 노인을 직접 찾아가서 이동목욕, 물리치료, 응급처치, 건강상담 등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과 부산, 경북은 각각 4개소, 3개소, 2개소를 이동복지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은 목욕차량 3대, 세탁차량 2대를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동복지관 수혜자수는 1,670명이다.

초고령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도단위에서 관련실적보고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관련 사업은 추진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농어촌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서 회피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방치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위기의 의미가 그렇듯, 위험속에는 항상 기회가

내재되어 있다. 초고령화 위험은 불가피하나 분명히 이를 타개해 나갈 기회도 동시에 존재하며 그 기회는 역시 고령화 기반구축에서부터 찾아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표 3-46〉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기반 확충(2007)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지속 추진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실시 (추가사업)		지역자원, 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사회 활동참여 증진 유도		찾아가는 아동복지관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부산	-	-	-	-	-	-	2개소	91	3개소	24
대구	-	-	-	-	-	-	3개소	150	-	-
인천	-	-	1,058	1,930	-	-	-	-	-	-
강원	4회	83			1지역	59	-	-	1,670명	352
충북	-	-	-	-	-	-	31개소	1,425	-	-
전북	-	-	-	-	-	-	-	-	4개소	93
전남	-	-	-	-	1지역	5,520	41개소	1,870	-	-
경북	3,635	200	824	39	1지역	-	-	-	2개소	45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2006년 7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는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사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농촌이주 의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며, 조사결과 이들 중 38.8%는 농촌이주 의향이 '어느 정도 있다', 17.5%는 '매우 있다'고 답해 56.3%가 농촌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퇴 후 농촌이주 희망자들은 그 이유로 37.3%가 가족의 건강을, 32.6%는 여가생활을, 11.4%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꼽았으며, 이주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은 그 이유로 30.3%가 생활편의시설 부족, 15.2%가 농촌생활 경험 부족, 13.8%가 소득활동 제약, 13.0%가 의료서비스 부족, 12.0%가 문화생활 부족, 10.2%가 교통 불편 등을 꼽았다. 농촌이주 의향이 있는 이들 중 46.5%는 10년 안에 은퇴를 할 예정이며 은퇴 후 월평균 지출액은 47.9%

가 100만~199만 원, 31.6%가 200만~299만 원가량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미 41.4%는 농촌으로 이주해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은퇴자의 농어촌정착에 적합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이도향촌하는 베이비붐세대를 맞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노인권익 증진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와병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 또는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노인학대상담사업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4,730건의 노인학대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는 노인 천명당 0.98명에 해당한다. 신고접수건수로는 광주(693명), 경기(608명), 충남(533명)의 순으로 많고, 신고접수율로는 1천명기준으로 광주(3.52명), 대전(2.16명), 충북(1.87명), 충남(1.83명)의 순으로 많다. 가장 낮은 신고접수율을 보이는 지역은 경북(0.40명), 서울(0.46명)이다. 그런데 이는 신고접수건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노인학대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시·도별로 노인학대예방 등 노인권익증진 강화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학대예방센터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노인학대예방센터 1개소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받는 노인 및 가족 상담, 현장조사 실시, 시설입소의뢰 및 상담사례 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 서울은 적극적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은 학대노인 전문상담 및 사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전담인원 5명을 두고 공휴일포함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가족 등으로부터 학대받는 노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학대 예방을 위

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시·도별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1개소에 불과하고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 마련과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은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 및 매스컴 등을 통한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7〉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권익 증진 강화방안 마련(2006, 2007)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노인학대 신고접수	신고접수율 (노인 천명당)	2006년		2007년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전국	4,730	0.98	-	-	-	-
서울	375	0.46	5,529	2	2887명	2
부산	333	0.98	2개소	260	2개소	326
대구	196	0.90	-	-	교육 4200명, 상담 620건	166
인천	173	0.87	-	-	1,225명	161,960
광주	693	3.52	-	-	1개소	166
대전	244	2.16	1개소	135	1개소	172
울산	106	1.66	574명	126	1,027명	159
경기	608	0.71	2개소	300	-	-
강원	196	0.96	150건	130	-	-
충북	346	1.83	-	-	-	-
충남	533	1.87	-	-	1개소	283
전북	276	1.03	1625건	130	6,199	166
전남	335	0.99	-	-	-	-
경북	161	0.40	5,678	130	3,784	166
경남	355	1.00	760명	130	1,662	167
제주	97	1.60	1개소	126	240	160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2008

정부에서는 각종 교과과정에 노인 및 부모공경 실천사례를 포함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혈연중심의 효 개념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경하며, 적절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사회적 윤리 확대를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족의 사랑과 사회적 공경이 담긴 효실천 문화를 확산시

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은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8시간의 효문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효문화 체득실천프로그램에 1인당 5회의 참여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은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1학교 1인성교육에 효교육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7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동아리를 중심으로 독거노인 결연을 추진하였다. 인천은 초·중·고 446개교를 대상으로 효행의 달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CF,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4개 효교육 영상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인천효학습체험관에 탑재하였다.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에 대한 표창은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 부산, 경북에서 각각 2회씩 수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치관은 오랜 시일동안 가치판단과 경험의 반복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치관이 정립되기 이전의 아동·청소년기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후 실제 성장과정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접해야 한다. 핵가족의 보편화와 지역사회공동체 의미의 상실로 인해 경료효친의 개념이 많이 퇴색되어 왔다. 이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교과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효문화를 가치관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실제 생활속에서 효문화에 많이 노출시켜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많이 노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된다.

〈표 3-48〉 신효문화 정착 및 효행자 표창·홍보(2007)

(단위: 교, 회, 백만원)

구분	II-3-3-(4)-② 교과개정개발 등 신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II-3-3-(4)-③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및 홍보확대
	실적	집행액	실적
서울	28시간, 5회	-	2회
부산	효프로그램 200교	-	2회
인천	446교	28	-
울산	-	-	-
강원	-	-	2회 93명
전북	-	15	-
경북	-	-	2회

자료: 각 시·도,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제3절 성장동력 부문

성장동력 부문은 경제활동인구 감소 우려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여성·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강화하고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지원하며, 외국인·외국적 동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즉,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여성·고령자의 고용확대와 외국인·외국적 동포의 활용도 제고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극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문제일 뿐 저출산·고령사회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동력 확충 문제를 간과하거나 방치할 수는 없으며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전히 유효하다.

성장동력 확충에 관한 사항은 거의 중앙정부 주도하에 시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도에서 접근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시·도에서 추진하는 성장동력 강화 대책은 활발치 못하고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가.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실적을 제출한 시·도는 대구와 전남 두 지역인데, 대구는 여성과학기술인 교육(80명), 생활과학교실 운영(26개소, 1,227명), 이공계 연구실 탐방(8개 대학, 51회, 820명)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경력유지 및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전남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교육 개발 및 경력관리,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취업 및 네트워킹을 강화한 정보운영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와 관련하여 실적을 제출한 대구는 2007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 수립·추진에 따라 5급 이상 관리직여성공무원 비율을 8.3%까지 증가시켰으며, 기관별 여성 국·과장급 임용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기획, 예산, 감사 및 실·국 주무과에 여성공무원 배치를 확대하며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여성관리자를 중점 육성하고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 직무수행능력 제고 등을 위한 여성공무원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국·공립대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지역별로 여성 교장·교감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여성교장 임용비율 20%, 여성교감 임용비율 34%, 여성전문직 임용비율 36%를 각각 달성하였다. 대구는 여성 교장·교감 임용비율을 초등학교 21.3%, 중등학교 15.8%를 달성하였고, 경기는 20.5%, 광주는 15.5%, 대전은 12.2%를 각각 달성하였다. 그 외 전북, 전남, 울산, 강원 지역은 각각 161명, 105명, 79명, 75명 등 여성관리직 임용자를 인원수로 보고하였다.

여성은 경제활동인구의 한 축으로 미래에 현재보다 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점진적 고용확대 노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더불어 남녀간 직종·직위의 한계가 점진적으로 허물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 직종·직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의 본격적인 사회진출시기가 뒤늦은 데 따른 결과라 볼 수도 있겠지만, 특정 직종에 관한 사회적 편견, 능력에 대한 선입견, 수직적 네트워크 형성의 차단 등 인위적인 장벽의 존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여전히 남성본위의 고용문화와 여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영역확대와 고위직 임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와 편견은 현재시점의 국가사회경제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이 진정 필요한 미래시점에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사회 각 부문에 진출하여 제능력을 발휘하고 제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인위적으로라도 여성고용정책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3-49〉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2007)

구분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확대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국·공립대 여성 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서울	-	40%	교장 20%, 교감 34%
대구	교육 80명	5급이상 8.3%	초등 21.3%, 중등 15.8%
광주	-	-	0.2% 증가
울산	-	-	관리직 79명
경기	-	-	21%
강원	-	-	75명
충남	-	-	12.20%
전북	-	-	161명
전남	1개소 운영	-	105명
경북	-	-	7.60%
경남	-	-	9.70%
제주	-	-	10.20%

자료: 각 시·도,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나. 여성 및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취업 지원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을 보고한 제주는 15명으로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구성·운영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능력개발훈련과정에는 2,453명이 참여하였다.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은 6개의 여성사회교육기관과 인천여성취업센터 운영을 통하여 여성취업상담 및 알선 18,884명, 인천시의회 인턴교육에 20명의 여성을 참여시켰다. 경기는 만30세이상~55세미만 여성구직자 481명을 대상으로 도내 여성취업교육기관 11개 기관(17개 과정)을 통하여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2~3개월), 인턴근무(3개월), 취업지원(3개월, 채용장려금 지원)의 절차를 거쳐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충북은 광역희망일터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면서 여성커리어 개발 14개 과정(354명), 시·군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9개 과정, 여성사회적기업육성아카데미 강좌 개설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충남은 여성 진출이 용이한 분야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집중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하여 여성직업훈련 취업자 1,982명을 배출했으며, 여성구직자를 위하여 취업상담창구, 여성취업박람회, 유망직종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여성일자리지원협의체인 전북희망일터지원단(20명)을 구성하고, 1개소의 여성취업정보팀을 설치했으며, 시·군 여성회관 등에 30명의 여성취업설계사를 양성하여 배치하고 여성직업훈련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 2,582개를 창출했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제주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1인당 월 20만원을 5명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를 보고하고 있는 충북은 1,374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은 조리과정과 실버케어(간

병인)과정 등 2개의 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조리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4시간 20회에 걸쳐 교육하고, 실버케어(간병인)과정은 1개월 과정으로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 주5일 교육한다.

여성 및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이나 취업지원은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통계청의 산업별 취업자 현황 중 여성편을 보면, 전통적인 농림어업 등을 제외하고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32%, 사업, 개인공공서비스 기타 업종에 37%가 종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한다면, 여성의 경우 음식업이나 서비스업에 편중하여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이나 취업지원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의 경우 단순노무형태의 일자리사업의 수혜는 여성에 비해 많으나, 직업훈련이나 상시적 일자리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지원이 지지부진할 수 있으나, 여성의 섬세함과 고령자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감안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50〉 여성 및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취업 지원(2007)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	-	-	-	-	-	-	-	120	57
인천	-	-	51,938	6,601	-	-	-	-	-	-
경기	-	-	481	1,285	-	-	-	-	-	-
충북	-	-	14개과정 354명	23	-	-	1,374	120	-	-
충남	-	-	1,982	452	-	-	-	-	-	-
전북	-	-	4개사업	3,831	-	-	-	-	-	-
제주	2,453	327	-	-	57	99	-	-	-	-

자료: 각 시·도,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다.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

2007년 외국인 등록인구는 총 765천명으로서 전체 인구수의 1.5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05년 기준 불법체류자 180천명을 단순 합산시킨다면 전체인구의 약 1.95% 가량이 외국인 또는 외국적 동포이다. 이들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은 주로 경기(30.6%), 서울(29.9%), 인천(5.9%) 등으로서 수도권 지역에 전체등록외국인의 66.4%가 편중되어 있다.

서울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자녀 학생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한국문화 적응력 증진을 위해 한국어교육 및 방과후 학교 지원 1,377명, 한국어반 운영 11개 학교, 귀국자특별학급 7학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센터 1개소 신규 설치, 서울 바로알기 투어행사, 외국인근로자 간담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작품전시회, 서울생활 표준매뉴얼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관련 법률상담, 문화행사 지원, 한국어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 민간의료단체 2개소를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1개소를 건립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고용사업장에 환경개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부산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를 4개 과정 327명에 대하여 실시했고, 외국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어울마당과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구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 해외 자매도시 대학생 교류행사, 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소개 등 12건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실시하였다. 충북은 외국인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였고, 중학

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다국어 교실을 운영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위하여 부산은 초·중·고 37개교를 대상으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을 운영하여 각국 문화소개 및 교류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대구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1,753명을 대상으로 원어민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남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학교별 교육 및 홍보, 학부모 연찬회 실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 운영(각급 학교별 실시), 외국인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외부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표 3-51〉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2007)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외국인 등록인구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229,072	1,377	481	180	140	26,300부	115
부산	27,662	-	34	4강좌 327명	74	37개교	6
대구	19,409	-	-	12개사업	70	1,753	419
인천	45,464	-	-	-	-	-	-
광주	10,016	-	-	-	-	-	-
대전	12,177	-	-	4개교	116	2회	-
울산	12,804	-	-	-	-	-	-
경기	234,030	3개사업	360	-	-	-	-
강원	11,994	-	-	-	-	-	-
충북	20,731	-	-	30명	-	-	-
충남	30,553	-	-	-	-	-	-
전북	16,151	-	-	책자700부	32	책자900부	15
전남	15,126	-	-	2개사업	10	1교	60
경북	33,721	-	-	-	-	-	-
경남	42,389	-	-	-	-	-	-
제주	4,130	-	-	-	-	-	-

자료: 1)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2) 통계청, 『2007년 외국인 등록인구』, 2008.

등록인구중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전문외국인력, 유학생은 각각 2.7%, 3.0%에 불과하고(2005기준), 나머지 인력은 단순노무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단순노무위주의 외국인력을 우수 전문·기술분야 외국인력으로 일정부분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어업등 노동집약산업이 주를 이루고 고령화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도지역은 새로운 노동력으로서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으나, 국제결혼가정 등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가장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으로 추정되며, 전북은 다문화가정 학부모 만남의 날 지정, 다문화가정 학부모사랑방(우리말, 우리문화 지도, 상담활동 178명), 다문화가정 학생 사랑방(담임교사와 1대1 결연지도, 친한 친구와 1대1 결연, 1,083명),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한국어말하기대회, 우리문화퀴즈대회, 한마음가족 노래자랑), 다문화가정 취학전 안내자료 발간 700부, 다문화가정 생활체험수기 공모 21명, 다문화가정 단소교실 운영 30명, 다문화가정 홈페이지 운영, 교육활동 우수사례집 발간 900부, 다문화 이해 교재 개발 900부 등 매우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은 다문화가정지원 우리말 학습, 기초수학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프로그램 2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충북은 국제결혼 자녀 교육복지사업으로 국제결혼이주민 부모와 자녀가 하나되기 캠프, 가족과 친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 프로그램, 한글 교실, 한국문화교실, 다문화 예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캠프 운영,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 문화의 적응능력

제고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장학자료 26천부를 발간·보급하고 다문화가정 관련 교감·담당교사 700명을 연수훈련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연구학교 및 특별학급 4개교를 지정·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관련 연수를 2회 실시하였다. 국제결혼 빈도수의 증가를 감안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배우자 등 다문화가정 구성원 전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2.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및 성장동력산업 육성

가.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와 관련하여 서울은 산학협력 우수 전문계고 6개교와 특성화고 7개교를 지정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제고하고 특정분야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부산은 24개교, 대구는 일반고 200명, 실업계교 8천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는 8개 학교(전문대학 6, 전문고 2) 837명을 대상으로 산학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경북은 48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진로와 직업교과를 개설하고, 직업현장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확대와 관련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체험학습을 통한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서울은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97개교가 진료체험학습을 실시하였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교생 2,275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직업위탁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진로교육자료 7종을 개발하고 진학진로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상 방문자수가 696천명에 달하고 있다.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사업으로 대구는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역 취약계층 220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 제고의 효과를 거두었다.

중소기업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는 지역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110명의 인력에 대하여 산업기술연수비를 지급하고 전문기술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3-5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2007)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확대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13개교	2,744	97개교	1,548	-	-	-	-
부산	24개교	73	-	-	-	-	-	-
대구	200명	10	-	-	220	560	110	20
경기	837명	1,010	-	-	-	-	-	-
경북	48개교	-	-	-	-	-	-	-

자료: 각 시·도,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평생학습 인프라를 가장 많이 확충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202개소)이고, 그 다음은 부산(163개소), 경북(49개소), 경남(37개소)의 순이다. 서울과 부산을 살펴보면, 서울은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13개소,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161개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7개소, 평생교육기관 운영 활성화 21개소 등 총 202개소의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부산은 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참가학교 75개교,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28개, 부산평생학습축제 개최 60회, 성인문화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기관선정 4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인원수는 총 515천명이다.

〈표 3-53〉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2006, 2007)

(단위: 명, %, 개소, 백만원)

구분	25~64세인구 (2007년)	전체인구 대비비율	2006년		2007년		증감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서울	6,252,777	62	5개소	794	202개소	2,756	217개소	1,962
부산	2,134,310	61	1개사업	1,339	163개소	129	-	△1,210
대구	1,453,138	59	14개소	2,710	8개사업	1,605	-	△1,105
인천	1,551,973	59	18기관 지원	50	18개소 지원	50	-	-
광주	812,159	56	-	-	360,205명	65	-	-
대전	857,755	58	1건	4	6개소	4	-	-
울산	648,301	60	-	-	-	-	-	-
경기	6,516,751	59	-	-	-	-	-	-
강원	817,664	56	2개시군	400	2개시군	400	-	-
충북	818,821	55	-	-	-	-	-	-
충남	1,050,806	54	1건	120	봉사단 120명	128	-	8
전북	943,438	53	200명	26	1건	262	-	236
전남	938,953	52			3건	740	-	
경북	1,449,031	55	49개소	243	49개소	207	-	△36
경남	1,783,307	57	1개소	495	37개소	526	36개소	31
제주	299,716	55	17개소	259	23개소	103	6개소	△156

자료: 1)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년도, 내부자료
2) 통계청, 『2005~2030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07.

나.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인구의 급증추세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구는 지역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장기 Road Map을 수립하고, 대구 시니어 퓨전 체험관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부산은 고령친화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1개소를 개관하였고 7,2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R&D 인프라 구축, 사용자 특성 연구, UD시제품 개발, UD툴팩키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용품산업화 지원센터 1개소를 두어 고령친화용품산업 활성화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친화제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유비쿼터스 기술과 헬스케어분야를 융합한 U-홈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용품 업체 선도기업으로 3개소를 선정했다.

고령친화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의 하나이며, 신산업은 선점할수록 선점의 효과가 매우 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태동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표 3-54〉 고령친화산업 육성(2007)

(단위: 백만원)

구분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실적	집행액
부산	-	-	1개관	280	1건	780
대구	용역1건	3,380	-	-	-	-

자료: 각 시·도,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제4절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문

1.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의 기반 사업 외에 출산, 육아, 가족, 연금 등과 관련된 각종 복지정책(서비스)들이 포함된다. 가령 출산장려금, 산모도우미 서비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정년 연장 장려금,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개별사업을 알리는(弘報) 것은 사업 소관부서의 고유 업무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 그

것으로 촉발될 제반 경제·사회·문화 문제 등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일지라도 각 사업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또한 개별사업의 홍보는 해당 사업예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편차도 상당히 큰 편이다.

<표 3-55>는 기본계획의 237개 세부과제 중 홍보사업[13]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인데, 저출산 분야의 '저출산·고령사회관련 범국민 인식개선운동 강화'를 제외하고는 개별과제의 홍보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홍보사업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개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 근거가 확보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산 할당 및 홍보사업 추진이 용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업들은 소관부서 재량으로 홍보가 진행된다. 또한, 개별사업마다 예산, 관리자의 판단기준 등 추진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편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각 사업의 추진실적은 수혜자나 집행액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홍보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사업의 하나인 육아휴직 활성화의 경우, 사업실적은 육아휴직자로 제시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홍보에 대한 평가 지표로 육아휴직자의 증감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을 가려서 홍보 사업을 총괄하고 평가, 관리하는 기능이 향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3) 고령자 직업훈련, 여성 구직자 취업훈련 등과 같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교육사업인 것을 제외하고 사업명에 홍보나 교육이 포함된 사업을 분류하였다.

〈표 3-55〉 저출산·고령사회대응 홍보·교육 사업

분야	사업명
저출산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저출산·고령사회관련 교육과정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관련 범국민 인식개선운동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지역사회 교육 강화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분위기 조성
	아동학대 예방홍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강화
고령화	생활체육·운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실버마크제도 도입 및 캠페인 전개·홍보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및 홍보 확대
	고령자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성장동력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자료: 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

저출산·고령화대책 홍보·교육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관련 범국민 인식개선운동 강화'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의 소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지원을 위한 의식전환 프로젝트(서울), 출산 장려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대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홍보(제주),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서울, 강원도), 행복한 가족만들기 확산을 위한 홍보(경기도) 등 인식 개선, 전환 등의 명칭으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되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홍보의 핵심 사업자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의 홍보·교육은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구분된다.

〔그림 3-5〕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의 홍보·교육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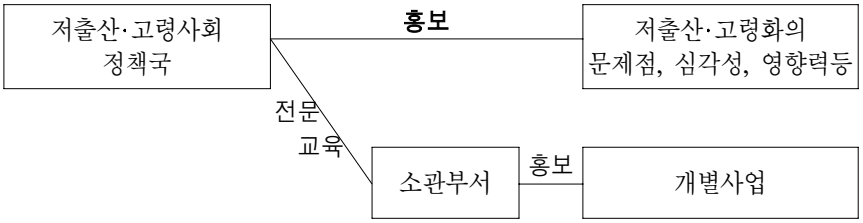

첫째, 대국민 홍보로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 및 홍보와 TV프로그램 및 신문 기획기사 제작 지원, 저출산·고령화 홍보 팜플렛 및 동영상 제작 배포, 국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등이 있다.

방송 광고 및 홍보 실적으로는 강원래·김송 부부를 모델로 등장시킨 '새로마지플랜 2010'이 2006년 10월 전파를 탔고, '아름다운 선물'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에 선정되어 공중파 TV, 라디오, 신문, 잡지, 극장, 인터넷, 지하철 등 360개 매체에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광고되었다. 또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가 2007년 5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행되었다. TV프로그램 및 신문 기획기사 제작 지원 실적으로는 KBS '빅마마' (5월~11월), MBC 신 황혼예찬 다큐멘터리(5월1일 방영), KBS 1TV 언제나 청춘 '시니어로빅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11월), MBC 미니다큐 5부작 '시니어가 간다', KBS 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액티브 시니어와 함께 하는 토요 초대석', 중앙일보 기획시리즈 4회(10월 29일~11월 1일), '이코노미스트' 커버스토리(11월 13일, 912호), 서울신문 '나이를 잊은 액티브시니어'(10월) 등 다수가 있다.

홍보자료로는 저출산 대응 정책 홍보 리플렛을 20만부 제작·배포하였고, 고령사회 대응 정책 홍보 소책자를 9만5천부 제작하여 경로당에 배포

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홍보 동영상과 출산장려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이밖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낳는 사회 10계명'을 제정하여 홍보하였고, 네이버 카페를 활용한 '시니어 스타를 찾아라' 이벤트, 대학생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행복한 가족사랑 사진전 등 참여형 캠페인을 개발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2007)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06년 78.5%에서 2007년 81.0%로 약간 상승하였으며, 고령화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06년 85.7%에서 2007년 84.5%로 약간 감소하였다.

둘째, 공무원 대상의 전문교육으로는 14개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교육을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시행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담당 공무원 연찬회(9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포럼(10월)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였다.

공무원 대상의 전문교육은 보건복지 인력양성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오영희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2006년 하반기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실무과정'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정'이 제공되었다. 또한 민간기구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06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 인구교육'을 2회 운영하여 78명의 교육실적을 냈으며, 2007년에는 '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문교육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0여 명의 전문강사를 교육·배출하였다.

2. 단위사업별 홍보현황

가.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공개입양 장려,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으로는 첫째, 캠페인, 세미나, 교육, 입양가정 사례발굴을 통한 입양홍보와 둘째, 캠프 등 행사를 통한 홍보, 셋째, 지역별 입양가족모임을 통한 입양홍보가 추진되었다. 2007년 사업비는 예산액의 90%인 9천만원이 집행되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반편견 입양교육이 48회 실시되었고, 입양부모(20명) 교육이 진행되었다. 2007년 5회의 입양캠페인이 추진되었고, 6월에는 입양축제가, 11월에는 전국입양가족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입양가족 캠프가 2회 진행되었고, 입양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입양관련 강의 및 사례발표, 무가지 홍보기사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입양가족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지역모임 활동이 75회 개최되어 입양관련 강의 및 사례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사업에 힘입어 전체 입양 중 국내 입양의 비율은 2003년 40.6%에서 2007년 52.3%로 11.7%p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40%대를 유지하던 국내입양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홍보 등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6〕 국내 입양 증가율(2003~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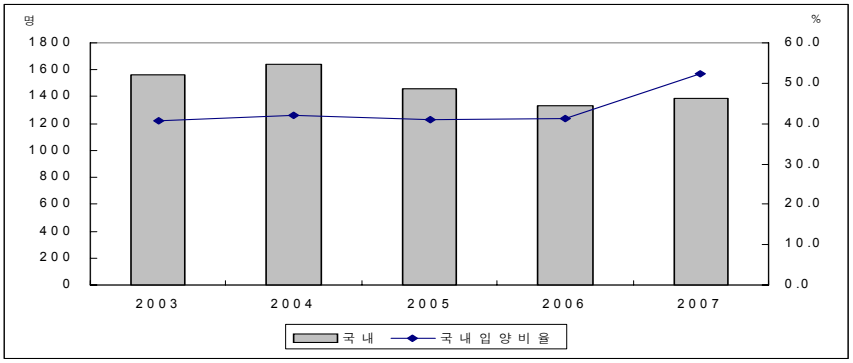

자료: 중앙부처,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나. 아동 보호 관련 홍보

아동 관련 사업 중 교육·홍보는 아동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 예방 사업이 등 대체로 아동보호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제고를 위해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이 15회 실시되었고, 아동학대예방 홍보물·포스터, 브로셔·공익광고, 언론기관 모니터링 등의 홍보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보호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상담원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 13회 실시되었다.

둘째,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는 어린이 안전권리 박람회가 2007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식약청, 실종아동전문기관,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기관이 참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홍보사업의 장이 되었다.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는 6개 시·도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한 어린이 교통공원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원생, 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가정내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법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가스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등 일반 생활안전을 포함한 체험위주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다. 생활체육·운동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신문·방송,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매체 홍보와 생활체육 유관단체 및 조직망을 활용한 생활체육 참여 캠페인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매체홍보 실적은 <표 3-56> 과 같으며 방송, 신문·잡지 등의 인쇄매체, 뉴미디어, 기타 홍보물을 통해서 '스포츠 7330 캠페인(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 주요대회나 생활체육 현장에 현수막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에도 주력하였다.

〈표 3-56〉 생활체육 매체 홍보실적(2007)

매체	실적
방송	· 방송광고 206회(4.1~4.30): MBC-TV 26회, MBC 및 SBS-R 180회
	· 방송 기획시리즈(5.28~9.11) : SBS-TV 스포츠뉴스 16회
	· TV기획방송 : KBS 수요기획(4.25), SBS 모닝와이드(10.6~27, 4회)
	· 생활체육 현장생방송: SBS-TV '김미화의 U-건강혁명 7330'(10.31)
신문·잡지	· 인쇄매체 광고 31회: 종합지, 무가지, 스포츠지 등(9단 21cm)
	· 신문 기획시리즈: 동아 7회(5.12~29), 한국 7회(10.31~11.28)
뉴미디어	· 지하철광고(3.30~6.20) : 5호선 500매×2개월=1,000매
	· 전광판광고(5.1~5.30) : 서울시내 2곳, 1일 100회 노출
	· 인터넷광고(8.1~8.31) : 포털사이트 naver 배너
기타 홍보물	· 브로슈어 2만부, 리플렛 1만5천부, 홍보기념물(T셔츠) 3천매
	· 국민생활체육지 발간·보급(월 1회): 8,000부×12회=96,000부
	· 생활체육 회원단체 발간물 활용 광고(연간 150회 이상)

자료: 중앙부처,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효과로 '스포츠 7330 캠페인'의 인지도 조사 결과 당초 목표인 5%를 넘어 6.3%로 비교적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홍보사업 후 인지도 조사를 통해 홍보성과를 제시한 사업은 십여 개의 개별사업 홍보활동 중 생활체육 홍보사업이 유일하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관부서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사한 생활체육사업인 '1530'의 출현으로 '스포츠 7330'에 대한 국민관심이 분산되어 홍보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부서간 중복사업에 대해 단일한 브랜드를 제시하지 못해 사업효과가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의 다른 유사사업에도 제기될 수 있는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향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라.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사업으로는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실버마크 보급·확대사업이 있다.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은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운영을 통해 노인교통안전봉사단에 대한 교육(4~5월)과 경로당 등 노인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이 실시되었고 교통안전 캠페인이 추진되었다.

실버마크 보급 및 확대사업은 실버마크를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노인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양보운전 문화를 조성하고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버마크는 2006년 4월 15만매가 제작되어 지방청별로 노인 운전면허 인구의 15.8%의 수량만큼 경찰청과 대한노인회를 통해 보급되었다. 실버마크 자체가 홍보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하나, 노인 운전자에게 배부되었을 뿐 친노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부가적인 홍보활동이 뒤따르지 않아 활용도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 고령운전자를 위한 실버마크

마. 효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노인인구의 증가와 세대의 변화에 따라 노인과 효문화의 변화도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신 효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이 추진되었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교과과정에 노인 및 부모공경 실천사례를 포함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그 기초자료로써 각종 교과서의 노인 및 부모 공경 내용분석이 이루어졌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 및 부모 공경에 관한 보조교재가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또한 범국민적 효 사상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부모를 공경하는 등 효를 실천하고 있는 효행자와 이웃에 모범이 되고 있는 장한어버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하여 효를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급격한 노인 수의 증가에 따라 경로우대 및 할인이 부담되어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에 대응하여 KTX, 항공요금, 새마을호 요금 보전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경로제도를 유지·확산시켰다.

〈표 3-57〉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실적(2007)

(단위: 명)

구분	계	효행자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기여단체 등
		소계	일반	청소년		
인원수	183	123	113	10	15	45

자료: 중앙부처, 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바.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외국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를 이해시키고 포용력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주요 성과로는 187개 초·중·고 2만 4천명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학교수업에 참여하여 자국문화를 소개하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교실을 운영하였고, 91개교 유네스코협동학교 네트워크 및 지역교사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국민 인식이나 가치관은 시차를 두고 서서히 형성되며 형성된 이후에는 변화를 유발할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내면에 형성된 인식이나 가치관은 실제 외부행동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점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결혼, 출산, 부양, 가족, 정책인식 등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된 인식이나 가치관에 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분석대상의 일반특성

본 장에서는 2008년 8월 21일 부터 9월 25일까지 미혼남녀 1,110명, 기혼부인 1,053명, 50대 이상 중고령자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3,186건 가운데 결측값이 많은 11건(미혼남녀 10건, 중고령자 1건)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3,175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 4-1〉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국민인식 전화조사 분석대상자 수

(단위: %, 명)

구분	조사대상자 수	유효대상자 수	유효대상자 비율
20~49세 미혼남녀	1,110	1,100	34.6
20~49세 기혼부인	1,053	1,053	33.2
50세이상 중고령자	1,023	1,022	32.2
계	3,186	3,175	100.0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미혼남녀의 경우 남성이 46.6%, 여성이 53.4%이고, 중고령자의 경우 남성이 45.0%, 여성이 55.0%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혼부인 1,053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30.6%, 여작 69.4%로 구성되었다. 지역별 분포는 특별·광역시가 48.0%, 9개 도지역이 52.0%의 비율을 나타냈고, 중고령자와 미혼남녀의 조사에서 9개 도지역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각각 57.9%, 55.8%).

조사가 20~49세 미혼남녀 및 기혼부인, 50세 이상 중고령자로 구분해서 실시된 관계로 조사유형에 따라 연령대가 달리 분포하고 있다. 즉, 미혼남녀 조사에서는 40대 미혼남녀의 비율이 8.4%로 낮고, 기혼부인의 조사에서는 20대의 기혼부인의 구성이 13.4%로 낮은데, 이는 조사대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표 4-2〉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국민인식조사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단위: %, 명)

구분	계	미혼남녀	기혼부인	중고령자
전체	100.0	100.0	100.0	100.0
(명)	(3,175)	(1,100)	(1,053)	(1,022)
성별				
남성	30.6	46.6	–	45.0
여성	69.4	53.4	100.0	55.0
지역				
특별·광역시	48.0	42.1	57.9	44.2
9개 도지역	52.0	57.9	42.1	55.8
연령				
20대	20.6	46.8	13.4	–
30대	29.8	44.8	43.0	–
40대	17.4	8.4	43.7	–
50대	14.0	–	–	43.4
60대 이상	18.2	–	–	56.6
학력				
중졸 이하	17.8	0.8	3.6	50.8
고졸	33.2	27.4	40.1	32.3
대졸 이상	48.6	71.9	55.8	16.1
무응답	0.4	–	0.5	0.8

〈표 4-2〉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미혼남녀	기혼부인	중고령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9.1	24.3	9.6	54.4
200만~299만원	22.5	28.1	21.0	18.0
300만~399만원	19.2	18.5	29.1	9.6
400만원 이상	24.5	24.1	36.7	12.3
무응답	4.8	5.0	3.5	5.8
경제활동 유형				
상용근로자	32.4	62.9	24.7	7.4
임시일용근로자	9.8	13.9	8.5	6.9
자영업 및 기타	14.6	16.9	9.7	22.4
무직(학생포함)	24.3	6.3	0.4	63.2
주부	18.9	–	56.8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학력의 경우 중졸이하가 17.8%, 고졸이 33.2%, 대졸이상이 48.6%로 구성되었는데, 미혼남녀 조사에서는 대졸 이상이 71.9%로 비교적 높았고 중고령자의 조사에서는 중졸이하가 50.8%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만원미만이 29.1%, 200만~299만원이 22.5%, 300만~399만원이 19.2%, 400백만원이상이 24.5%로 구성되었으며, 기혼부인의 조사에서는 200만원미만이 9.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중고령자 조사에서는 200만원미만이 54.4%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력과 소득의 경우에는 각각 14건(0.4%), 152건(4.8%)의 무응답이 조사되었다. 학력의 경우 기혼부인의 조사에서는 6건, 중고령자의 조사에서는 8건의 무응답이 있으며, 소득의 경우에는 미혼남녀의 조사에서 56건, 기혼부인의 조사에서 37건, 중고령자의 조사에서 59건이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무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나 해석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해 학력과 소득의 무응답은 각 특성별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2절 결혼 및 자녀가치관

1. 결혼가치관

가. 결혼의 필요성

결혼에 대한 가치관으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미혼남녀와 기혼부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미혼남녀의 50.0%, 기혼부인의 40.7%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등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의 중립적 또는 유보적인 태도도 각각 50.0%, 59.3%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기혼부인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적적 응답 49.3%와 비교하면 결혼의 필요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한편 본 조사에서 기혼여자의 결혼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55.6%)가 미혼남녀(48.4%)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이는 결혼한 여자가 겪게 되는 가족관계(고부관계), 출산, 육아 등의 경험과 고충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저출산의 극복을 위해 결혼생활을 경험한 기혼여자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 혹은 유보적인 까닭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전략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표 4-3 참조).

---

14) <표> 기혼여자(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2005)

(단위: %, 명)

구분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할 필요없다	하는 게 좋다	해야한다	모르겠음	계 (명)
전체	7.2	42.4	38.5	10.8	1.1	100.0 (3,8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4-3〉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하지 않는 게 낫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편이 좋다	반드시 해야한다	계(명)
미혼남녀	1.6	48.4	30.5	19.5	100.0 (1,100)
기혼부인	3.7	55.6	28.1	12.6	100.0 (1,05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미혼남녀의 성별·연령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남자 35.4%, 여자 59.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의 경우 '반드시 해야한다'는 응답이 10.4%로 남자(30.1%)에 비해 19.7%p나 낮게 조사되었다(부표 4-4 참조). 이러한 결과를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15]와 비교하면 남자는 0.7%p 높고 여자는 2.5%p 낮은 결과이다.

연령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연령이 많아질수록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30대 이상에서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부정적 인식이 남자 3.0%, 여자 5.5%로 조사되어 최근 만혼과 비혼현상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욱이 연령이 많아질수록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약화되어 자발적, 비자발적 비혼으로 이행될 여지가 많아 비혼이나 만혼은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혼부인은 연령에 따라 일정한 경향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30세 미

15) <표>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관(2005)

(단위: %)

구분	결혼하지 않는 편	해도 안해도 무방	결혼 하는 편	반드시 결혼해야함	모름	계(명)
미혼남자	2.2	23.5	42.0	29.4	3.0	100.0 (1,466)
미혼여자	3.7	44.9	36.3	12.9	2.2	100.0 (273)

자료: 이삼식 외,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2005.

만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강했고(48.9%), 35~39세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약하게(34.4%) 나타났다(부표 4-24 참조).

기혼부인의 결혼기간별 결혼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5~19년의 경우 '하지 않는 게 낫다'가 5.5%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드시 해야한다'는 9.7%로 비교적 낮았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인 응답이 많았다. 부모의 결혼관이 자녀에게 교육·학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저출산의 극복을 위해 결혼생활을 경험한 기혼여자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 혹은 유보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 최근 결혼연령의 적정성

200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남자의 결혼 연령은 31.1세, 여자는 28.1세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2.4세가 높아졌다. 본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만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미혼남녀들의 결혼 연령에 대한 의견"을 미혼남녀와 기혼부인에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에서 대체로 결혼연령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기혼부인(6.7%)에 비해 미혼남녀(17.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남녀의 조사결과와는 반대되는 경향으로 미혼남녀에 비해 기혼부인이 결혼 시기가 늦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로써 미혼남녀 사이에서 만혼에 대한 인식이 팽배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22.0%가 결혼연령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만혼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표 4-4 참조).

〈표 4-4〉 결혼 연령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더 낮아져야 한다	적당하다	더 높아져야 한다	계(명)
미혼남녀	13.5	69.4	17.2	100.0 (1,100)
(미혼여성)	(6.3)	(71.7)	(22.0)	(100.0) (586)
기혼부인	21.1	72.1	6.7	100.0 (1,0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한편, 미혼남녀 조사결과 중 특이한 점은 '적당하다'의 중립적 의견을 제외하고 미혼여성은 결혼연령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응답(6.3%)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22.0%)이 훨씬 높게 조사된 반면, 미혼남성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11.7%)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응답(21.6%)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 남녀간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만혼의식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남자의 경우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35세 이상에서 17.8%의 응답을 나타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30～34세에서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26.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결혼 적령기인 25~29세 연령층에서는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남자 9.6%, 여자 22.6%로 나타나 만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부표 4-1 참조).

기혼부인의 경우에도 미혼남성의 응답과 비슷한 경향인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혼여성에 비해서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혼부인의 경험상 결혼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미혼여성에게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표 4-21 참조).

그리고 맞벌이를 하지 않는 기혼부인(24.3%)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16.6%)에 비해 결혼 연령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결혼 연령이 낮아져야 한

다는 응답이 많았다.

결혼 연령이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한 미혼남녀 150명과 기혼부인 22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미혼남녀는 '경제적 안정을 빨리 이룰 수 있기 때문'(47.6%), '자녀 출산과 육아가 쉽기 때문'(21.4%,)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서'(17.2%)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기혼부인은 '경제적 안정을 빨리 이룰 수 있기 때문'이 75.1%로 가장 많았고, 다른 항목의 응답은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미혼남녀나 기혼부인 모두 결혼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5 참조).

또한 미혼남녀의 경우 만혼에 따른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드러나 있는데, 실제 결혼연령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녀출산과 육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녀출산과 육아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연령이 반드시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5〉 결혼 연령이 낮아져야 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미혼남녀	기혼부인
자녀 출산과 육아가 쉽기 때문에	21.4	9.0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서	17.2	6.3
경제적 안정을 빨리 이룰 수 있으므로	47.6	75.1
늦게 할수록 적당한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2.1	1.4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성인으로 살 수 있으므로	4.1	0.5
중년이후 양육부담을 덜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므로	7.6	7.7
계	100.0	100.0
(명)	(150)	(2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미혼남녀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미혼여자의 경우 '경제적 안정을 빨리 이룰 수 있기 때문'이 남자에 비해 14.8%p 높게 나타나 경제적 안정에 무게를 두는 편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결혼 연령대인 25~29세(66.7%), 30~34세(64.3%)에서 더욱 강했다. 반면 남자는 '자녀 출산과

육아가 쉽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남자에 비해 11%p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4세 미만이나 35세 이상에서 더욱 강했다(부표 4-2 참조).

이밖에 특징적인 것은, 24세 이하의 젊은 남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11.1%)하고 싶은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35세 이상의 미혼여자의 경우 '늦게 할수록 적당한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22.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미혼여자의 결과는 현실적인 고충의 반영이며, 만혼이나 비혼이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미혼남녀를 위한 건전한 만남의 주선과 같은 창의적인 사업도 고려될 만하다.

기혼부인 응답자의 모든 특성별 분포에서도 결혼연령이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경제적 안정을 빨리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으나, 각 특성에 따라 특징적인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10.0%)이, 40~44세에서는 '중년이후 양육부담을 덜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기 때문'(14.0%)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부표 4-22 참조).

맞벌이는 외벌이에 비해 '자녀 출산과 육아가 쉽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결혼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나 15~19년에서는 '중년이후 양육부담을 덜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결혼기간이 15~19년인 경우에는 '자녀 출산과 육아가 쉽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응답이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수별로는 1명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경제적 안정을 빨리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고, 2명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중년이후 양육부담을 덜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결혼기간과 자녀수로 유추해 보면, 결혼기간이 길면 기혼여자의 연령도 많고, 자녀수도 2명 이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년이후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연령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녀수가 1명인 경우 경제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 외에 '자녀

출산과 육아가 쉽기 때문'의 항목에 응답이 집중된 것은 최근의 만혼에 따른 불임의 증가, 양육의 부담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 결혼적령기

최근 미혼남녀들의 결혼연령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2세 가량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결혼 연령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는데(표 4-4 참조), 미혼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조사 결과와 최근 미혼남녀들의 실제 혼인연령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미혼남녀의 평균 혼인연령은 남자 31.1세, 여자 28.1세인데, 미혼남녀가 응답한 남녀의 결혼적령기는 각각 31.1세, 28.4세였고, 기혼부인은 각각 30.8세, 28.2세로 실제 혼인연령과 큰 차이가 없었다(표 4-6 참조).

다만, 기혼부인이 미혼남녀에 비해 결혼적령기를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적령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30~31세'가 결혼하기 좋은 연령이라는 응답이 미혼남녀의 경우 46.4%, 기혼부인은 57.5%였으나, '32~33세'라는 응답은 미혼남녀는 28.2%, 기혼부인이 19.9%로 미혼남녀에서 8.3%p나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결혼적령기에 대해서도 미혼은 '28~29세'(43.7%), '30~31세'(24.7%), '26~27세'(17.2%)의 순이었으나, 기혼부인은 '28~29세'(45.6%), '26~27세'(22.5%), '30~31세'(21.6%)의 순으로 낮은 연령에 다소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성남시 조사결과(2008)에서도 미혼자의 결혼적령기에 대한 응답이 기혼자에 비해 다소 높게 보고되었다.[16)]

앞서 결혼 연령에 대한 인식에서 '적당하다'는 응답(72.1%)이 매우 높았

16) 〈표〉 결혼상태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결혼적령기

구분	남자의 결혼적령기(세)	여자의 결혼적령기(세)	대상자수(명)
전체	31.0	28.8	(743)
미혼	31.3	29.2	(298
기혼	30.9	28.5	(445)

자료: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대책 수립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보고서」, 2008.

던 것과 같이 남녀의 결혼적령기까지 실제 결혼연령 수준으로 늦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남자와 여자의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남자의 결혼적령기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3세	34세 이상	계(명)	평균
미혼남녀	2.6	9.9	47.6	29.2	10.7	100.0 (1,085)	31.1
기혼부인	2.2	12.1	57.5	19.9	8.3	100.0 (1,050)	30.8
구분	여자의 결혼적령기						
	25세 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세 이상	계(명)	평균
미혼남녀	6.5	17.2	43.7	24.7	7.9	100.0 (1,085)	28.4
기혼부인	5.7	22.5	45.6	21.6	4.6	100.0 (1,052)	2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미혼남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결혼적령기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다. 남자의 결혼적령기에 대해 미혼남자는 평균 30.8세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여자는 남자에 비해 0.9세 많은 평균 31.7세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자의 결혼적령기에 대해서는 미혼남자가 평균 27.8세, 미혼여자가 평균 29.1세라고 응답하였다(부표 4-5 참조). 즉, 미혼남자는 여자의 결혼 적령기를 여자에 비해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혼여자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적령기를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17]가 도출되었으며, 이와 같은 남녀간의 기대혼인연령의 차이가 비혼 및 만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이삼식 외, 2005).

기혼부인의 연령별 남자와 여자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구체적으로 살

17) 미혼남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결혼적령기는 30세(39.6%), 28세(14.2%), 32세(12.4%)의 순이었고, 여자의 결혼적령기는 28세(25.3%), 27세(21.8%)의 순이었다. 반면 미혼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결혼적령기는 30세(38.8%), 32세(20.3%), 28세(8.4%)의 순이었고, 여자의 결혼적령기는 28세(29.1%), 30세(25.1%), 27세(18.3%)의 순으로 남자는 결혼적령기를 낮게, 여자는 결혼적령기를 높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펴보면, 30세 미만의 기혼부인은 남자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해 평균 31.1세, 여자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해 평균 28.4세라고 응답한 반면, 45세 이상의 기혼부인은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해 평균 30.2세, 27.9세라고 응답하여 연령이 많아질수록 남자와 여자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부표 4-25 참조).

한편,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외벌이를 하는 경우에 비해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각각 평균 0.3세, 0.4세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맞벌이의 경우 여자의 사회활동이나 경력관리 등을 위해 결혼을 다소 미루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미혼여성만을 따로 떼어 기혼부인과 비교해 보면, 미혼여성은 남녀의 결혼적령기를 각각 평균 31.7세, 29.1세라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기혼부인은 각각 평균 30.8세, 28.2세라고 응답하고 있어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남녀결혼적령기가 기혼여성의 인식에 비해 모두 0.9세 높게 나타나고 있다(부표 4-5, 4-25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가능한 동일연령대의 기·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30~34세 미혼여성은 남자 32.0세, 여자 29.6세로, 30~34세 기혼부인은 남자 31.3세, 여자 28.6세로 응답함으로써 남자 0.7세, 여자 1.0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일연령대라 하더라도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이 결혼적령기를 높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실제 결혼으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은 실제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늦춰지고 있는 결혼적령기에 대한 인식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라. 만혼 이유

만혼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미혼남녀, 기혼부인, 중고령자 모두 결혼을 늦게 하거나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를 꼽았고, 그 다음 순으로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결혼 후의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라고 응답하였다. 결혼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나 만혼의 원인은 미혼남녀에게 '경제적 문제'로 환원되며, 기혼부인에게는 출산·육아 등 결혼으로 인해 부과되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이 응답자의 태도는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달리 말하면, 만혼의 원인 등에 대한 설문 결과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나 태도에 대해 말해 줄 뿐 가치관의 변화 등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해석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결혼의 필요성 등 결혼관의 변화를 조사하여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4-7〉 만혼의 원인에 대한 견해(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미혼남녀	기혼부인	중고령자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55.0	49.8	56.0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19.9	15.6	18.4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37.3	44.5	41.9
결혼 후의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27.6	39.5	28.8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가치관의 변화)	25.6	19.3	16.0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14.3	13.4	17.6
교육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9.6	7.0	6.9
기타	2.4	2.6	1.1
(대상자수)	(1,100)	(1,046)	(1,0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만혼의 이유에 대하여 미혼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71.5%),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27.5%) 등 경제적인 요인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경제적인 이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결혼 후의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럽다'(36.7%)나 '가치관의 변화'(28.8%)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부표 4-3 참조). 이로써 실제적으로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에게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장애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결혼 문화의 만혼화에 대해 가치관의 변화 등 심리·문화적인 요인의 작용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전국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혼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남자들은 '경제적인 상황'때문(31.7%)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여자들은 '결혼생활 어려움이나 자아성취의 방해'라는 응답이 20.6%로 비교적 높았다.

한편,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유형에 따라서 만혼의 이유를 살펴보면, 학생을 포함한 무직의 경우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61.6%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아직 혼인 연령에 미치지 않은 학생들이 향후 혼인 연령으로 이행할 경우, 만혼이나 비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의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부표 4-3 참조).

기혼부인은 연령별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40~44세에서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47.2%)가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45.7%)보다 높게 나타 경제적 영향보다 문화적인 영향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부표 4-23 참조).

결혼기간이 5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57.2%로 비교적 많았고, 결혼기간이 10~14년이나 15~19년인 경우에는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는 기혼여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실제 결혼의 장애가 되는 것은 '경제적 문제'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고,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독신을 선호하는 문화라든지 개인의 삶을 보다 중시

하는 가치관의 영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중고령자의 경우 역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등 경제적인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여자는 '결혼 후의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등 생활적인 측면을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부표 4-40 참조).

지역별, 연령별로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50대에서는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의 증가', 60대에서는 '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의 약화'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2. 자녀가치관 및 성역할관

가. 자녀의 필요성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찬성하는 응답이 미혼남녀, 기혼부인, 중고령자 각각 79.1%, 84.2%, 93.2%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반대하는 의견도 각각 20.9%, 15.8%, 6.8%로서 상당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고령자는 93.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확고한 자녀관을 보여주고 있으나, 미혼남녀로 갈수록 자녀관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4-8 참조).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인식조사」에서도 50세 이상에서 97.1%, 19~29세에서 81.5%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고령자에 비해 미혼남녀에서 상대적으로 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어, 향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자녀관 확립을 위한 홍보·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표 4-8〉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대한 태도 비교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계(명)
미혼남녀	0.6	20.3	51.9	27.2	100.0 (1,087)
기혼부인	0.6	15.2	53.5	30.7	100.0 (1,031)
중고령자	0.2	6.6	47.7	45.5	100.0 (1,01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미혼남녀의 태도를 살펴보면, 자녀가 필요하다는데 찬성하는 응답이 남자(83.2%)가 여자(75.5%)보다 7.7%p 많았다.[18] 연령별로는 24세 이하가 77.5%, 25~29세 81.5%, 30~34세 80.7%, 35세 이상 74.1%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결혼적령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도가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향후 혼인연령대로 이행할 24세 이하의 미혼남녀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올바른 자녀관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부표 4-6 참조).

기혼부인은 '결혼한 부부는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84.2%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매우 찬성'은 30.7% 수준이었다. 조사 척도가 다소 다르긴 하나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태도가 73.7%에서 매우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가 23.4%로 매우 낮게 조사되어 자녀관의 약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

기혼여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도 미혼남녀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미혼여자(53.8%)에 비해 미혼남자(61.1%)에게서 자녀 필요성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난 바 있다.

19) 1997~2003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이고, 2005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분석결과이다.

40~44세에서 적극적인 찬성의 태도가 36.2%로 가장 많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30%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부표 4-26 참조).

한편, 외벌이(85.9%)보다 맞벌이(82.7%)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자녀관을 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자의 경력관리나 육아문제 등으로 자녀의 출산을 유보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선택적 자녀관으로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관 확립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5년 미만이 77.2%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율이 가장 낮았고, 10~14년이 88.2%로 가장 높았다. 결혼기간이 5년 미만에서 일반적으로 첫째아의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자녀가치관의 확립도 중요하지만 출산의 가능성이 높은 기혼부인에게 호소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자녀수가 1명이하인 경우 77.6%, 2명인 경우 86.3%, 3명이상인 경우 88.8%로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찬성율이 상승하고 반대율이 감소하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3명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매우 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경험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령자의 경우, 성별로는 남자(94.8%)가 여자(91.9%)에 비해 '찬성'이 2.9%p 많았고,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가 9개 도지역보다 '찬성'이 2.5%p 많았다. 연령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95.2%)가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89.9%)에 비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자녀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족형태별로는 독거(93.6%)나 부부

가 함께 사는 경우(94.9%)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92.2%)에 비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었다(부표 4-41 참조).

나. 희망(이상)자녀수

미혼남녀의 희망자녀수와 기혼부인의 이상자녀수를 조사하였다. 양자 모두 실제 출산으로의 이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념을 약간 달리 하였다. 미혼남녀의 희망자녀수는 평균 1.9명이었고, 기혼부인의 이상자녀수는 평균 2.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비교하여 다소 낮아진 결과이다. 세부적으로는 희망 또는 이상자녀수로 2명에 대한 의견이 각각 64.7%, 63.5%로 주를 이루고 있으나, 기혼부인의 경우 3명 이상에서, 미혼남녀의 경우 1명 이하에서 상대방에 비해 우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혼여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자녀수가 감소하였고, 기혼여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상자녀수가 많아졌다. 다시 말해 여자의 연령별로 보았을 때 결혼연령이나 첫째아 출산이 이루어지는 연령대의 희망자녀수가 가장 적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저출산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혼여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식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인의 희망자녀수를 낮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혼여자의 경우 출산을 완료하는 시점이라 추가출산의 가능성은 희박해지지만 자녀가 많은 것이 적은 것에 비해 낫다는 경험치를 반영해 이상자녀수를 많이 잡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4-9〉 희망자녀수 또는 이상자녀수 비교

(단위: %, 명)

구분	1명 이하	2명	3명 이상	계(명)	평균
미혼남녀(희망)	20.3	64.7	15.0	100.0 (1,091)	1.9
기혼부인(이상)	14.1	63.5	22.4	100.0 (1,053)	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가임연령대 여자에게 자녀의 가치를 재인식시킴으로써 희망자녀수를 적어도 평균 수준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자녀의 효용에 대한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 등의 가치관이 '대를 잇기 위해', '결혼을 하면 당연한 일이므로' 등의 전통적인 이유보다 우세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인식조사」(2007년)에서도 '삶의 만족을 위해'(42.0%), '가정의 화목을 위해'(36.8%) 등 전통적 가치관보다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한 응답이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 자녀관의 붕괴되고 새로운 자녀관이 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올바른 자녀관을 확립하여 희망하는 수준의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미혼남녀의 희망자녀수는 남자가 평균 2.0명으로 여자(1.9명)보다 조금 높았는데, 여자의 경우 '1명 이하'가 23.6%로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남자의 경우 연령이 많아지더라도 희망자녀수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35세 이상에서는 '3명 이상'이 21.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부표 4-7 참조).

미혼여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자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24세 이하의 여자에서 21.8%로 상당히 높았으나 35세 이상의 여자에서는 10.1%로 11.7%p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출산을 위한 생식적인 여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육아기간이 생애주기 상 늦어지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미혼의 젊은 여자가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희망하는 자녀수만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혼부인 조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3명 이상'의 비율이 높아져 평균 이상자녀수도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부표 4-27 참조).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상자녀수가 많아지는 것은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와 일관되지만, 평균 이상자녀수는 0.2명이 낮아졌다.[20)]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5년 미만에서 '1명 이하'라는 응답(22.5%)이, 5~9년에서는 '2명'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는데, 대체로 결혼 후 5년 미만에 첫째아를 출산하고 5~9년에 둘째아를 출산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자녀수에 따른 이상자녀수를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기혼 부인에서는 '1명 이하'(23.4%)가, 2명인 기혼부인에서는 '2명'(66.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결혼기간에 따른 이상자녀수의 결과와 병렬해 보면, 결혼 5년 미만의 기혼부인이 첫째아를 출산했다면 이미 이상자녀수를 실현했기 때문에 단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의 경우 '3명 이상'의 응답이 20.6%로 외벌이에 비해 3.0%p 낮게 조사되었으나, 평균값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혼부인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길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자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20) <표> 유배우부인(20~44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및 현존자녀수(2005)

(단위: 명)

구분	전체	20~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이상자녀수	2.30	2.19	2.25	2.32	2.40
기대자녀수	2.02	1.95	1.99	2.05	2.06
현존자녀수	1.77	1.03	1.66	1.97	2.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표 4-10>에서 기혼부인의 이상자녀수와 출생자녀수의 차이를 보면, 30세 미만에서 1.1명으로 그 차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 5년 미만의 젊은 기혼부인들의 단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0〉 기혼부인의 이상자녀수와 현존자녀수의 차이

(단위: %, 명)

구분	전체	연 령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이상
이상자녀수	2.1	2.0	2.0	2.1	2.2	2.2
현존자녀수	1.8	0.9	1.6	2.0	2.1	2.0
이상자녀수-출생자녀수	0.3	1.1	0.4	0.1	0.1	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다. 자녀의 효용가치

희망자녀수 또는 이상자녀수가 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두는 이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미혼남녀, 기혼부인, 중고령자 모두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가 각각 52.5%, 56.0%, 36.3%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미혼남녀, 기혼부인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으로, 중고령자는 '대를 잇기 위해'를 꼽고 있다. 그 외에 기혼부인은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주므로', 미혼남녀와 중고령자는 '결혼을 하면 당연한 일이므로'의 응답도 뒤를 잇고 있다(표 4-11 참조).

여기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의 응답이 각각 0.2%, 0.3%, 1.6%로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생각은 전 연령층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노후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책임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거나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 외 자녀의 효용성에 대해 고령층에서는 대체로 전통적인 자녀관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전 연령층 전반적으로 당위적

또는 고전적인 가치관보다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1〉 자녀를 두는 이유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미혼남녀	기혼부인	중고령자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	22.2	21.0	9.4
결혼을 하면 당연한 일이므로	8.5	5.5	13.7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52.5	56.0	36.3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주므로	6.2	11.9	9.0
대를 잇기 위해	6.0	2.2	20.2
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0.2	0.3	1.6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3.9	2.8	9.7
기타	0.6	0.4	0.1
계	100.0	100.0	100.0
(명)	(1,054)	(1,052)	(1,0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미혼남녀의 성 및 연령별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대를 잇기 위해'가 10.4%p 높았고, 여자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남자에 비해 7.9%p 높았다. 연령별로는 25~29세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56.8%)가, 30~34세는 '결혼하면 당연한 일'(11.6%)이, 35세 이상은 '대를 잇기 위해'(13.2%)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부표 4-8 참조).

기혼부인의 연령별로는 30~34세와 40~44세에서는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주기 때문'(각각 15.7%, 15.1%)이 상대적으로 다소 많았고, 45세 이상에서는 '대를 잇기 위함'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직도 전통적인 자녀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부표 4-28 참조).

중고령자의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대를 잇기' 위해(25.3%), 여자의 경우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11.8%)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젊을수

록 개인의 행복이나 부부관계를 위해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대를 잇거나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를 자녀를 두는 이유라고 응답하였다(부표 4-42 참조).

가족형태별로 독거의 경우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16.1%)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40.20%)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여성들에 있어 '대를 잇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중고령 여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졌으며(미혼여성 2.0%, 기혼부인 2.2%, 중고령 여성 15.9%), 확고한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던 남아선호사상이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 저출산 이유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 미혼남녀와 기혼부인 모두 '자녀 양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응답이 집중(64.8%, 74.6%)되는 경향을 보였다(표 4-12 참조). 「2005년 전국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유배우 여자의 출산 연기 이유 역시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43.9%로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일관된 결과이다. 그 다음 순으로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를 들고 있다. 결국 교육비, 수입, 맞벌이를 위한 탁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제외적인 문제로서 '자아성취 시간의 부족' 때문이란 응답도 등장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주의나 자기본위 성향이 강해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육아 및 교육을 위한 경제적 요인과 자신의 삶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이 단연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4-12〉 저출산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명)

구분	미혼남녀	기혼부인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14.8	9.2
자녀 양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64.8	74.6
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7.5	4.4
출산, 양육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불이익)을 받기 때문	2.7	2.7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1.0	0.5
육아에 대한 경험과 학습 부족으로 육아가 어려워서	0.5	0.3
자아성취 시간이 부족해서	4.8	4.6
부부만의 시간공유를 위하여	1.5	1.8
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1.7	1.2
기타	0.5	0.7
계	100.0	100.0
(명)	(1,100)	(1,0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미혼남녀 응답자의 모든 특성에서 높은 양육·교육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여자에 비해 4.4%p 높고, 여자의 경우에는 '출산, 양육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이 남자에 비해 2.1%p가 높았다(부표 4-9 참조).

연령에 따라서는 24세 이하와 35세 이상에서 '자아성취 시간이 부족해서'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두드러졌다. 또한 25~29세는 '높은 자녀의 양육·교육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특별·광역시는 '높은 자녀의 양육·교육비'를, 9개 도지역은 '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를 비교적 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혼부인의 경우 '높은 자녀 교육·양육비'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30세 미만에서는 '자아성취 시간이 부족'(5.0%), 30~34세에서는 '직장이나 안정된 수입의 비보장'(12.0%)을 상대

적으로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은 연령이 적어질수록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부표 4-29 참조).

소득별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은 '직장이나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를, 3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를 다른 이유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경제적인 이유와 결부해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21],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인 상황이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출산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맞벌이를 하고 있는 기혼부인은 '높은 자녀 교육·양육비' 외에 '직장이나 수입의 불안정'(9.4%), '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의 부족'(5.8%), '자아성취 시간이 부족'(5.3%)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미혼부모에 대한 견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미혼부모)'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녀나 기혼부인 모두 반대의견이 56.9%, 67.4%로서 대체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혼남녀의 경우 찬성의견이 43.1%로서 기혼여성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3 참조).

---

21) 성남시의 「성남시민 의식조사」(2008년)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5점 척도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증가가 가장 높았고,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주거공간부족, 경기불황, 실업률 증가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3〉 미혼부모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계(명)
미혼남녀	14.6	42.3	40.0	3.1	100.0 (1,086)
기혼부인	20.8	46.6	31.3	1.2	100.0 (1,04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미혼남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40.4%)에 비해 여자(45.4%)가 미혼부모에 조금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24세 이하의 미혼여자 중 과반이 넘는 53.9%가 미혼부모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방적인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표 4-10 참조).

기혼부인의 연령별로는 찬성의 의견이 30세 미만 42.9%, 45세 이상 23.4%로 나이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성 개방적인 가치관이 확산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에서 '매우 반대'가 9개 도지역에 비해 5.4%p 적은 대신 긍정적인 응답은 4.2%p 높아 다소 개방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부표 4-30 참조).

마. 성역할관

가사분담에 대한 역할관을 조사한 결과, 미혼남녀의 응답은 '균등 분담'(74.9%)에 집중해 있어 전통적 성분업에 따른 역할규범은 성평등 방향으로 많이 이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가사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달랐다. 기혼여자를 대상으로 한 가사분담 실태를 보면 '균등 분담'은 29.3%에 그치고 있다. 앞서 성평등 역할관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는 여전히 부인(25.1%)에게 맡겨져 있었다(표 4-14 참조).

그러나 기혼여자의 연령대별로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균등 분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전통적 성역할관과 성평등관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평등관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4-31 참조). 여기에 성평등관이 확립된 미혼남녀가 결혼이 증가하면 가사노동에 있어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표 4-14〉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부인이 전담	부인이 좀더 많이	균등 분담	남편이 좀더 많이	남편이 전담	계(명)
미혼남녀	0.6	23.0	74.9	1.4	0.1	100.0 (1,098)
기혼부인	25.1	43.2	29.3	1.2	1.1	100.0 (1,046)

주: 미혼남녀는 결혼 후 가사분담 의향에 대한 응답이고 기혼부인은 현재 가사분담 정도에 대한 응답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기혼부인의 실제 가사분담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균등 분담'은 29.3%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균등 분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전통적 성역할관과 성평등관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평등관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4-31 참조).

자녀수별로는 1명 이하를 둔 경우 '균등 분담'이 38.5%이고 '부인이 좀더 많이'가 38.8%로 남편의 역할이 많이 늘어났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가사와 육아를 '부인이 전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의 경우 가사노동을 '균등하게 분담'(35.0%)한다고 응답하였다.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취업한 기혼여자의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와 비교하면 '전적으로 부인'이 하는 경우는 10.1%p 낮아졌고, 부부가 함께하는 균등 분담은 7.3%p 높아졌다. 이로써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이 성평등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2].

제3절 저출산·고령화 현상·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저출산·고령화 현상·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인지·찬성도

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 인식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미혼남녀, 기혼부인, 중고령자 각각 78.5%, 85.3%, 88.3%로 대부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23], 중고령자로 갈수록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는 저출산 현상에 국한하여 그 심각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미혼남녀의 '심각하다'는 응답은 각각 75.2%, 78.7%, 기혼여자는 80.9%로 나타났다. 본조사와 비교할 때, 3년 동안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기혼여자들에게 보다 많이 침투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5〉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계(명)
미혼남녀	0.2	7.1	14.2	46.0	32.5	100.0 (1,093)
기혼부인	0.5	3.4	10.8	41.4	43.9	100.0 (1,049)
중고령자	0.6	3.5	7.5	29.5	58.8	100.0 (1,0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22) <표> 기혼여자의 가사 및 육아분담(2005년)

(단위: %)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이외 다른사람	계(명)
가사	26.5	39.7	27.7	1.1	–	5.0	100.0 (1,158)
자녀양육	19.0	36.7	34.6	3.2	0.1	6.4	100.0 (1,6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3)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의식조사」(2007년)에서도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가 81.0%로 '심각하지 않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의 '심각하다'는 응답이 81.7%로 남자에 비해 6.8%p 많았고, 연령별로 '심각하다'는 응답은 25~29세가 80.8%로 가장 많았고, 35세 이상에서는 74.4%로 비교적 적었다. 지역별로는 9개 도지역과 특별·광역시의 '심각하다'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이며,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심각하다'는 응답이 80.8%로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부표 4-12 참조).

기혼부인은 연령별로 45세 이상에서 '심각하다'가 9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저출산·고령화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9개 도지역이 특별·광역시에 비하여 저출산·고령화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부표 4-32 참조).

중고령자의 경우, 여자(89.0%)가 남자(87.6%)보다 '심각하다'는 응답이 1.4%p 많았고, 특별·광역시(90.1%)가 9개 도지역(86.8%)에 비해 3.3%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가족형태, 수혜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부표 4-43 참조).

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본인 영향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 있다'는 응답이 저출산의 경우 미혼남녀 48.6%, 기혼부인 54.6%, 중고령자 59.4%로 나타났고, 고령화의 경우에는 미혼남녀 67.8%, 기혼부인 75.6%, 중고령자 73.1%로 나타나 저출산보다 고령화의 영향을 대체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4-16 참조).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저출산·고령화와 본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다'는 응답이 저출산 66.0%, 고령화 72.2%로 본 조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저출산·고령화와 본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4-16〉 저출산·고령화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영향 없다	거의 영향 없다	보통이다	영향 있는 편이다	매우 영향 많다	계(명)
저출산의 영향						
미혼남녀	4.8	18.0	28.6	35.5	13.1	100.0 (1,094)
기혼부인	4.1	18.0	23.3	38.8	15.8	100.0 (1,045)
중고령자	5.7	17.7	17.0	40.2	19.2	100.0 (1,009)
고령화의 영향						
미혼남녀	2.4	9.7	20.6	41.5	25.9	100.0 (1,097)
기혼부인	1.0	7.4	15.8	42.7	32.9	100.0 (1,047)
중고령자	2.3	9.0	20.9	42.0	25.8	100.0 (1,09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심각성에 대한 인식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타인의 문제, 사회제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인식이 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저출산·고령화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미혼남녀는 고령화(67.8%)가 저출산(48.6%)보다 본인에게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의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5.6%p 많았고,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41.5%, 25~29세 45.6%, 30~34세 51.8%, 35세 이상 53.5%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저출산이 본인에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지역별로는 9개 도지역의 '영향 있다'는 응답이 특별·광역시에 비해 5.3%p 많았고, 경제활동유형에 따라서는 상용근로자(48.2%)가 가장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에 비해 '영향 있다'는 응답이 12.3%p 많아 비교적 많은 차이를 보였다(부표 4-13 참조).

고령화의 경우에도 저출산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5.9%p 많았고, 지역별로는 9개 도지역의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특별·광역시에 비해 비교적 많았다(6.7%p).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61.5%, 25~29세 68.6%, 30~34세 70.2%로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고령화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경제활동 유형 중 상용근로자의 '영향 있다'는 응답(69.7%)이 임시·일용근로자(65.4%)나 무직(64.3%)에 비해 많았다. 또한 대졸 이상(71.0%)이 고졸 이하(59.8%)에 비해 고령화가 본인에게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부표 4-14 참조).

기혼부인은 저출산·고령화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출산은 54.6%, 고령화는 75.6%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저출산에 비해 고령화에 대한 영향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먼저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0~34세에서 '영향있다'가 43.6%로 가장 저조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저출산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에 비해 9개 도지역에서 '영향있다'는 응답이 0.5%p 높은 정도였다(부표 4-33 참조).

한편,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기혼부인은 38.7%, 5~9년은 58.5%, 10~14년은 48.9%만이 저출산이 본인에게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1명 이하에서 51.8%만이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결혼기간이 15년 이상 된 기혼부인이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기혼부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결과이다. 결혼 후 5년 미만 사이에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층이 저출산을 나와는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출산' 행위로 풀어가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출산의 사회적 의미를 알리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고령화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령별로 30세 미만은 65.7%, 30~34세 72.0%, 35~39세 77.1%, 40~44세 79.8%, 45세 이상은 78.7%로 연

령이 많아질수록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가 9개 도지역에 비해 '영향있다'는 응답이 2.1%p 많았는데, 이것은 저출산의 영향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또한 저출산의 경우 맞벌이와 외벌이의 차이가 큰 편이었으나, 고령화의 경우에는 맞벌이 76.5%, 외벌이 75.0%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부표 4-34 참조).

중고령자는 저출산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59.4%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고령화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3.1%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고령화의 영향을 보다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부표 4-44 참조).

성별에 따라서는 저출산이 '영향 있다'는 응답이 남자 59.1%, 여자 59.8%로 차이가 거의 없었고, 지역별로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령별로 '영향 있다'는 응답은 55~59세(62.4%)에서 가장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고령화에 대해서는 저출산에 비해 영향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더 높은 가운데, 여자(75.9%)가 남자(69.8%)보다 고령화의 영향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서 평균수명이 훨씬 긴 여성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 60~64세(71.3%)에서 영향 있다는 인식이 가장 낮았고, 65~69세(77.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부표 4-45 참조).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의 70.0%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벌이가 없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4.8%p 많은 74.8%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로써 노년을 대비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은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와 '영향 있다'는 응답률은 반비례를 나타냈는데(1명 이하 75.0%, 2명 74.3%, 3명 이상 71.7%), 자녀가 많을수록 노년이 되어 의지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형태

별로는 기타를 제외하면 자녀와 함께 살거나 부부끼리 사는 경우가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73.0%로 나타났고, 혼자 사는 경우에는 71.0%로 오히려 적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 기본계획의 인지도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으로 2006년부터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또는 '세부사업까지 알고 있다')가 미혼남녀 44.8%, 기혼부인 59.1%, 중고령자 58.0%로 조사되었다. 2007년 실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가 31.5%, 비인지가 68.5%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인지도가 10% 이상 상승했다고 하겠다. 더욱이 20~49세 기혼여자의 인지도는 27.6%p나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6년 기본계획 발표 이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면서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출산장려정책 등 각종 시책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1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른다	명칭정도	세부사업까지 알고 있다	계(명)
미혼남녀	55.2	41.6	3.2	100.0 (1,100)
기혼부인	41.0	56.4	2.7	100.0 (1,052)
중고령자	41.9	55.0	3.0	100.0 (1,0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미혼남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의 인지도가 남자에 비해 3.9%p 높았고, 연령별로는 35세 이상이 57.1%, 25~29세가 46.7%, 30~34세가 43.3%, 24세 이하가 30.6%의 순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의 인지도가 9

개 도지역에 비해 1.8%p 높은 정도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46.8%)이 고졸 이하(39.8%)에 비해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부표 4-15 참조).

기혼부인의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졌고, 40~44세에서는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4.7%로 비교적 높았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계획에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56.9%)보다 맞벌이(61.7%)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p 많았다. 여자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된 결과로 보인다(부표 4-35 참조).

중고령자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의 인지도가 조금 더 높았고, 50대가 60대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본계획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인지도가 높았다(부표 4-46 참조).

가족형태별로는 독거노인의 경우 부부끼리 거주하거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인지도가 낮았고, 기초노령연금이나 교통수당의 수혜자가 비수혜자에 비해 기본계획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간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제 막 도입되는 단계에 있으나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도화 해 나아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리는 홍보활동은 부진한 탓으로 해석된다.

다. 기본계획의 인지경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미혼남녀 446명과 기혼부인 590명에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조사하였다. 인지경로로는 미혼남녀, 기혼부인 모두 공통적으로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라는 응답이 각각 69.3%, 78.8%로 월등히 많았고,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가 39.0%, 50.0%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 지인(11.9%, 13.6%), 안내문, 포스터, 현수막 등 공공기관의 홍보물(11.0%, 7.1%)이 이용되고 있었다(표 4-18 참조).

미혼남녀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지인’을 통한 경우가 약간 많았고(2.7%p), 연령대별로는 전파 및 인쇄매체 외에 24세 이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9.4%), 25~34세는 ‘공공기관의 홍보물’(13.1%)을 이용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지역별로는 전파 및 인쇄매체 외에 9개 도지역에서 특별·광역시에 비해 ‘안내문, 포스터, 현수막 등의 공공기관의 홍보물’(10.3%)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부표 4-16 참조).

〈표 4-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인지경로(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미혼남녀	기혼부인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 지인을 통해서	11.9	13.6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39.0	50.0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69.3	78.8
각종 교육 및 세미나	5.1	2.7
공공기관의 홍보물(안내문, 포스터, 현수막 등)	11.0	7.1
공공기관 주관의 각종 이벤트	0.0	0.5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4.5	3.7
기타	13.4	6.9
(대상자수)	(446)	(59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기혼부인의 응답자 특성별로는 대체로 전파나 인쇄매체가 우세한 가운데, 연령별로 30세 미만의 젊은 기혼여자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10.4%) 등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9개 도 지역에서 안내문, 포스터, 현수막 등 공공기관의 홍보물(8.6%)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부표 4-36).

라. 정책대응의 적정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미혼남녀 10.4%, 기혼부인 10.4%, 중고령자 30.5%로 대체로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24] 반면, '그렇지 않다'는 미혼남녀 49.9%, 기혼부인 60.7%, 중고령자 35.6%로 정부의 대응에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조사대상별로는 중고령자가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들을 일견하면 고령 관련 정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규모가 큰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젊은 층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젊은 층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수혜층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계층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측면에서의 정책 제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부담에 공감대 형성과 비용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4)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 지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가 35.5%, '대비가 없다'가 64.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19〉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적절 대응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계(명)
미혼남녀	10.4	39.5	31.5	9.2	1.2	8.3	100.0 (1,100)
기혼부인	15.9	44.8	24.6	8.9	1.5	4.2	100.0 (1,051)
중고령자	7.4	28.2	26.3	23.8	6.7	7.5	100.0 (1,0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미혼남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비슷한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개 도지역에 비해 14.3%p 많아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부표 4-17 참조).

기혼부인의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수별로는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1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에 비해 4.7%p 높게 나타나 긍정적이었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나,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직장)보육시설의 증설 및 질 개선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의 효과로 판단된다(부표 4-37 참조).

중고령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44.0%)이 팽배했고, 여자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이 비교적 강했다(긍정적 32.7%, 부정적 28.8%).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 대응에 긍정적이었고, 낮을수록 부정적이었다. 다만, 65~69세에서 부정적 인식이 60~64세에 비해 2.3%p 많이 나타났다(부표 4-47 참조).

이밖에 일을 하지 않는 경우(31.2%), 혼자 사는 경우(44.1%), 기초노령연금이나 교통수당 등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45.8%)가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정부의 대응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 전반적 정책찬성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찬성도를 보면, 저출산 정책의 경우 미혼남녀의 54.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령화 정책의 경우 미혼남녀의 55.9%, 기혼부인의 6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부인에서 고령화 정책에 대한 찬성도가 다소 높은 것은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매체 등을 통해 활발히 홍보되면서 노년에 가까울수록 노년에 대한 환기가 쉽게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년에 가까울수록 그것에 대비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0〉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전반적 찬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안함	대체로 찬성안함	보통이다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잘 모르겠다	계(명)	찬성
저출산정책								
미혼남녀	1.0	10.5	28.5	38.0	16.7	5.4	100.0 (1,100)	54.7
고령화정책								
미혼남녀	0.7	7.4	32.6	39.3	16.6	3.5	100.0 (1,098)	55.8
기혼부인	0.4	4.2	22.1	41.3	26.5	5.5	100.0 (1,052)	68.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찬성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를 보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남녀 각각 96.5%, 98.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는 과반 정도의 찬성만 보이고 있는데다, 앞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미혼남녀

녀와 기혼부인이 각각 10.4%만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책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정책 찬성도에 대한 미혼남녀 특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4.2%p, 특별·광역시에 비해 9개 도지역이 6.9%p 저출산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찬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연령이 많아질수록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부표 4-18 참조).

한편, 고령화대책에 대하여는 미혼여자의 찬성도가 남자에 비해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35세 이상의 찬성도가 66.3%로 가장 높고 30～34세의 찬성도가 50.4%로 가장 낮았다. 34세까지 찬성도가 낮아지다 35세 이상에서 찬성도가 높아지는 것은 노후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저출산 정책과는 달리 고령화 정책에 대한 찬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부표 4-19 참조).

기혼부인은 고령화대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30세 미만 59.6%, 30~34세 69.8%, 35~39세 65.8%, 40~44세 70.7%, 45세 이상 71.4%로 35~39세에서 다소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고령화 대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9개 도지역이 특별·광역시에 비해 '찬성'의 의견이 7.3%p 높아 긍정적인 것을 나타났다(부표 4- 38 참조).

바. 사회적 분위기 개선 정도

<표 4-21>에서 결혼·출산·양육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정도에 대해 미혼남녀의 34.6%, 기혼부인의 37.0%가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7.9%만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25]고 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증가하였다. 이처럼 분위기는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부정적인 것은 분위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 등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 정도에 대해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49.0%가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21〉 사회적 분위기 개선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계(명)
결혼·출산·양육을 배려(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 정도							
미혼남녀	5.5	26.0	31.3	32.7	1.9	2.6	100.0 (1,099)
기혼부인	5.9	22.8	31.1	35.0	2.0	3.2	100.0 (1,054)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배려) 등의 사회적 분위기 개선 정도							
중고령자	6.4	16.4	25.2	38.6	10.4	3.1	100.0 (1,0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미혼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개선되었다'가 '개선되지 않았다'보다 4.0%p 많아 긍정적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 '개선되지 않았다'가 '개선되었다'보다 2.4%p 많아 남성에 비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부표 4-20 참조).

지역별로는 9개 도지역은 '개선되었다'가 '개선되지 않았다'보다 10.3%p 많아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특별·광역시의 경우 '개선되지 않

25) 본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직장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의 조성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27.9%만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았다'가 '개선되었다'보다 6.9%p 많아 결혼·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편, 연령이나 교육수준별로는 '개선되었다'나 '개선되지 않았다'에 대한 응답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기혼부인은 연령대에 따라 나이가 많을수록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30세 미만에서는 '개선되었다'(37.2%)와 '개선되지 않았다'(36.4%)는 응답의 차이가 적어 사회적 분위기 개선 정도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9개 도지역에서 '개선되었다'가 특별·광역시에 비해 3.1%p 높아 다소 긍정적이었다(부표 4-39 참조).

기혼부인 중 자녀수가 1명인 기혼부인의 33.8%, 2명인 경우의 37.6%, 3명인 경우의 41.3%가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맞벌이를 하는 기혼부인이 외벌이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5.3%p)이 있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 등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 정도에 대해 중고령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남자(39.9%)보다 여자(56.4%)가, 특별·광역시(43.9%)보다 9개 도지역(52.8%)에서 분위기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대별로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부표 4-48 참조).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벌이가 있는 고령자(46.6%)보다 벌이가 없는 고령자(50.3%)의 인식이 긍정적이었고, 가족형태별로는 독거노인의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56.4%로 비교적 높았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령화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이나 교통수당의 수혜자(53.9%)가 비수혜자(47.9%)에 비해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6.0%p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특·광역시 지역보다 9개 도지역이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도 단위에서는 아직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

회적 분위기의 압박이 심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경향이 남아 있으며, 이 같은 분위기는 결국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도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세부과제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혼남녀에 대해서 결혼촉진을 위한 선결과제, 출산장려를 위한 중점시책을, 기혼부인에 대하여는 주요 저출산정책의 인지도와 중요도를, 그리고 중고령자에 대하여는 주요 고령화정책의 인지도와 도움정도,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대상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질문을 한 이유는 각 대상들이 해당과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지도, 정책체감도, 정밀한 판단력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가. 미혼남녀의 결혼촉진을 위한 선결과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미혼남녀에게 결혼 촉진을 위한 과제와 출산장려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선택하도록 설문하였다.

결혼 촉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청년 실업 해소 등 고용안정'이 50.0%로 가장 많았고,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39.6%),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28.5%), '혼인 및 출산 가치관 확립'(22.6%),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20.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22 참조).

〈표 4-22〉 미혼남녀의 결혼촉진을 위한 선결과제(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혼인·출산	양성평등	일·가정	고용안정	혼례문화	주택공급	결혼자금	만남기회	기타	(대상자수)
전체	22.6	20.8	39.6	50.0	7.4	28.5	15.7	4.9	1.1	(1,100)
성별										
남자	19.9	13.7	29.0	58.2	7.2	34.2	19.1	7.0	1.8	(513)
여자	25.0	27.0	48.9	42.9	7.5	23.6	12.6	3.1	0.5	(587)
지역										
특별·광역시	17.7	25.1	42.8	49.7	6.3	27.4	16.6	3.0	1.5	(463)
9개 도지역	26.2	17.7	37.4	50.3	8.2	29.4	15.1	6.4	0.8	(637)
연령										
24세 이하	19.2	21.1	41.5	47.7	6.7	29.4	17.6	4.7	1.0	(193)
25~29세	22.7	16.2	36.3	51.1	7.5	32.1	18.4	4.0	1.6	(321)
30~34세	24.8	21.8	46.9	49.6	8.5	25.6	12.8	4.4	1.1	(367)
35세 이상	21.9	25.6	30.6	51.4	5.9	27.7	15.1	7.8	0.9	(219)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23.6	22.3	40.0	48.9	6.8	28.5	15.3	4.8	1.3	(693)
임시일용근로자	30.3	19.7	36.8	41.8	11.2	29.6	17.6	4.6		(152)
무직(학생포함)	15.7	17.3	40.4	58.0	6.7	27.8	15.6	5.9	1.2	(255)
교육수준										
고졸이하	17.5	18.1	33.2	55.3	6.8	31.9	19.1	6.1	1.0	(309)
대졸이상	24.7	21.9	42.2	47.9	7.6	27.2	14.4	4.6	1.1	(791)

주: 1) ① 혼인 및 출산 가치관 확립, ②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③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 ④ 청년 실업 해소 등 고용 안정, ⑤ 건전한 혼례문화 조성, ⑥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 ⑦ 결혼자금 융자 확대, ⑧ 건전한 미혼남녀의 만남 기회·장소 제공, ⑨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자는 여자에 비해 '청년 실업 해소 등 고용 안정'(58.2%)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48.9%)이나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27.0%)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청년 실업 해소 등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고, 35세 이상의 미혼남녀에서는 '건전한 미혼남녀의 만남 기회나 장소의 제공'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였다.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서는 학생을 포함한 무직자들은 '청년 실업 해소 등 고용 안정'(58.0%)이 해결되어야 하며, 상용근로자는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40.0%)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비교적 높았다.

나. 미혼남녀의 출산촉진를 위한 중점시책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51.1%), '보육·교육비 지원'(46.2%), '출산장려금 지원'(25.4%),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20.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인식조사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환경조성을 통해 저출산 개선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 출산과 양육 관련 정책 중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가 최우선으로 조사된 것과 일관된 결과이며,[26] 기혼부인의 주요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비교해 볼 때,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인식은 다소 떨어졌으나 보육·교육비, 보육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보육·교육비 지원'(52.9%), '출산장려금 지원'(31.3%)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여자의 경우에는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55.8%),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28.6%), '산모도우미 서비스'(13.8%)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보육·교육비 지원'과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30~34세에서는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35세 이상에서는 '불임부부의 치료 지원'을 선호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장려금 지원'을 선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 유형별로 상용근로자는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에, 학생을 포함한 무직자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미혼남녀의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에서도 본 조사와 같이 양육·교육비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미혼남녀의 출산장려를 위한 중점시책(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대상자수
전체	25.4	11.8	5.3	7.7	51.1	46.2	4.5	6.5	4.5	20.9	4.4	1.7	(1,100)
성별													
남자	31.3	9.6	5.1	5.7	45.8	52.9	5.8	6.0	6.6	12.1	5.8	2.1	(512)
여자	20.3	13.8	5.4	9.5	55.8	40.4	3.4	6.8	2.7	28.6	3.1	1.4	(588)
지역													
특별·광역시	23.1	12.7	5.6	7.3	50.8	41.6	5.0	9.1	5.8	20.3	5.6	1.5	(463)
9개 도지역	27.0	11.3	5.0	8.0	51.4	49.6	4.2	4.6	3.8	21.4	3.5	2.0	(637)
연령													
24세 이하	36.3	11.3	7.3	5.2	41.8	46.9	4.6	5.2	6.7	18.6	5.7	–	(194)
25~29세	29.6	11.2	4.7	6.2	45.2	47.7	6.2	7.2	6.9	17.4	4.7	3.7	(321)
30~34세	22.1	12.8	6.0	7.9	56.1	42.1	3.8	6.3	1.6	29.5	3.0	1.6	(366)
35세 이상	15.1	11.9	2.7	11.4	59.4	50.7	3.7	6.8	4.1	13.7	5.5	0.9	(219)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23.3	12.1	4.0	8.5	55.8	45.4	3.0	6.8	3.6	23.4	3.8	2.2	(693)
임시일용근로자	25.5	9.2	7.2	6.6	49.0	49.7	5.9	4.6	4.6	25.5	3.3	0.7	(152)
무직(학생포함)	31.0	12.9	7.5	6.3	39.8	46.7	7.8	6.3	7.5	11.7	6.7	1.6	(255)
교육수준													
고졸이하	30.1	12.0	6.1	7.8	41.7	49.5	4.8	6.5	6.8	16.8	7.1	0.3	(309)
대졸이상	23.5	11.9	4.9	7.7	54.9	45.0	4.4	6.4	3.8	22.5	3.4	2.3	(791)

주: 1) ① 출산장려금 지원, ② 산모도우미 서비스, ③ 모성 및 영유아 건강검진, ④ 불임부부의 치료 지원, ⑤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⑥ 보육·교육비 지원, ⑦ 아동수당, ⑧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⑩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 ⑪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입주 우선권, ⑫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다. 기혼부인의 주요 저출산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중요도

저출산 정책의 세부과제로 ① 불임, 산모도우미 등의 임산·출산 지원, ② 만5세아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③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④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분양 인센티브제도, ⑤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⑥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 ⑦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7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인지도를 측정하였고, 동시에 각 정책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60% 이상

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각 정책의 중요도도 평균 4.0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요정책의 인지도는 구체적으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89.1%로 가장 높았고, '만5세아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85.7%), '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분양 인센티브제도'(76.5%), '불임, 산모도우미 등의 임산·출산 지원'(75.5%)의 순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2007년 복지부의 인식조사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환경조성 지원에 대한 세가지 정책의 인지도를 조사하였는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의 인지도가 64.9%로 가장 높았고,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60.7%),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58.9%)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2007년의 결과에 비해 인지도가 크게 개선되었는데,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과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인지도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본 조사는 정책수혜층인 기혼여자를 대상으로 한데 반해 보건복지가족부(2007)의 조사는 일반성인을 대상자로 조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개선 폭이 매우 커서 여자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한 결과라고 제한적이나마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정책의 중요도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의 중요도가 평균 4.4점(5점 척도)으로 우위를 보였다. 이것 외에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이 평균 4.3점,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가 평균 4.2점 등의 순이다.

인지도와 중요도를 견주어 보면 대체로 중요도가 높으면 인지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

대'나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은 비교적 중요도는 높은 편이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분양 인센티브제도'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은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인지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홍보부족에 기인하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후자는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자연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기혼부인의 주요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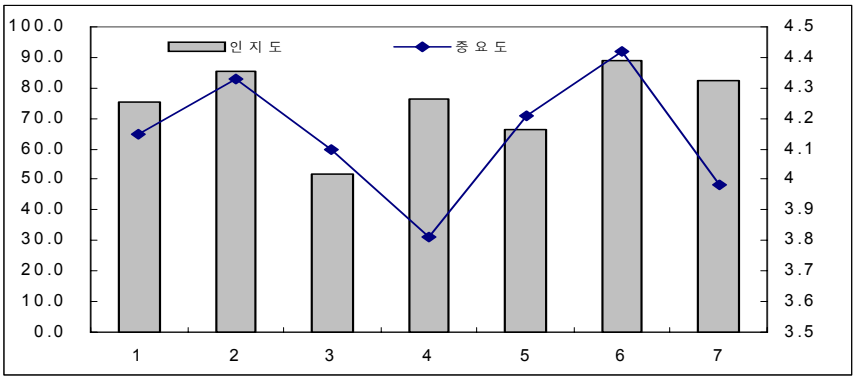

주: 1) ① 불임, 산모도우미 등의 임산·출산 지원, ② 만5세아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③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④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분양 인센티브제도, ⑤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⑥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 ⑦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

2) 인지도는 ① 전혀 모른다, ②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③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의 척도로 측정하여 ②와 ③을 합한 응답률이며, 중요도는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값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각 정책의 인지도를 기혼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불임, 산모도우미 등의 임산·출산 지원'의 경우,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유형에 따라서는 2세 이하의 유아를 둔 경우 인지도가 87.0%로 비교적 높았다(표 4-24 참조).

‘만5세아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27] 기혼부인 특성별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인지도가 높았고, 특히 3~6세의 자녀를 둔 기혼부인의 인지도가 91.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수혜 계층이 만5세아 이하의 아동을 둔 가구이기 때문에 상기 계층의 높은 인지도는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기혼부인의 특성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은 없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분양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결혼 15~19년차가 81.6%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자녀수가 2명인 경우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부인의 인지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 후 15~19년 무렵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많거나 클수록 더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히 주택 관련 정보에 밝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지도는 결혼기간별로는 5~9년이 64.8%, 5년 미만이 59.9%를 나타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3명 70.1%, 2명 67.9%, 1명 61.8%). 자녀 유형에 따라서는 육아지원서비스의 주요 이용계층이 되는 3～6세를 둔 기혼부인이 67.1%, 2세 이하 유아를 둔 경우가 67.2%로 초등학생(69.1%)을 둔 경우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외벌이(67.5%)보다 맞벌이(64.9%)의 인지도가 낮았다. 이것은 맞벌이가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일가정 양립의

27) 이러한 결과는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인식조사에서 ‘영유아 보육·교육비 차등 및 전액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가 58.9%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긍정적인 영향을 다소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본 조사는 정책 수혜계층인 기혼여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결과 비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려움으로 자녀를 적게 출산하기 때문[28]에 그만큼 육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육아지원서비스는 직장여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사실상 주부들이 육아 관련 정보와 서비스 이용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다양한 육아서비스 욕구를 발굴하고 대응해 가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해서는 중고생이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부인(각각 90.8%, 89.9%)과 맞벌이를 하는 기혼부인(90.3%)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이 최근에는 남편에게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직장여성를 위한 정책이고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의 경우에도 정책의 대상층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부인의 인지도가 89.7%로 가장 높았다.

---

28) 본 조사에서 맞벌이와 외벌이의 출산 자녀수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1명 이하'(36.2%)가 2배 가량 많았고, 역으로 외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3명 이상'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맞벌이와 외벌이의 출산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1명 이하	2명	3명 이상	계(명)
맞벌이	36.2	54.8	8.9	100.0 (425)
외벌이	18.0	66.0	15.9	100.0 (6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표 4-24〉 기혼부인 특성별 저출산 주요 정책의 인지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임산·출산	보육·교육비	조세·사회보험	주택 분양	시설 확충	일·가정	방과후 학교	(대상자수)
전체	75.5	85.7	52.1	76.5	66.5	89.1	82.6	(1,053)
결혼기간								
5년 미만	79.1	76.8	40.3	67.6	59.9	84.9	66.9	(139)
5~9년	79.8	90.8	58.2	77.0	64.8	90.1	74.5	(183)
10~14년	72.3	91.6	51.7	79.4	67.6	87.5	88.2	(296)
15~19년	72.8	85.7	53.5	81.6	69.3	89.4	93.1	(217)
20년 이상	76.4	79.1	53.5	72.6	67.4	92.6	81.0	(216)
자녀수								
1명 이하	75.6	83.4	50.5	74.7	61.8	87.6	74.6	(290)
2명	75.0	86.5	53.5	78.0	67.9	89.9	85.7	(635)
3명 이상	78.0	87.3	49.6	73.2	70.1	88.9	85.8	(126)
자녀유형[3]								
2세 이하 유아	87.0	89.5	50.2	76.1	67.2	89.9	74.6	(200)
3~6세	77.3	91.5	56.7	77.7	67.1	87.9	82.3	(282)
초등학생	73.2	89.0	51.5	79.4	69.1	89.3	89.7	(456)
중고등학생	75.2	83.6	51.7	77.5	69.2	90.8	89.0	(347)
맞벌이 여부								
맞벌이	73.7	85.5	51.5	77.0	64.9	90.3	79.7	(434)
외벌이	76.7	86.1	51.7	75.6	67.5	88.2	84.5	(603)

주: 1) ① 불임, 산모도우미 등의 임산·출산 지원, ② 만5세아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③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④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분양 인센티브제도, ⑤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⑥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 ⑦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

2)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합한 값임.

3) 자녀유형은 각 유형의 자녀를 둔 경우를 모두 분석에 포함시킴. 가령 두 자녀를 둔 경우 유형에 따라 각각 포함되었기 때문에(중복응답) 전체 합이 일치하지 않으며, 다른 특성별 분석에서는 무응답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기혼부인 특성별 저출산 주요 정책의 중요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불임, 산모도우미 등의 임산·출산 지원에 대해서는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기혼부인이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중요하다(평균 4.33점)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대체로 임신과 출산이 집중되는 때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5세아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과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의 경우에도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달리 말해 정책 수요가 높은 집단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이라면, 보육·교육비 지원의 경우 인지도에서는 외벌이의 인지도가 높았으나, 중요도에서는 맞벌이의 중요도가 외벌이에 비해 평균 0.14점 높게 나타났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분양 인센티브제도는 대체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가운데, 결혼기간 5년 미만(3.94), 15~19년(3.85), 2세 이하(3.85점)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3.82점) 등 주택 마련이나 확장 시기의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와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해서는 결혼기간 5년 미만(각각 4.43점, 4.63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유형별로는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부인이 4.41점,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해서는 3~6세의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부인이 4.52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한편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육·교육비 지원과 같이 맞벌이 기혼부인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중요도는 평균 0.15점 높게 조사되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은 다른 정책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고 있었으나, 결혼기간 5~9년의 기혼부인(4.25점)과 2세 이하의 유아를 둔 기혼부인(4.18점)이 다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위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에 비해 7개 정책 모두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맞벌이에 있어서 모든 정책이 나름의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결국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5〉 기혼부인 특성별 저출산 주요 정책의 중요도

(단위: 평균 점수, 명)

구분	임산·출산	보육·교육비	조세·사회보험	주택 분양	시설 확충	일·가정	방과후 학교	계 (명)
전체	4.15	4.33	4.10	3.81	4.21	4.42	3.98	100.0 (1,053)
결혼기간								
5년 미만	4.33	4.64	4.33	3.94	4.43	4.63	4.03	100.0 (139)
5~9년	4.16	4.50	4.18	3.80	4.33	4.52	4.25	100.0 (183)
10~14년	4.13	4.33	4.07	3.73	4.13	4.36	4.00	100.0 (296)
15~19년	4.13	4.14	4.03	3.85	4.16	4.42	3.86	100.0 (217)
20년 이상	4.08	4.16	3.98	3.81	4.12	4.30	3.79	100.0 (215)
자녀수								
1명 이하	4.18	4.46	4.12	3.76	4.24	4.46	3.96	100.0 (291)
2명	4.14	4.26	4.09	3.78	4.19	4.43	3.96	100.0 (634)
3명 이상	4.10	4.33	4.08	4.06	4.23	4.34	4.08	100.0 (126)
자녀유형[3]								
2세 이하 유아	4.29	4.58	4.31	3.85	4.41	4.51	4.18	100.0 (201)
3세~6세	4.19	4.43	4.20	3.82	4.31	4.52	4.16	100.0 (282)
초등학생	4.13	4.27	4.04	3.80	4.15	4.39	3.98	100.0 (455)
중고등학생	4.09	4.16	3.98	3.82	4.12	4.37	3.83	100.0 (346)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0	4.41	4.13	3.91	4.30	4.54	4.04	100.0 (431)
외벌이	4.12	4.27	4.08	3.75	4.15	4.35	3.93	100.0 (600)

주: 1) ① 불임, 산모도우미 등의 임산·출산 지원, ② 만5세아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③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④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분양 인센티브제도, ⑤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⑥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 ⑦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

2)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에 의한 평균값임.

3) 자녀유형은 각 유형의 자녀를 둔 경우를 모두 분석에 포함시킴. 가령 두 자녀를 둔 경우 유형에 따라 각각 포함되었기 때문에(중복응답) 전체 합이 일치하지 않으며, 다른 특성별 분석에서는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라. 고령자의 주요 고령화대책에 대한 인지도, 수혜도, 중요도

1) 고령자의 주요 고령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노인일자리사업, 역모기지,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방문보건사업이나 노인운동사업에 대한 50대 이상의 중고령자의 인지도를 '①전혀 모른다-②조금 알고 있다-③알고 있다-④많이 알고 있다'의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각 정책의 인지도(조금 알고 있다+알고 있다+많이 알고 있다)가 노인일자리사업 77.2%, 역모기지 76.6%, 방문보건사업이나 노인운동사업 70.9%로 대체로 높게 조사되었다. 다만, 고령자 주거지원정책의 인지도만 45.0%로 저조한 편이었다.

〈표 4-26〉 고령자의 주요 고령화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름	알고 있다				계(명)
		소계	조금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많이 알고 있음	
노인일자리사업	22.8	77.2	47.0	25.8	4.4	100.0 (1,021)
역모기지제도	23.4	76.6	31.1	36.0	9.5	100.0 (1,022)
주거지원정책	55.0	45.0	28.6	14.0	2.4	100.0 (1,022)
방문보건사업	29.1	70.9	33.4	29.2	8.4	100.0 (1,02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2007년 복지부의 인식조사에서는 ①노인일자리 알선 및 직업교육 실시, ②노인학대 예방센터, ③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④60세 이전 재취업자 인센티브 제공 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노인일자리 알선 및 직업교육 실시'가 66.7%로 가장 높았고, 노인학대 예방센터(62.9%), 노인 건강증진사업(48.2%), 60세 이전 재취업자 인센티브 제공(37.7%)의 순이었다. 동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조사의 주요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긴 하나

복지부의 조사는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본 조사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는 있다. 정책 수혜자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지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경향만 본다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그림 4-2〕 고령자의 주요 고령화 정책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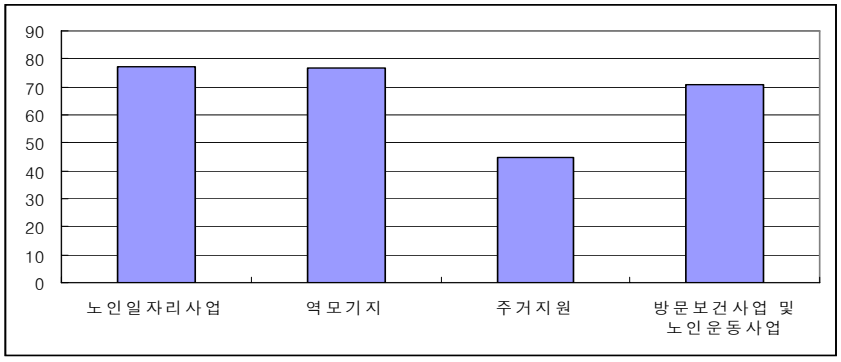

주: 인지도는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알고 있다, ④ 많이 알고 있다'의 4점 척도 중 전혀 모른다를 제외한 응답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지도를 보면,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노인 일자리 알선 및 직업교육 실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가 66.7%로 조사되었는데, 본 조사에서는 이보다 10.5%p 높은 7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복지부의 조사는 20세 이상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본 조사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가 있으나, 조사대상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정책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성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의 인지도가 여자에 비해 3.5%p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가 9개 도지역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7.2%p) 나타났고, 벌이가 있는 고령자의 인지도가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2.4%p 높았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80.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부표 4-49 참조).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노후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역모기지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29]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8.6%p 많이 알고 있었고, 특별·광역시의 고령자가 9개 도지역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2%p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의 인지도가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다소(6.3%p) 높았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독거하는 경우의 인지도가 57.2%로 상당히 떨어졌는데, 정책의 성격상 주택 소유자의 주의를 보다 강하게 환기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부표 4-50 참조).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주택개조 등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45.0%로 다른 정책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다. 성별 및 지역별로는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비교적 많이 알고 있었고, 연령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족형태별로는 기타를 제외하면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독거나 부부끼리 사는 경우에 비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46.7%) 높았다(부표 4-51 참조).

중고령자의 특성별 방문보건사업이나 노인운동사업의 인지도를 보면, 다른 정책의 경우 남성자 인지도가 대체로 높으나 이 사업은 여자의 인지도가 4.5%p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60~64세의 인지도가 74.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많이 알고 있을 뿐 어떠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부표 4-52 참조).

---

29)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역모기지제도에 대해서 74.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고령자의 주요 고령화정책에 대한 도움정도

2008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여가활동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각 정책의 도움 정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90.3%, 노인여가생활 활성화 82.1%, 기초노령연금은 79.8%의 순이었다.

〈표 4-27〉 고령자의 고령화대책에 대한 수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조금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명)	도움 된다
기초노령연금	4.3	16.0	65.0	14.8	100.0 (1,010)	79.8
노인장기요양보험	2.3	7.4	52.6	37.7	100.0 (989)	90.3
노인여가생활 활성화	4.3	13.6	53.7	28.4	100.0 (1,001)	8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고령자 특성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도움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75.9%)보다 여자(83.0%)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보다 9개 도지역에서, 연령대에 따라서는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벌이가 없는 경우가 벌이가 있는 경우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8%p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다(15.9%p)(부표 4-53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90.3%가 장기요양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이 응답자 개인에게 주는 도움정도가 아니라 노인요양보호에 대한 도움정도를 조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 지역, 가족형태 등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근소한 차이를 나타낼 뿐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부표 4-54 참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통한 여가생활 활성화가 활동적인 노후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82.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남자(79.2%)에 비해 여자(84.5%)가 강했고,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88.4%)에 비해 하지 않는 고령자(78.3%)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부표 4-55 참조).

3) 고령자의 고령화대책에 대한 중요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으로 중고령자는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38.8%)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이것 외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15.2%),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13.3%),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및 서비스 확대'(11.8%)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4-28 참조). 또한 2007년 복지부의 국민인식조사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및 희망 사항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건 확대가 가장 많이 지적된 점[30]으로 미루어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보건사업 등 고령화 정책은 고령자에게 직접적으로 정책 수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홍보 없이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 뿐 아니라 정책 수요와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상의 결과는 그러한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

30)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및 기반 구축에 실효성에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국민연금내실화(각각 45.6%, 32.0%),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인상(각각 42.3%, 31.6%), 개인연금 등 사적 소득 보장제도 확충(각각 29.2%, 28.3%)의 순을 나타냈는데, 이 조사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가 선택 항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및 희망 사항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건 확대가 가장 많이 지적된 점으로 미루어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1.4%p)를 선호했고, 여자는 남자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및 서비스 확대'(3.9%p)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벌이가 있는 경우가 벌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노인 일자리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8.1%p). 가족형태별로, 독거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16.3%)이나 '방문건강관리 및 노인건강증진 사업'(16.3%)을 선호하였고, 부부끼리 사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39.4%)이나 '방문건강관리 및 노인건강증진 사업'(13.1%)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표 4-28〉 고령자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명)
전체	13.3	15.2	2.0	10.5	11.8	38.8	2.5	2.4	3.6	100.0 (1,008)
성별										
남자	13.8	16.3	1.8	9.7	9.7	39.6	2.2	2.4	4.6	100.0 (455)
여자	12.8	14.3	2.2	11.2	13.6	38.2	2.7	2.4	2.7	100.0 (553)
지역										
특별·광역시	13.1	12.6	2.5	9.0	10.1	42.3	2.7	2.7	5.0	100.0 (444)
9개 도지역	13.5	17.2	1.6	11.7	13.1	35.9	2.3	2.1	2.5	100.0 (563)
연령										
50~54세	9.0	12.2	2.3	12.6	15.8	38.3	3.6	2.3	4.1	100.0 (222)
55~59세	7.3	16.1	2.3	6.9	12.4	46.3	2.8	2.8	3.2	100.0 (218)
60~64세	10.5	13.2	1.3	4.6	15.8	44.7	3.9	2.0	3.9	100.0 (152)
65~69세	16.7	12.5	2.4	9.5	10.1	41.7	1.8	0.6	4.8	100.0 (168)
70세 이상	21.5	20.6	1.6	15.8	6.5	27.1	0.8	3.6	2.4	100.0 (247)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	9.9	15.9	1.3	9.4	11.6	43.8	2.7	2.2	3.2	100.0 (372)
자영업	9.4	13.1	–	6.9	15.0	44.4	3.1	3.1	5.0	100.0 (160)
고용인	6.8	15.0	2.7	10.2	9.5	47.6	3.4	2.0	2.7	100.0 (147)
기타	16.9	24.6	1.5	13.8	7.7	33.8	1.5	–	–	100.0 (65)
안한다	15.2	14.9	2.5	11.1	11.9	35.7	2.4	2.5	3.8	100.0 (638)
가족형태										
독거	16.3	22.8	–	16.3	6.5	26.1	3.3	4.3	4.3	100.0 (92)
부부끼리	14.4	12.6	1.3	12.1	13.1	39.4	1.5	2.1	3.4	100.0 (388)
자녀와 함께	11.0	14.9	3.3	8.0	11.8	41.4	3.1	2.4	4.1	100.0 (490)
기타	22.0	24.4	–	12.2	9.8	29.3	2.4	–	–	100.0 (41)

주: 1) ①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② 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③ 역모기지제도의 기준 완화 및 다양화, ④ 방문건강관리 및 노인건강증진 사업, 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및 서비스 확대, ⑥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⑦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⑧ 고령자 주거지원정책의 강화, ⑨ 기타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제4절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국민의 결혼관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결혼관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의 중립·유보적 태도가 당위·긍정적인 태도와 대등한 수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부정적인 태도로 돌아선다면 비혼문제도 독립적인 하나의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기혼부인의 경우 이미 당위·긍정적 태도(40.7%)보다 중립·유보적인 태도(59.3%)가 우세하며, 이들의 태도가 미혼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결혼관 약화현상은 시일이 지날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혼연령이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경제적 안정의 조기달성, 출산과 육아의 용이성,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혼의식도 강화되고 있다. 2007년 통계기준으로 평균 결혼연령은 남자 31.1세, 여자 28.1세로서 10년 전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2.4세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남녀의 17.2%가 결혼연령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만혼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미혼여성은 22.0%가 결혼연령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적령기를 묻는 질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결혼적령기가 남자 31.7세, 여자 29.1세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만혼의 주된 이유는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관도 약화되고 있다. 자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층의 경우는 확고한 자녀관을 유지(93.2%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자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혼남녀의 경우 20.9%가 자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 여성에 있어서의 희망 또는 이상 자녀수에 있

어서는 유의미한 시계열적 변화를 탐지하지는 못했다. 다만, 미혼여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자녀수가 감소하였고, 기혼부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상자녀수가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혼여성에 있어서는 본인의 생식능력, 기혼부인에 있어서는 자녀효용의 경험치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자녀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 때문이며, 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에서는 달리 나타나는데 미혼남녀와 기혼부인은 '인생의 가치'를, 중고령자는 '대를 잇는 것'을 지목함으로써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자녀에 의한 노후피부양 의식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즉,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자녀를 둔다는 생각은 이미 전연령층에서 사라졌다. 본인이 자녀에게 부양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은 본인도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으므로 노후부양에 관한 의식은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양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녀 양육·교육비이며, 그 다음으로 안정적인 수입원, 탁아를 위한 시설이나 사람으로 나타났다.

미혼부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미혼남녀의 경우 개방적인 태도가 비교적 높게 형성(찬성 43.1%)되어 있다.

가정내에서의 성역할관은 균등화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혼남녀의 경우 가사의 균등분담 의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74.9%), 실제 기혼부인 가정에서의 가사분담실태에서는 균등분담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못하다(29.3%). 다만, 기혼부인에 있어서도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균등분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점차 실질적인 성역할관 균등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심각성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인에의 영향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심각성 인지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산보다 고령화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실적인 위기감과 체감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인지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1년전 조사에 비해 10%p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기혼부인의 인지도가 27.6%p이상 상승했다. 인지경로는 주로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가 주를 이루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의 부정적 반응이 대체적이었다. 특히 기혼부인의 부정적 반응이 돋보이고 있으며 정책수혜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책찬성도에 있어서는 과반을 넘는 수준에서 찬성하고 있다.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10%대에 불과한 반면, 정책찬성도에 있어서는 50%대라는 것은 정부대책에 국민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정책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낫다는 의미라고 판단된다. 국민의 부정적 태도가 우려되는 대목이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결혼·출산·양육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 분위기 개선에 긍정적 응답이 35%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년도 조사에 비해 8%p 상승한 것으로 보아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 고령층의 절반정도(49.0%)가 긍정하는 것으로 보아 분위기를 실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 촉진을 위한 선결과제는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안정,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신혼부부 주택공급, 혼인·출산·양성평등 가치관 확립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촉진을 위한 중점 정책은 보육·교

육비 지원, 보육·육아 지원시설 확충, 출산장려금 지급,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이 인식하는 결혼과 출산의 촉진책은 경제적 문제의 해결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고 있는 기혼부인에 있어서 저출산대책의 인지도와 중요도를 가장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이다. 대체적으로 중요도가 높으면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상호비례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고령자에 있어서 주요 고령화대책의 인지도와 도움정도는 대체로 높게 조사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 역모기지, 방문보건·노인운동 사업은 모두 70%이상의 인지도를 보이고, 주거지원사업은 40%중반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대책의 도움정도에 있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여가생활 활성화,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모두 80~90%대로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령화대책의 도움정도가 확인되었으므로 정책인지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이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제5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정책환경 분석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최소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각 지자체의 정책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환경적 요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합목적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범국가적이고 지역마다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 각 지자체는 지역 인구규모와 구조, 인구특성,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적 인프라, 재정력, 주민의 정책욕구 등 지역적 특성과 정책수행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고, 파급 효과가 단순하지 않으며, 시간과 예산의 한정 등으로 지역내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미 생산되어 있는 전국 또는 지역 통계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 장에서는 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가진 환경적 요소들과 직접적으로 계획 수립시에 반영해야 할 일반적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대외적 환경

1. 사회·경제적 환경

가. 경제적 환경

1) 경제위기의 대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파급·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실물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외화자금의 수요·공급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환율상승, 즉 원화가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환율의 급등락은 모든 금융시스템을 교란시키며, 특히, 60~80%의 단기적인 환율폭등은 제2의 IMF사태를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준다. 정상적인 수준의 원화가치 하락, 즉 환율상승은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작금의 상황과 같이 비정상적인 환율의 폭등은 원자재 등 수입물가의 폭등을 가져오고 이는 원자재 구입 곤란으로 이어져 수출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수입물가의 폭등은 국내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물가를 폭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현재 상황은 스테그플레이션[31]이 우려되는 경우인데,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내산업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경제발전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구조조정은 경쟁력을 상실한 비교열위 업종은 점차 도태되고 경쟁력있는 비교우위 업종의 비중은 높아지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하의 구조조정은 정상적 재편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한 외부영향에 의한 비정상적 구조조정이므로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많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실업률은 기록적인 증가를 보일 수 있으며, 개인의 자산가치가 급락하여 붕괴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경제위기를 비롯한 경기침체는 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던 기존인력의 퇴출도 불러온다. 이

31) 환율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대신에 경기가 부양되므로 실업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스테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미 경제위기를 한번 경험했던 상태에서 경험적으로 볼 때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중고령자와 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령자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 고임금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퇴출압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이며, 여성의 경우 아직 고용시장에서 실제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결혼율의 감소와 출산율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시장 신규진입의 불확실성과 기존참여자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비용 등 목돈 마련이 여의치 않아 결혼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혼의 연기는 출산의 최적기가 지나감에 따라 자녀수의 선택기회가 줄어들게 되며,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낳게 된다. 출산율은 결혼율, 특히 초혼율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으며, 불황에 따른 결혼, 출산의 지연 경향이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 저하에 반영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결혼과 출산율 모두를 크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경제위기는 악성효과만 가진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불안정은 필연적 산물이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면서 청년실업이 해소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이전의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산업으로서,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IT, BT산업, 고령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성장하게 될 고령친화산업, 탄소배출권 규제에 따라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게 될 친환경산업 등을 중점육성하여 선점할 경우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성장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게다가 혁신도시 개발을 중단없이 진행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균형성장을 이

룰 수 있을 것이며, 생활환경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릴 계기로 승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험을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2) 산업구조의 변동과 자생력 약화

경제위기 상황을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기조에 따라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있고,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하나의 국가와 맞먹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 거대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재편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노동집약 또는 상대적 고비용 구조를 가진 1, 2차 산업이 퇴조기미를 보이고 있다. 1차 산업 퇴조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자유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화 현상으로 중국 등 신흥공업국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2차 산업마저 쇠퇴기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사업별 취업자수가 농림어업 11%, 제조업 17%에 머물러 있으며, 건설업 8%, 전기·운수·통신·금융 10%, 그리고 도소매·음식·숙박업 2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기타업종이 31%를 차지하는 등 산업의 중심이 3차 산업으로 완전히 옮겨져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구조 변동은 장기적으로 기초산업 기반붕괴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3차 산업내의 경쟁을 야기하여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산업간 불균형은 글로벌화 및 시대변화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예기치 못한 위기 도래시 경제의 자생력이 붕괴될 수 있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균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 환경

1) 사회양극화의 심화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대대적인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부문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양극화는 1, 2, 3차 산업 등 산업간 양극화를 비롯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간 양극화가 발생하였으며, 산업, 기업 등 경제적 부문에서 시작된 양극화가 사회계층간 양극화를 확대시켜, 중산층이 해체되어 하위층으로 이동하였다. 게다가 사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화 등 교육의 양극화, 중도적 개념이 사라진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구조에 의한 정치의 양극화, 도시 농촌 등 지역간 양극화와 이에 따라 파생된 보건의료서비스 기회의 양극화, 신구세대간 문화의 양극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중도적 개념 또는 계층이 급속히 약화된 극단의 개념으로서 양자간 갈등이 깊어지면 치유하기 힘든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팽배한 불신과 갈등 속에 대립구조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인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열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2) 공동체의 와해

현대사회로 들어설수록 개인주의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 결속력을 의미하는 지역공동체는 이미 와해 상태로 접어들었으며, 핵가족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가족공동체마저 위태한 지경이다. 그 외에 학교공동체는 경쟁논리의 강화로, 사회공동체는 양극화의 심화로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공동체 개

념은 퇴색하고 명목만 유지되고 있다. 공동체는 공동생활이 행해지고 있는 일정한 사회집단으로서 구성원간의 단결과 협동의 바탕위에 유지된다. 각각의 공동체는 구성원의 공동생활의 영속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 존재이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원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이념을 정립하고 구심점으로서 기능할 역할모델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며, 결속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3) 노인 인구의 범죄 표적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노인대상 사기범죄는 농촌을 중심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보조기의 사기판매, 도시를 중심으로 노인대상 도박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격지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금품요구, 기타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기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인대상 사기는 금액면에서 소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 1차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층으로 편입될 시점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액의 사기사건들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세대에 비해 고등교육 수혜율이 높고, 비교적 많은 자산을 축적한 계층인 이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등의 고액 금융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더 이상 경제적 자립을 지속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고령자의 경우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단능력의 감퇴·회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서서히 약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고령자 스스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투자교육과 노인대상 범죄의 규제책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

2. 문화·정치적 환경

가. 문화적 환경

경제위기의 여파로 중고령자와 여성이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외면받는 것과 연관하여 결혼·출산·양육을 배려하는 기업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한단계 후퇴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퇴출을 면한 그룹들은 이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2회에 걸친 대단위 경제위기를 통하여 상시적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본인들에게 언제 다시 다가올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그룹내의 결속력을 강화할 것이며, 생존경쟁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조기에 제거하고자 여성들을 배려하는 기업정서와 문화들부터 배척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인을 배려하는 분위기도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생존그룹은 본인들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고령자의 퇴출상황을 의식적으로 외면 또는 이용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할 것이며, 이는 정규노동시장 밖에서 머물고 있는 노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인에서 노쇠하고 비생산적인 노인으로 후퇴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인식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TV 등 전파매체이다.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수시간씩 전파매체에 노출되고, 노출의 반복은 각인과정을 거쳐 개개인의 의식이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래 들어 가족애를 다룬 드라마나 다큐멘터리가 자주 등장함으로 인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작비 등을 이유로 등장인물이 극소가족이나 1인가구 등을 설정하는 것이 많고, 이러한 설정은 결혼, 출산,

가족, 노인 등에 관련한 가족친화적 가치관이나 인식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보수집과 문화 형성·전파의 수단으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이다. 정보통신은 올바른 정보를 보급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정보와 문화의 전파도 가속화시키는 역기능이 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인터넷상으로 각종 정보가 넘쳐나고 있고, 네티즌의 관심을 유발하는 특정 정보들은 뉴미디어 영역에 속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BBS 등을 통해 속도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뉴미디어를 통하여 확산되는 각종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보다는 오히려 그릇된 속설이나 부정확·부정적인 사례정보가 부각되기 쉽고 전파속도도 훨씬 빠르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를 접한 이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위해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무분별한 정보수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릇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리하거나 공인하는 정보제공 통로도 적극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기타 정치적 환경

정치적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신정부의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대야소의 정국이 형성되어 있다. 정부 및 국회의 국정운영의 초점은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인데, 역설적으로 국내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소요가 많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차선으로 밀려나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신뢰도 하락은 정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정책추진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지방자치제 정착에 수반하여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앙정부 관할하에 있던 많은 기능과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또는 위임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중앙차원에서의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개별사업 추진 정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단체장은 4년 주기로 선거를 통하여 선임되므로 단체장 교체시 정책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제고와 교체시 정책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대내적 환경

1. 조직적 환경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체계의 역할과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추진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기도 전에 정부 조직개편의 영향으로 추진체계의 역할과 위상이 많이 위축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당연직 위원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되면서 위상이 한단계 격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추진력 약화를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 또한, 추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완전히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단위부서로 편제되었고, 1본부 3정책관 13과 체제에서 1국 2정책관 10과체제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 구성에 있어서도 12개 부처의 파견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었던 범부처 성격의 구성체에서 1개 부처 소속공무원 위주의 구성체로 변화하였다. 중앙단위 추진기구의 위상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스란히 파급되어 조직과 사업

추진을 위축시키는 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이르는 전달체계가 총괄조직을 통하여 완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의 조직위축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총괄조직 구성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조직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시·도가 있지만 대부분 전년수준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담당자만 지정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조직을 해체하고 담당자만 지정한 시·도가 나타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와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직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정책전달체계의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조직마저 해체했다는 것은 추후 타 시·도에서도 추진조직이 후퇴하여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전달체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직설치보다는 총괄담당자만 지정하는 형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시·군·구 단위에서 조직설치없이 담당자 지정만으로도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현재 시·군·구 총괄담당자의 역할이 단순히 실적을 취합하여 시·도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과연 이정도의 역할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하는 것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조직단위의 불균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유사한 규모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사한 규모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과 단위의 조직을 두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계 단위의 조직을 두고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총괄담당자만 지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지자체 내에서도 총괄부서가 가지는 위상 또한 제각각이다. 그리고 같은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

치단체라 하더라도 총괄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이며, 계 단위의 조직을 두는 곳이 있는가 하면 총괄담당자만 지정한 곳도 있어 지자체간 불균형이 심하다.

소관부서의 불일치도 여전하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에 따라 과·계의 구분과 명칭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구분 또한 자유롭게 설정되고 있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의 성향에 의해 복지,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보건, 보건소 등 다양한 부서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소관부서의 불일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수직적 전달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책서비스 수혜대상인 주민의 입장에서도 혼돈스러울 수 있다.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제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시·도에서 제출된 시행계획과 실적보고서의 검토 결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실무부서별로 소관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전문성이 높은 편이나, 해당 사업과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며, 기본계획이 2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고는 전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 인력이라고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여러 다른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업무의 집중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순환보직주기가 짧아 당해업무 보직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것도 업무숙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문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을 주로 배치하고 있는 것도 전문성 제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을 위한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행해지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재정적 환경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취약계층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되므로 이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세입감소로 인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재정의 증가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금융 정책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므로 오히려 복지재정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세 및 지방세의 수입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시책으로서 세입감소의 또 다른 근원이 되는 각종 감세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적자재정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경기부양책을 제외한 다른 정책의 재정축소는 불가피하며, 재정투입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정책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에 더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조달하는 재원은 크게 지방세, 보조금(지방교부세 포함) 및 부담금, 세외수입의 3가지로 구분된다. 지자체의 자체재원조달수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이 둘은 재정자립도 측정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지방세는 지방재정여건 개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6년 기준으로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8%에 불과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다. 광역시지역은 재정자립도의 분포가 44~55%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도지역(경기도 제외)은 12~24%구간에 머물러 있다. 50% 이상인 지자체가 서울(73.0%), 대전(54.9%), 부산(53.4%), 경기(52.7%) 등 4개 지자체에 불과하고, 10%대에 머물고 있는 지역도 전남(12.4%), 강원(13.5%), 전북(14.5%) 등 3개 지자체이다. 더욱이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전남의 격차는 59.5%에 달해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지방비에 대하여 시·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8개 시·도의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비율은 24.6%로서 전체지방비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의 2개 지역 지방비 합산액은 전체지방비의 53.3%에 달한다.

〈표 5-1〉 시·도별 세입·세출액, 지방세 수입, 재정자립도(2006년 기준)

(단위: 10억원, %)

구분	세입액 (A)	세출액 (B)	세계잉여금 (C=A-B)	지방세 (D)	시·도별 지방세구성비	세입액대비 지방세비율(D/A)	재정 자립도
전국	109,090	79,739	29,351	41,282	1.00	37.8	63.7
서울	15,484	10,682	4,802	11,306	0.27	73.0	93.6
부산	4,830	3,997	833	2,579	0.06	53.4	74.3
대구	3,343	2,504	839	1,658	0.04	49.6	74.7
인천	3,926	3,099	827	1,945	0.05	49.5	76.9
광주	1,994	1,705	289	886	0.02	44.4	63.9
대전	1,970	1,691	279	1,081	0.03	54.9	77.1
울산	2,040	1,554	486	944	0.02	46.3	76.2
경기	20,333	14,910	5,423	10,711	0.26	52.7	80.1
강원	7,821	4,741	3,080	1,055	0.03	13.5	36.8
충북	4,717	3,303	1,414	1,041	0.03	22.1	48.5
충남	6,560	4,865	1,695	1,551	0.04	23.6	54.8
전북	6,314	4,932	1,382	915	0.02	14.5	42.8
전남	8,539	6,185	2,354	1,061	0.03	12.4	40.1
경북	9,005	6,662	2,343	1,799	0.04	20.0	46.1
경남	10,101	7,114	2,987	2,317	0.06	22.9	53.3
제주	2,115	1,793	322	434	0.01	20.5	41.5

주: 1) 세계잉여금(세입-세출) = 현금이월사업비 + 보조금집행잔액 + 순세계잉여금
2)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순계규모) × 100
3) 지방자치단체 결산 순계규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정책과

세입액의 지역별 구성비 편차는 매우 크다. 전국 총세입액 대비 지자체 세입액 구성비가 큰 지역은 경기(19%), 서울(14%), 경남(9%)의 순이며, 구성비가 낮은 지역은 제주(2%), 광주(2%), 대전(2%), 울산(2%)의 순이다. 세입재정규모의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작은 재정규모를 가진 지역이

활발한 자체사업을 개발해 추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재정규모의 차이로 인해 지자체간 사업성과에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재정규모가 큰 지자체에서 개발한 우수시책을 모범사례로 채택해 지방에 파급할 경우에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용재원 확보의 곤란으로 인해 잘 전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파급효과도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에 세외수입까지 합산하여 측정되는 재정자립도이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65.0%에 머물고 있으며 연도별 편차는 크지 않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평균치가 95.1%로서 재정자립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재정적 자립이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특·광역시와 도지역간에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는 68~78% 구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반면, 도지역(경기도 제외)은 40~54% 구간에 머물러 있다. 양 지역이 20%p 이상의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도지역으로 갈수록 지방세부족분을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미미한 수준이나마 조금씩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제고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자체사업 개발 노력이 행해지고 있으나,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 때문에 활발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자체사업개발·추진을 위해서도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국세를 지방세화하거나 지방교부세를 확대하는 등

국세·지방세간 세제개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인구구조·동태 변화[32)]

2007년 시·도별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1천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이고 두 지역의 인구를 합할 경우 21백만명으로서 전체인구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의 인구를 합산할 경우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에의 인구집중도가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를 계층구조로 나누어 살펴보면,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서울과 부산이 전국평균인 18%보다 2.5%p정도 하회한 15%대 수준이며, 광주, 울산, 경기, 제주가 전국평균을 2%p이상 상회한 20%대이며, 이외는 지역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15~64세 인구와 65세이상 인구에 있어서는 경기를 제외한 도지역과 특·광역시 지역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비율이 7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70%이상이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은 이보다 낮은 60%대의 비율이다. 특히 전남은 63.6%로 비율이 가장 낮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도지역(경기도 제외)이 모두 11%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면서 특·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남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18.7%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광역시지역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7~8%선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5.9%로 가장 낮아 젊은 인구구조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낮고 노인인 비중이 높은 도지역의 경우 고령화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

32) 인구구조(동태)와 관련한 추계자료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제3장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실태가 2006년과 2007년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시점의 인구동태를 작성해야 인구환경과 사업계획·추진간의 대비가 보다 용이하고 실태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서울, 부산과 같이 유소년인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저출산문제 해결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표 5-2〉 시·도별 인구규모 및 구조(2007)

(단위: 천명, %)

구분	총인구수	14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전국	48,456	8,734	18.0	34,912	72.0	4,810	9.9
서울	10,026	1,572	15.7	7,646	76.3	808	8.1
부산	3,525	545	15.5	2,639	74.9	341	9.7
대구	2,470	443	17.9	1,810	73.3	217	8.8
인천	2,613	490	18.7	1,923	73.6	200	7.6
광주	1,445	297	20.6	1,036	71.7	113	7.8
대전	1,487	287	19.3	1,087	73.1	113	7.6
울산	1,080	222	20.5	794	73.6	64	5.9
경기	11,039	2,220	20.1	7,965	72.2	854	7.7
강원	1,470	257	17.5	1,010	68.7	204	13.8
충북	1,483	271	18.2	1,024	69.0	189	12.7
충남	1,936	346	17.9	1,305	67.4	286	14.7
전북	1,771	320	18.1	1,182	66.7	269	15.2
전남	1,807	320	17.7	1,148	63.6	339	18.7
경북	2,635	438	16.6	1,797	68.2	399	15.2
경남	3,125	593	19.0	2,177	69.7	355	11.4
제주	545	114	21.0	370	67.9	61	11.1

주: 1)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장래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였음. 그 이유는 주민등록인구가 실거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시·도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일관적인 동태적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2) 인구추계자료의 기준시점을 2008년이 아닌 2007년으로 한 이유는 제3장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실태가 2006, 2007년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임.

자료: 통계청, 『2005~2030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07.

시·도별 인구동태변화를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인데, 2030년 총인구는 2007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의 인구를 가지게 되나, 지역적으로는 유의미한 인구변화가 나타난다. 7개 특·광역시중 인천, 대전, 울산 등 3개 지역은

총인구가 10%미만 수준에서 증가하나, 부산, 서울,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은 총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중 부산, 대구는 각각 17.8%, 14.9%의 인구감소가 전망되므로 인구감소에 따른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추측된다.

도지역의 경우 경기,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남(25.4%), 전북(21.9%), 강원(16.8%), 경북(15.1%)의 순으로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의 경우 3백만명이상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동하는 인구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주로 경기도에 정착하는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5-3〉 시·도별 장래인구수 및 노인부양비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장래인구수					노인부양비			
	2007 (A)	2020	2030 (B)	증감 (B-A)	증감률 (%)	2007 (A)	2020	2030 (B)	증감 (B-A)
전국	48,456	49,326	48,635	178	0.4	13.8	21.7	37.7	23.9
서울	10,026	9,896	9,415	△611	△6.1	10.6	20.5	33.5	22.9
부산	3,525	3,189	2,899	△626	△17.8	12.9	26.9	48.6	35.7
대구	2,470	2,279	2,102	△368	△14.9	12.0	22.0	40.9	28.9
인천	2,613	2,783	2,853	241	9.2	10.4	18.1	36.6	26.2
광주	1,445	1,438	1,393	△52	△3.6	10.9	18.9	33.5	22.6
대전	1,487	1,583	1,607	121	8.1	10.4	18.1	32.6	22.2
울산	1,080	1,117	1,133	53	4.9	8.0	17.8	40.1	32.1
경기	11,039	13,107	14,048	3,008	27.3	10.7	16.6	31.7	21.0
강원	1,470	1,340	1,224	△246	△16.8	20.1	29.7	52.7	32.6
충북	1,483	1,441	1,377	△106	-7.2	18.4	25.4	44.6	26.2
충남	1,936	2,003	2,006	70	3.6	21.9	26.7	41.4	19.5
전북	1,771	1,526	1,382	△388	△21.9	22.8	31.7	50.1	27.3
전남	1,807	1,526	1,347	△460	△25.4	29.5	37.9	57.5	28.0
경북	2,635	2,428	2,237	△398	△15.1	22.2	30.4	49.5	27.3
경남	3,125	3,124	3,076	△49	△1.6	16.3	23.3	40.8	24.5
제주	545	544	534	△10	△1.9	16.4	23.4	39.2	22.8

주: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15~64세인구)×100

자료: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2005~2030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07.

유소년 부양비는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에 노인부양비는 2000년 전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유소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따르는 당연한 귀결이다. 2030년경 노인부양비가 50을 넘거나 육박하는 지역은 전남(57.5), 강원(52.7), 전북(50.1), 경북(49.5), 부산(48.6) 등이다. 이미 노인부양비가 많은 지역도 문제지만, 속도가 급속한 지역은 변화에 대처할 시간부족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

인구 자연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제한 것으로서 전출입인구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자연증가율이 음의 부호인 지역은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전입인구를 늘리지 않는 이상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자연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기는 전국적으로 2020~25년경이다. 시·도별 자연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기를 살펴보면, 2005~10년에 이미 전남과 전북이, 2010~15년에 경북, 강원, 충남, 충북이, 2015~20년에 경남, 부산, 대구가, 2020~25년에 제주가, 2025~30년에 서울, 인천, 광주, 울산이 자연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선다. 2025~30년까지 양의 부호를 유지하는 지역은 경기, 대전으로서 이들 지역 역시 각각 0.12, 0.02%에 불과해 거의 모든 지역이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지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4 참조). 2007년 대비 2030년 총인구가 증가(27.3%)하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연증가율은 0.49%에서 0.12%로 감소되고 있어 총인구증가는 자연증가가 아닌 전입인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이동은 국제이동과 국내이동으로 분류되고, 국내이동은 학업, 결혼,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지를 변경하는 주거목적이동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국제이동의 경우 1975~90년 동안 잠시 정체기가 있었지만,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경우 해외이민 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이동의 경우 1970년대 경제개발과 거점도시 육성 정책에 따라 활

발히 이뤄져 왔으며, 그 추세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33]를 제외한 8개 도지역은 이미 1970년대부터 대규모의 순유출이 진행되었고, 이중 충남의 경우에만 1995~2000년 기간부터 순유출 추세를 멈추고 미미한 규모의 순유입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인구유입이 이뤄지던 특·광역시 지역이 순유출로 돌아서는 시기를 살펴보면, 1985~90년의 부산을 기점으로 이후 5년 주기로 서울, 대구, 광주가 각각 순유출로 돌아섰다. 인천의 경우는 2000~05년 잠시 순유출이 발생하지만 순유입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1995~00년부터 인구이동이 정체되고 있다.

인구이동의 정도는 나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인구이동은 대체로 노동력 연령층, 특히 초기 노동력 연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동과 가족이동으로 구분할 때 가족이동은 대체적으로 가구주가 아직 젊은 노동력 연령층에 속해 있을 때,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적을 때, 일반적으로 가구원의 수가 적을 때, 핵가족을 이루고 있을 때 그만큼 쉬워진다. 따라서 학업에 의한 이동을 제외한다면, 직업을 위한 이동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양자 모두 주노동연령층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지역은 노동인구의 상실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도시 내에서의 주거이동이 아니면서 인구유출이 심하게 지속되고 있는 부산, 대구, 전북, 전남, 경북의 경우 노동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

33) 1970년부터 지속된 이촌향도, 즉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마무리되어 추세는 현저히 약화되나 여전히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로의 전입자는 여전히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신도시 등 베드타운 건설에 따라 서울이탈인구가 상당부분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5-4〉 시·도별 자연증가율 및 순이동자수(Net Migrants): 연평균

(단위: %, 천명)

구분	자연증가율					순이동자수				
	2005~2010	2010~2015	2015~2020	2020~2025	2025~2030	2005~2010	2010~2015	2015~2020	2020~2025	2025~2030
전국	0.38	0.23	0.08	△0.03	△0.14	△47	△34	△30	△26	△25
서울	0.56	0.47	0.28	0.11	△0.04	△53	△53	△50	△50	△52
부산	0.16	0.01	△0.18	△0.35	△0.52	△35	△25	△20	△17	△14
대구	0.33	0.15	△0.04	△0.17	△0.29	△24	△18	△15	△14	△12
인천	0.46	0.33	0.20	0.09	△0.04	5	5	6	6	6
광주	0.54	0.40	0.21	0.08	△0.03	△6	△6	△6	△5	△5
대전	0.57	0.45	0.28	0.14	0.02	1	1	1	1	1
울산	0.55	0.31	0.15	0.05	△0.11	△2	△1	-	2	2
경기	0.64	0.49	0.33	0.23	0.12	133	106	88	76	65
강원	0.04	△0.18	△0.34	△0.47	△0.58	△10	△7	△6	△5	△4
충북	0.17	△0.02	△0.18	△0.30	△0.40	△3	△3	△2	△2	△1
충남	0.15	△0.03	△0.19	△0.29	△0.37	5	6	7	7	7
전북	△0.01	△0.25	△0.38	△0.45	△0.52	△22	△15	△11	△8	△6
전남	△0.20	△0.50	△0.64	△0.69	△0.73	△20	△13	△11	△9	△7
경북	0.00	△0.20	△0.34	△0.46	△0.57	△12	△11	△9	△8	△7
경남	0.23	0.01	△0.12	△0.17	△0.24	△1	-	-	1	2
제주	0.42	0.21	0.07	△0.01	△0.07	△2	△1	△1	△1	△1

자료: 통계청, 『2005~2030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

2000년 노인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007년을 기준으로 노인인구비율이 9.9%로서 고령화사회에 머물고 있으나, 경기도를 제외한 도단위 지역은 이미 노인인구비율이 10%를 초과하여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다(통계청, 2008). 특히 전남, 전북, 경북, 충남 지역의 노인인구비율은 각각 18.7%, 15.2%, 15.2%, 14.7%로서 이미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을 점하면서 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 기타지역 중 고령사회 진입시기를 5년 단위로 살펴보면, 2010년경에는 강원도(15.3%), 2015년경에는 충북(15.1%), 경남(14.0%), 제주(14.3%) 등 나머지 도단위 지역과 특·광역시중 부산(14.7%)이 추가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모든 특·광역시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시기를 살펴보면, 2010년에 전남이 20.1%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0년경 강원(20.4%), 전북(21.5%), 전남(24.8%), 경북(20.8%) 등 4개 도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25년경에는 충북(22.6%), 충남(22.1%), 경남(21.0%), 제주(20.1%) 등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지역과, 부산(24.8%), 대구(21.0%) 등 2개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2030년경에는 서울(22.3%), 인천(23.6%), 광주(21.9%), 대전(21.5%), 울산(25.5%), 경기(21.0%) 등 6개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됨으로서 전체 시·도가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이중 전남(32.8%), 강원(31.1%) 경북(29.9%), 전북(29.8%), 부산(29.7%) 등 4개 시·도는 지역인구 중 10명중 3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구성됨으로 인해 초고령사회가 가져오는 심각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07년 9.7%에서 2030년 29.7%로 노인인구수와 비율이 20%p 증가하여 가장 빠르고 심각하게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으로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소년인구 비율 감소추세는 지역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한다. 도지역이 15~64세 생산가능인구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소년인구비율을 특·광역시 지역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은 도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2007년 18.0%인 전국 유소년인구비율이 2030년 11.4%에 불과하다는 것은 인구구조의 극심한 왜곡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 아직까지 코호트별 적정인구비율을 제시하는 자료는 없지만 적정인구비율을 전제로 단순하게 접근한다면 괴리도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제인구유출입의 발생이 크지 않다면, 인구코호트별 인구수는 계단식으로 그대로 이동한다. 15세단위로 평균수명 근처인 75세까지 나눌 경우 5구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 1구간당 20%는 유지해야 구간별 균형이 유지된다. 단순 계산으로 유소년층인구는 20%정도는

계속 유지해야 인구구조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며, 2030년의 유소년인구 11.4%는 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산(9.2%), 경북(9.6%), 강원(9.9%)은 유소년층 인구감소로 인해 감내해야 할 몫이 너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5-5〉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 및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단위: 천명, %)

구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및 비율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수 및 비율					
	2007년		2020년		2030년		2007년		2020년		2030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국	4,810	9.9	7,701	15.6	11,811	24.3	8,734	18.0	6,118	12.4	5,525	11.4
서울	808	8.1	1,471	14.9	2,102	22.3	1,572	15.7	1,238	12.5	1,046	11.1
부산	341	9.7	607	19.0	861	29.7	545	15.5	329	10.3	267	9.2
대구	217	8.8	365	16.0	549	26.1	443	17.9	257	11.3	210	10.0
인천	200	7.6	372	13.4	675	23.6	490	18.7	352	12.6	337	11.8
광주	113	7.8	197	13.7	306	21.9	297	20.6	204	14.2	176	12.6
대전	113	7.6	209	13.2	346	21.5	287	19.3	221	14.0	200	12.5
울산	64	5.9	149	13.3	289	25.5	222	20.5	134	12.0	123	10.9
경기	854	7.7	1,609	12.3	2,952	21.0	2,220	20.1	1,812	13.8	1,771	12.6
강원	204	13.8	273	20.4	381	31.1	257	17.5	145	10.8	121	9.9
충북	189	12.7	258	17.9	381	27.6	271	18.2	171	11.8	144	10.4
충남	286	14.7	370	18.5	524	26.1	346	17.9	246	12.3	216	10.8
전북	269	15.2	328	21.5	412	29.8	320	18.1	162	10.6	147	10.6
전남	339	18.7	378	24.8	441	32.8	320	17.7	152	9.9	139	10.3
경북	399	15.2	506	20.8	670	29.9	438	16.6	257	10.6	216	9.6
경남	355	11.4	520	16.6	792	25.7	593	19.0	367	11.7	344	11.2
제주	61	11.1	89	16.4	131	24.6	114	21.0	73	13.4	69	12.8

자료: 통계청, 『2005~2030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경제의 성장동력이다. 2007년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전국비율은 72.0%이며, 특·광역시 지역은 모두 70%초반, 도지역(경기 제외)은 60%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15~6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76.3%이며, 그 다음 부산(74.9%), 인천(73.6%), 울산(73.6%), 대구(73.3%)의 순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3.6%)이며, 그 다음

순으로 전북(66.7%), 충남(67.4%), 경북(68.2%)의 순이다.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전국 비율이 64.4%로 떨어지게 되는데, 특·광역시지역은 60% 초반대로 낮아지고, 도(경기도 제외) 지역은 50% 후반 또는 60% 초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특·광역시지역 중 부산이 61.1%로 가장 낮은 비율이며, 감소폭도 가장 크다. 도지역의 경우 전남(57.0%), 강원(59.0%), 전북(59.6%) 등 3지역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이 60% 미만으로 낮아져, 생산동력의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은 2030년경 유소년 인구비율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비율마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여 다른 지역보다 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6〉 시·도별 15~64세 생산가능인구 및 중위연령

(단위: 천명, 세)

구분	15~64세 생산가능인구수 및 비율						중위연령			
	2007년		2020년		2030년		2007년	2020년	2030년	증감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A)		(B)	(B-A)
전국	34,912	72.0	35,506	72.0	31,299	64.4	36.1	43.8	49.0	12.9
서울	7,646	76.3	7,187	72.6	6,267	66.6	35.3	42.6	48.2	12.9
부산	2,639	74.9	2,253	70.7	1,770	61.1	37.8	46.8	52.3	14.5
대구	1,810	73.3	1,658	72.7	1,343	63.9	36.1	44.7	50.3	14.2
인천	1,923	73.6	2,059	74.0	1,841	64.5	35.3	42.5	47.8	12.5
광주	1,036	71.7	1,038	72.2	911	65.4	33.3	40.9	46.6	13.3
대전	1,087	73.1	1,153	72.9	1,061	66.0	34.0	40.7	46.1	12.1
울산	794	73.6	834	74.7	721	63.6	35.0	43.5	49.5	14.5
경기	7,965	72.2	9,686	73.9	9,325	66.4	34.7	41.6	46.8	12.1
강원	1,010	68.7	922	68.8	723	59.0	38.8	48.3	54.3	15.5
충북	1,024	69.0	1,013	70.3	853	61.9	37.1	46.1	51.9	14.8
충남	1,305	67.4	1,386	69.2	1,266	63.1	37.8	46.1	51.5	13.7
전북	1,182	66.7	1,035	67.8	823	59.6	38.6	47.8	52.6	14.0
전남	1,148	63.6	997	65.3	767	57.0	41.4	50.3	55.4	14.0
경북	1,797	68.2	1,665	68.6	1,352	60.4	39.0	47.9	53.4	14.4
경남	2,177	69.7	2,237	71.6	1,941	63.1	37.1	45.5	50.5	13.4
제주	370	67.9	382	70.2	335	62.6	35.8	44.3	49.2	13.4

자료: 통계청, 『2005~2030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

2007년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36.1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30년의 전국 중위연령은 49.0세로서 12.9세가 증가한다. 중위연령은 전체인구의 중간치로서 중위연령이 49세라는 것은 경제활동인구도 그만큼 고연령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산업현장의 고령화는 생산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생산성 강화를 위한 중고령인구의 교육훈련과 함께 노인인구의 생산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범국가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1980년대 중반이후 소자녀관의 확산과 함께 성감별에 의한 남아선별출산이 이루어지면서 출산수준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인구대체수준(2.1명)보다 훨씬 낮은 1.08명(2005)까지 낮아졌다.

2005~10년 기준으로 전국 합계출산율은 1.13명이고, 특·광역시 지역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이 많고, 도지역은 모두 전국평균을 상회한다. 합계출산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울(0.97), 부산(0.91)을 비롯하여 특·광역시 지역은 0.91에서 1.22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도지역의 경우 1.3이상인 제주(1.34), 전남(1.32), 충남(1.31)을 비롯하여 1.19에서 1.34까지 분포되어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시지역인 특·광역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인 도지역이 합계출산율이 0.175명 높게 나타났다.

그간 진행되어온 출산율 저하에 의한 유소년층 인구감소는 이미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투영되어 있다. 2000년에 비해 2007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이미 6.5%감소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2007년 현재보다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42% 감소한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62.2%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며, 그 다음 순으로 전북(59.2%), 강원(57.5%), 대구(57.1%), 경북(55.4%), 부산(54.4%), 충북(51.3%)이 50%이상의 감소폭을 보인다. 전체 시·도의 절반수준인 7개 시·도가 50%이상의 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는 폐교의 증가, 폐교에 따른 장거리 등교, 교사의 감원, 관련산업의 쇠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전학에 따른 이사 등으로 인구유출까지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표 5-7〉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초등학교 학령인구

(단위: 천명, %)

구분	합계출산율(연평균)						초등학교 학력인구수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15~2020	2020~2025	2025~2030	2007 (A)	2020	2030 (B)	증감 (B-A)	증감률
전국	1.26	1.13	1.16	1.18	1.22	1.26	3,806	2,510	2,209	△1,597	-42.0
서울	1.07	0.97	1.00	1.04	1.10	1.15	660	510	413	△246	-37.3
부산	1.04	0.91	0.94	0.97	1.01	1.06	237	137	108	△129	-54.4
대구	1.16	1.01	1.02	1.03	1.06	1.11	195	108	84	△112	-57.1
인천	1.26	1.10	1.12	1.13	1.18	1.23	213	144	137	△76	-35.7
광주	1.34	1.14	1.15	1.16	1.20	1.25	132	86	71	△61	-46.2
대전	1.28	1.14	1.15	1.16	1.19	1.24	125	93	81	△44	-35.1
울산	1.35	1.22	1.21	1.20	1.22	1.26	98	54	49	△48	-49.6
경기	1.38	1.22	1.22	1.23	1.27	1.32	967	743	708	△259	-26.8
강원	1.36	1.19	1.20	1.22	1.27	1.33	114	59	48	△66	-57.5
충북	1.35	1.22	1.22	1.23	1.28	1.33	119	71	58	△61	-51.3
충남	1.44	1.31	1.32	1.33	1.37	1.43	152	102	87	△65	-42.5
전북	1.35	1.20	1.21	1.23	1.28	1.34	143	64	58	△84	-59.2
전남	1.47	1.32	1.32	1.33	1.38	1.44	145	59	55	△90	-62.2
경북	1.32	1.19	1.19	1.20	1.23	1.28	194	104	87	△108	-55.4
경남	1.35	1.22	1.22	1.21	1.24	1.28	262	148	137	△125	-47.7
제주	1.49	1.34	1.36	1.40	1.47	1.53	50	30	27	△23	-46.1

자료: 통계청, 『2005~2030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

4. 산업구조적 환경

2007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전국치는 61.8%이며,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다. 전국평균치를 웃돌고 있는 지역은 특·광역시중 서울(62.9%), 인천(62.0%) 등 2지역이고, 도지역중 경기(62.1%), 충남(66.0%), 전남(64.7%), 경북(64.2%), 경남(62.0%), 제주(69.2%) 등 6지역이다.

〈표 5-8〉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단위: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	61.5	62.1	62.0	61.9	61.8	3.6	3.7	3.7	3.5	3.2
서울	62.1	63.0	63.3	63.0	62.9	4.6	4.7	4.8	4.5	4.0
부산	57.5	58.0	58.3	58.3	58.2	4.1	4.4	4.3	4.2	3.9
대구	60.4	61.3	61.0	60.1	59.3	4.4	4.2	4.2	3.7	3.6
인천	61.8	61.9	61.5	61.8	62.0	4.4	4.5	4.6	4.4	4.1
광주	57.5	57.9	58.6	57.9	58.8	4.6	4.3	4.3	4.2	3.9
대전	59.7	59.7	58.6	58.9	59.4	3.8	4.2	4.4	4.4	4.1
울산	60.8	61.5	60.7	59.3	60.5	3.2	3.6	3.5	2.9	2.6
경기	61.8	62.7	62.6	62.6	62.1	3.4	3.7	3.9	3.6	3.4
강원	58.3	59.1	58.5	59.0	58.7	2.0	2.1	1.8	1.3	1.8
충북	59.4	59.9	59.4	59.3	59.9	3.1	2.7	2.2	2.1	2.2
충남	63.7	64.6	64.4	65.3	66.0	2.9	2.3	2.6	2.4	2.2
전북	59.0	58.5	58.8	59.5	60.3	2.7	2.7	2.5	2.5	2.3
전남	65.3	64.8	65.1	64.4	64.7	2.3	2.5	2.3	1.7	1.7
경북	65.1	65.5	65.2	65.0	64.2	2.2	2.6	2.4	2.2	2.0
경남	62.5	62.9	62.1	61.8	62.0	2.5	2.4	2.7	2.3	2.4
제주	70.5	69.7	70.0	70.0	69.2	1.9	2.5	2.5	2.1	2.1

주: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

2007년 기준으로 실업률 전국치는 3.2%이며, 5개년의 자료만으로는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4% 이상이거나 이에 근접하는 지역은 특·광역시에 속한 지역으로서 인천(4.1%), 울산(4.1%), 서울(4.0%), 부산(3.9%), 광주(3.9%)이며, 도지역(경기도 제외)의 경우 1.7%~2.4%구간에 실업률이 속해 있다.

제주, 충남 등 도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특·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지역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가 경제활동참가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어업은 현재 대표적인 한계산업으로서 각종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고연령화되어 있어 지역의 주축산

업으로 삼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도와는 괴리된 면을 갖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사업, 개인·공공서비스 기타 산업 31%, 도소매, 음식, 숙박업 24%, 제조, 광공업 17%, 농림어업 1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 건설업 8%의 순으로 종사자가 각각 취업하고 있다. 과거 산업분류기준으로 1,2차 산업이 쇠락하고 3차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표 5-9 참조).

산업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농림어업 종사자는 도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특·광역시 지역은 모두 3%미만인 반면, 도지역(경기도 제외)은 14~27%의 종사자가 취업하고 있다. 농림어업취업자가 많은 지역은 전남(27%), 경북(24%), 충남(22%), 제주(22%)의 순이다.

제조, 광공업 종사자는 제주(3%)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으나 울산(36%), 인천(27%), 경남(23%), 경기(21%), 부산(19%), 대구(19%)의 순으로 종사자가 많다. 중화학거점도시 육성으로 조성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광공업중 광업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34]. 광업은 한계산업에서조차 이미 퇴출된 산업으로서 종사자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건설업 종사자는 지역별 편차가 적은 6~10% 정도수준인데, 이는 주거시설 건설 등 건설업은 지역 필수산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는 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29%), 대구(29%)이며, 다음 순으로 서울(28%), 강원

34) 자료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강원 6천명, 경기 3천명, 충북 2천명이 광업종사자이고, 부산, 대구,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각각 1천명 수준으로 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광업종사자가 천명이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조·광공업부문 종사자는 거의 제조업종사자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26%), 제주(26%)이다. 전통적인 도시를 끼고 있거나 관광명소가 많은 지역에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기, 운수, 통신, 금융산업 종사자도 지역별 편차가 적은 8~1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 개인·공공서비스 기타 산업 종사자는 신산업분류기준상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가장 높은 종사자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대전(42%)을 비롯하여 서울(39%), 광주(38%), 경기(34%) 순으로 종사자가 많으며, 가장 낮은 종사자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 전남, 경북, 경남으로서 각각 2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종사자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 개인·공공서비스 기타 산업을 제외하면, 도지역(경기 제외)은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가 강세를 띠고 있고, 특·광역시 지역은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가 강세를 띠고 있다. 결국 도지역과 특·광역시 산업의 특징적인 구분은 농림어업과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이 해당지역의 기반산업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반산업을 모태로 하여 타산업들이 연계·육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산업이 지역내에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반산업의 육성이 없다면 모든 산업이 동반쇠락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도지역의 경우 이미 고령화된 농림어업종사자를 대체할 신규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조차 계속 유출되고 있어 사양화를 지나 도태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기반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조업 유치마저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역산업체계상 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지역의 경우 산업구조 붕괴를 막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9〉 시·도별 산업별 취업자와 사업체·종사자수(신산업분류 기준, 2007)

(단위: 개, 천명, %)

구분	산업별 취업자 수 및 비율							사업체·종사자수 및 비율			
								사업체수		종사자수	
	취업자수	농림어업	제조,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사업개인, 공공서비스기타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전국	23,433	0.11	0.17	0.08	0.24	0.10	0.31	3,262,781	100.0	15,850	100.0
서울	4,940	0.00	0.14	0.09	0.28	0.11	0.39	728,574	22.3	3,959	25.0
부산	1,616	0.01	0.19	0.08	0.29	0.14	0.30	262,900	8.1	1,153	7.3
대구	1,157	0.02	0.19	0.10	0.29	0.09	0.31	179,896	5.5	728	4.6
인천	1,258	0.01	0.27	0.07	0.24	0.10	0.31	158,690	4.9	764	4.8
광주	633	0.03	0.12	0.10	0.25	0.12	0.38	97,107	3.0	454	2.9
대전	680	0.02	0.12	0.09	0.25	0.11	0.42	91,087	2.8	427	2.7
울산	515	0.03	0.36	0.08	0.18	0.08	0.27	67,162	2.1	405	2.6
경기	5,398	0.03	0.21	0.08	0.23	0.11	0.34	640,463	19.6	3,321	21.0
강원	672	0.16	0.08	0.08	0.26	0.09	0.33	116,698	3.6	448	2.8
충북	694	0.14	0.18	0.08	0.23	0.09	0.28	101,380	3.1	477	3.0
충남	998	0.22	0.17	0.07	0.20	0.08	0.26	130,103	4.0	620	3.9
전북	828	0.21	0.13	0.09	0.21	0.08	0.29	120,060	3.7	499	3.2
전남	905	0.27	0.10	0.08	0.22	0.08	0.25	124,762	3.8	517	3.3
경북	1,348	0.24	0.17	0.06	0.20	0.08	0.25	183,382	5.6	827	5.2
경남	1,502	0.15	0.23	0.07	0.22	0.08	0.25	216,272	6.6	1,071	6.8
제주	289	0.22	0.03	0.07	0.26	0.11	0.31	44,245	1.4	178	1.1
특별·광역시								1,585,416	48.6	7,891	49.8
도지역								1,677,365	51.4	7,959	50.2
수도권								1,527,727	46.8	8,045	50.8

자료: 통계청, KOSIS,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8.

2007년 전체 사업체수는 3,263천개이며, 전년에 비해 1.1% 증가하였다. 특광역시 지역에 1,585천개, 48.6%의 사업체가 위치해 있고, 도 지역에 1,677천개, 51.4%의 사업체가 위치해 있다.

지역별 사업체수 구성비는 서울 22.3%, 경기 19.6%, 부산 8.1%, 경남 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1,528천개, 46.8%의 사업체가 위치해 있어 집중도가 매우 심화되어 있다. 전년대비 증감률로 보면 경기가 3.5% 증가한 것을 비롯, 인천(2.1%), 충북(2.1%), 충남(2.0%), 울산(2.0%)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0.7%), 대구(-0.1%)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전체 사업체종사자수는 15,850천명이며, 전년에 비해 2.7% 증가하였다. 특·광역시 지역에 7,891천명, 49.8%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도지역에 7,959천명, 50.2%가 종사하고 있다. 지역별 사업체종사자 구성비는 서울 25.0%, 경기 21.0%, 부산 7.3%, 경남 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8,045천명, 50.8%가 종사하고 있다. 전체 종사자수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성비가 절반수준에 육박하거나 돌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사업체수 구성비가 46.7%에서 46.8%로 0.1% 증가하였고, 종사자수 구성비도 50.6%에서 50.8%로 0.2% 증가하였음을 볼 때 수도권의 일자리 집중도는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사업운영 개선방안

제1절 자체적 시행계획 수립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정책개발과 기획은 중앙으로부터 수립·전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거의 의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자리잡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제도 도입당시 실질적인 기능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중앙집권체제 하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권력적 통제관계로서 중앙정부는 기획 및 정책수립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관계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이양·심의하던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중요도가 높지 않거나 작은 단위의 사무만을 우선 이양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위사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중심의 이양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김병국, 2005). 중앙정부가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공문을 시·도에 송부하면 시·도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시·군·구에 하달하고, 시·군·구는 이를 다시 읍·면·동에 송부하여 자료를 취합한 후, 시·도에 재차 송부하고 시·도는 이를 다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도는 경유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시·군·구는 자료수합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핵심역량이 취약하게 되었다. 또한 읍·면·동과 시·군·구는 민원업무 등 단순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됨에 따라 전문적인 정보

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김병국, 2005). 이와 같은 상의하달식 의사소통 전달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장기간 유지됨으로써 비융통성과 비효율성이 내재하게 되었으며, 인력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자체 해결능력의 한계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기초한 정책개발과 기획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 이러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환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일선공문원들은 행정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축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탁월한 능력이 함양되어 있으나 기획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경험을 통해 축적한 실천적 지식을 문제해결과정에 가장 합목적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고, 이는 결국 계획능력 즉 기획력의 제고문제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1. 계획

모든 정책수행과 같이 저출산·고령사회대책도 시행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잘못 작성된 계획은 기대하지 않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이란 문제점을 정의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며, 해결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문제의 해결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계획안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적절하지 못한 계획은 결국 실패를 초래한다. 특히 사업목표와 그 달성방법에 대하여 기획자의 의사를 얼마나 계획안에 나타내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사업계획자는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계획안에는 사업성취

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미래 구상이 표현되고, 이러한 계획안은 활용자인 사업집행·수행자가 정책을 수행할 때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가. 계획과정

일반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은 분석(analysis), 기획(planning), 실행(performance), 평가(evaluation), 환류(feed back)의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다시 세분할 수 있다. 분석단계는 현황파악(states analysis), 대상(자)분석(objective analysis), 기획 또는 계획단계는 목표(target)설정, 전략(strategy)개발, 실행단계는 투입(input), 과정(process), 평가단계는 산출(output), 성과(outcome)로 각각 세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환류의 단계를 거친다.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설정의 전단계로서 지향점으로서의 목적(purpose)을 추가할 수도 있고, 목표설정과 동일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략개발의 다음단계로 실행수단(means) 선택을 추가할 수도 있다. 정책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진행과정에서 열거된 요소들을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나,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행해야 한다.

〔그림 6-1〕 정책사업의 일반적인 계획 및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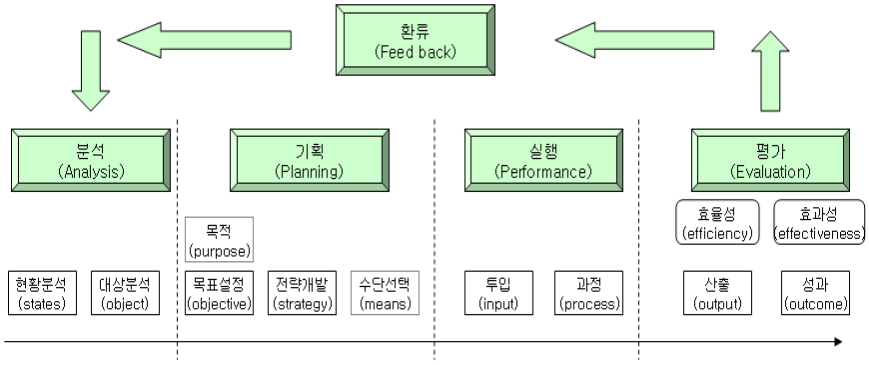

1) 제반현황 분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핵심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현황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 또는 지역적 특성으로서의 인구규모와 구조, 추세 등 인구통계적 요소, 사회적 가치관, 성향, 공공지지도 등 사회문화적 요소, 산업, 노동, 지역경제현황 등 경제적 요소, 투입자원으로서의 재정적 요소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수요(needs)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사회·경제적 수요는 정책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즉, 합목적성(relevance)여부에 대한 검토가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대상(자) 선택과 분석

대상(자) 분석에서는 대상 또는 대상자 집단에 대한 분석이 행해지는데, 문제의 핵심이 사람과 관련될 경우, 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대상자 집단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과 수단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최종정책수혜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인적집단을 사업대상자로 보고 접근해도 무방할 것이며, 오히려 접근이 용이할 수도 있다. 어떻든 대상자 집단의 고유한 특성 파악과 함께 이들의 정책적 수요(needs)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 같이 사업초기단계에서 계획자에게 무한한 시간과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전반적인 대상자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먼저 특정대상자 집단을 선택해야 한다. 사업의 전반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선 몇몇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이후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예를 들자면, 저출산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율 제고가 목적이므로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령층 등 주대상자 집단을 선택하고 이들의 행태와 출산 장애요인 등 제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출산율 제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열거해 나가는 것이다.

3) 목표설정

대상자 또는 단위사업이 선정 분석된 후에는 각 사업대상에 대한 사업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변화 또는 개선시키고자 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변화의 종류와 수준,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변화되기까지의 기간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목표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전체목표와 부합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표들은 사업평가의 기초가 된다. 정책의 성패를 사실상 결정짓는 것은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계획안의 핵심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또한 계속되는 과정이다. 즉 목적과 목표는 계획과정에 있어서 발전되는 것이지 초기에 간단히 설정 열거되어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전략수립

목표가 설정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전략수립은 계획된 사업활동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또는 개선)을 성취할 것인가를 광범위하게 밝히는 것이다. 계획자는 대상의 변화·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접근법을 시·도해 보고 첫단계 대상자 선택과 분석에서 개발된 정보를 재사용하여,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전략은 접근방법, 전달메시지, 전달자 등 수단 또는 자료의 특수한 복합

체로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면서 사용가능한 수단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 판단한다. 접근방법은 대인지원(현금지원, 현물서비스지원, 인센티브 부여, 인적자질 향상), 환경인프라 개선(시설 등 인프라 구축, 인프라 질수준 제고, 제환경개선), 제도확충, 의식개선, 기타 등이며 이중 가능요건을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한다. 전달메시지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수혜를 받는 최종수혜자는 결국 사람이므로 수혜자를 포함한 국민에게서 당초 의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체 또는 전달자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동시에 전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접근방법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달자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부에 따라 효과는 달라지며, 전달자에 대한 신뢰성과 태도가 최종대상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실행(관리)계획

전략이 수립되면 다음단계로서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입(input)과 과정(process)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또는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실행계획에는 사업성취를 위하여 누가, 어떠한 활동을, 어떠한 단계적 과정을 거쳐, 어느 기간 동안 활동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매우 효과적인 계획도 실행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실패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의 전략계획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실행(관리)계획을 상호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략계획을 실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는 활동계획표를 작성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하며, 활동방안을 짜는 과정이 포함된다. 실행계획은 사업수행과정에 포함된 각각의 활동들이 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6) 평가

실행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결과로서 산출(output)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산출은 그 자체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산출의 양(quantity)과 질(quality)에 대한 효율성 평가[35]를 실시해야 하며, 이후 성과(outcome)에 대한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가 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투입된 자원으로 산출수준을 최대화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효과성은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잘 해내었나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단순개념상 효율성이 좋으면 효과성이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평가가 나뉘어 진행된다.

효율성(투입→과정→산출)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질만 측정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단순하다. 그러나 산출이 가져온 결과의 양과 질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효과성(결과) 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도 어렵다[36].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집행자(지방자치단체)는 효율성(efficiency)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정책결정자(중앙정부)는 실적이나 결과의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라휘문, 2003).

사업평가는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가장 핵심이 된다. 사업평가정보는 계획자와 정책결정자가 사업목표와 전략을 효과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자료를 제공해준다. 지자체의 자체적 관리능력 강화가 점점 더 요구될 것을 감안한다면, 평가에 보다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5) 일반적으로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투입이 산출 수준을 최대화하는 정도,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행정기관이 예산이나 인력 등의 투입요소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산출하고 있는가, 주어진 투입요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행정서비스를 산출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말한다(류영아, 2005).

36) 공공부분은 투자에 따른 효과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invisible), 무형적인(intangible) 성격이 짙어 투입 대비 결과(outcome) 혹은 투입 대비 영향(impact)을 계량화시켜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류영아, 2005)

시행계획상의 기대효과 작성부분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즉, 성과를 다루며 결국 평가와 연계된다. 당초 기대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계산방식을 기입함으로써 평가를 통한 기대효과 달성여부를 측정가능토록 해야 한다.

7) 환류

평가결과는 환류되어 시행계획 작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계획안은 활동의 지침이 될 수는 있으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계획 속에 제시된 방향은 계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며, 특히 실행단계에서는 더욱 더 검토가 필요하다. 계획자의 생각이 언제나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계획안 자체도 완벽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로는 계획자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고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혹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목표달성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고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자는 언제나 융통성있게 더욱 효과적인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년도의 사업수행에서 얻어진 참고자료를 신중히 평가하고 이에 입각하여 계획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기술적인 방법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상과 같은 단계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

나. 시행계획 구성

계획안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인 전략계획과 '어떻게 할 것인가?'인 실행(관리)계획이 다루어져야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략은 문제파악과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말하며, 관리는 실행단계에서의 추진방법을 가리킨다. 시행계획상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작성된다.

시행계획과 추진실적보고서는 정형화된 형식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형화를 유지함으로써 타 사업 및 타 지자체와 비교하고 성과를 측정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은 현황, 전체 사업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당해 연도 추진계획, 성과지표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된다. 현황은 단위사업과 관련된 현황분석, 문제점,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전체사업계획(사업개요)은 단위사업의 사업목적, 사업내용, 총사업기간, 기대효과로 구성되며, 전년도 추진실적은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내용을 기록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 추진계획은 당해 연도의 사업내용(사업대상, 수혜자, 사업량), 추진체계(주체, 절차),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근거로 구성된 성과지표를 작성하게 된다.

〈표 6-1〉 시행계획과 실적보고서의 구성내용(예시)

분야별 시행계획	추진실적보고(중앙)	추진실적보고(지방)
• 현황	–	• 현황
• 사업계획(전체 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기대효과	• 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전체사업계획 - 사업개요(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기대효과)
• 전년도 추진실적 - 사업내용	–	–
• 당해 연도 추진계획 - 목표 - 사업내용(대상자, 수혜자, 사업량) - 추진체계(주체, 절차) - 소요예산	–	–
• 성과지표 - 성과지표(계산방식) - 목표치 - 산출근거	• 당해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과목표 달성도(성과목표,성과지표,목표치, 추진실적,달성률,산출근거) - 추진상 애로사항 (혹은 부진사유)	• 당해년도 추진계획 및 성과 - 당년도 추진실적 (목표,달성,달성률) - 예산집행실적(예산액, 집행액,집행율) - 추진성과(성과지표, 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시행계획상 현황과 사업계획란은 앞서 기술한 정책수행과정 1)~6)까지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표현한다. 전년도 추

진실적은 당해 연도의 계획과 개략적으로 비교하여 일반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당해 연도 추진계획은 연차별 진행단계에서의 1개년 동안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며, 성과지표는 기대효과가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추진실적보고는 시행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황, 전체사업계획, 당해 연도 추진계획 및 성과 등 3개로 구분하여 작성된다. 현황과 전체사업계획은 시행계획의 내용과 동일하고 당해 연도 추진계획 및 성과는 당해 연도 추진실적(목표, 달성, 달성률), 예산집행실적(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추진성과(성과지표, 목표, 추진실적, 달성률)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하고 있다. 당해 연도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은 효율성 평가를 위한 것이며, 추진성과는 효과성평가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중요한 2가지를 들자면, 첫째, 추진실적보고서상에는 전년도 추진실적이 들어있지 않아 전년도 보고서를 들춰보지 않는 이상 연도간 실적추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 추진실적과 추진성과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본래의도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행정전문가인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목표설정과 성과설정에 관한 부분만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목표설정

가. 목표의 개념과 기능

1) 목적과 목표

목표란 단어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주 사용되면서도 대개 목적과 혼동하거나 잘못 인식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목적은 이루려 하는 일 또는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즉, 목적은 지향점 또는 지향방향으로서 궁극적 또는 추상적인 반면, 목표는 목적을 향한 단계적 의미를 가지며 보다 구체적이다. 따라서 목적은 그 성격상 단일의 궁극적 지향점이나 방향을 의미하므로 체계적 순서로 나열할 수 없으나, 목표는 복수의 단계를 설정하고 체계적 순서로 나열할 수 있으며, 목표를 체계적 순서로 나타내면 목표의 여러 종류와 목표들 상호간에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목표의 기능

목표는 사업운영의 중심이다. 목표는 사업수행에 있어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유발의 근원이 되며, 또한 사업활동의 '왜'에 대한 답변을 하여 준다. 목표는 관련된 사업에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줌으로써 각 단위사업간 우선순위 및 예산 조정시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며, 수행부서간 업무협조,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기초조사나 사업효과를 측정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단위사업들의 목표는 명백하며 측정이 가능한 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목표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모호하게 서술된 목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획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며,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 혼돈과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모호한 목표는 평가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즉 사업측정방법과 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평가자는 자신의 판단대로 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하여 계획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 같이 수많은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전체 단위사업들의 종합적 목표인 궁극적 목표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사

업운영과 활동이 당초 예정한 곳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목표인식이 없거나 이를 망각할 경우 개별사업간의 연계체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 목표의 체계적 순서

1) 목표설정과정

목표는 사업수행과 사업측정의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에는 사업대상, 변화방향과 정도, 측정방법,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사업대상 또는 대상자를 정하고, 대상자의 개선·변화 방향과 정도를 정하고, 사업측정방법을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목표설정 절차는 문제의 올바른 파악, 문제의 핵심 파악을 통한 문제의 정의, 문제해결후의 효과와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 및 해결가능성 검토, 그리고 목표의 우선순위와 달성수준 결정의 단계로 구성된다(정우일, 2006). 지자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성장기반의 정도가 다르므로 이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한 후, 해결 후의 효과와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의 크기가 크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복수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선순위 설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설정단계부터 관련된 많은 부서의 조직원을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내고, 설정후에 있어서도 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목표간 관계를 인식·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계획에서와 같이 목표설정도 계속적인 과정이므로 한번 설정되면 사업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불변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단기사업이

아닌 장기사업은 사업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경험, 정보, 자료가 축적되게 되며, 이러한 것들은 평가과정을 거쳐 환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획자는 목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 목표의 체계적 순서

대부분의 계획자는 목표의 서열과 그들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다시 소목표를 가지며, 소목표는 또다시 부수적 목표를 가진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자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236개의 추진과제들을 나열해 놓고 있다. 236개 추진과제는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각각의 추진과제는 또다시 개별과제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으며, 이 목표들도 다시 하위단위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목표는 기본법 목표(목적) → 기본계획 목표 → 부문별 목표 → 중범위영역별 목표 → 세부사업별 목표 → 단위사업 하위목표 등의 체계적 순서를 가진다.

체계적 순서란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 또는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차례로 열거한 것으로서 목표 상호간에 뚜렷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최하위 목표가 최상위 목표에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사업 목표의 체계적 순서는 다음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 순서를 활용함으로써 계획자는 목표에 대한 상호관계를 더욱 맹백히 할 수 있다. 목표가 한단계씩 높아지려면 두가지 연관된 목표사이에 어떠한 가설이 존재한다. 즉, 목표Ⅴ는 목표Ⅳ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에서 130%이하 가구까지 확대하면 정책체감도가 증가하고 자녀양육가장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된 가설들이 옳은 것인가는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평가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표 6-2〉 목표의 체계적 순서(예시)

구분	순서	목표의 예시
목적	기본법 목표(목적)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Ⅰ	기본계획 목표	출산율 회복
목표Ⅱ	부문별 목표-저출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목표Ⅲ	(중범위영역)-27영역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목표Ⅳ	(소범위영역)-74영역	자녀양육가정의 사회경제적부담 경감
목표Ⅴ	세부사업별 목표-236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30%까지 단계별 확대 (영유아보육교육비 연차별 지원 확대)
목표Ⅵ	단위사업 당해 연도목표	2007년도 평균소득 100%까지 지원 (당해년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확대-목표량 확정)

주: 목표의 예시는 목표의 체계적 순서 즉, 위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는 다를 수 있다.

3) 목표의 대치와 조정

목표의 대치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질적 목표, 궁극적 목표인 상위목표를 전략적 목표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들을 수단적 목표로 볼 때, 수단적 목표에 치중하다보면 자연히 목표의 대치현상이 발생하기 쉽다(정우일, 2006). 특히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등 부문별로 나뉘어져 있고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정책이어서 어느 한쪽을 치중하면 다른 쪽이 소외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목표간 대치현상이 발생하기가 매우 쉽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등 3대 부문의 이질성과 대상층·정책수단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목표설정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저출산 부문에 치중할 경우 고령사회부문과 성장동력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 부문에서 설정하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목표들간 순환적 추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 부문 모두에 대해서 각각의 기반구축 노력이 행해지고 있지만, 정책수행초기에 있어서 저출산부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후 시차를 두고 고령사회부문과 성장동력부문으로 비중이 옮겨 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세부사업의 경우에도 각각의 비중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과 순환적 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성과지표 설정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실적성과보고서는 사업실적성과를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추진성과의 3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당해 연도 추진실적은 사업량을 기준으로 목표량, 달성량, 달성률을, 예산집행실적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추진성과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목표, 추진실적, 달성률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성과측정수단으로 사용되는 성과지표에 의거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시·도에서 설정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추진실적을 성과평가란에 중복기재한 것과 같아 성과지표로서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리고 제시된 대표지표 외의 개별사업의 성과지표는 지표설정기준이나 일반적인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 광역자치단체 또는 개별사업담당자가 임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작성된 추진성과의 시·도간 비교도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한가지 형식적인 측면에서 향후 실적보고서 작성시 개선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서 추진실적 부문에 기재하도록 한 '달성'을 '추진실적'으로 대체하여 기재토록 하고, 추진성과 부문에 기재토록 한 '추진실적'을 '달성'으로 기재함으로써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의 개념적 혼란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실적보고는 사업량(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실적을 사업량으로

기재함이 마땅하고, 성과보고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각각의 지표에 의해 산출된 성과(달성도)를 기재함이 마땅할 것이다. 즉, 추진실적은 목표, 달성, 달성률이 아니라, 목표, 추진실적, 달성률로 기재토록 하고, 추진성과는 목표, 추진실적, 달성률이 아니라, 목표, 달성, 달성률로 기재토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실적부문과 성과부문의 구분이 모호해져 수치를 동일하게 기록한 것이 대다수이고, 개념을 혼동하여 뒤바뀐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평가, 특히 사후적 평가는 브루스 턱맨(Bruce Tuckman)이 정의한 것처럼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당초 추구하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월센과 샌더스(Worthen & Sanders, 1987)가 정의한 것처럼 "어떤 사물(thing)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평가라면 이는 측정(measurement)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측정은 규칙에 따라 어떤 대상물과 사건에 숫자를 붙이는 것이다(Fred Kerlinger). 따라서 측정은 "어떤 상황의 묘사 또는 기수적(基數的)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며, 실적보고서상 회수, 대상자수 등 수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평가는 이러한 측정을 토대로 가치판단이 더해져야 하며, 이 때의 판단은 미리 결정된 표준에 비추어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도달하여야 한다. 견줄 수 있는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평가결과의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박희정외, 2004). 이 때문에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서 평가지표가 설정되어진다.

성과평가지표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므로 지표를 통해서 추구하려는 목표가 더욱 중요하다. 성과평가의 의미 자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 즉 의도한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 추구하려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지표를 통하여 측정한다. 그러므로 성과지표는 단위사업

목표와 연결되어야 한다. 성과를 측정하는 이유가 의도한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냐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과지표 작성에 관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임부부 지원의 예를 들어보자. 전년도의 관내 불임부부 신청자가 170명이었던 사실과, 불임부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홍보로 인해 신청자가 30명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을 가정한 후, 200명을 지원하기로 당해 연도 사업목표를 세우고 200명×연 2회의 불임부부 지원금액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230명이 신청하였고 이들 중 220명에 치료비를 지원하였다. 30명분 해당액이 부족하였으나, 사업비를 증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책정된 예산만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회만 지원받고 난 후 임신에 바로 성공하거나 다음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추가로 20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이러할 경우 추진실적의 달성률은 110%(220명/200명)로 나타나게 된다. 성과지표는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의 임신성공률 20%(40명/200명)로 정하였다. 그런데 220명 지원대상자 중 50명이 임신에 성공하였고, 실제 달성은 22.7%(50명/220명)로 나타나고, 성과달성률은 115%로 확정된다.

또 다른 예로 종일제 유치원 확대의 예를 들어볼 경우도 유사하게 내용이 전개되므로 위의 예를 유추하면 될 것이다. 다만, 종일제 유치원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실제 취원률은 전환유치원 시설수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고, 기대한 성과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예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전환시설수 평균정원을 초과하는 취원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취원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일제 유치원 확대를 통하여 종일제 유치원 취원아수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며, 증감여부에 따라 성과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제 보육부담 감소 정도, 종일제 유치원아 부모의 만족도, 출산율 증가율 등을 성과지표로 삼을 수도 있겠으나, 단위사업의 목표와 조화될 수 있으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성과측정을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해야 하며, 단위사업의 목표와 연관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표 6-3〉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의 예시

구분	측정항목	측정기준	목표	달성	달성률
불임부부지원	추진실적	사업량(지원인원)	200명	220명	110%
	예산집행실적	사업비(소요재정)	1억	1억	100%
	추진성과	성과지표(임신성공율)	20%	23%	115%
종일제유치원 확대	사업추진실적	사업량(전환시설수)	200개	210개	105%
	예산집행실적	사업비(소요재정)	10억	10억	100%
	추진성과	성과지표 (종일제유치원취원율)	70%	68%	97%

주: 1) 임신성공률은 임신성공자수/불임치료비지원자수로 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의 목표가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부부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임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와 연결시키고 있다.
2) 종일제유치원 취원율은 종일제유치원 취원아수/ 전체종일제유치원취원대상아로 한다.

제2절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확보[37)]

1. 조직

가. 수직적·수평적 정책전달체계 구축

기본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적정 조직체계를 필히 갖춰야 한다. 조직

37) 본 절은 2007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으나, 조직체계구축이 미흡한 수준이고, 향후 조직체계의 후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체계구축의 시급성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의 일부를 발췌, 재구성하였다.

체계의 적정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이 수행할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이를 수행하는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되는 여러 조직간의 수직적·수평적 정책전달체계의 합리성도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추진하지만, 지자체로 내려갈수록 해당 지역에 국한된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기획적 측면보다는 정책집행(사업수행)적 측면이 강조됨으로, 이러한 특성이 지방자치단체 총괄조직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도의 경우 정책기획적 측면과 정책집행적 측면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시·군·구의 경우 정책기획적 측면보다 정책집행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므로 관련 시책들의 조정기능이 보다 부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화대책은 일반적인 정책사업처럼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시한을 정해 놓고 일정시점에 종료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아니다. 이미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저출산 문제는 인구문제의 속성상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중앙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이르는 방대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총괄부서의 조직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 관련된 업무는 핵심적인 업무들이라 단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부서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보건, 고용,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체육, 문화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실무조직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 및 시행하고 정책사업 전반에 관하여 조정·평가하며, 실무부서 또는 하위단위 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지도·감독하는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부서의 설치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수직적 전달체계가 완성되어져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연결되는 수직적 정책전달체계가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수직적 정책전달체계에 있어 각각의 위치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며, 이에 따라 조직의 규모나 형태도 달라진다.

중앙단위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방대한 규모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관련 중앙부처를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한 추진기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2개의 정책관과 10개의 과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단위의 조직규모에 근접하는 수준의 조직규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과 또는 계 수준에서 총괄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과 수준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은 4개 시·도이고 계 수준은 11개이다. 또한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대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완전한 형태의 총괄조직의 설치가 매우 바람직하나, 이러한 형태를 갖춘 광역자치단체는 11개 시·도이다. 결국 과단위 규모로서 통합관리하는 완전한 형태의 총괄조직을 갖추고 있는 시·도는 2개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괄조직을 갖추고 있는 시·군·구가 총 232개 중 24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총괄담당자만 지정하고 있다. 총괄담당자만 지정된 경우 사업총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업무에 부가하여 단순한 자료취합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에서 읍·면·동까지 정책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도, 시·군·구 총괄조직들 간의 수직적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중앙－시·도－시·군·구에 이르는 정책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조직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수평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상황 하에서 조직-기능-인력이 가장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춰야 한다. 조직통합적 입장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수행하는 실무부서들을 모두 모아 하나의 부서로 편성하는 것이 모든 정책사업의 통합적 관리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부서를 모두 합칠 경우 조직규모가 너무 비대해져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능통합적 입장에서 각각의 실무부서에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주요기능만을 분리하고 이를 새로운 조직에 부여하는 것이 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 있다. 즉, 필요에 의해 기존 실무부서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핵심적인 기능만을 분리하여 이를 통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결국 수직적 정책전달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수평적 조직통합 및 기능통합적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규모의 총괄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로 하여금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총괄, 기획, 조정, 평가, 지도감독 등의 종합적 관리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토록 하고, 기존 실무부서들과의 연계·조정을 강화하여 모든 관련 조직과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나. 광역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읍·면·동까지 수직적 연계구조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서 한정된 인력자원을 가지고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를 모두 관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상의 중간기착지에 해당하는 시·도에서 이를 1차적으로 주도하여 관장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연계 및 조정을 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기획적 기능과 시·군·구의 정책집행적 기능을 동시

에 갖추는 총괄적 기능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계 수준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임에 따라 과 수준에서 기능적으로 최대한 통합성을 살리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주요 핵심기능만 분리하여 과에 통합하는 핵심기능 통합형태가 바람직하므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설치하도록 한다. 즉, 대구광역시의 사례와 유사하게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고령화대책팀으로 구성된 과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조직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령사회부문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되, 저출산부문에 한하여 저출산대책팀을 만들고,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통합하는 총괄기획 기능을 흡수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초기단계의 고령사회대책은 기존정책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업들로서 사업의 범주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으므로 기존의 조직에 총괄기능을 추가하여 활용해도 어느 정도 의도한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저출산부문은 새로 개발된 사업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아직 관련 부서간 역할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통합·조정부서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일부기능(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능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기능이 주민생활 지원과 체제내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군·구 정책집행의 최일선 현장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 관련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생활체육 등의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전달되려면 전반적인 기능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주민생활지원과 체제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정책기획·집행·평가기능을 담당하는 총괄 조직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 실무부서간은 물론, 해당 광역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와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계 수준)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대책팀(계)'을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기획 및 수립·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반에 관하여 복지사무를 기획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며, 조사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출산·고령화대책팀(계)을 설치할 경우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구의 경우 보건소에 총괄기능을 부여한 예가 많은데 가능한 본청에 총괄부서가 구성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청에서 수행하는 사업까지 총괄관리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여러 제약요인이 있을 것이므로 보건소는 현재와 같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부서로서의 역할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며, 본청에 총괄부서가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라.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역할 및 동기 부여

조직을 설치하였다고 모든 것이 완결되지는 않는다. 실제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역할을 부여하고 조직이 존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실무부서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개발이나 교육홍보 등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사업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서 사업개발 및 교육홍보비 등의 항목으로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어야 하며, 사업의 종합관리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인력

가. 인력규모의 적정성 확보

총괄조직의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해 획일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정부조직이 기계적 관료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기능적 분화조직의 전달체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양적, 질적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총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조직 및 인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인력의 엄밀한 직무분석과 업무총량을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 더욱이 총괄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형태나 규모가 다양하며 사업의 시행초기인 지라 총괄조직으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업무량 추정과 장래의 업무량의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적정한 인력규모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그 범위가 방대하며 장기간의 수행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특징에 덧붙여 향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서비스 수요자로서 대상자의 범위를 예측해 보면, 정책적으로 수혜계층의 폭을 넓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구구조상 대상자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고령사회 부문에 있어서는 인구구조상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코호트 인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출산 부문에 있어서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와 출산·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임산부 및 출산아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성장동력 부문에 있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유입과 다문화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가 예상된다. 즉 3개 부문 모두 공통적으로 서비스 수요자의 폭이 증가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정책의 수와 규모의 양적 증가가 자명하다.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각종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동시에 도모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던 행정서비스 관련 사무들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서 지역적 여건 및 주민들의 개별적인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수용능력을 함양하여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개선은 필연적으로 업무량의 증가를 불러오게 된다. 이에 부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 조정, 총괄, 연계, 평가, 홍보교육, 민관협력 업무의 강화 등 새롭게 부각되는 역할들은 총괄조직의 업무총량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아 업무의 강도도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적정 인력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현황과 특성, 직무담당 형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겠지만, 시·도는 과단위, 시·군·구는 계단위 규모의 조직에 적합한 규모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필수 전문직의 배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사업에는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등 이질적인 부문의 사업들이 섞여 있어서 총괄조직의 인력은 각 부문의 담당자들과 협업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총괄부서의 인력구성이 필수 직렬의 배치없이 특정 직렬로만 구성될 경우 우선, 전문적 기획력이 약화되어 부서 고유의 역할 수행이 어렵게 된다. 업무관련 전문지식없이 효과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결과 기획업무를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는 실무부서로 이관하고 단순히 취합 등의 관리업무만을 총괄부서의 인력이 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실무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요하는 분야에서도 전문직의 존

재 여부에 따라 업무수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전문지식 습득의 차이와 습득과정에서 형성된 시각의 차이, 업무를 대하는 시각과 처리방식의 차이, 동류의식의 부재 등에서 발생하는 이질감은 타직렬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흐르도록 유도한다. 이 때문에 조직에서 소속의 차이에 따른 배타성보다 직렬의 차이에 따른 배타성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조직에서는 이러한 배타적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직을 배치하여 동일 직렬끼리 업무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보건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필수전문직의 배치는 일반행정직에 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업무능률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해 일반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최소 3년 이상의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도 축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의 이유에서 총괄조직의 인력운영에서 팀장 외에 필수직렬의 전문직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

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배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업무의 특성상 신규채용인력보다는 유경력자 중 숙련자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규직원은 조직 및 정책 운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디고 업무처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괄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신규로 충원된 인력은 실무부서에 배

치하여 숙련기간을 거친 뒤 총괄부서에 배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경력 전문직의 배치가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비숙련 전문직을 배치해야 할 경우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반면, 근무연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퇴직예정자나 계약직 직원의 배치는 신중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업무에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라. 순환보직주기의 연장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

순환보직주기의 연장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고 정책기획 및 추진이 복잡성을 띤 정책이다. 따라서 소속직원의 순환배치시 순환보직주기를 늘려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순환보직주기를 보면 자치단체마다 그리고 직종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직주기가 매우 짧은 것이 보편적이며, 전문직의 경우 1~3년, 행정직의 경우 1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면 기본적으로 업무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신규배치후 업무적응기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체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다. 물론 단순한 행정처리 업무라면 보직주기가 짧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의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괄부서에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업무노하우 습득과 전수 등 업무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보직순환주기는 총괄부서의 업무처리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배치된 인력이 직종을 불문하고 최소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순환주기의 특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총괄부서의 업무량이 많고 복잡함에 비해 승진에 있어서의 특전이 전혀 없는 경우 차기 순환배치기회를 이용하여 타부서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배치된 인력의 자진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책

을 적절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차후 누가 순환배치되어 업무를 맡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중 습득한 업무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반드시 전수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기획분야의 노하우는 더욱 중요하며, 업무전반에 관한 체계를 잡아 후임자에게 점수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마.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부문의 핵심 사안인 일·가정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있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득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시·도청내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다자녀 직원(교원)에 대해서는 인사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직원이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든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관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솔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자원 등 각 지역의 차별적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인구정책 경진대회라든지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업의 개발은 미흡한 편이며, 지자체의 자체사업이 지역의 인구, 자원 등 제반환경에 대한 면밀히 분석과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경쟁적인 출산장려금 지급 등에 국한된 모습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정책개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업무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역 인구 동태에 대한 분석, 지역민의 정책 욕구 파악, 정책 개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정책 개발을 맡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인력의 전문성은 조직 전체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실무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또한 직무와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정기적인 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훈련이란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직무의 요구능력이 업무담당자의 공급능력보다 클 때 전문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절 정책적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저출산과 고령사회대책의 출발점은 인구구조변화이다. 저출산은 저위연령의 감소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고령화는 고위연령의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자 모두 인구의 증감과 관련되는 문제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저출산대책은 감소하는 저위연령의 인구 증가 즉 출산아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명료하게 나타날 수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가능한 정책을 모두 동원하여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재조정한다. 고령사회대책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안심·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룬다. 이것은 인구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인구에 대응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기존의 복지정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시급성과 중요성을 낮게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 변화속도를 감안할 때 저출산대책과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 뒤늦게 그리고 급하게 대응할 경우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정책사업의 국민적 지지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확보

가. 사업의 일관성 확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단기사업이 아닌 중장기사업이다. 중장기사업은 정책목표 도달까지 장시일이 소요되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계획수정이 수반된다.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적 요구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른 사업과의 연관관계에서 전략적 자원 재배분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사업 자체의 효율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영하여 제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고유목적을 훼손함 없이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수혜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함 없이 중도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사업내용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정책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게 된다. 정책수혜자가 많은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라 노인교통비나 장수수당이 폐지되는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제도의 도입이라 하더라도 제도변경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을 시에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당초 도입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도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다.

나. 정책체감도 강화 및 국민적 지지 확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가 2008년 기준으로 10조원을 넘고 있고, 236개의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며, 정책에 대한 불신으

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국민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겨우 명칭정도나 알고 있는 정도가 97%에 이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본인에의 영향도는 매우 높게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관심도도 높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종합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대응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국민의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재원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 소외자 위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일정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체감도 약화는 국민적 지지 약화로 이어지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후퇴시킬 수 있으므로 그냥 이 상황에 그대로 안주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색채를 내세울 수 있는 대표사업을 전면에 내세워 각인시켜 나가고 대표성이 떨어지거나 기존 일반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은 후위에 배치시키거나 대책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을 총망라하여 나열하였으며, 기존사업을 변형하거나 강화한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수의 과다로 인해 오히려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투입재원 총량은 늘어감에 비해 개별 단위사업에 할당되는 재원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된다. 또한 사업수와 비례하여 국민의 기대치는 높게 형성됨에도 수혜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거나, 기존 보건복지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는 천문학적 재원 투입에 비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따

라서 주축사업 위주로 다수가 체감할 수 있도록 수혜자를 좀더 확대하여 체감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여성 및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효용가치가 높은 직업이나 일자리를 대상으로 질적 확대를 꾀한다기보다는 단순 노무형 위주의 일거리 양적 확대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실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직업·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전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의치보철사업과 같이 비록 1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 건강증진효과와 더불어 수혜 체감도가 비교적 높고 2차적으로 체감의 전파효과와 정책지지도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사업들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부사업별 효과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전략적 자원배분을 추구해야 한다. 장시일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재원의 한계성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평가를 강화하여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을 선택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다. 5년 주기로 작성되는 기본계획 수립시마다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재원배분의 효율성 확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상당수 사업이 매칭펀드로 조성되어 추진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매칭펀드는 중앙과 지방이 각각 할당되는 비율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할당되는 비율의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내용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50:50으로 조성되는 저상버스 도입과 같이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정도가 심하고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버스임을 감안한다면, 농어촌 지역에서 저상버스의 도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나, 실제 특·광역시 지역에 비해 도입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의 경우 중앙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매칭펀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이 근본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투입될 수 있는 지방비가 넉넉하지 못하고 결국 보조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칭펀드 사업에 있어서도 특정사업의 중요성과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보조비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실제 자체적인 고유사업을 개발하고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도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시·도별 시행계획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시행계획에 열거된 사업 이외에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별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물론 독자적 기획력이 중앙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역시 독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독자적인 기획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의 일정액을 고유사업 개발비 등의 비목을 설정하여 총액으로 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자율적인 사업개발과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고 시행계획 승인과 실적 평가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특성에 부합한 정책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것과 총괄부서 설치와 존속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중에는 재원의 한계로 인해 사업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가 사업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인 사업이 많다. 이들 사업은 지자체 자체재정이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나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이며, 근본적으로는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자원 재배분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사업전달체계 일원화

조직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사업전달체계 또한 복잡하며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 유사한 사업들이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가지고 전개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에서 수행되는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예로 들면, 유사한 형태의 사업임에도 시니어 클럽, 일자리 박람회 등의 형태로 다른 민간기관을 통하여 각자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의 보육과 교육을 또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 보육과 교육의 개념 해석에서 비롯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관계에서 당초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되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관련부처간 역할관계를 정립하고 가능하면 사업을 통합하는 등 사업전달체계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2. 홍보·교육사업 내실화

가. 홍보·교육사업의 중요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형적 지원 외에 출산 및 고령사회 친화적 규범의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홍보·교육사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민 모두가 직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타인 또는 국가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해서는 안되며 모두가 합심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문제 인식과 해결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형적 형태인 가치관 변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유형적 지

원만으로는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치관 변화 노력이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표 2-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투입된 재정은 3년 동안 총 67백만원으로서 총 재정투자액의 0.03%에 그치고 있다. 물론 소관부처 또는 부서 재량으로 개별사업의 홍보교육이 진행되고, 이는 해당 사업예산에서 편성·집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활동이 활발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현 상태로는 향후에도 강화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아 크게 우려된다.

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홍보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관계에 있어 중시되던 결혼, 자녀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관은 표면적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이미 사라졌다. 이러한 자리를 대신하여 만혼·비혼관과 소자녀관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현대적 개념에서의 성역할관 균등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가치관은 오랜 시일동안 가치판단과 경험의 반복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가치관의 속성상 가치관이 정립되기 이전의 아동·청소년기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후 실제 성장과정에서 올바른 가치관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가치관 변화의 기저에는 직장과 수입 불안정, 높은 보육·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는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교육이나 홍보로써 추세를 완화시키거나 역전시키는 수밖에 없다.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기경험자의 행복한 삶과 가치관이 동세대 또는 다음세대로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것이 가치관 전파의 최효과적 모습일 것이나, 공동체가 와해되고 개인적 고립이 강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은 청소년은 학교교육이며, 성인대상은 대국민홍보라 할 수 있다. 결혼연령이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경제적 안정의 조기달성, 출산과 육아의 용이성,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과 자녀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와 '인생의 가치' 때문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수단은 주 인지경로인 TV 등 전파매체를 수단으로 사용하며, 홍보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드라마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에 자주 노출될수록 단기적으로는 반감도 가질 수 있겠지만 노출수가 많아지면 질수록 심리적 각인의 효과가 커져 결국에는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개인적 욕구와 가치관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

다. 일선 관계자의 홍보교육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사업량이 방대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계공무원들조차 전체사업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책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의 목적이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인력이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사업경과에 따른 변천과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2장에 주요사업의 변화과정을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을 실무자가 숙지한 상태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결혼·출산·양육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나 태도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서서히 이를 체감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 사용이라 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 인원과 기간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은 성숙기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볼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더 그러할 것으로 추측된다. 관에서 민으로 서서히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 필기시험 또는 적성검사시 고령자의 돌발행동 가능성과 대처요령에 대한 운전자교육 강화나,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치료와 보호 효과의 제고 등 개별 단위사업 수행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홍보교육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3. 지역특성 기반정책과 지역공동체 복원

가. 지역특성의 고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지역적 차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주진실적상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체사업이 적으며, 중앙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성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기획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기획을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설치되지 않거나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도 이해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자체적으로 기획·추진·집행할 수 있는 경험이 미흡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자체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특성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낮고 노인인구비중이 높은 도지역의 경우 고령화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유소년인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저출산문제 해결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지역은 노동인구의 상실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도시내에서의 주거이동이 아니면서 인구유출이 심하게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노동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지역면적이 넓은 농어촌지역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운동공간이 부족한 도시지역은 공공체육시설과 운동장의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폭이 넓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조정하고 도로의 폭이 좁고 보행자가 주로 노인인 지역은 요철 등을 설치하는 등 도로교통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역별 수혜자의 다소, 정책추진환경 등에 따라 탄력적인 사업운영이 요구된다.

나. 지역공동체 복원

저출산고령화 문제발생 배경의 하나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해체이며, 역으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복원이다. 과거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출산과 양육이 오늘날과 같은 국가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출산후 유아기까지는 일터인 전답으로 데리고 다니지만[38], 그 이후에는 형제자매, 조부모 등 가족공동체와 또래집단으로 구성된 놀이 공동체, 지역노인 등 어른으로 구성된 지역공

동체에서 보호와 양육기능을 담당하였으며, 학령기에는 역시 또래의 놀이 공동체와 학교, 가족, 지역 공동체에 의해 돌봄기능이 행해졌다. 결국 가족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동으로 양육기능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공고히 유지되던 지역공동체가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히 해체되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이촌향도 현상이 일반화되었고, 산업현장 주변에 밀집하여 주거하면서 핵가족화가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출산, 육아, 보호 기능이 지역사회에서 개별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으며, 가족에게 전가된 양육과 보호의 어려움이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공동체를 어느 정도까지 복원할 수 있다면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역공동체 복원방법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시설과 경로당 등 노인시설의 연결이라 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의 보편적 주거형태인 아파트 단지를 신축함에 있어 보육·교육시설과 노인시설을 묶어 동일 건물 또는 맞닿은 공간내에 위치시켜 양자의 교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노인을 접하고, 노인들은 아이들의 재롱을 근접거리에서 지켜보면서 무위와 고독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부모가 휴일에 잠시 동안 어딘가 아이를 맡겨놓고 긴급한 볼 일을 봐야 할 경우 노인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덧붙여 자녀양육의 오랜 경험을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조금 활용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탁아부모 입장에서는 보육·교육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좀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공동체 부활을 통한 지역사회 분위기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공동체 스스로 청소년 주변 위해요소 제거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38) 이 당시 일과 가정은 양립형과 일체형이 합체되어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터와 집은 지근거리였고 따라서 영유아를 일터로 데리고 가서 짬짬이 젖을 먹이기 때문에 일과 가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체형이라 할 수 있으며, 유아기를 지나서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지역사회에서 돌봄기능이 행해지기 때문에 완전한 양립형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을 위시하여 시민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율적 감시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청소년 주변환경부터 공동체 복원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되면서 과거 지역공동체의 장점인 협력하는 분위기는 조성될 것이며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본다.

4. 중고령인구에 대한 관심 제고

가. 고령인구의 새로운 단면

저출산 문제는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으나, 고령화 문제는 아직 고령화사회에 머물고 있어 그 심각성과 파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저출산은 현재성과 장래성이 혼재되어 있으나, 고령화는 아직 현재성보다는 장래성이 부각되고 있어 후위로 밀린 상태이다. 그러나 결코 뒤로 미뤄두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 현상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올 파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각각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노인인구규모가 10%선에 이르고 있는 상태여서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고령화문제는 여전히 노인복지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이 정도로 당면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고령층이 점진적으로 고령층으로 이동하면서 파생되는 제문제는 일반적인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코호트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노인문제를 단순한 노인복지측면으로 접근하여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고 고령화 측면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

현재와 달리 향후에는 노령인구를 단순히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

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적 지위를 가진다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재설계해야 한다. 현재 노인인구비율이 9.9%로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30년에는 24.3%로서 전체인구의 4분의 1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고령화 문제는 국가사회 전부문의 구조 재편을 야기할 수 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노인들이 투표권 행사를 통하여 압력단체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국부 점유율이 높은 계층으로서 여전히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할 것이며, 문화적으로는 초고령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므로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추측된다.

장래 인구구조의 대대적 변화는 현재의 저출산대책 또는 고령사회대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대책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 중위연령 49세를 조금 낮추고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왜곡을 진정시키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뿐, 인구코호트의 단계적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고령화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피해갈 수도 없다. 따라서 이미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초고령사회가 미칠 강력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몰고 올 갖가지 변화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신속히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성장동력으로서의 중고령인구에 대한 관심 제고

노인인구구성비가 2000년 7%에서 2008년 10월 현재 10%로 증가하고, 2020년 16%, 2030년 24%에 이를 정도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노년인구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는 가속화가 더 심해지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국가사회 전 부문에 미치면서 미증유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이미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초고령사회의 파장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인

인구 급증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예비고령인구인 중고령인구의 증가추세까지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구학상 노년인구의 구분기준이 65세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더 낮아져야 하기 때문이다[39]. 50세 이상 중고령자로 확대하여 인구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50세 이상 인구구성비가 대략 2000년 20%에서 2010년 30%, 2020년 40%, 2030년 50%로 매10년마다 10%씩 증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 불과 20년 후에는 전체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 인구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6-4〉 50세 이상 중고령자 및 고령자 인구수 및 비율(2000~2030)

(단위: 천명, %, 세)

구분	2000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20년		2030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50세 이상	9,584	20.4	11,431	23.7	12,480	25.8	14,256	29.2	19,578	39.7	23,529	48.4
50~64세	6,189	13.2	7,064	14.7	7,669	15.8	8,900	18.2	11,877	24.1	11,718	24.1
65세 이상	3,395	7.2	4,367	9.1	4,810	9.9	5,357	11.0	7,701	15.6	11,811	24.3
중위연령	31.8		34.8		36.1		38.0		43.8		49.0	

자료: 통계청(2007), 『2005~2030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중고령인구의 특성과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경향이 있다. 특히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는 1차 베이비붐세대의 인구는 상당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어느 계층보다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있으며, 높은 인구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지배계층에 머무를 것이고, 인구수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구조를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전될 것이다.

39) 일반적으로 기업의 정년은 60세 전후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은퇴는 이보다 훨씬 빠른 55세 전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시기의 노인문제 또는 중고령이상 인구에 대한 문제는 현재의 사회적 소수의 측면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 국가의 주도적 핵심인구의 측면에서 다루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정책처럼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노인의 4대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50세 이상 중고령이상 인구들이 여전히 사회의 주도적 계층임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자생력을 가진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를 구분하여, 자생능력이 있는 부류는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생력이 떨어지는 부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초고령사회를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또 하나 중고령자도 고령자와 같은 준은퇴인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기은퇴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한 중고령자는 생산적 일자리를, 고령자는 여가형·공익형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등 생산동력 활용분류를 달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7장 결론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총 236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하였고, 정부의 행정조직망을 통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마다 부처 또는 지역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2008년은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의 중간연도로서 사업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중간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36개에 달하는 방대한 세부사업이 매 연도별로 계획되고 수행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업주체별, 연도별, 단위사업별 입체적 분석이 행해져야 하나, 대다수 단위사업들의 사업내용이나 단위가 매우 다양하여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사업에 대한 보정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방대한 규모의 사업들을 일일이 보정작업을 거쳐 비교분석하기에는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각 사업주체별 추진실태와 현황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사업추진체계, 주요사업 변화추이, 사업추진실태, 국민인식, 정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계획 및 관리를 보다 정교화할 수 있도록 제시 하였으며, 앞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과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정부조직 행망을 정비하는 일이며, 그 일환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중앙에서 시·군·구에 이르는 정책전달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중앙에 있어서는 정책심의기구로서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책추진기구로서의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이 설치되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모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총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개 시·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조직규모는 각기 다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32개 시·군·구 중 24개 시·군·구만 총괄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있어 조직전달체계는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적정규모의 총괄부서 설치가 필수적이다. 시·도 단위에서는 과 규모, 시·군·구 단위에서는 계 규모의 부서설치가 요구되며, 가능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인력은 부서규모에 부합하는 인원을 배치하되, 경험이 풍부한 필수전문인력(직)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순환보직주기의 연장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하며 기획능력을 제고하는 등 전문성강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에 있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시행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시·도, 시·군·구별로 인구구조가 다르고 출산율과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비율, 정책수혜자의 차이와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 다르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따라 이를 감안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정책개발과 기획은 대부분 중앙에 의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굳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체적 기획능력 함양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획 또는 계획은 제반현황 분석, 대상(자) 선택과 분석, 목표 설정, 전략수립, 실행(관리)계획, 평가, 환류의 과정을 거치므로 이러한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목표 설정에 있어서 설정 과정과 체계적 순서를 숙지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이 수립·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재정자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단위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보조율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시·도의 경우 의무적 지방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중앙정부에서는 매칭펀드 조성에 있어 재정자립도를 좀더 세분화하여 반영하는 등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민에게 바람직한 인식을 심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토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대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은 깊이 인식하면서도 본인에의 영향도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높게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타인 또는 국가의 문제 또는 책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문제의 극복을 위한 협력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못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236개에 달하는 방대한 세부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인지·인식도를 보이는 것은 낮은 체감도와 홍보부족에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 할 수 있으며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책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혼, 자녀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관은 표면적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약화되었다. 이러한 자리를 대신하여 만혼·비혼관과 소자녀관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현대적 개념에서의 성역할관 균등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성역활관 균등화 현상은 가족공동체 생활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결혼, 자녀, 부양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는 가족공동체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과도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개선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장 유용한 수단인 홍보·교육사업이 사업비가 거의 배정되지 않는 등 등한시되고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출산, 고령사회 친화적 규범의 형성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 또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출산, 부양의 모든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된 것은 지역공동체의 와해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복원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 환경 급변도 지역, 사회공동체의 해체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즉, 경제위기의 대두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중고령자와 여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출산율의 회복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되며, 태동기에 있는 결혼, 출산, 양육, 노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한단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한 지역공동체 와해 촉진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성원간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 역시 사회공동체의 복원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사업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가능한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고 정책체감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효과성 검증을 통한 자원 재배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관리 혁신 전략」, 『지방행정』, 2005. 6월호.

라휘문,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3.

류영아, 「기초자치단체 복지행정의상대적 효율성 평가」,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05.

민진, 『조직관리론』, 대영문화사, 2005.

박희정·박해육·이병기·김건위·이혜영,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오영희·조남훈·김경래·유혜영·김해란, 『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이삼식·신인철·김필숙·임주연 외,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수정책 개발 촉진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이삼식, 「지방의 인구학적 현상변화와 정책에의 함의」, 『지방자치정보』, 150,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4.

정우일, 「공공조직론」, 박영사, 2006.

조남훈·김태헌·이삼식·오영희 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조남훈·오영희·김경래·김해란·유혜영·김필두,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진재구,『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임용체계 개선』, 한국행정연구원, 199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정책 '07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 2008.

보건복지부,『2007 보건복지통계연보』, 2007.

보건복지부,『보육통계』, 각 년도.

보건복지가족부,『저출산 고령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200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결과』, 2008.

정부,『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2006~2010』, 관계부처협동, 2006.

통계청, KOSIS,「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

통계청, KOSIS,「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 홈페이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16개 시·도)

2007년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16개 시·도)

2007년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16개 시·도)

2008년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16개 시·도)

부 록

〔부록 1〕 부표

〈부표 4-1〉 미혼남녀의 결혼 연령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더 낮아져야 한다	적당하다	더 높아져야 한다	계(명)
전체	13.5	69.4	17.2	100.0 (1,100)
성 및 연령				
남자(소계)	21.6	66.7	11.7	100.0 (513)
24세 이하	19.8	73.6	6.6	100.0 (91)
25~29세	15.7	74.7	9.6	100.0 (166)
30~34세	22.4	64.7	12.8	100.0 (156)
35세 이상	31.7	50.5	17.8	100.0 (101)
여자(소계)	6.3	71.7	22.0	100.0 (586)
24세 이하	7.8	77.5	14.7	100.0 (102)
25~29세	3.9	73.5	22.6	100.0 (155)
30~34세	6.7	66.7	26.7	100.0 (210)
35세 이상	7.6	73.9	18.5	100.0 (119)
지역				
특별·광역시	12.1	70.8	17.1	100.0 (462)
9개 도지역	14.5	68.4	17.1	100.0 (636)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11.8	70.7	17.5	100.0 (692)
임시일용근로자	15.7	66.7	17.6	100.0 (153)
무직(학생포함)	16.5	67.7	15.7	100.0 (25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2〉 결혼연령이 낮아져야 하는 이유(미혼남녀)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명)
전체	21.4	17.2	47.6	2.1	4.1	7.6	100.0 (150)
성 및 연령							
남자(소계)	26.6	16.5	43.1	0.9	4.6	8.3	100.0 (109)
24세 이하	38.9	16.7	27.8	–	11.1	5.6	100.0 (18)
25~29세	23.1	11.5	50.0	–	3.8	11.5	100.0 (26)
30~34세	12.1	24.2	45.5	3.0	3.0	12.1	100.0 (33)
35세 이상	37.5	12.5	43.8	–	3.1	3.1	100.0 (32)
여자(소계)	7.9	18.4	57.9	7.9	2.6	5.3	100.0 (38)
24세 이하	–	11.1	55.6	11.1	11.1	11.1	100.0 (9)
25~29세	16.7	16.7	66.7	–	–	–	100.0 (6)
30~34세	7.1	28.6	64.3	–	–	–	100.0 (14)
35세 이상	11.1	11.1	44.4	22.2	–	11.1	100.0 (9)

주: 1) ①자녀 출산과 육아가 쉽기 때문에, ②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서, ③경제적 안정을 빨리 이룰 수 있으므로, ④늦게 할수록 적당한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⑤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성인으로 살 수 있으므로, ⑥중년이후 양육부담을 덜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므로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3〉 미혼남녀의 만혼의 이유에 대한 견해(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대상자수
전체	55.0	19.9	37.3	27.6	25.6	14.3	9.6	2.4	(1,100)
성 및 연령									
남자(소계)	71.5	27.5	27.7	17.3	22.0	15.0	9.3	2.7	(513)
24세 이하	78.0	25.3	25.3	16.5	19.8	17.6	9.9	–	(91)
25~29세	73.9	30.7	29.1	13.9	20.0	13.9	10.2	1.2	(166)
30~34세	71.8	25.2	23.7	22.4	21.8	12.2	9.0	6.4	(155)
35세 이상	62.0	27.7	34.0	15.8	27.7	18.8	7.9	2.0	(101)
여자(소계)	40.5	13.3	45.7	36.7	28.8	13.8	9.9	2.0	(587)
24세 이하	42.2	21.4	40.8	31.1	32.0	13.7	11.8	3.9	(102)
25~29세	43.6	18.1	38.5	39.7	27.1	12.9	7.7	1.3	(156)
30~34세	37.9	10.0	55.2	35.1	28.1	12.3	12.3	1.4	(211)
35세 이상	39.5	5.9	42.9	40.3	29.4	17.6	6.8	2.5	(119)
경제활동유형									
상용근로자	53.3	21.4	37.1	27.3	25.8	14.6	10.3	2.3	(692)
임시일용근로자	51.3	17.8	39.5	32.0	25.5	15.1	7.8	3.3	(152)
무직(학생포함)	61.6	16.9	36.5	25.9	25.4	12.9	9.0	1.6	(255)

주: 1) ①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②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③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④결혼 후의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⑤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가치관의 변화), ⑥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⑦교육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⑧기타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4〉 미혼남녀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하지 않는 게 낫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편이 좋다	반드시 해야한다	계(명)
전체	1.6	48.4	30.5	19.5	100.0 (1,100)
남자(소계)	1.2	35.4	33.4	30.1	100.0 (513)
24세 이하	2.2	36.3	25.3	36.3	100.0 (91)
25~29세	0.6	29.1	32.7	37.6	100.0 (165)
30~34세	–	30.1	41.7	28.2	100.0 (156)
35세 이상	3.0	53.0	29.0	15.0	100.0 (100)
여자(소계)	2.2	59.4	28.1	10.4	100.0 (588)
24세 이하	1.0	55.9	23.5	19.6	100.0 (102)
25~29세	0.6	54.2	34.8	10.3	100.0 (155)
30~34세	4.7	51.7	33.2	10.4	100.0 (211)
35세 이상	0.8	82.5	14.2	2.5	100.0 (1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5〉 미혼남녀의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남자의 결혼적령기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3세	34세 이상	계(명)		평균
전체	2.6	9.9	47.6	29.2	10.7	100.0	(1,085)	31.1
남자(소계)	5.1	15.7	46.4	23.8	9.0	100.0	(509)	30.8
24세 이하	7.8	31.1	45.6	13.3	2.2	100.0	(90)	29.8
25～29세	3.0	13.9	57.8	20.5	4.8	100.0	(166)	30.6
30～34세	6.5	9.7	37.7	36.4	9.7	100.0	(154)	31.1
35세 이상	4.0	14.1	41.4	19.2	21.2	100.0	(99)	31.4
여자(소계)	0.3	4.7	49.0	34.0	12.0	100.0	(574)	31.7
24세이하	1.0	10.8	56.9	25.5	5.9	100.0	(102)	31.0
25～29세	0.6	1.3	42.6	41.9	13.5	100.0	(155)	31.9
30～34세	–	1.5	49.5	36.9	12.1	100.0	(206)	32.0
35세 이상	–	9.9	49.5	25.2	15.3	100.0	(111)	31.4
구분	여자의 결혼적령기							
	25세 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세 이상	계(명)		평균
전체	6.5	17.2	43.7	24.7	7.9	100.0	(1,085)	28.4
남자(소계)	10.3	26.0	44.6	16.2	3.0	100.0	(507)	27.8
24세 이하	9.0	30.3	46.1	12.4	2.2	100.0	(89)	27.7
25～29세	6.7	28.5	49.7	13.9	1.2	100.0	(165)	27.8
30～34세	11.0	25.8	43.9	17.4	1.9	100.0	(155)	27.8
35세 이상	16.3	18.4	35.7	21.4	8.2	100.0	(98)	28.2
여자(소계)	3.1	9.2	43.2	32.2	12.2	100.0	(574)	29.1
24세이하	2.9	15.7	52.0	27.5	2.0	100.0	(102)	28.4
25～29세	0.6	9.7	43.2	37.4	9.0	100.0	(155)	29.2
30～34세	1.5	4.4	39.8	34.5	19.9	100.0	(206)	29.6
35세 이상	9.9	11.7	41.4	25.2	11.7	100.0	(111)	28.8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6〉 미혼남녀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계(명)
전체	0.6	20.3	51.9	27.2	100.0 (1,087)
성별					
남자	0.4	16.3	48.0	35.2	100.0 (508)
여자	0.7	23.8	55.3	20.2	100.0 (579)
연령					
24세 이하	–	22.5	54.5	23.0	100.0 (191)
25~29세	0.9	17.6	49.4	32.1	100.0 (318)
30~34세	0.6	18.7	52.6	28.1	100.0 (359)
35세 이상	0.5	25.5	51.8	22.3	100.0 (2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7〉 미혼남녀의 희망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1명 이하	2명	3명 이상	계(명)	평균
전체	20.3	64.7	15.0	100.0 (1,091)	1.9
성 및 연령					
남자(소계)	16.7	67.6	15.7	100.0 (510)	2.0
24세 이하	21.1	61.1	17.8	100.0 (90)	2.0
25~29세	13.3	68.5	18.2	100.0 (165)	2.1
30~34세	17.3	74.4	8.3	100.0 (156)	1.9
35세 이상	17.2	61.6	21.2	100.0 (99)	2.0
여자(소계)	23.6	62.0	14.5	100.0 (581)	1.9
24세 이하	17.8	60.4	21.8	100.0 (101)	2.0
25~29세	21.3	65.2	13.5	100.0 (155)	1.9
30~34세	23.8	62.1	14.1	100.0 (206)	1.9
35세 이상	31.1	58.8	10.1	100.0 (119)	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8〉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자녀를 두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명)
전체	22.2	8.5	52.5	6.2	6.0	0.2	3.9	0.6	100.0 (1,054)
성별									
남자	18.0	9.4	51.5	5.2	10.4	0.2	4.8	0.4	100.0 (499)
여자	25.9	7.7	53.3	7.0	2.0	0.2	3.1	0.7	100.0 (555)
연령									
24세 이하	22.5	8.0	50.3	4.8	5.9	0.5	7.5	0.5	100.0 (187)
25~29세	21.3	6.8	56.8	6.8	4.2	–	3.9	0.3	100.0 (310)
30~34세	23.3	11.6	52.0	6.0	3.1	–	3.1	0.9	100.0 (352)
35세 이상	21.6	6.4	49.0	7.4	13.2	–	2.0	0.5	100.0 (204)

주: 1) ①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 ②결혼을 하면 당연한 일이므로, ③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④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주므로, ⑤대를 잇기 위해, ⑥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⑦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⑧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9〉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명)
전체	14.8	64.8	7.5	2.7	1.0	0.5	4.8	1.5	1.7	0.5	100.0 (1,100)
성별											
남자	17.2	65.2	6.1	1.6	0.4	0.4	4.5	2.5	1.8	0.4	100.0 (512)
여자	12.8	64.5	8.8	3.7	1.5	0.7	5.1	0.7	1.7	0.5	100.0 (588)
연령											
24세 이하	15.0	60.6	6.2	2.6	1.6	1.0	7.3	2.1	2.1	1.6	100.0 (193)
25~29세	14.7	68.1	7.2	2.8	0.3	–	2.8	1.3	2.5	0.3	100.0 (320)
30~34세	14.9	62.1	10.0	3.8	1.9	0.8	3.8	1.1	1.6	–	100.0 (369)
35세 이상	14.2	68.5	5.9	0.9	–	0.9	7.3	1.8	0.5	–	100.0 (219)
지역											
특별·광역시	15.6	68.5	4.8	2.4	1.1	0.6	4.1	1.3	1.5	0.2	100.0 (463)
9개 도지역	14.1	62.3	9.7	3.0	0.9	0.5	5.3	1.7	1.9	0.5	100.0 (637)

주: 1) ①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②자녀 양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③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④출산, 양육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불이익)을 받기 때문, ⑤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⑥육아에 대한 경험과 학습 부족으로 육아가 어려워서, ⑦자아성취 시간이 부족해서, ⑧부부만의 시간공유를 위하여, ⑨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⑩기타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10〉 미혼남녀의 미혼부모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계(명)
전체	14.6	42.3	40.0	3.1	100.0 (1,086)
남자	17.9	41.6	38.0	2.4	100.0 (502)
24세 이하	20.2	37.1	39.3	3.4	100.0 (89)
25~29세	23.9	36.8	36.8	2.5	100.0 (163)
30~34세	15.2	48.3	35.8	0.7	100.0 (151)
35세 이상	10.1	43.4	42.4	4.0	100.0 (99)
여자	11.6	43.0	41.6	3.8	100.0 (579)
24세 이하	10.8	35.3	48.0	5.9	100.0 (102)
25~29세	13.5	47.1	37.4	1.9	100.0 (155)
30~34세	12.1	40.8	45.1	1.9	100.0 (206)
35세 이상	8.6	48.3	35.3	7.8	100.0 (11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11〉 미혼남녀의 결혼 후 가사분담에 대한 의향

(단위: %, 명)

구분	부인이 전담	부인이 좀더 많이	균등 분담	남편이 좀더 많이	남편이 전담	계(명)
전체	0.6	23.0	74.9	1.4	0.1	100.0 (1,098)
성 및 연령						
남자	1.2	21.7	75.3	1.6	0.2	100.0 (511)
24세 이하	1.1	18.9	78.9	1.1	–	100.0 (90)
25~29세	–	18.8	79.4	1.2	0.6	100.0 (165)
30~34세	–	25.8	73.5	0.6	–	100.0 (155)
35세 이상	5.0	22.8	68.3	4.0	–	100.0 (101)
여자	0.2	24.3	74.3	1.2	–	100.0 (588)
24세 이하	1.0	19.4	77.7	1.9	–	100.0 (103)
25~29세	–	17.3	82.1	0.6	–	100.0 (156)
30~34세	–	29.9	69.2	0.9	–	100.0 (211)
35세 이상	–	28.0	70.3	1.7	–	100.0 (11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12〉 미혼남녀의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계(명)
전체	0.2	7.1	14.2	46.0	32.5	100.0 (1,093)
성별						
남자	0.2	8.9	16.1	40.6	34.3	100.0 (508)
여자	0.2	5.6	12.5	50.8	30.9	100.0 (585)
연령						
24세 이하	–	5.2	15.2	47.1	32.5	100.0 (191)
25~29세	0.3	7.5	11.3	50.9	29.9	100.0 (318)
30~34세	–	4.1	17.1	44.4	34.4	100.0 (363)
35세 이상	–	12.8	12.8	41.1	33.3	100.0 (219)
지역						
특별·광역시	0.2	5.9	15.1	48.7	30.1	100.0 (458)
9개 도지역	0.2	8.0	13.5	44.2	34.1	100.0 (636)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0.1	7.2	13.9	46.4	32.3	100.0 (690)
임시·일용근로자	–	7.3	11.9	50.3	30.5	100.0 (151)
무직(학생포함)	0.4	6.4	16.3	42.6	34.3	100.0 (25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13〉 저출산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태도(미혼남녀)

(단위: %, 명)

구분	전혀 영향 없다	거의 영향 없다	보통이다	영향 있는 편이다	매우 영향 많다	계(명)
전체	4.8	18.0	28.6	35.5	13.1	100.0 (1,094)
성별						
남자	6.8	16.4	31.1	33.1	12.5	100.0 (511)
여자	3.1	19.4	26.4	37.6	13.6	100.0 (583)
연령						
24세 이하	5.2	20.7	32.6	30.1	11.4	100.0 (193)
25~29세	4.4	19.2	30.8	34.3	11.3	100.0 (318)
30~34세	4.4	14.0	29.9	35.6	16.2	100.0 (365)
35세 이상	5.5	21.2	19.8	41.5	12.0	100.0 (217)
지역						
특별·광역시	4.6	23.1	26.9	34.1	11.4	100.0 (458)
9개 도지역	4.9	14.3	29.9	36.5	14.3	100.0 (635)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4.7	18.2	28.9	34.4	13.8	100.0 (688)
임시일용근로자	2.6	19.0	32.0	36.6	9.8	100.0 (153)
무직(학생포함)	6.7	17.3	25.9	37.3	12.9	100.0 (255)
교육수준						
고졸이하	7.1	18.2	35.1	31.5	8.1	100.0 (308)
대졸이상	3.9	18.0	26.1	36.9	15.0	100.0 (788)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14〉 고령화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태도(미혼남녀)

(단위: %, 명)

구분	전혀 영향없다	거의 영향없다	보통이다	영향있는 편이다	매우 영향많다	계(명)
전체	2.3	9.0	20.9	42.0	25.8	100.0 (1,097)
성별						
남자	3.1	9.0	23.2	38.7	26.0	100.0 (512)
여자	1.5	9.1	18.8	45.0	25.6	100.0 (585)
연령						
24세 이하	4.2	12.0	22.4	40.1	21.4	100.0 (192)
25~29세	1.2	10.9	19.3	42.4	26.2	100.0 (321)
30~34세	2.5	6.8	20.5	41.8	28.4	100.0 (366)
35세 이상	2.3	6.9	22.5	43.6	24.8	100.0 (218)
지역						
특별·광역시	2.4	11.5	22.1	42.5	21.5	100.0 (461)
9개 도지역	2.2	7.1	20.0	41.7	29.0	100.0 (635)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2.0	8.4	19.9	42.5	27.2	100.0 (690)
임시일용근로자	1.3	9.2	24.2	45.8	19.6	100.0 (153)
무직(학생포함)	3.9	10.6	21.2	38.4	25.9	100.0 (255)
교육수준						
고졸이하	4.9	9.4	26.0	39.0	20.8	100.0 (308)
대졸이상	1.3	8.9	18.9	43.2	27.8	100.0 (789)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15〉 미혼남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른다	명칭정도 알고 있다	세부사업까지 알고 있다	계(명)
전체	55.2	41.6	3.2	100.0 (1,100)
성별				
남자	57.2	40.0	2.7	100.0 (512)
여자	53.4	43.0	3.6	100.0 (588)
연령				
24세 이하	69.4	29.0	1.6	100.0 (193)
25~29세	53.3	43.3	3.4	100.0 (321)
30~34세	56.7	40.6	2.7	100.0 (367)
35세 이상	42.9	51.6	5.5	100.0 (219)
지역				
특별·광역시	54.1	43.1	2.8	100.0 (464)
9개 도지역	56.0	40.6	3.5	100.0 (636)
교육수준				
고졸이하	60.2	37.9	1.9	100.0 (309)
대졸이상	53.2	43.1	3.7	100.0 (79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16〉 미혼남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인지경로(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대상자수
전체	11.9	39.0	69.3	5.1	11.0	–	4.5	13.4	(446)
성별									
남자	10.4	39.8	70.1	5.0	8.5	–	7.0	13.9	(201)
여자	13.1	38.4	68.6	5.3	13.1	–	2.5	13.1	(245)
연령									
24세 이하	16.7	37.7	68.5	9.4	7.4	–	7.5	9.4	(54)
25~29세	8.8	43.8	70.8	3.6	13.1	–	2.9	15.3	(137)
30~34세	13.0	37.7	66.2	5.5	13.0	–	2.1	15.2	(146)
35세 이상	11.7	35.5	72.7	3.6	7.3	–	8.2	10.0	(111)
지역									
특별·광역시	14.9	43.8	73.2	4.6	11.3	–	3.1	9.8	(194)
9개 도지역	9.5	35.3	66.7	5.6	10.3	–	5.6	16.3	(252)

주: 1) ①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 지인을 통해서, ②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③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④각종 교육 및 세미나, ⑤공공기관의 홍보물(안내문, 포스터, 현수막 등), ⑥공공기관 주관의 각종 이벤트, ⑦공공기관의 홈페이지, ⑧기타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17〉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적절 대응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거의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계(명)
전체	10.4	39.5	31.5	9.2	1.2	8.3	100.0 (1,100)
성별							
남자	13.1	36.5	28.3	10.4	1.8	10.0	100.0 (512)
여자	8.0	42.2	34.2	8.2	0.7	6.8	100.0 (588)
연령							
24세 이하	8.2	37.6	32.0	8.2	2.1	11.9	100.0 (194)
25~29세	10.3	36.6	33.8	10.6	1.3	7.5	100.0 (320)
30~34세	10.4	43.4	30.3	8.5	1.4	6.0	100.0 (366)
35세 이상	11.8	39.1	30.0	9.1		10.0	100.0 (220)
지역							
특별·광역시	12.5	45.7	26.5	7.1	0.6	7.5	100.0 (464)
9개 도지역	8.8	35.1	35.2	10.5	1.6	8.8	100.0 (636)
교육수준							
고졸 이하	11.6	35.5	31.0	8.1	1.0	12.9	100.0 (310)
대졸 이상	9.9	41.1	31.6	9.6	1.3	6.5	100.0 (79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18〉 미혼남녀의 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찬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안함	대체로 찬성안함	보통 이다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잘 모르겠다	계(명)	찬성
전체	1.0	10.5	28.5	38.0	16.7	5.4	100.0 (1,100)	54.7
성별								
남자	1.6	13.1	26.5	39.0	13.5	6.4	100.0 (513)	52.4
여자	0.5	8.2	30.2	37.2	19.5	4.4	100.0 (586)	56.7
연령								
24세 이하	1.0	6.7	26.9	38.3	20.2	6.7	100.0 (193)	58.5
25~29세	0.6	10.0	31.2	36.1	16.5	5.6	100.0 (321)	52.6
30~34세	0.5	13.1	28.1	39.8	15.5	3.0	100.0 (367)	55.3
35세 이상	2.3	10.0	26.5	37.9	15.5	7.8	100.0 (219)	53.4
지역								
특별·광역시	1.3	12.3	29.1	33.8	16.8	6.7	100.0 (464)	50.6
9개 도지역	0.8	9.1	28.1	41.0	16.5	4.4	100.0 (636)	57.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19〉 미혼남녀 정부 고령화 대책에 대한 찬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 안함	대체로 찬성 안함	보통 이다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잘 모르겠다	계(명)	찬성
전체	0.7	7.4	32.6	39.3	16.6	3.5	100.0 (1,098)	55.8
성별								
남자	1.0	10.0	31.3	42.0	12.9	2.9	100.0 (512)	54.9
여자	0.5	5.1	33.8	36.9	19.8	3.9	100.0 (586)	56.7
연령								
24세 이하		5.7	31.6	40.9	17.6	4.1	100.0 (193)	58.5
25~29세	0.9	5.9	36.8	39.3	14.3	2.8	100.0 (321)	53.6
30~34세	1.1	11.4	34.6	33.0	17.4	2.5	100.0 (367)	50.4
35세 이상	0.5	4.1	23.5	48.8	17.5	5.5	100.0 (217)	66.4
지역								
특별·광역시	0.9	5.6	31.3	40.7	15.7	5.8	100.0 (464)	56.5
9개 도지역	0.6	8.7	33.4	38.3	17.3	1.7	100.0 (635)	55.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20〉 미혼남녀가 느끼는 결혼·출산·양육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계(명)
전체	5.5	26.0	31.3	32.7	1.9	2.6	100.0 (1,099)
성별							
남자	7.2	24.7	29.0	34.1	1.8	3.3	100.0 (511)
여자	3.9	27.2	33.3	31.5	2.0	2.0	100.0 (588)
연령							
24세 이하	5.2	26.3	33.0	29.4	2.1	4.1	100.0 (194)
25~29세	5.6	28.0	28.7	33.3	2.2	2.2	100.0 (321)
30~34세	5.2	27.5	31.6	32.2	1.6	1.9	100.0 (367)
35세 이상	5.9	20.1	32.9	35.2	2.3	3.7	100.0 (219)
지역							
특별·광역시	5.2	30.9	31.7	26.8	2.4	3.0	100.0 (463)
9개 도지역	5.7	22.5	31.0	36.9	1.6	2.4	100.0 (636)
교육수준							
고졸이하	5.2	25.2	31.1	32.7	1.3	4.5	100.0 (309)
대졸이상	5.6	26.3	31.4	32.7	2.2	1.9	100.0 (79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21〉 기혼부인의 결혼연령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더 낮아져야 한다	적당하다	더 높아져야 한다	계(명)
전체	21.1	72.1	6.7	100.0 (1,052)
연령				
30세 미만	14.2	76.6	9.2	100.0 (141)
30～34세	17.9	70.5	11.6	100.0 (173)
35～39세	17.9	75.6	6.5	100.0 (279)
40～44세	24.0	71.2	4.7	100.0 (233)
45세 이상	28.8	67.3	4.0	100.0 (226)
지역				
특별·광역시	22.0	72.5	5.6	100.0 (610)
9개 도지역	20.0	71.6	8.3	100.0 (44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6	76.5	6.9	100.0 (434)
외벌이	24.3	69.0	6.6	100.0 (604)
결혼기간				
5년 미만	12.9	75.5	11.5	100.0 (139)
5~9년	18.6	71.6	9.8	100.0 (183)
10~14년	19.9	73.0	7.1	100.0 (296)
15~19년	19.7	76.6	3.7	100.0 (218)
20년 이상	31.9	64.4	3.7	100.0 (216)
자녀수				
1명 이하	14.4	76.6	8.9	100.0 (291)
2명	23.5	70.1	6.5	100.0 (635)
3명 이상	24.4	71.7	3.9	100.0 (12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22〉 기혼부인의 결혼연령이 낮아져야 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명)
전체	9.0	6.3	75.1	1.4	0.5	7.7	100.0 (221)
연령							
30세 미만	–	10.0	90.0	–	–	–	100.0 (20)
30~34세	9.7	6.5	67.7	6.5		9.7	100.0 (31)
35~39세	10.4	8.3	75.0	–	2.1	4.2	100.0 (48)
40~44세	10.5	3.5	71.9	–	–	14.0	100.0 (57)
45세 이상	9.2	6.2	76.9	1.5	–	6.2	100.0 (65)
소득							
300만원 미만	10.1	5.1	70.9	3.8	0.0	10.1	100.0 (79)
300만원 이상	8.5	5.4	79.8	0.0	0.8	5.4	100.0 (129)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1	4.2	80.6	–	–	4.2	100.0 (72)
외벌이	8.3	6.3	72.9	2.1	0.7	9.7	100.0 (144)
결혼기간							
5년 미만	5.6	5.6	77.8	–	–	11.1	100.0 (18)
5~9년	6.1	9.1	75.8	3.0	3.0	3.0	100.0 (33)
10~14년	8.6	8.6	75.9	1.7	–	5.2	100.0 (58)
15~19년	13.6	2.3	72.7	–	–	11.4	100.0 (44)
20년 이상	8.8	5.9	76.5	1.5	–	7.4	100.0 (68)
자녀수							
1명 이하	2.4	4.8	85.7	2.4	–	4.8	100.0 (42)
2명	10.2	4.8	73.5	1.4	0.7	9.5	100.0 (147)
3명 이상	10.0	13.3	73.3	–	–	3.3	100.0 (30)

주: 1) ①자녀 출산과 육아가 쉽기 때문에, ②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서, ③경제적 안정을 빨리 이룰 수 있으므로, ④늦게 할수록 적당한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⑤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성인으로 살 수 있으므로, ⑥중년이후 양육부담을 덜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므로, ⑦기타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23〉 기혼부인의 만혼의 이유에 대한 견해(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대상자 수
전체	49.8	15.6	44.5	39.5	19.3	13.4	7.0	2.6	(1,046)
연령									
30세 미만	51.1	17.1	38.6	40.3	14.4	15.0	9.3	1.4	(140)
30~34세	55.2	14.5	37.2	43.0	20.9	11.6	7.6	2.9	(172)
35~39세	45.7	17.1	44.4	37.3	22.5	14.5	6.9	3.6	(275)
40~44세	45.7	18.1	47.2	41.8	20.3	9.9	6.0	3.4	(233)
45세 이상	54.0	11.1	50.9	36.4	16.4	15.9	6.2	0.9	(226)
결혼기간									
5년 미만	57.2	21.9	37.0	36.2	21.2	11.6	9.5	1.4	(138)
5~9년	47.8	13.7	39.0	41.8	19.2	12.6	4.9	4.4	(182)
10~14년	45.9	16.1	45.5	39.0	19.5	15.1	7.2	3.1	(292)
15~19년	47.7	16.2	44.2	43.5	20.8	12.4	6.9	2.3	(216)
20년 이상	54.0	11.6	53.0	36.1	16.3	13.9	6.5	1.9	(2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9.9	16.0	41.8	40.8	18.8	13.7	9.3	2.6	(431)
외벌이	49.2	15.5	46.7	38.5	20.2	12.7	5.0	2.5	(599)

주: 1) ①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②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③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④결혼 후의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⑤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가치관의 변화), ⑥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⑦교육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⑧기타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24〉 기혼여자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하지 않는 게 낫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편이 좋다	반드시 해야한다	계(명)
전체	3.7	55.6	28.1	12.6	100.0 (1,054)
연령					
30세 미만	1.4	49.6	31.2	17.7	100.0 (141)
30~34세	2.9	53.2	32.4	11.6	100.0 (173)
35~39세	4.3	61.3	25.8	8.6	100.0 (279)
40~44세	5.6	57.3	24.4	12.8	100.0 (234)
45세 이상	3.1	52.4	30.0	14.5	100.0 (227)
결혼기간					
5년 미만	0.7	48.2	34.5	16.5	100.0 (139)
5~9년	2.7	56.8	30.1	10.4	100.0 (183)
10~14년	3.7	56.8	28.0	11.5	100.0 (296)
15~19년	5.5	60.8	24.0	9.7	100.0 (217)
20년 이상	4.2	53.3	26.2	16.4	100.0 (214)
자녀수					
1명 이하	2.4	55.1	29.8	12.7	100.0 (292)
2명	3.6	56.5	27.4	12.4	100.0 (635)
3명 이상	7.1	52.0	27.6	13.4	100.0 (12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25〉 기혼부인이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단위: %, 명)

구분	남자의 결혼적령기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3세	34세 이상	계(명)	평균(세)
전체	2.2	12.1	57.5	19.9	8.3	100.0 (1,050)	30.8
연령							
30세 미만	0.7	5.7	60.0	24.3	9.3	100.0 (140)	31.1
30～34세	2.3	9.2	47.7	26.4	14.4	100.0 (174)	31.3
35～39세	2.5	9.0	55.8	21.9	10.8	100.0 (278)	31.1
40～44세	3.5	13.9	58.9	19.0	4.8	100.0 (231)	30.5
45세 이상	1.3	20.3	64.3	10.6	3.5	100.0 (227)	3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0.9	11.3	52.9	25.9	9.0	100.0 (433)	31.0
외벌이	2.7	12.6	60.4	16.1	8.2	100.0 (601)	30.7
구분	여자의 결혼적령기						
	25세 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세 이상	계(명)	평균(세)
전체	5.7	22.5	45.6	21.6	4.6	100.0 (1,052)	28.2
연령							
30세 미만	3.5	17.7	54.6	14.9	9.2	100.0 (141)	28.4
30～34세	5.2	19.7	39.9	27.7	7.5	100.0 (173)	28.6
35～39세	6.8	19.0	45.2	23.7	5.4	100.0 (279)	28.4
40～44세	5.6	26.3	44.8	22.4	0.9	100.0 (232)	28.0
45세 이상	6.2	28.2	45.8	17.6	2.2	100.0 (227)	27.9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	21.0	46.0	22.4	6.5	100.0 (433)	28.5
외벌이	6.3	23.6	45.5	21.1	3.5	100.0 (602)	28.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26〉 기혼부인의 '결혼한 부부는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계(명)
전체	0.6	15.2	53.5	30.7	100.0 (1,031)
연령					
30세 미만	2.2	17.3	50.4	30.2	100.0 (139)
30~34세	0.6	14.2	55.0	30.2	100.0 (169)
35~39세	–	13.9	56.9	29.2	100.0 (274)
40~44세	–	16.6	47.2	36.2	100.0 (229)
45세 이상	0.5	15.0	57.3	27.3	100.0 (2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0.5	16.9	50.5	32.2	100.0 (426)
외벌이	0.5	13.6	55.8	30.1	100.0 (588)
결혼기간					
5년 미만	1.5	21.3	47.8	29.4	100.0 (136)
5~9년	1.1	13.0	55.4	30.5	100.0 (177)
10~14년	–	11.8	53.3	34.9	100.0 (289)
15~19년	0.5	15.8	52.6	31.2	100.0 (215)
20년 이상		17.6	57.6	24.8	100.0 (210)
자녀수					
1명 이하	1.4	21.1	49.5	28.1	100.0 (285)
2명	0.2	13.5	55.8	30.5	100.0 (620)
3명 이상	0.8	10.4	51.2	37.6	100.0 (12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27〉 기혼부인의 이상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1명 이하	2명	3명 이상	계(명)	평균
전체	14.1	63.5	22.4	100.0 (1,053)	2.1
연령					
30세 미만	15.0	70.0	15.0	100.0 (140)	2.0
30～34세	16.8	67.1	16.2	100.0 (173)	2.0
35～39세	12.9	67.1	20.0	100.0 (280)	2.1
40～44세	14.7	58.2	27.2	100.0 (232)	2.2
45세 이상	12.4	57.3	30.2	100.0 (225)	2.2
결혼기간					
5년 미만	22.5	64.5	13.0	100.0 (138)	1.9
5～9년	8.7	72.1	19.1	100.0 (183)	2.1
10～14년	14.5	63.6	21.9	100.0 (297)	2.1
15～19년	11.5	64.1	24.4	100.0 (217)	2.2
20년 이상	15.4	54.7	29.9	100.0 (214)	2.2
자녀수					
1명 이하	23.4	61.4	15.2	100.0 (290)	1.9
2명	10.1	66.0	23.9	100.0 (635)	2.2
3명 이상	12.8	56.0	31.2	100.0 (125)	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4	65.0	20.6	100.0 (432)	2.1
외벌이	13.6	62.8	23.6	100.0 (602)	2.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28〉 기혼부인이 생각하는 자녀를 두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명)
전체	21.0	5.5	56.0	11.9	2.2	0.3	2.8	0.4	100.0 (1,052)
연령									
30세 미만	20.1	5.0	61.2	7.9	0.7	–	2.9	2.2	100.0 (141)
30~34세	21.5	5.2	52.3	15.7	2.3	–	2.9	–	100.0 (173)
35~39세	21.2	6.1	59.4	9.4	1.4	0.4	2.2	–	100.0 (280)
40~44세	23.7	4.7	50.9	15.1	2.6	0.4	2.6	–	100.0 (233)
45세 이상	18.1	5.9	56.6	11.3	3.6	0.5	3.6	0.5	100.0 (225)
자녀수									
1명 이하	25.0	6.7	51.8	9.5	2.5	–	3.5	1.1	100.0 (290)
2명	19.9	4.9	56.8	13.1	2.2	0.3	2.5	0.2	100.0 (632)
3명 이상	16.7	4.8	62.7	11.1	1.6	0.8	2.4	–	100.0 (126)

주: 1) ①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 ②결혼을 하면 당연한 일이므로, ③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④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주므로, ⑤대를 잇기 위해, ⑥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⑦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⑧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29〉 기혼부인의 저출산의 주요 이유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명)
전체	9.2	74.6	4.4	2.7	0.5	0.3	4.6	1.8	1.2	0.7	100.0 (1,058)
연령											
30세 미만	5.7	76.4	6.4	4.3	–	–	5.0	2.1	–	–	100.0 (140)
30~34세	12.0	74.3	6.3	2.9	–	0.6	2.3	1.1	0.6	–	100.0 (175)
35~39세	6.4	80.4	3.9	2.8	0.7	0.4	3.6	0.4	0.7	0.7	100.0 (281)
40~44세	8.1	74.8	3.8	1.7	0.9		4.3	3.8	2.1	0.4	100.0 (234)
45세 이상	13.6	66.2	3.1	2.6	0.4	0.4	7.9	1.8	2.2	1.8	100.0 (228)
소득											
300만 미만	10.0	77.9	2.8	3.4	0.3	0.3	3.7	0.6	0.6	0.3	100.0 (321)
300만 이상	8.8	73.9	5.3	2.3	0.4	0.3	4.9	1.9	1.4	0.7	100.0 (694)
자녀수											
1명 이하	9.2	73.3	7.2	3.4	–	–	3.8	1.4	1.0	0.7	100.0 (292)
2명	9.3	75.7	3.3	2.7	0.5	0.5	4.7	1.7	1.3	0.3	100.0 (635)
3명 이상	8.7	74.8	3.9	1.6	0.8	–	5.5	2.4	0.8	1.6	100.0 (1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9.4	73.0	5.8	2.3	0.5	–	5.3	2.1	0.9	0.7	100.0 (434)
외벌이	8.3	77.1	3.6	3.0	0.3	0.5	4.1	1.5	1.0	0.5	100.0 (603)

주: 1) ①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②자녀 양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③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④출산, 양육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불이익)을 받기 때문, ⑤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⑥육아에 대한 경험과 학습 부족으로 육아가 어려워서, ⑦자아성취 시간이 부족해서, ⑧부부만의 시간공유를 위하여, ⑨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⑩기타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30〉 기혼부인의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미혼부모)'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계(명)
전체	20.8	46.6	31.3	1.2	100.0 (1,041)
연령					
30세 미만	20.7	36.4	40.0	2.9	100.0 (140)
30~34세	16.4	48.5	33.9	1.2	100.0 (171)
35~39세	20.6	46.3	31.6	1.5	100.0 (272)
40~44세	25.0	42.2	31.9	0.9	100.0 (232)
45세 이상	20.4	56.2	23.0	0.4	100.0 (226)
지역					
특별·광역시	18.6	47.1	32.7	1.7	100.0 (603)
9개 도지역	24.0	45.8	29.7	0.5	100.0 (43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31〉 기혼부인의 가사 및 육아 분담

(단위: %, 명)

구분	부인이 전담	부인이 좀더 많이	균등 분담	남편이 좀더 많이	남편이 전담	계(명)
전체	25.1	43.2	29.3	1.2	1.1	100.0 (1,046)
연령						
30세 미만	13.6	33.6	47.1	3.6	2.1	100.0 (140)
30～34세	22.5	41.6	32.4	1.7	1.7	100.0 (173)
35～39세	26.0	48.7	23.5	0.4	1.4	100.0 (277)
40～44세	29.2	44.2	24.5	1.3	0.9	100.0 (233)
45세 이상	29.1	42.6	27.8	0.4	–	100.0 (223)
자녀수						
1명 이하	17.5	38.8	38.5	3.1	2.1	100.0 (286)
2명	25.9	47.0	25.6	0.6	0.9	100.0 (634)
3명 이상	38.9	34.1	26.2	0.8	–	100.0 (1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4	43.1	35.0	2.8	2.8	100.0 (434)
외벌이	30.8	43.9	24.9	0.3	–	100.0 (6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32〉 기혼부인의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계(명)
전체	0.5	3.4	10.8	41.4	43.9	100.0 (1,049)
연령						
30세 미만	–	7.2	11.5	43.9	37.4	100.0 (139)
30～34세	0.6	2.9	16.9	37.8	41.9	100.0 (172)
35～39세	1.1	5.0	10.8	44.8	38.4	100.0 (279)
40～44세		0.9	10.3	41.4	47.4	100.0 (232)
45세 이상	0.4	2.6	6.6	37.9	52.4	100.0 (227)
지역						
특별·광역시	0.3	4.1	11.7	38.7	45.2	100.0 (608)
9개 도지역	0.7	2.5	9.5	45.1	42.2	100.0 (44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33〉 기혼부인의 저출산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단위: %, 명)

구분	전혀 영향없다	거의 영향없다	보통이다	영향있는 편이다	매우 영향많다	계(명)
전체	4.1	18.0	23.3	38.8	15.8	100.0 (1,045)
연령						
30세 미만	6.6	19.0	26.3	35.8	12.4	100.0 (137)
30～34세	3.5	20.9	32.0	32.6	11.0	100.0 (172)
35～39세	5.0	17.5	26.8	33.2	17.5	100.0 (280)
40～44세	2.6	17.2	15.9	46.4	18.0	100.0 (233)
45세 이상	3.6	16.6	17.9	44.4	17.5	100.0 (223)
지역						
특별·광역시	4.3	18.9	22.4	36.7	17.7	100.0 (603)
9개 도지역	3.9	16.8	24.5	41.7	13.2	100.0 (441)
결혼기간						
5년 미만	5.8	21.2	34.3	29.9	8.8	100.0 (137)
5~9년	5.0	17.1	19.3	42.5	16.0	100.0 (181)
10~14년	3.0	18.2	29.7	33.4	15.5	100.0 (296)
15~19년	5.5	18.3	16.5	40.8	18.8	100.0 (218)
20년 이상	2.8	16.0	17.5	46.2	17.5	100.0 (212)
자녀수						
1명 이하	5.9	17.4	25.0	36.5	15.3	100.0 (288)
2명	3.6	18.5	22.8	40.1	14.9	100.0 (631)
3명 이상	3.2	17.5	20.6	37.3	21.4	100.0 (1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5.3	15.8	21.6	39.2	18.1	100.0 (431)
외벌이	3.5	19.5	24.7	38.5	13.8	100.0 (60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34〉 기혼부인의 고령화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단위: %, 명)

구분	전혀 영향없다	거의 영향없다	보통이다	영향있는 편이다	매우 영향많다	계(명)
전체	1.0	7.4	15.8	42.7	32.9	100.0 (1,047)
연령						
30세 미만	–	12.9	21.4	42.1	23.6	100.0 (140)
30~34세	0.6	7.0	20.5	43.3	28.7	100.0 (171)
35~39세	1.8	6.5	14.7	39.8	37.3	100.0 (279)
40~44세	0.4	6.5	13.4	42.7	37.1	100.0 (232)
45세 이상	1.8	6.7	12.9	46.7	32.0	100.0 (225)
지역						
특별·광역시	1.0	7.1	15.4	40.2	36.3	100.0 (609)
9개 도지역	1.1	8.0	16.4	46.2	28.2	100.0 (439)
자녀수						
1명 이하	0.3	8.9	17.5	44.0	29.2	100.0 (291)
2명	1.4	6.8	15.3	41.5	35.0	100.0 (634)
3명 이상	1.6	7.3	14.5	46.0	30.6	100.0 (124)
맞벌이 여부						
맞벌이	0.7	7.4	15.4	43.3	33.2	100.0 (434)
외벌이	1.5	7.3	16.1	42.4	32.6	100.0 (6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35〉 기혼부인의 특성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른다	명칭정도 알고있음	세부사업까지 알고 있다	계(명)
전체	41.0	56.4	2.7	100.0 (1,052)
연령				
30세 미만	44.7	54.6	0.7	100.0 (141)
30～34세	48.6	50.9	0.6	100.0 (173)
35～39세	46.2	52.0	1.8	100.0 (279)
40～44세	33.5	61.8	4.7	100.0 (233)
45세 이상	34.1	61.5	4.4	100.0 (226)
자녀수				
1명 이하	43.2	55.5	1.4	100.0 (292)
2명	41.4	55.7	2.8	100.0 (635)
3명 이상	34.1	61.1	4.8	100.0 (1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2	58.5	3.2	100.0 (434)
외벌이	43.0	54.6	2.3	100.0 (60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36〉 기혼부인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경로(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대상자 수
전체	13.6	50.0	78.8	2.7	7.1	0.5	3.7	6.9	(590)
연령									
30세 미만	14.3	33.8	71.4	1.3	7.7	2.6	10.4	10.3	(77)
30~34세	12.5	43.2	76.1	3.4	6.8	-	4.5	12.4	(88)
35~39세	14.1	48.6	78.3	4.2	7.0	-	2.8	7.7	(142)
40~44세	16.0	54.2	78.3	2.8	9.1	0.7	3.5	6.3	(144)
45세 이상	10.8	60.4	85.6	1.4	5.0	-	0.7	1.4	(139)
지역									
특별·광역시	13.8	50.8	80.1	2.1	5.7	0.3	4.2	7.2	(333)
9개 도지역	13.6	48.8	77.0	3.5	8.6	0.8	3.1	6.2	(257)

주: ①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 지인을 통해서, ②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③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④각종 교육 및 세미나, ⑤공공기관의 홍보물(안내문, 포스터, 현수막 등), ⑥공공기관 주관의 각종 이벤트, ⑦공공기관의 홈페이지, ⑧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37〉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기혼부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계(명)
전체	15.9	44.8	24.6	8.9	1.5	4.2	100.0 (1,051)
연령							
30세 미만	14.3	48.6	25.7	7.1	-	4.3	100.0 (140)
30~34세	22.1	43.0	22.1	7.6	0.6	4.7	100.0 (172)
35~39세	16.8	48.0	22.9	7.5	1.1	3.6	100.0 (279)
40~44세	15.0	41.6	28.8	7.7	2.6	4.3	100.0 (233)
45세 이상	11.9	43.2	23.8	14.1	2.6	4.4	100.0 (227)
자녀수							
1명 이하	20.3	43.0	25.4	5.8	1.4	4.1	100.0 (291)
2명	14.6	44.7	24.4	10.4	1.7	4.1	100.0 (635)
3명 이상	11.9	48.4	25.4	7.9	0.8	5.6	100.0 (1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6	43.4	25.7	11.0	2.3	4.8	100.0 (435)
외벌이	18.6	45.1	23.9	7.6	1.0	3.8	100.0 (60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38〉 기혼부인의 고령화 대책에 대한 찬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안함	대체로 찬성안함	보통 이다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잘 모르겠다	계(명)
전체	0.4	4.2	22.1	41.3	26.5	5.5	100.0 (1,052)
연령							
30세 미만	–	2.8	30.5	39.0	20.6	7.1	100.0 (141)
30~34세	0.6	8.1	15.1	41.3	28.5	6.4	100.0 (172)
35~39세	0.4	2.9	23.6	40.4	25.4	7.5	100.0 (280)
40~44세	0.4	3.9	21.6	44.4	26.3	3.4	100.0 (232)
45세 이상	0.4	4.0	20.7	41.0	30.4	3.5	100.0 (227)
지역							
특별·광역시	0.7	4.6	22.9	39.8	24.9	7.2	100.0 (611)
9개 도지역	0.2	4.1	20.8	43.3	28.7	2.9	100.0 (44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39〉 결혼·출산·양육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에 대한 기혼부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계(명)
전체	5.9	22.8	31.1	35.0	2.0	3.2	100.0 (1,054)
연령							
30세 미만	5.7	30.7	22.1	34.3	2.9	4.3	100.0 (140)
30~34세	7.5	20.7	37.4	32.2	1.1	1.1	100.0 (174)
35~39세	6.4	21.4	34.6	34.6	1.1	1.8	100.0 (280)
40~44세	4.3	24.1	30.6	35.3	1.7	3.9	100.0 (232)
45세 이상	5.7	19.7	28.1	37.7	3.5	5.3	100.0 (228)
지역							
특별·광역시	6.4	23.4	31.1	34.1	1.6	3.3	100.0 (610)
9개 도지역	5.2	21.8	31.1	36.3	2.5	3.2	100.0 (444)
자녀수							
1명 이하	7.8	27.6	28.7	30.7	3.1	2.0	100.0 (293)
2명	4.6	20.6	33.2	36.2	1.4	3.9	100.0 (635)
3명 이상	7.9	22.2	26.2	38.9	2.4	2.4	100.0 (1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	24.6	29.7	38.6	1.6	1.4	100.0 (435)
외벌이	7.0	21.2	32.5	32.9	2.0	4.5	100.0 (60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40〉 고령자의 만혼의 이유에 대한 견해(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대상자 수
전체	56.0	18.4	41.9	28.8	16.0	17.6	6.9	1.1	(1,010)
성별									
남자	63.8	21.7	38.5	22.5	17.4	13.9	6.4	1.5	(453)
여자	49.6	15.6	44.6	34.0	14.7	20.7	7.4	0.7	(556)
지역									
특별·광역시	53.6	17.3	44.5	29.7	14.8	18.4	7.6	0.4	(445)
9개 도지역	57.9	19.1	39.8	28.2	16.8	17.2	6.4	1.6	(564)
연령									
50~54세	52.9	18.8	44.6	34.5	13.9	13.0	9.5	1.3	(223)
55~59세	63.5	15.6	44.7	29.2	13.2	14.6	8.3	–	(219)
60~64세	49.3	17.3	36.7	33.3	19.3	18.7	6.0	1.3	(150)
65~69세	58.2	22.9	37.1	26.5	18.2	20.0	3.6	1.8	(170)
70세 이상	54.8	17.8	43.3	22.3	16.6	22.3	5.7	1.2	(248)

주: 1) ①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②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③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④결혼 후의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⑤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가치관의 변화), ⑥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⑦교육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⑧기타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41〉 고령자의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계(명)
전체	0.2	6.6	47.7	45.5	100.0 (1,016)
성별					
남자	0.4	4.8	45.1	49.7	100.0 (459)
여자	–	8.1	49.9	42.0	100.0 (557)
지역					
특별·광역시	0.2	5.1	52.4	42.2	100.0 (450)
9개 도지역	0.2	7.8	44.0	48.1	100.0 (566)
연령					
50~54세	0.9	9.0	55.0	35.1	100.0 (222)
55~59세	–	6.5	41.9	51.6	100.0 (217)
60~64세	–	9.1	50.6	40.3	100.0 (154)
65~69세	–	4.7	52.4	42.9	100.0 (170)
70세 이상	–	4.4	41.4	54.2	100.0 (251)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	0.5	9.6	46.0	43.9	100.0 (374)
안한다	–	4.8	48.8	46.4	100.0 (642)
자녀수					
1명이하	–	8.7	46.1	45.2	100.0 (115)
2명	0.5	8.0	49.6	41.9	100.0 (389)
3명이상	–	5.1	46.7	48.2	100.0 (512)
가족형태					
독거	–	6.4	40.4	53.2	100.0 (94)
부부끼리	–	5.1	46.7	48.2	100.0 (392)
자녀와 함께	0.4	7.3	50.4	41.8	100.0 (490)
기타	–	12.2	41.5	46.3	100.0 (4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42〉 고령자가 생각하는 자녀를 두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명)
전체	9.4	13.7	36.3	9.0	20.2	1.6	9.7	0.1	100.0 (1,019)
성별									
남자	7.6	14.8	35.7	7.2	25.3	2.2	7.2	–	100.0 (459)
여자	10.9	12.7	36.7	10.6	15.9	1.1	11.8	0.2	100.0 (558)
연령									
50~54세	8.9	12.9	45.5	14.3	11.2	–	7.1	–	100.0 (224)
55~59세	11.1	11.1	42.1	9.3	16.7	0.9	8.8	–	100.0 (216)
60~64세	14.7	12.8	35.9	9.6	14.1	1.9	10.9	–	100.0 (156)
65~69세	8.1	14.5	29.1	8.7	26.2	3.5	9.3	0.6	100.0 (172)
70세 이상	6.0	16.3	27.9	4.0	30.7	2.4	12.7	–	100.0 (251)
가족형태									
독거	8.6	11.8	33.3	3.2	24.7	2.2	16.1	–	100.0 (93)
부부끼리	11.0	13.3	32.1	9.2	21.9	2.0	10.2	0.3	100.0 (392)
자녀와 함께	8.3	14.6	40.2	10.0	17.3	1.2	8.3	–	100.0 (492)
기타	12.2	7.3	34.1	9.8	26.8	–	9.8	–	100.0 (41)

주: 1) ①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 ②결혼을 하면 당연한 일이므로, ③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④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주므로, ⑤대를 잇기 위해, ⑥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⑦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⑧기타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43〉 고령자의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계(명)
전체	0.6	3.5	7.5	29.5	58.8	100.0 (1,020)
성별						
남자	1.1	3.7	7.6	28.3	59.3	100.0 (459)
여자	0.2	3.4	7.5	30.5	58.5	100.0 (561)
지역						
7개 특별·광역시	0.7	3.3	6.0	29.0	61.1	100.0 (452)
9개 도지역	0.5	3.9	8.8	29.9	56.9	100.0 (568)
연령						
50～54세	–	2.2	10.7	34.4	52.7	100.0 (224)
55～59세	0.5	4.1	7.3	31.5	56.6	100.0 (219)
60～64세	1.3	3.3	10.5	27.5	57.5	100.0 (153)
65～69세	1.2	5.2	4.1	26.7	62.8	100.0 (172)
70세 이상	0.4	3.2	5.2	27.0	64.3	100.0 (252)
가족형태						
독거	–	6.4	6.4	28.7	58.5	100.0 (94)
부부끼리	0.8	4.3	7.1	26.1	61.7	100.0 (394)
자녀와 함께	0.6	2.2	8.6	32.8	55.8	100.0 (491)
기타	–	5.0	2.5	25.0	67.5	100.0 (40)
정책수혜 여부						
수혜	0.6	5.2	6.5	33.5	54.2	100.0 (155)
비수혜	0.6	3.2	7.6	28.8	59.7	100.0 (86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44〉 고령자의 저출산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단위: %, 명)

구분	전혀 영향없다	거의 영향없다	보통이다	영향있는 편이다	매우 영향많다	계(명)
전체	5.7	17.7	17.0	40.2	19.2	100.0 (1,009)
성별						
남자	6.3	17.7	16.8	39.6	19.5	100.0 (457)
여자	5.3	17.8	17.2	40.8	19.0	100.0 (552)
지역						
특별·광역시	6.3	19.6	15.4	40.2	18.5	100.0 (448)
9개 도지역	5.3	16.0	18.5	40.3	19.8	100.0 (561)
연령						
50~54세	3.1	17.9	19.3	38.1	21.5	100.0 (223)
55~59세	6.9	17.0	13.8	45.9	16.5	100.0 (218)
60~64세	4.6	17.9	19.2	41.7	16.6	100.0 (151)
65~69세	6.5	16.7	18.5	38.7	19.6	100.0 (168)
70세 이상	6.9	18.6	16.2	37.2	21.1	100.0 (24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45〉 고령자의 고령화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단위: %, 명)

구분	전혀 영향없다	거의 영향없다	보통이다	영향있는 편이다	매우 영향많다	계(명)
전체	3.1	8.4	15.4	39.3	33.8	100.0 (1,014)
성별						
남자	4.2	9.6	16.4	39.6	30.2	100.0 (457)
여자	2.2	7.4	14.5	39.1	36.8	100.0 (557)
지역						
특별·광역시	3.4	8.9	14.1	40.0	33.6	100.0 (447)
9개 도지역	2.8	7.9	16.4	38.8	34.0	100.0 (567)
연령						
50～54세	0.4	8.0	16.5	40.6	34.4	100.0 (224)
55～59세	3.2	8.6	15.5	42.3	30.5	100.0 (220)
60～64세	4.6	6.5	17.6	38.6	32.7	100.0 (153)
65～69세	3.5	7.1	11.8	41.2	36.5	100.0 (170)
70세 이상	4.0	10.5	15.7	34.7	35.1	100.0 (248)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소계)	2.4	10.7	16.8	38.2	31.8	100.0 (374)
자영업	2.5	9.2	16.0	38.0	34.4	100.0 (163)
고용인	1.4	13.0	15.8	40.4	29.5	100.0 (146)
기타	4.6	9.2	23.1	32.3	30.8	100.0 (65)
안한다	3.4	7.0	14.7	39.9	34.9	100.0 (641)
가족형태						
독거	5.4	8.6	15.1	38.7	32.3	100.0 (93)
부부끼리	3.6	8.5	14.9	40.6	32.4	100.0 (389)
자녀와 함께	2.2	8.3	16.5	37.8	35.2	100.0 (492)
기타	2.5	7.5	7.5	50.0	32.5	100.0 (40)
정책수혜 여부						
수혜	4.6	8.6	12.5	41.4	32.9	100.0 (152)
비수혜	2.8	8.2	16.0	39.0	34.0	100.0 (86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46〉 고령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른다	명칭정도	세부사업까지 알고 있다	계(명)
전체	41.9	55.0	3.0	100.0 (1,021)
성별				
남자	41.3	56.3	2.4	100.0 (460)
여자	42.4	54.0	3.6	100.0 (561)
연령				
50～54세	35.7	61.6	2.7	100.0 (224)
55～59세	34.7	61.6	3.7	100.0 (219)
60～64세	38.3	59.1	2.6	100.0 (154)
65～69세	42.7	56.1	1.2	100.0 (171)
70세 이상	55.3	40.3	4.3	100.0 (253)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	38.0	58.8	3.2	100.0 (376)
자영업	37.4	60.1	2.5	100.0 (163)
고용인	33.6	61.0	5.5	100.0 (146)
기타	50.8	49.2	–	100.0 (65)
안한다	44.2	52.9	2.9	100.0 (645)
자녀수				
1명이하	35.9	60.7	3.4	100.0 (117)
2명	39.3	58.6	2.1	100.0 (389)
3명이상	45.2	51.1	3.7	100.0 (515)
가족형태				
독거	52.1	46.8	1.1	100.0 (94)
부부끼리	41.3	55.9	2.8	100.0 (395)
자녀와 함께	41.4	55.6	3.0	100.0 (493)
기타	31.7	58.5	9.8	100.0 (41)
정책수혜 여부				
수혜	58.7	38.1	3.2	100.0 (155)
비수혜	39.0	58.0	3.0	100.0 (86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47〉 고령자의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계(명)
전체	7.4	28.2	26.3	23.8	6.7	7.5	100.0 (1,021)
성별							
남자	11.5	32.5	22.9	20.7	7.0	5.4	100.0 (459)
여자	4.1	24.7	29.2	26.3	6.4	9.3	100.0 (562)
지역							
특별·광역시	8.0	30.8	25.3	22.4	5.3	8.2	100.0 (451)
9개 도지역	7.0	26.1	27.4	24.7	7.7	7.0	100.0 (570)
연령							
50~54세	7.1	38.8	26.3	19.6	2.2	5.8	100.0 (224)
55~59세	6.8	35.2	21.5	23.7	5.0	7.8	100.0 (219)
60~64세	7.8	22.7	31.2	24.0	6.5	7.8	100.0 (154)
65~69세	9.4	23.4	28.7	22.8	9.4	6.4	100.0 (171)
70세 이상	6.7	19.0	26.2	28.2	10.3	9.5	100.0 (252)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	9.6	33.3	20.5	22.7	6.7	7.2	100.0 (375)
자영업	10.5	37.0	20.4	21.6	4.9	5.6	100.0 (162)
고용인	8.2	29.3	23.1	25.9	6.8	6.8	100.0 (147)
기타	10.8	33.8	15.4	18.5	9.2	12.3	100.0 (65)
안한다	6.0	25.3	29.9	24.5	6.7	7.6	100.0 (645)
가족형태							
독거	6.5	16.1	26.9	34.4	9.7	6.5	100.0 (93)
부부끼리	7.1	25.4	29.0	26.0	6.9	5.6	100.0 (393)
자녀와 함께	7.1	32.7	24.6	20.3	5.9	9.3	100.0 (492)
기타	14.6	29.3	22.0	22.0	7.3	4.9	100.0 (41)
정책수혜 여부							
수혜	5.8	16.8	23.9	32.9	12.9	7.7	100.0 (155)
비수혜	7.6	30.3	26.9	22.2	5.5	7.5	100.0 (86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48〉 고령자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개선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거의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계(명)
전체	6.4	16.4	25.2	38.6	10.4	3.1	100.0 (1,021)
성별							
남자	9.8	19.8	28.1	33.1	6.8	2.4	100.0 (459)
여자	3.6	13.5	22.8	43.1	13.3	3.7	100.0 (562)
지역							
특별·광역시	7.3	20.4	24.8	37.5	6.4	3.5	100.0 (451)
9개 도지역	5.4	13.2	25.6	39.3	13.5	3.0	100.0 (570)
연령							
50~54세	4.9	12.4	27.6	44.4	7.1	3.6	100.0 (225)
55~59세	6.4	20.5	27.9	33.8	7.3	4.1	100.0 (219)
60~64세	5.2	17.5	22.7	42.9	9.7	1.9	100.0 (154)
65~69세	9.4	17.5	22.2	35.1	12.9	2.9	100.0 (171)
70세 이상	5.6	15.1	24.7	37.1	14.7	2.8	100.0 (251)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	5.6	17.1	28.3	34.9	11.7	2.4	100.0 (375)
자영업	5.5	17.2	32.5	35.0	7.4	2.5	100.0 (163)
고용인	4.1	21.1	25.2	32.7	13.6	3.4	100.0 (147)
기타	9.2	9.2	24.6	38.5	16.9	1.5	100.0 (65)
안한다	6.7	16.0	23.4	40.8	9.5	3.7	100.0 (645)
가족형태							
독거	6.4	14.9	19.1	38.3	18.1	3.2	100.0 (94)
부부끼리	5.8	15.5	26.6	38.6	10.7	2.8	100.0 (394)
자녀와 함께	6.7	16.7	26.2	38.8	8.1	3.5	100.0 (492)
기타	7.5	25.0	15.0	35.0	12.5	5.0	100.0 (40)
정책수혜 여부							
수혜	5.2	10.4	26.0	35.7	18.2	4.5	100.0 (154)
비수혜	6.5	17.4	25.2	39.0	8.9	3.0	100.0 (86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49〉 고령자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름	알고 있다				계(명)
		소계	조금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많이 알고 있음	
전체	22.8	77.2	47.0	25.8	4.4	100.0 (1,021)
성별						
남자	20.9	79.1	45.8	27.0	6.3	100.0 (459)
여자	24.4	75.6	48.0	24.8	2.9	100.0 (561)
지역						
특별·광역시	18.8	81.2	48.3	28.4	4.4	100.0 (451)
9개 도지역	26.0	74.0	45.7	23.7	4.6	100.0 (569)
연령						
50~54세	18.8	81.3	57.1	21.0	3.1	100.0 (224)
55~59세	23.7	76.3	45.7	24.7	5.9	100.0 (219)
60~64세	19.4	80.6	41.3	34.2	5.2	100.0 (155)
65~69세	21.2	78.8	49.4	25.3	4.1	100.0 (170)
70세 이상	29.2	70.8	40.3	26.5	4.0	100.0 (253)
교육수준						
중졸 이하	27.0	81.1	27.0	27.0	27.0	100.0 (518)
고졸 이상	18.4	55.3	18.4	18.4	18.4	100.0 (494)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	21.3	78.7	49.5	23.7	5.6	100.0 (376)
자영업	17.8	82.2	51.5	24.5	6.1	100.0 (163)
고용인	23.1	76.9	45.6	24.5	6.8	100.0 (147)
기타	26.2	73.8	52.3	20.0	1.5	100.0 (65)
안한다	23.7	76.3	45.4	27.1	3.7	100.0 (645)
가족형태						
독거	30.1	69.9	41.9	26.9	1.1	100.0 (93)
부부끼리	19.5	80.5	48.7	26.1	5.6	100.0 (394)
자녀와 함께	24.1	75.9	46.7	25.4	3.9	100.0 (493)
기타	22.0	78.0	41.5	26.8	9.8	100.0 (4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50〉 고령자의 역모기지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름	알고 있다				계(명)
		소계	조금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많이 알고 있음	
전체	23.4	76.6	31.1	36.0	9.5	100.0 (1,022)
성별						
남자	18.7	81.3	32.9	34.6	13.7	100.0 (459)
여자	27.3	72.7	29.6	37.1	6.1	100.0 (561)
지역						
특별·광역시	17.7	82.3	32.6	39.0	10.6	100.0 (451)
9개 도지역	27.9	72.1	29.8	33.7	8.6	100.0 (570)
연령						
50～54세	13.8	86.2	40.0	34.2	12.0	100.0 (225)
55～59세	17.9	82.1	32.1	39.9	10.1	100.0 (218)
60～64세	20.0	80.0	26.5	40.6	12.9	100.0 (155)
65～69세	22.2	77.8	32.2	35.7	9.9	100.0 (171)
70세 이상	39.5	60.5	24.5	31.6	4.3	100.0 (253)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	19.4	80.6	35.6	32.7	12.2	100.0 (376)
자영업	16.0	84.0	35.2	33.3	15.4	100.0 (162)
고용인	17.7	82.3	37.4	34.7	10.2	100.0 (147)
기타	30.8	69.2	33.8	27.7	7.7	100.0 (65)
안한다	25.7	74.3	28.5	37.8	7.9	100.0 (645)
가족형태						
독거	43.0	57.2	24.7	26.9	5.4	100.0 (93)
부부끼리	22.3	77.8	29.7	38.6	9.4	100.0 (394)
자녀와 함께	20.9	79.3	32.7	36.2	10.2	100.0 (492)
기타	17.5	83.0	40.0	30.0	12.5	100.0 (4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51〉 고령자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름	알고 있다				계(명)
		소계	조금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많이 알고 있음	
전체	55.0	45.0	28.6	14.0	2.4	100.0 (1,022)
성별						
남자	53.4	46.6	29.5	13.7	3.5	100.0 (461)
여자	56.3	43.7	27.8	14.3	1.6	100.0 (561)
지역						
특별·광역시	52.5	47.5	29.9	15.7	1.8	100.0 (451)
9개 도지역	57.0	43.0	27.5	12.5	3.0	100.0 (570)
연령						
50～54세	58.2	41.8	30.2	8.9	2.7	100.0 (451)
55～59세	52.1	47.9	30.1	15.1	2.7	100.0 (570)
60～64세	55.8	44.2	22.1	18.2	3.9	100.0 (154)
65～69세	48.5	51.5	33.9	15.2	2.3	100.0 (171)
70세 이상	58.7	41.3	25.8	14.3	1.2	100.0 (252)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	55.1	44.9	29.8	11.4	3.7	100.0 (376)
자영업	49.7	50.3	31.3	13.5	5.5	100.0 (163)
고용인	58.5	41.5	27.9	10.2	3.4	100.0 (147)
기타	60.6	39.4	30.3	9.1	–	100.0 (66)
안한다	55.0	45.0	27.9	15.5	1.6	100.0 (645)
가족형태						
독거	63.2	36.8	22.1	13.7	1.1	100.0 (95)
부부끼리	55.6	44.4	25.6	16.2	2.5	100.0 (394)
자녀와 함께	53.3	46.7	32.3	12.2	2.2	100.0 (493)
기타	52.5	47.5	25.0	15.0	7.5	100.0 (4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52〉 고령자의 방문보건사업이나 노인운동사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름	알고 있다				계(명)
		소계	조금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많이 알고 있음	
전체	29.1	70.9	33.4	29.2	8.4	100.0 (1,022)
성별						
남자	31.5	68.5	35.0	26.7	6.7	100.0 (460)
여자	27.0	73.0	32.0	31.1	9.8	100.0 (562)
지역						
특별·광역시	28.9	71.1	34.9	30.2	6.0	100.0 (453)
9개 도지역	29.2	70.8	32.2	28.3	10.4	100.0 (569)
연령						
50～54세	28.4	71.6	41.8	22.7	7.1	100.0 (225)
55～59세	31.4	68.6	38.6	25.0	5.0	100.0 (220)
60～64세	26.0	74.0	29.2	34.4	10.4	100.0 (154)
65～69세	29.4	70.6	30.0	28.8	11.8	100.0 (170)
70세 이상	29.0	71.0	26.6	35.3	9.1	100.0 (252)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	29.0	71.0	39.1	25.8	6.1	100.0 (376)
자영업	27.8	72.2	43.2	24.1	4.9	100.0 (162)
고용인	36.7	63.3	29.9	26.5	6.8	100.0 (147)
기타	15.2	84.8	50.0	28.8	6.1	100.0 (66)
안한다	29.1	70.9	30.0	31.1	9.8	100.0 (646)
가족형태						
독거	29.8	70.2	23.4	34.0	12.8	100.0 (94)
부부끼리	27.4	72.6	33.5	30.5	8.6	100.0 (394)
자녀와 함께	30.6	69.4	36.1	27.0	6.3	100.0 (493)
기타	24.4	75.6	24.4	29.3	22.0	100.0 (4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53〉 고령자의 기초노령연금의 도움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조금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명)	도움 된다
전체	4.3	16.0	65.0	14.8	100.0 (1,010)	79.8
성별						
남자	5.5	18.6	63.9	12.0	100.0 (457)	75.9
여자	3.3	13.8	65.9	17.0	100.0 (552)	83.0
지역						
특별·광역시	5.8	17.7	64.6	11.9	100.0 (446)	76.5
9개 도지역	3.0	14.5	65.4	17.0	100.0 (564)	82.4
연령						
50～54세	3.6	19.5	66.4	10.5	100.0 (220)	76.8
55～59세	4.2	19.7	66.2	9.9	100.0 (213)	76.1
60～64세	1.9	17.4	64.5	16.1	100.0 (155)	80.6
65～69세	7.6	12.4	64.7	15.3	100.0 (170)	80.0
70세 이상	4.0	11.2	63.7	21.1	100.0 (251)	84.9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	4.0	19.8	64.3	11.8	100.0 (373)	76.1
자영업	3.7	22.8	63.0	10.5	100.0 (162)	73.5
고용인	4.1	17.2	68.3	10.3	100.0 (145)	78.6
기타	6.1	18.2	57.6	18.2	100.0 (66)	75.8
안한다	4.4	13.7	65.4	16.5	100.0 (636)	81.9
가족형태						
독거	4.3	10.8	63.4	21.5	100.0 (93)	84.9
부부끼리	5.4	13.8	66.1	14.8	100.0 (392)	80.9
자녀와 함께	3.7	18.5	64.7	13.1	100.0 (487)	77.8
기타		21.1	60.5	18.4	100.0 (38)	78.9
기초노령연금 수급						
수급	1.0	4.9	70.6	23.5	100.0 (102)	94.1
비수급	4.6	17.2	64.4	13.8	100.0 (907)	78.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54〉 고령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조금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명)	도움 된다
전체	2.3	7.4	52.6	37.7	100.0 (989)	90.3
성별						
남자	2.0	8.4	52.3	37.3	100.0 (451)	89.6
여자	2.6	6.5	52.8	38.1	100.0 (538)	90.9
지역						
특별·광역시	3.2	6.4	51.5	38.9	100.0 (437)	90.4
9개 도지역	1.6	8.2	53.5	36.7	100.0 (551)	90.2
연령						
50～54세	2.7	9.1	56.4	31.8	100.0 (220)	88.2
55～59세	3.8	8.6	56.5	31.1	100.0 (209)	87.6
60～64세	0.7	2.7	53.4	43.2	100.0 (148)	96.6
65～69세	3.0	5.5	48.2	43.3	100.0 (164)	91.5
70세 이상	1.2	8.5	49.2	41.1	100.0 (246)	90.2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	3.0	8.5	54.5	34.0	100.0 (365)	88.5
자영업	1.9	8.8	58.1	31.3	100.0 (160)	89.4
고용인	3.5	6.4	52.5	37.6	100.0 (141)	90.1
기타	4.7	12.5	50.0	32.8	100.0 (64)	82.8
안한다	1.9	6.6	51.5	40.0	100.0 (623)	91.5
가족형태						
독거	2.2	6.5	50.0	41.3	100.0 (92)	91.3
부부끼리	2.6	8.2	52.9	36.3	100.0 (380)	89.2
자녀와 함께	2.1	6.5	52.5	38.9	100.0 (478)	91.4
기타	2.6	12.8	56.4	28.2	100.0 (39)	84.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표 4-55〉 고령자의 정부 노인여가생활 활성화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조금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명)	도움 된다
전체	4.3	13.6	53.7	28.4	100.0 (1,001)	82.1
성별						
남자	5.8	15.0	56.6	22.6	100.0 (452)	79.2
여자	3.1	12.4	51.4	33.2	100.0 (549)	84.5
지역						
특별·광역시	4.1	14.0	54.6	27.3	100.0 (443)	81.9
9개 도지역	4.5	13.4	53.0	29.0	100.0 (558)	82.1
연령						
50～54세	1.8	7.7	61.3	29.3	100.0 (222)	90.5
55～59세	2.8	9.8	56.1	31.3	100.0 (214)	87.4
60～64세	2.7	16.1	53.0	28.2	100.0 (149)	81.2
65～69세	8.4	16.8	49.1	25.7	100.0 (167)	74.9
70세 이상	5.6	18.8	48.8	26.8	100.0 (250)	75.6
경제활동 여부 및 형태						
한다	3.8	7.8	62.0	26.4	100.0 (371)	88.4
자영업	2.5	8.1	67.7	21.7	100.0 (161)	89.4
고용인	3.4	6.2	60.7	29.7	100.0 (145)	90.3
기타	6.3	10.9	50.0	32.8	100.0 (64)	82.8
안한다	4.6	17.1	49.0	29.3	100.0 (631)	78.3
가족형태						
독거	11.8	19.4	39.8	29.0	100.0 (93)	68.8
부부끼리	4.2	13.1	53.8	29.0	100.0 (383)	82.8
자녀와 함께	2.9	12.6	56.9	27.6	100.0 (485)	84.5
기타	5.0	17.5	50.0	27.5	100.0 (40)	77.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 2008.

〔부록 2〕 조사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무총리 산하 보건복지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조사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평가관리팀 ☎ 02-380-8341

구 분	1	조사원 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연 령	만 _____ 세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지 역		_____시·도		CODE				
		_____시·군·구						
전화번호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Ⅰ)

(20~49세 미혼남녀용)

먼저, '결혼 및 자녀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최근 미혼남녀들의 결혼 연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결혼 연령은 더 낮아져야 한다(더 빨리 해야 한다) → (질문 1-1번으로 이동)
   □② 결혼 연령은 적당하다 → (질문 2번으로 이동)
   □③ 결혼 연령은 더 높아져야 한다(더 늦게 해야 한다) → (질문 2번으로 이동)

1-1. 그렇다면, 결혼 연령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의 해당하는 항목에 √ 기호를 기입하십시오.)
   □① 경제적 안정을 빨리 이룰 수 있으므로
   □② 사회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서
   □③ 자녀 출산과 육아가 쉽기 때문에
   □④ 늦게 할수록 적당한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성인으로 살 수 있으므로
   □⑥ 중년이후 양육부담을 덜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므로
   □⑦ 기타(_____)
   □⑨ 비해당(질문 1에서 ②, ③이라고 응답한 경우)

2.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말씀해 주십시오.
   ⇨ _____
   1) 1순위: _____ 2) 2순위: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①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②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③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④ 결혼 후의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⑤ 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가치관의 변화)
□⑥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⑦ 교육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⑧ 기타(_____)

3. 귀하께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경우에 따라서)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4.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다면, 남녀 각각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자: □□ 세 2) 여자: □□ 세

5. 귀하께서는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매우 반대

6. 귀하께서 결혼을 한다면, 향후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싶습니까? □ 명

6-1. 자녀를 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의 해당하는 항목에 √ 기호를 기입하십시오.)
□①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
□② 결혼을 하면 당연한 일이므로 □③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④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주므로 □⑤ 대를 잇기 위해서
□⑥ 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⑦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⑧ 기타( ) □⑨ 비해당(희망 자녀수가 "0"명인 경우)

7. 요즘 부부들은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의 해당하는 항목에 √ 기호를 기입하십시오.)

□①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② 자녀 양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③ 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④ 출산, 양육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불이익)을 받기 때문
□⑤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⑥ 육아에 대한 경험과 학습 부족으로 육아가 어려워서
□⑦ 자아성취 시간이 부족해서
□⑧ 부부만의 시간공유를 위하여
□⑨ 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⑩기타(구체적으로: _____)

8. 귀하께서는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미혼부/모)는 견해에 찬성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매우 반대

9. 향후 결혼한다면, 집안일과 자녀돌보는 일을 배우자와 어느정도 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인이 전담 □② 부인이 좀더 많이 □③ 부부가 균등분담
□④ 남편이 좀더 많이 □⑤ 남편이 전담

다음은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인식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0. 귀하께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저출산·고령화)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그저그렇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11. 귀하께서는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영향이 많다 □② 영향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영향이 없다 □⑤ 전혀 영향이 없다

12. 귀하께서는 고령화 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영향이 많다 □② 영향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영향이 없다 □⑤ 전혀 영향이 없다

13.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세부사업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 (질문 13-1번으로 이동)
□② 명칭(제목)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 (질문 13-1번으로 이동)
□③ 전혀 모른다 → (질문 14번으로 이동)

13-1.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아시게 되었습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를 말씀해 주십시오.
⇨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1) 1순위: _____ 2) 2순위: _____

【 보기 】
□①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 지인을 통해서 □②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③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④ 각종 교육 및 세미나
□⑤ 공공기관의 홍보물(안내문, 포스터, 현수막 등) □⑥ 공공기관 주관의 각종 이벤트
□⑦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⑧ 타 (_____)
□⑨ 비해당(질문 13에서 ③이라고 응답한 경우)

다음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귀하께서는 정부가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인구변화(저출산·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음

15.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임산·출산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조성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다소 찬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⑥ 잘 모르겠음

16. 귀하께서는 결혼, 출산, 양육을 배려(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음

17. 귀하께서는 미혼남녀들의 결혼을 촉진(장려)하기 위해 무엇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1) 1순위: _____ 2) 2순위: _____

【 보기 】
□① 혼인 및 출산 가치관 확립 □②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③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
□④ 청년 실업 해소 등 고용 안정 □⑤ 건전한 혼례 문화 조성
□⑤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 □⑥ 결혼자금 융자 확대
□⑦ 건전한 미혼남녀의 만남 기회, 장소 제공 □⑧ 기타(무엇:_____)

18. 귀하께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1) 1순위: _____ 2) 2순위: _____

【 보기 】

□① 출산장려금 지원	□② 산모도우미 서비스
□③ 모성 및 영유아 건강검진	□④ 불임부부의 치료 지원
□⑤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⑥ 보육·교육비 지원
□⑦ 아동수당	□⑧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⑩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
□⑪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입주 우선권	
□⑫ 기타(무엇: _____)	

19.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대책(노인소득보장, 건강증진, 요양보호 기반 확충, 안전한 주거 및 교통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다소 찬성한다 □③ 보통이다

□③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④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⑤ 잘모르겠음

끝으로,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 귀하는 다음 중 어떠한 유형의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자영업	□② 고용주
□③ 무급가족봉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⑦ 무직	□⑧ 주부
□⑨ 구직중	□⑩ 기타(_____)

21. 귀댁의 월 평균소득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 | | | | 만원 ⇨ (보기 번호 기입: | | |)

(※ 월 소득을 기입하고, 아래의 보기에 해당하는 번호를 괄호 안에 기입함.)

【 보기 】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 1) 소득은 실소득을 합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퇴직금, 개인연금, 이자수입 등 가구에서 받았던 모든 수입을 포함함.

2) 응답자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질문하여 기입함.

22.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이상

(※ 재학 또는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Ⅱ)

(20～49세 기혼부인용)

먼저, '결혼 및 자녀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최근 미혼남녀들의 결혼 연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결혼 연령은 더 낮아져야 한다(더 빨리 해야 한다) → (질문 1-1번으로 이동)
   □② 결혼 연령은 적당하다 → (질문 2번으로 이동)
   □③ 결혼 연령은 더 높아져야 한다(더 늦게 해야 한다) → (질문 2번으로 이동)

1-1. 그렇다면, 결혼 연령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의 해당하는 항목에 √ 기호를 기입하십시오.)
   □① 경제적 안정을 빨리 이룰 수 있으므로
   □② 사회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서
   □③ 자녀 출산과 육아가 쉽기 때문에
   □④ 늦게 할수록 적당한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성인으로 살 수 있으므로
   □⑥ 중년이후 양육부담을 덜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므로
   □⑦ 기타(_____)
   □⑨ 비해당(질문 1에서 ②, ③이라고 응답한 경우)

2.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말씀해 주십시오.
   ⇨ _____
   1) 1순위:_____ 2) 2순위: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①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②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③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④ 결혼 후의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⑤ 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가치관의 변화)
□⑥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⑦ 교육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⑧ 기타(_____)

3. 귀하께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경우에 따라서)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4.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다면, 남녀 각각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자: □□ 세 2) 여자: □□ 세

5. 귀하께서는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매우 반대

6.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명
6-1. 자녀를 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의 해당하는 항목에 √ 기호를 기입하십시오.)
□①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
□② 결혼을 하면 당연한 일이므로 □③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④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주므로 □⑤ 대를 잇기 위해서
□⑥ 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⑦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⑧ 기타 (_____) □⑨ 비해당(이상 자녀수가 "0"명인 경우)

7. 요즘 부부들은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의 해당하는 항목에 √ 기호를 기입하십시오.)

□①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② 자녀 양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③ 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④ 출산, 양육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불이익)을 받기 때문
□⑦ 자아성취 시간이 부족해서
□⑤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⑧ 부부만의 시간공유를 위하여
□⑥ 육아에 대한 경험과 학습 부족으로 육아가 어려워서
□⑨ 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8. 귀하께서는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미혼부/모)는 견해에 찬성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매우 반대

9. 귀하께서는 평소 집안일이나 자녀돌보는 일을 남편과 어느 정도 분담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부인이 □② 대체로 부인이 □③ 부부가 함께
□④ 대체로 남편이 □⑤ 전적으로 남편이 □⑥ 부부 이외 다른 사람

다음은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인식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0. 귀하께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저출산·고령화)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그저그렇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11. 귀하께서는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영향이 많다 □② 영향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영향이 없다 □⑤ 전혀 영향이 없다

12. 귀하께서는 고령화 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영향이 많다 □② 영향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영향이 없다 □⑤ 전혀 영향이 없다

13.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세부사업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 (질문 13-1번으로 이동)
□② 명칭(제목)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 (질문 13-1번으로 이동)
□③ 전혀 모른다 → (질문 14번으로 이동)

13-1.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아시게 되었습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를 말씀해 주십시오.
⇨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1) 1순위: _____ 2) 2순위: _____

【 보기 】
□①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 지인을 통해서 □②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③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④ 각종 교육 및 세미나
□⑤ 공공기관의 홍보물(안내문, 포스터, 현수막 등) □⑥ 공공기관 주관의 각종 이벤트
□⑦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⑧ 기타 (_____)
□⑨ 비해당(질문 13에서 ③이라고 응답한 경우)

다음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귀하께서는 정부가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인구변화(저출산·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음

※ 다음은 정부의 주요 저출산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정도와 정책의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있는 정도는 ①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다, ② 이름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③전혀 모른다 중 선택하시고, 중요도는 ①매우 중요하다 ②중요하다 ③보통이다 ④중요하지 않다 ⑤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순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인지도】 ①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②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른다
【중요도】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질문 번호	주요 저출산 정책	【인지도】 ~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중요도】 ~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16	불임, 산모도우미 등의 임산·출산 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17~18	만5세아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19~20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21~22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분양 인센티브제도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23~24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25~26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27~28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29. 귀하께서는 결혼, 출산, 양육을 배려(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음

30.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대책(노인소득보장, 건강증진, 요양보호 기반 확충, 안전한 주거 및 교통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다소 찬성한다 □③ 보통이다
□③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 □④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⑥ 잘 모르겠음

끝으로,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귀하께서는 언제 결혼을 하셨습니까? □□□□ 년도

32. 현재 몇 명의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 명

32-1. 자녀의 만 연령과 성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출산순위	만 연령	성 별	출산순위	만 연령	성 별
첫째아		□① 남 □② 여	넷째아		□① 남 □② 여
둘째아		□① 남 □② 여	다섯째아		□① 남 □② 여
셋째아		□① 남 □② 여	여섯째아		□① 남 □② 여

33. 귀하는 다음 중 어떠한 유형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자영업 □② 고용주
□③ 무급가족봉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⑦ 무직 □⑧ 주부
□⑨ 구직중 □⑩ 기타(_____)

34. 귀하께서는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⑨ 비해당(사별, 이혼 등 무배우자) → 표지의 결혼상태를 재확인

35. 귀댁의 월 평균소득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만원 ⇨ (보기 번호 기입:□□)

(※ 월 소득을 기입하고, 아래의 보기에 해당하는 번호를 괄호 안에 기입함.)

【 보기 】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 1) 소득은 실소득을 합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퇴직금, 개인연금, 이자수입 등 가구에서 받았던 모든 수입을 포함함.

2) 응답자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질문하여 기입함.

36.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이상

(※ 재학 또는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Ⅲ)

(50세이상 중고령자용)

먼저, '결혼 및 자녀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어르신께서는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말씀해 주십시오.

➡ _____

1) 1순위: _____ 2) 2순위: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① 직장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②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③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④ 결혼 후의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⑤ 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가치관의 변화)
□⑥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⑦ 교육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⑧ 기타(_____)

2. 어르신께서는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매우 반대

3. 어르신께서는 자녀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의 해당하는 항목에 √ 기호를 기입하십시오.)

□①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
□② 결혼을 하면 당연한 일이므로 □③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④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주므로 □⑤ 대를 잇기 위해서
□⑥ 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⑦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⑧ 기타 (_____)

다음은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인식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4. 어르신께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저출산·고령화)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그저그렇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5. 어르신께서는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영향이 많다 □② 영향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영향이 없다 □⑤ 전혀 영향이 없다

6. 귀하께서는 고령화 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영향이 많다 □② 영향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영향이 없다 □⑤ 전혀 영향이 없다

다음은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7.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세부사업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② 명칭(제목)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른다

8. 어르신께서는 정부가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인구변화(저출산·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음

9.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제공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일을 통한 사회활동 및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많이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전혀 모른다

10.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노후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역모기지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많이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전혀 모른다

11.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주택개조 등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많이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전혀 모른다

12.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나 노인운동사업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많이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전혀 모른다

13. 어르신께서는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2008년 1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도움이 안 된다 □④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4. 어르신께서는 치매, 중풍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요양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도움이 안 된다 □④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5. 어르신께서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통한 여가생활 활성화가 활동적인 노후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도움이 안 된다 □④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6. 어르신께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배려) 등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음

17. 어르신께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어떤 정책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의 해당하는 항목에 √ 기호를 기입하십시오.)

□①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②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③ 역모기지제도의 기준 완화 및 다양화 □④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노인건강증진 사업
□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및 서비스 확대 □⑥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⑦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⑧ 고령자 주거지원정책의 강화
□⑨ 기타(무엇:_____)

끝으로, '생활 실태 및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8. 어르신께서는 소득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 (질문 18-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질문 19번으로 이동)

18-1.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근무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자영업 □② 고용주
□③ 무급가족봉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⑦ 기타 (_____) □⑨ 비해당(18번 질문에 ②라고 응답한 경우)

19. 어르신의 주된 소득원을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 _____

1) 1순위: _____ 2) 2순위: _____

(※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의 보기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함.)

【 보기 】

□① 근로소득 □② 사업 및 부업 소득
□③ 재산소득 □④ 금융소득
□⑤ 국민연금 □⑥ 기업퇴직연금
□⑦ 사학연금(교직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⑧ 민간 개인연금(은행, 보험사 등)
□⑨ 기초노령연금 □⑩ 교통수당
□⑪ 자녀, 친인척으로부터 지원(보조) □⑫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⑬ 기초생활 수급비 □⑭ 참전명예수당
□⑮ 기타(무엇: _____)

20. 귀댁의 월 평균소득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만원 (보기 번호 기입:□□)

(※ 월 소득을 기입하고, 아래의 보기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괄호 안에 기입하십시오.
소득이 없는 경우 한 달 생활비로 기재하십시오.)

【 보기 】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 1) 소득은 실소득을 합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퇴직금, 개인연금, 이자수입 등 가구에서 받았던 모든 수입을 포함함.
2) 응답자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질문하여 기입함.

21. 동년배의 다른 어르신들에 비해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떤 편입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22. 어르신께서는 현재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① 유배우 □② 무배우

23. 어르신의 (생존)자녀는 몇 명입니까? 총 □□ 명

24. 어르신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사시는지요(가족형태)?

□① 혼자 산다 □② 부부끼리만 산다
□③ 자녀와 함께 산다 □④ 기타(무엇:_____)

25. 어르신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이상
(※ 재학 또는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재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234)

도서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간 안내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미정
연구 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연구 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미정
연구 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미정
연구 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08-15	아동 · 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Ⅰ	김미숙	미정
연구 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미정
연구 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Ⅱ	신영석	6,000
연구 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신현웅	미정
연구 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미정
연구 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미정
연구 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식	7,000
연구 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08-23-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미정
연구 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미정
연구 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미정
연구 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미정
연구 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미정
연구 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미정
연구 07-01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박실비아	8,000
연구 07-02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오영호	9,000
연구 07-03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전략	최은진	7,000
연구 07-04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김혜련	10,000
연구 07-05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허순임	8,000
연구 07-07	국민연금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원종욱	7,000
연구 07-08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노대명	6,000
연구 07-09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유진	7,000
연구 07-10	사회재정지출 성과관리 및 효과분석 방안	최성은	8,000
연구 07-1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II)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김승권	12,000
연구 07-12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국가 · 시장 · 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강혜규	10,000
연구 07-1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김미숙	7,000
연구 07-14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변용찬	7,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7-15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정영철	7,000
연구 07-16	한국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장영식	6,000
연구 07-17-1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 - 기초보장 수급자 및 담당자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이태진	13,000
연구 07-17-2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	신영석	6,000
연구 07-17-3	2007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7-17-4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대명	5,000
연구 07-17-5	미국 Medicaid의 각주별 모니터링 체계 비교 연구	신영석	7,000
연구 07-1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07-17-7	저소득층 의료욕구 측정에 관한 연구	신현웅	6,000
연구 07-17-8	사회정책의 진단과 동향	이태진	16,000
연구 07-18-1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the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UK, US and Korea*	강혜규	5,000
연구 07-18-2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홍석표	5,000
연구 07-19-1	국제결혼가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안	이삼식	6,000
연구 07-19-2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신윤정	7,000
연구 07-19-3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정경희	7,000
연구 07-19-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 개발 연구	선우덕	9,000
연구 07-19-6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조남훈	9,000
연구 07-19-7	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공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오영희	6,000
연구 07-19-8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07-19-9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강유구	7,000
연구 07-20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김미곤	7,000
연구 07-21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2,000
연구 07-22-2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일차년도)-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07-22-3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건강투자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07-22-4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8,000
연구 07-22-6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 방안	최성은	6,000
연구 07-23	200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9,000
연구 07-24	의료이용 및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1차 예비조사	정영호	9,000